

방송통신정책연구 11-진흥-나-10

**G20국가와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제도 상호인정협정 전략연구**
(A Study on Strategy for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with G20 countries for Conformity assessment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곽기훈/박희진/엄희운/박종실/황순주/박혜원

2011. 12. 31.

연구기관 : 한국전파진흥협회



이 보고서는 2011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G20국가와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제도 상호인정협정 전략연구』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년 12월

연구기관 : 한국진과진흥협회

총괄책임자 : 곽 기 훈

참여연구원 : 박 회 진

엄 희 윤

박 중 실

황 순 주

박 혜 원

목 차

요약문	xiii
제1장 서 론	1
제1절 추진 배경	1
1. WTO/TBT	1
2. NAMA	1
3. 국내 FTA/MRA 체결 현황	4
제2절 연구의 필요성	6
제3절 연구 목적	7
제2장 국내 적합성평가제도	8
제1절 적합성평가 개념의 이해	8
1. 적합성평가 정의	8
2. 적합성평가 활동	10
제2절 국내 적합성평가제도 연구	12
1. 수평적 적합성평가 체계 도입	12
2. 적합성평가 변경 및 해지	17
3. 적합성평가 면제 및 취소	18
4. 적합성평가표시	18
제3장 해외 적합성평가제도연구	21
제1절 미국	21
1. 방송통신기자재 분야 교역량	21

2. 적합성평가제도	22
제2절 유럽	35
1. 방송통신기자재 분야 교역량	35
2. 적합성평가제도	36
제3절 일본	59
1. 방송통신기자재 분야 교역량	59
2. 적합성평가제도	60
제4절 베트남	72
1. 방송통신기자재 분야 교역량	72
2. 적합성평가제도	73
제5절 브라질	84
1. 방송통신기자재 분야 교역량	84
2. 적합성평가제도	85
제6절 멕시코	102
1. 방송통신기자재 분야 교역량	102
2. 적합성평가제도	103
제7절 러시아	115
1. 방송통신기자재 분야 교역량	115
2. 적합성평가제도	116
제8절 국내외 적합성평가 비교 분석	125
1. 방송통신기자재 분야 교역량	125
2. 적합성평가절차	126
3. 시험 및 인증 비용	127
제4장 방송통신기자재 상호인정협정	129
제1절 추진배경	129
제2절 APEC-TEL MRA TF 참가 결과	153

제3절 기 체결 FTA/MRA 확대 이행에 따른 정책 지원	166
제4절 전략적 FTA/MRA 체결을 위한 추진체계 확립	175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89
제1절 국내 적합성평가제도 문제점 및 시사점	189
제2절 정책 제언 - 향후 정책추진 방향 -	191
제3절 결론	194
참고문헌	196
주요결과물	199
[결과 1] 해외 주요국 교역량 현황(raw data)	200
[결과 2] 해외 주요국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214
[결과 3] 해외 주요국 시험 및 인증 수수료	242
[결과 4] 해외 주요국 인증 및 시험기관 리스트	251
[결과 5] 해외 주요국 MRA 추진 현황	273
부 록	285
[부록 1] FTA/MRA 관련 용어 정리	286
[부록 2] 해외 주요국의 적합성평가 관련 서식 모음	289
[부록 3] FTA/MRA 대응전담반 현황	331

표 목 차

<표 1-1> NAMA 협상 이슈 연혁	3
<표 1-2> 우리나라의 MRA 체결 현황	5
<표 2-1> 적합성평가 유형별 특징	9
<표 2-2> 적합성평가 표시 변경사항	19
<표 2-3> 적합성평가 표시 예시	20
<표 3-1> 對미국 방송통신기자재 수출입 현황	21
<표 3-2> 對미국 방송통신기자재 수출입 상위 5개 품목	22
<표 3-3> 미국 적합성평가 근거 법령	25
<표 3-4> 미국 적합성평가 운영 체계	26
<표 3-5> 자체증명, 적합성선언, 자기 적합성선언 유형의 적합성평가절차	28
<표 3-6> 인증마크 표시방법 근거 규정	31
<표 3-7> 인증 및 자체증명 표시(Labelling) 요구사항	31
<표 3-8> 적합성선언 표시(Labelling) 요구사항	32
<표 3-9> 미인증 기기에 대한 벌칙	34
<표 3-10> 對EU 방송통신기자재 수출입 현황	35
<표 3-11> 對EU 방송통신기자재 수출입 상위 3개 품목	36
<표 3-12> 다른 세부 지침의 적용을 받는 장비	40
<표 3-13> EMC 특성이 없는 장비 목록	40
<표 3-14> 구성요소/하위부품 예시	41
<표 3-15> EU의 적합성평가 근거 법령	42
<표 3-16> 유·무선기기의 제품별 기술기준	43
<표 3-17> 유럽 적합성평가 운영 체계	46
<표 3-18> R&TTE 지침에 따른 적합성평가 방법	48
<표 3-19> R&TTE 지침에 따른 Annex 구분	49
<표 3-20> CE 마킹 도안	55

<표 3-21> 對일본 방송통신기자재 수출입 현황	59
<표 3-22> 對일본 방송통신기자재 수출입 상위 5개 품목	60
<표 3-23> 일본 적합성평가제도 개정 포인트 및 상세 내용	61
<표 3-24> 일본 적합성평가제도 근거 법령	63
<표 3-25> 일본 적합성평가제도 운영 체계	63
<표 3-26> 일본의 전기통신기기 기술기준 적합인정제도	65
<표 3-27> 일본의 특정무선설비 기술기준 적합증명제도	65
<표 3-28> 인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67
<표 3-29> 확인 방법서의 기재사항(인정 등 규칙 별표 제3호)	68
<표 3-30> 對베트남 방송통신기자재 수출입 현황	72
<표 3-31> 對베트남 방송통신기자재 수출입 상위 5개 품목	73
<표 3-32> 베트남 적합성평가 근거 법령	76
<표 3-33> 베트남 적합성평가 운영 체계	77
<표 3-34> 베트남 우정통신부(MPT) 조직도	78
<표 3-35> 베트남 적합성평가 표시	81
<표 3-36> 표준인증스탬프 의무부착 대상기기	82
<표 3-37> 벌금규정	83
<표 3-38> 對브라질 방송통신기자재 수출입 현황	84
<표 3-39> 對브라질 방송통신기자재 수출입 상위 5개 품목	85
<표 3-40> INMETRO 인증 대상 품목 예시	88
<표 3-41> INMETRO 강제인증 대상 제품 및 서비스 종류	88
<표 3-42> ANATEL 강제인증 대상 분류	92
<표 3-43> INMETRO 산하 인증기관과 역할	93
<표 3-44> INMETRO 인정 인증기관 리스트	94
<표 3-45> ANATEL 인정 인증기관 리스트	96
<표 3-46> 브라질 적합성평가 운영 체계	97
<표 3-47> 브라질 인증유형별 비교	98
<표 3-48> 브라질 인증유형별 인증마크 비교	100

<표 3-49> ANATEL 인증 구분 및 유효기간	100
<표 3-50> 對멕시코 방송통신기자재 수출입 현황	102
<표 3-51> 對멕시코 방송통신기자재 수출입 상위 5개 품목	103
<표 3-52> NOM 인증 대상기기	105
<표 3-53> COFETEL 인증 대상기기	106
<표 3-54> NOM 인증 관련 근거 법령	106
<표 3-55> COFETEL 인증 관련 근거 법령	107
<표 3-56> 멕시코 적합성평가 운영 체계	108
<표 3-57> NOM 인증 절차	110
<표 3-58> 멕시코 적합성평가 마크	112
<표 3-59> 對러시아 방송통신기자재 수출입 현황	115
<표 3-60> 對러시아 방송통신기자재 수출입 상위 5개 품목	116
<표 3-61> 강제인증 대상품목	117
<표 3-62> 수출 횟수에 따른 강제인증 분류	118
<표 3-63> CFC 인증 대상품목 예시	119
<표 3-64> CSR 대상품목 예시	120
<표 3-65> 러시아 적합성평가제도 근거 법령	121
<표 3-66> 러시아 적합성평가제도 운영 체계	121
<표 3-67> 러시아 적합성평가 마크	123
<표 4-1> MRA 체결 전후 이행절차 비교	129
<표 4-2> MRA 종류 및 특징	134
<표 4-3> APEC-TEL MRA 협정문 주요 내용	136
<표 4-4> IECEE CE SCHEME에 근거한 한국 기관 현황	138
<표 4-5> MRA-ETR 협정문 주요 내용	142
<표 4-6> 국내 MRA 추진 현황	144
<표 4-7> 국내 MRA 근거 법령 현황	145
<표 4-8> 제43차 APEC-TEL MRA TF 회의 개요	153
<표 4-9> 제44차 APEC-TEL MRA TF 회의 개요	155

<표 4-10> MRA 변동사항 보고사항	155
<표 4-11> RCB 2010년 시장 감독활동 결과	164
<표 4-12> NCC 2010년 시장 감독활동 결과	165
<표 4-13> 對페루 방송통신기자재 수출입 현황	172
<표 4-14> 對페루 방송통신기자재 수출입 상위 5개 품목	173
<표 4-15> 한국과 페루의 적합성평가제도 비교	174
<표 4-16> 'FTA 체결절차규정' 제정 경과	177
<표 4-17> FTA 추진기구 구성 및 역할	178
<표 4-18> 일본 MRA 체결 현황	181
<표 4-19> MRA 관련 법령 주요 내용	182
<표 4-20> 일본의 적합성평가기관 지정 체계	183
<표 4-21> MRA 추진 단계 및 단계별 이행사항	187

그 립 목 차

[그림 2-1] 적합성평가 운영 체계	11
[그림 2-2] 적합성평가 유형별 절차 비교	16
[그림 2-3] 적합성평가표시 변경사항	19
[그림 2-4] 적합성평가표시 예시	20
[그림 3-1] R&TTE 지침 대상품목(예시)	38
[그림 3-2] EMC 지침 대상품목(예시)	38
[그림 3-3] LVD 지침 대상품목(예시)	39
[그림 3-5] R&TTE 지침에 근거한 CE-Marking 부착 순서도	49
[그림 3-6] EMC 지침에 근거한 CE-Marking 부착 순서도	52
[그림 3-7] 저전압 지침에 근거한 CE-Marking 부착 순서도	53
[그림 3-8] CE 마크	55
[그림 3-9] Annex II의 CE 마크	56
[그림 3-10] Annex III, IV, V의 CE 마크	56
[그림 3-11] 기타 무선기기의 CE 마크	57
[그림 3-12] 일본의 형식검정절차	66
[그림 3-13] 인증마크 도안	70
[그림 3-14] 인증된 무선기기의 인증 표시	70
[그림 3-15] 인증된 전기통신단말기기의 인증 표시	70
[그림 3-16] 자기인증에 따른 인증 표시	71
[그림 3-17] 베트남 시험기관 인정기구(VILAS) 조직도	79
[그림 3-18] 베트남 적합성평가 절차	79
[그림 4-1] MRA 추진 절차	130
[그림 4-2] IECEE CE SCHEME 조직 구성	137
[그림 4-3] CE SCHEME에 따른 상호인정협정	138
[그림 4-4] APLAC 조직 구성도	140
[그림 4-5] MRA-ETR 추진 절차	142

[그림 4-6] 한국에서 EU로 수출시 적합성평가 절차	167
[그림 4-7] EU에서 한국으로 수출시 적합성평가 절차	167
[그림 4-8] 한-베트남 MRA 적용범위 확대	168
[그림 4-9] 페루 교통통신부 조직도	170
[그림 4-10] 페루의 적합성평가 절차	172
[그림 4-11] FTA 체결 절차	180
[그림 4-12] MRA 체결에 따른 적합성평가기관 지정체계	184
[그림 4-13] MRA 체결에 따른 적합성평가기관 지정 수수료(1)	185
[그림 4-14] MRA 체결에 따른 적합성평가기관 지정 수수료(2)	185

요 약 문

1. 제목 : G20국가와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제도 상호인정협정 전략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1. 연구 목적

o 방송통신기자재 분야 국제협상 대응전략 연구

- 신규 FTA/MRA 체결에 대비하여 상대국의 적합성평가제도를 포함한 관련 정책 및 법제도 연구
- FTA/MRA 기 체결 국가의 적합성평가제도에 대한 지속적 동향 분석
- 실제 FTA/MRA 진행단계의 협상전략 수립 및 협상진행 지원

o 적합성평가제도 국제 협상 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 신규 FTA/MRA 체결을 위한 대상국가 선정방안 마련
- FTA/MRA 체결 및 확대 이행 시 국제적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합성평가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2-2. 연구 필요성

- o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주요 G20국가와 FTA 협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국내 방송통신기자재 제조업체들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 경제적 효과를 최대로 하도록 체계적인 대응전략의 수립 필요

- o 개방을 통해 교역을 확대하고 생산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FTA/MRA의 체결은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

- 한-EU FTA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MRA 체결 및 이행을 위한 대응전략 마련 및 주요 G20국가와의 기 체결 FTA/MRA 확대에 따른 상대국 적합성평가제도 파악 및 협상 능력의 제고 등을 위해 다양한 기반연구가 필수임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o 주요 G20국가와 적합성평가제도 국제협상 대응전략 연구

- 주요 G20국가 방송통신기자재 교역량 분석
- 주요 G20국가 적합성평가제도 조사 및 분석
- 한-EU FTA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방안 마련
- 한-미, 한-베트남 MRA 2단계 확대시행에 따른 쟁점사항 검토 및 후속조치마련 등 정책 지원

o 적합성평가제도 국제협상 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 국내 적합성평가제도 중장기 개선방안 수립

o APEC-TEL 등 국제회의 참석을 통한 적합성평가제도 국제 동향 분석

- APEC-TEL의 MRA TF 참가를 통해, 국제 동향과 각 회원국의 적합성평가제도 현황 조사

o 방송통신기자재분야 상호인정협정 행정체계 마련 지원

- 국내 방송통신기자재분야 상호인정협정 행정절차의 부재에 따른 문제점 해결과 사회적 합의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행정절차 마련 지원
- 국내외 관련 사례 연구

4. 연구 내용 및 결과

o 주요 G20국가와 적합성평가제도 국제협상 대응전략 연구

- 주요 G20국가 방송통신기자재 교역량 분석
- 미국, 유럽, 일본, 베트남, 멕시코, 브라질, 러시아 등 주요 7개국 방송통신기자재 분야 적합성평가제도 조사 및 분석
- 한-EU FTA 후속 이행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분야 적합성평가 고시(방통위고시 제2011-37호)
- 한-베트남 MRA 확대고시(방통위고시 제2011-41호)
- 한-페루 FTA 체결에 따른 페루 적합성평가제도 분석

o 적합성평가제도 국제협상 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 주요 G20국가 방송통신기자재분야 교역량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FTA/MRA 체결 효과 파악, 대응방안 마련 등 중장기 전략 수립 지원
- 미국, 유럽, 일본, 베트남, 페루 등과의 MRA 추진 필요성 검토

o APEC-TEL 등 국제회의 참석을 통한 적합성평가제도 국제 동향 분석

- MRA-ETR 이행방안, 회원국의 상호인정협정 제도 개정 현황
- 한국-APEC 회원국 간 적합성평가제도 관련 양자회담 지원

o 방송통신기자재분야 상호인정협정 행정체계 마련 지원

- 국내(외교부 FTA 이행절차) 및 해외(일본, 호주 MRA 법) 사례 연구

5. 정책적 활용 내용

- o FTA/MRA 체결에 따른 국제협상 결과 및 변동, 이행사항 등에 대하여, 현재 우리나라와 접촉 중인 모든 대상국과의 추진 경과를 점검

- 국제협상 시 우리나라의 경쟁력 제고
- 국내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

o 세계 200여 개국의 교역량 raw data 확보

- 향후 FTA/MRA 신규 체결 및 확대 이행 대상국 선정 시, 분석 자료로 활용

o MRA 체결 행정절차 마련을 위한 근거 법 마련 시 기초 자료로 활용

o 해외 주요국의 적합성평가제도 조사 자료 및 분석으로 도출한 시사점의 국내 관련 정책 입안 시 참고자료로 활용

6. 기대효과

- o G20국가 중 방송통신기자재 수출입 규모와 FTA/MRA 체결로 인한 기대효과가 큰 국가를 향후 FTA/MRA 신규 체결 및 확대 이행 대상 국가로 선정함으로써 적합성평가제도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인증비용 감소 및 시간절감으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수출 증대, 신규 시장 개척 및 창출 기대

SUMMARY

1. Title : A study on strategy for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for Conformity Assessment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2.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Research

2-1. Objectives of Research

- o **Investigating coping strategy for international negotiation in the field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 To prepare for the upcoming FTA/MRAs, studying related policy and legislation including the other party's conformity assessment scheme
 - Analyzing conformity assessment scheme of economies which Korea has already signed FTA or MRA on a continuous basis
 - In the case of negotiation for FTA or MRA, establishing strategy and supporting the whole procedure

- o **Establishing mid and long-term strategy to enhance efficiency when negotiating with other parties over conformity assessment**
 - Setting up the criteria of choosing the target country for new FTA/MRA
 - Preparing the measures to improve conformity assessment scheme in a way of enhancing reliability when signing or extending the scope of FTA/MRA

2-2. Importance of Research

- o **As G20 Seoul Summit was held successfully, FTA with major G20 economies is expected to increase. So strategic coping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enhance competitiveness of manufacturing companies and maximize the domestic economic effect.**

- o **FTA/MRA is really important at a national level in extending trade among economies and contributing to increase productivity**
 - As an implementation measures resulting from Korea-EU FTA, various base studies are necessary for the following reasons,
 - 1) to prepare coping strategy for signing and implementing MRAs
 - 2) to fully understand the other party's conformity assessment system
 - 3) to increase the ability to negotiate in the case of FTA/MRAs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 o **Investigating coping strategy for international negotiation in the field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 Analyze trade volume with major G20 economies in the field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 Investigate and analyze conformity assessment scheme of major G20 economies
 - Prepare implementation measures of follow-up actions as a result of Korea-EU FTA
 - Prepare follow-up actions and examine controversial issues caused by implementing MRA phase 2 with U.S. and Vietnam

- o **Establish mid and long-term strategy to enhance efficiency when negotiating over conformity assessment scheme**
 - To investigate how to improve Korea's conformity assessment scheme in the mid and long term

- o **Analyze current status of conformity assessment scheme at an international level by participating APEC-TEL**
 - To study conformity assessment scheme of each member economy and current situation at an international level by participating international conferences, like APEC-TEL

- o **Support for preparing an MRA administration system in the field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 To support for MRA administration system to solve the problems caused by the absence of administrative procedure, and to enhance social consensus and transparency
 - To study related foreign cases

4. Research Results

- o **Investigating coping strategy for international negotiation with major G20 economies in the field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 To analyze trade volume with major G20 economies in the field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 To investigate and analyze conformity assessment scheme of major seven economies(U.S. Europe, Japan, Vietnam, Mexico, Brazil and Russia) in the field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 Public Notification on conformity assessment for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equipment following Korea-EU FTA implementation (KCC Public Notification 2011-37)
 - Public Notification on extending Korea-Vietnam MRA(KCC Public Notification 2011-41)
 - To analyze conformity assessment scheme of Peru following Korea-Peru FTA
- o Establish mid and long-term strategy to enhance efficiency in the case of international negotiation over conformity assessment scheme**
- To support for establishment mid and long-term strategy such as by understanding the effect of FTA/MRA and preparing coping strategy, based on the result of trade volume with major G20 economies in the field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 To review necessity for promoting MRA with U.S. Europe, Japan, Vietnam and Peru, etc
- o Analyze current status of conformity assessment scheme at an international level by participating APEC-TEL**
- How to implement MRA-ETR, Current status of revision on MRA scheme of each member economy
 - To support bilateral talks over conformity assessment scheme between Korea and APEC member economies
- o Support for preparing an MRA administration system in the field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 To study domestic(FTA implementation procedure by MOFAT) and foreign(Japan and Australia's MRA legislation) cases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 o **To check results, changes and implementation measures caused by signing FTA/MRA with all economies which Korea now is in consideration**
 - To increase Korea's competitiveness in the case of international negotiation
 - To use preliminary information for improving related legislation and policy
- o **Keep the raw data regarding trade volume of 200 economies in the world**
 - To use preliminary data for analyzing how to choose the target economy for signing and extending the scope FTA/MRA in the near future
- o **To use primary data when preparing related legislation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MRA administration procedure**
- o **To use reference data when making related policies b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conformity assessment scheme of foreign countries**

6. Expectations

- o **The economic effect caused by conformity assessment scheme is expected to maximize by selecting target economies for FTA/MRA based on following reasons;**
 - 1) **those which trade volum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with are enormous**
 - 2) **those which according to analysis, the effected caused by signing FTA/MRA with is expected to be huge**
 - It is expected to reduce certification fee and save certification time and it leads to increasing export of Korean companies and providing more opportunities to open up a new global market

CONTENTS

Summary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Korea's conformity assessment system

Chapter 3. Study on foreign cases of conformity
assessment system

Chapter 4.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for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equipment

Chapter 5. Conclusion

제1장 서론

제1절 추진 배경

1. WTO/TBT 개념 등장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¹⁾가 출범함에 따라 관세에 의한 전통적인 무역장벽은 해소되었으나 비관세장벽인 기술 장벽 등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부각되고 있다. 무역상기술장벽(TBT)²⁾이란, 국가별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일정 상품에 대한 기술기준이나 임의규정 등 기술 명세와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기준의 차이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및 시간 등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에 있어서의 제반 장애 요소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술장벽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제 무역 원활화 차원에서 상호인정협정(MRA)³⁾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국가 간 MRA란 규제 상품의 적합성 평가를 상호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협정 대상 품목 교역 시 협정 체약국이 지정된 외국의 적합성 평가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상호인정하여 줌으로써 국가 간 무역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NAMA

비농산물시장접근(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NAMA)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DDA)는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 선언에 의해 출범한 새로운 다자무역협상이다.

1) WTO : World Trade Organization

2) 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3) 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이는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개도국의 개발을 위한 협상이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도하개발아젠다”라고 부르기로 정하였다.

주요 협상 의제는 1) 농산물, **농산물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공산품 및 임수산물)**, 서비스 시장의 개방, 2) 반덤핑, 보조금, 지역협정, 분쟁해결에 대한 기존 WTO 협정의 개선, 3) 관세행정의 개선 등을 추구하는 무역원활화, 환경, 개발 그리고 지적재산권 등이었다. 협상의제에 따라 농산물, **비농산물**, 서비스, 규범(반덤핑, 보조금, 지역협정), 환경,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분쟁원활화, 개발 분야에 대해 2002년부터 협상을 진행해오고 있다.

비농산물시장접근(NAMA)는 도하개발아젠다 협상(DDA) 분야의 하나로, 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한 시장접근 협상을 말한다. 주로 공산품이 협상대상에 해당되나 수산물, 임산물도 대상이 될 수 있다.

NAMA에서의 주 협상 이슈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세장벽 해소

관세감축 공식을 적용했을 경우 감축되는 관세 수준과 특정 분야의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분야별 자유화 논의로 세분화된다.

둘째,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 부여 문제

관세감축공식을 적용하는 개도국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덜 감축하는 방안과 관세감축공식 적용 시 일정 부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주는 방안에 대하여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의견을 교환한다.

셋째, 비관세 장벽 해소

현재까지 발굴된 비관세장벽에 대해 다자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해소 할 수 있

는 방안과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비관세장벽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자차원의 매커니즘을 마련하는 문제로 분류한다.

<표 1-1> NAMA 협상 이슈 연혁

일 자	내 용
2001년 11월	제4차 WTO 각료회의 선언에 의해 도하개발아젠다 협상(DDA) 출범
2002년	협상 그룹이 설치되어 본격적인 협상 시작
2003년 9월	칸쿤 제5차 각료회의 실패로 협상 좌초
2004년 7월	협상의 기본 골격 합의(Framework Agreement) 도출 - 관세율이 높을수록 감축폭이 커지는 관세감축공식 - 관세감축공식 적용시 개도국에게 어떤 형태의 대우를 부여할 것인지의 여부 - 분야별 자유화 협상 및 비관세장벽 해소 등에 대한 기본 내용
2005년 12월	홍콩각료회의 개최 - 선진국과 개도국에 각각의 계수를 부여하는 관세감축공식을 바탕으로 모든 비농산물 품목에 대한 일괄감축방식 채택
2006년 6월	제네바 소규모 각료회의 개최 - 회원국 간 농업분야의 시장접근 및 국내보조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NAMA 이슈에 대한 논의 진행 못함
2007년	다보스 회의를 계기로 협상 재개
2007년 7월	NAMA 협상그룹 의장이 협상 세부원칙 초안을 제시
2008년 7월	협상 세부원칙 3차 수정안 회람 이후 협상 세부원칙 합의를 위한 30여 개국 통상장관 회의 진행
2008년 7월	P.Lamy WTO 사무총장이 비농산물시장접근 현상 세부원칙의 타협안 제출 - 그러나 정치적 이견으로 소규모각료회의가 결렬되면서, 세부원칙에 대한 실질적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됨
2008년 10월	협상 재개
2008년 12월	DDA 소규모각료회의에 대비하여 비농산물시장접근 협상 세부원칙 4차 수정안 회람하였으나, 각료회의 불발

2009년	비관세장벽 이슈별 제안서 관련 논의와 함께 특정이슈별로 비농산물시장접근협상그룹 의장 또는 주도국 주재로 개최되는 소규모 협의 진행 - 주요이슈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 차이로 2009년도 협상은 큰 진전을 거두지 못함
2010년	비관세장벽 제안서 관련 논의 위주로 진행됨
2011년	관련 주요국들 간에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황

주요 선진국은 수준 높은 자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술규정을 제정, 운영하여 실질적인 무역장벽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표준의 제정 및 적용범위 확대 그리고 MR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이중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러한 국제 환경 하에서 우리는 MRA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 정책 설정과 함께 효율적인 MRA 시행을 통하여 통신시장의 세계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3. 국내 FTA/MRA 체결 현황

현재 우리나라는 전 산업분야에 대해서 여러 나라와 MRA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분야에 대해서는 주로 APEC TEL과 ASEM TFAP⁴⁾를 통해서 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현재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미국, EU, 페루 등 8개 국가 및 단체와의 FTA가 발효되어 이행 중이다. 그리고 신규 FTA 체결 대상국으로 캐나다, 멕시코, GCC, 호주, 뉴질랜드

4) TFAP : Trade Facilitation Action Plan

드, 콜롬비아, 터키 등 7개 국가 및 단체와의 FTA 체결 협상이 진행 중이며, 일본, 중국, MERCOSUR, 러시아, 이스라엘, SACU, 베트남, 중미 등 8개 국가 및 단체와의 체결 대비 협상 준비 및 공동연구 등 기반을 조성 중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MRA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과 MRA 1단계 체결을 협의 중이며, 캐나다('97. 1), 미국('05. 5), 베트남('06. 1), 칠레('08. 6)와 MRA 1단계를 이미 체결, 이 중 베트남과는 MRA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데 합의(2011년 5월)하여 이행 중이다. 그리고 미국 및 캐나다와는 MRA 2단계 확대 이행을 협의 중이다.

<표 1-2> 우리나라의 MRA 체결 현황

1단계 체결 준비국		1단계 체결국		2단계 체결 준비국		2단계 체결국	
국가	체결 방식	국가	체결 방식	국가	체결 방식	국가	체결방식
싱가포르	(협의중)	캐나다 ('97.1)	단독 MRA	캐나다	(협의중)	EU	FTA
		미국 ('05.5)	APEC TEL MRA				
뉴질랜드	(협의중)	베트남 ('06.1)	APEC TEL MRA	미국	(협의중)		
		칠레 ('08.6)	FTA 이행				

제 2 절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2010년 10월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 주요 G20국가와의 FTA 협상이 가소화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국내 방송통신기자재 제조업체들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대응전략의 수립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FTA/MRA는 개방을 통해 교역을 확대하고 생산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국제협력 상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리하여 FTA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행방안 및 대응전략 마련 및 주요 G20국가와의 기 체결 FTA/MRA 확대에 따른 대상국가의 적합성평가제도 파악 및 협상 능력의 전문성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정책 연구 등 다양한 기반 연구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국가 간 MRA는 각 국가들 간의 인정관련 제도에 대한 총체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함으로 무엇보다도 국내 관련 제도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성 구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요 선진국의 인증 관련 정책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국내 인증 정책에 반영하고 이러한 정비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국가 간 MRA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 및 유럽의 인증 관련 제도 현황을 분석하여 국내 인증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국내의 MRA 추진현황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 국가 간 MRA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MRA 등 다각적인 MRA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3 절 연구 목적

이미 언급하였듯이, FTA/MRA는 체결 대상국에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미치는 데다 국가 간의 협정이기 때문에 사전 준비와 사후 이행조치 등의 행정 절차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신규 FTA/MRA 체결에 대비하고자 상대국의 방송통신기자재 분야 적합성평가제도를 포함한 전반적인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미 FTA/MRA를 체결한 국가라 할지라도 향후 확대 이행 등의 상황에 대비하고자 협상 상대국의 적합성평가제도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주요 G20국가의 방송통신기자재분야 교역량 조사를 통해, 향후 신규 FTA/MRA 체결을 위한 대상국가 선정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FTA/MRA 체결 및 확대 이행 시, 우리나라 적합성평가기관 및 관련 제도의 전문성 및 국제적 신뢰성을 증명하고 높일 수 있는 적합성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 2 장 국내 적합성평가제도

제 1 절 적합성평가 개념의 이해

1. 적합성평가 정의

적합성평가란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가 특정 요구사항(기술기준, 규정 등)을 충족시키는 지를 결정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특정 평가 대상(제품, 시스템 등)이 평가기준(기술기준이나 표준)을 만족시키는지의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직·간접적인 제반 절차이다.

그리고 국내 전파법 제58조의2에서는 적합성평가제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중 하나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하는 제도”

적합성평가제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첫째, 자국 시장 및 소비자 보호

독립성이 있는 전문기관(정부기관이나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인 기관)이 “특정 제품이나 시스템이 평가기준에 따라 생산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다.

둘째, 국가 간 MRA 추진 및 확대를 통한 무역 촉진이 세계의 흐름에 뒤처지

지 않기 위해 상대국이 신뢰할 수 있는 적합성평가 체계의 마련이 중요하다.

방송통신분야에서 적합성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목적은 크게 안정적 통신환경 마련, 기자재간 호환성 확보, 최소한의 품질유지 가이드라인 제시로 요약해볼 수 있다. 특히 이들 중 방송통신망 위해방지 및 주파수 혼신과 간섭의 최소화는 국가 방송통신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대부분 국가들은 방송통신기자재 분야 적합성평가 대상으로 유선기기, 무선기기, 정보기기를 포함하고 있다.

적합성평가는 평가 의뢰 주체와 적용기준에 따라, 제1자, 제2자 제3자 적합성평가의 세 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제1자 적합성평가는 공급자 및 제조업자가 직접 적합성을 선언하는 것으로, 공급자 자기 적합선언(SDoC,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이라 불린다. 제2자 적합성평가는 계약당사자가 적합성을 선언하는 것으로 조달검사에 사용된다. 제3자 적합성평가는 관련 당사자들과 독립적인 사람이나 기구가 적합성을 선언하는 것으로 흔히 인증(Certification)이라고 불린다.

<표 2-1> 적합성평가 유형별 특징

구분	제1자 적합성평가	제2자 적합성평가	제3자 적합성평가
제도유형	제조자(공급자)적합선언	조달검사	인증
평가주체	제조자(공급자)	수요자	규제당국, 인증기관
평가기준	제조자(공급자) 채택기준	수요자 제시기준	합의 기준
사후관리	제조자(공급자) 자체실시	-	규제당국, 인증기관
시장감독	규제당국	수요자	규제당국
책임소재	제조자(공급자)	수요자	인증당사자, 인증기관

2. 적합성평가 활동

적합성평가 활동은 표본 추출에서부터 인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우선, **검사(Inspection)**는 측정, 시험 혹은 계기 등 적절한 방법으로 관찰하고 판단하는 적합성평가를 말한다.⁵⁾

시험(Testing)은 명시된 절차에 따라 제품이나 고정 혹은 서비스가 이루어졌는지를 결정하는 기술적 운영이다.⁶⁾

인증(Certification)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표준이나 기술규제에 적합하거나, 사람이 어떤 직무의 수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인정(Accreditation)은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권한이 있는 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recognition)하는 절차이다. 다시 말해서, 독립된 인정기관이 시험기관이나 인증기관을 평가하고 인정하는 절차를 말하며, 시험기관 인정과 인증기관 인정, 품질시스템등록 인정 등으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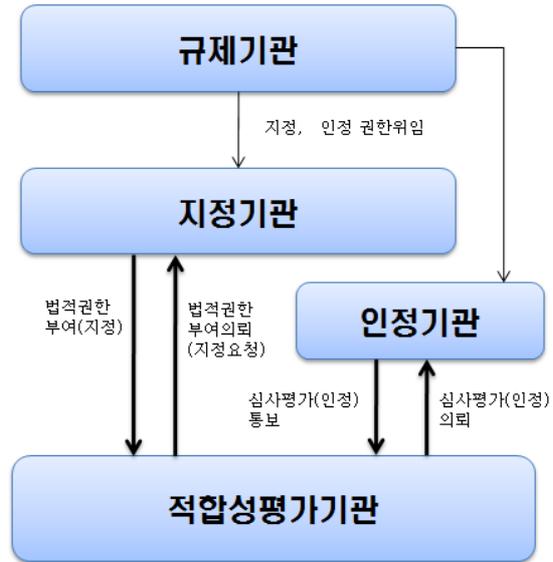
지정(Designation)은 위에서 인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기관이 적합성평가 활동의 수행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 국가들이 위에서 언급한 적합성평가 활동을 통해 적합성평가기관을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아래 그림을 통해 기본적인 적합성평가의 운영 체계를 살펴볼 수 있다.

5) ISO/IEC Guide 2

6) ISO, Compendium of Conformity Assessment Documents

[그림 2-1] 적합성평가 운영 체계



제 2 절 국내 적합성평가제도 연구

1. 수평적 적합성평가 체계 도입

우리나라는 기존에는 제품의 위해도에 관계없이 인증 대상 제품에 따라 제도를 구분하여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인증을 강제화하였으나, 2011년 1월 전파법 개정으로 대상 제품의 위해도에 따라 정부가 직접 인증을 하는 적합인증 제도와 인증을 하지 않고 정부에 등록만 하면 되는 적합등록제도로 이원화하고, 아직 시험기준이 없는 신제품에 대해서도 제품출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인증을 하는 잠정인증 제도를 도입하였다.

지금까지는 통신망 위해 방지, 전파 혼신 및 간섭 방지, 인체 안정 등 사회적 안전장치로서 정부 주도의 일률적인 인증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제품 성능 및 제조자 품질관리 능력 향상, 소비자들의 다양한 용·복합기기 사용 증가, 주요 교역국과의 FTA 협상 시 동등한 수준의 적합성평가체계 도입 요구 등으로 인해 기존의 제도를 개편하여 새로운 적합성평가 체계를 정립하여 도입하게 되었다. 불합리한 사전 규제는 대폭 완화하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 규제는 강화하는 등 종전 정부주도의 강제인증체계를 민간주도의 선진국형 적합성평가 체계로 개편하였다.

기존의 적합성평가 유형은 형식검정, 형식등록, 형식승인, 전자파적합등록으로 구분되어, 제품의 용도를 중심으로 한 수직적 규제체계의 모습이었으나, 전파법 개정으로 인증유형을 새로이 재분류함으로써 수평적 규제체계로 변경되었다.

이미 설명하였듯이,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종전의 형식검정, 형식등록, 형식승인 및 전자파적합등록의 4개 인증 유형을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등록의 3개 유형으로 재분류하였다.

첫째, **적합인증**제도는 전파 혼·간섭 및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유해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휴대폰, 무선랜, RFID 등의 무선기기와 팩시밀리와 같이 유선기기이면서 망위해 영향이 큰 기기들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국내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 후 전파연구소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파법 제58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2에 근거하여 적합인증 대상기기는 다음의 세 개로 분류한다.

첫째,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 등
둘째,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 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방송통신기자재 등

셋째, 그 밖에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 등

둘째, **적합등록**의 경우, 적합인증 대상기기보다 상대적으로 전파 혼·간섭 및 인체, 인명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한다. 이 유형은 정부가 직접 인증하지 않고 지정시험기관 혹은 스스로 시험 후 전파연구소 홈페이지에 등록만 하면 되는 제도로서,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이다.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중 컴퓨터, 모니터 등은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하여 등록해야 하는 지정시험기관 시험 대상기기이다. 그리고 이보다도 더욱 위해 영향이 적고 사용범위가 한정적이며, 특정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기자재인 계측기기, 산

업용 컴퓨터 등은 제조자가 스스로 시험하거나 시험기관을 이용하여 시험할 수 있는 자기시험 등록 대상기기로, EU의 SDOC와 거의 유사한 제도로 이번 개정된 제도 하에 새로이 도입되었다.

전파법 제58조의2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 3에 의거하여, 적합등록 대상기기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우선,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대상기자재는 적합인증대상이 아닌 기자재와 자기시험등록 대상이 아닌 기자재를 통칭한다.

그리고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검사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 등

둘째, 산업·과학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 등

셋째, 그 밖에 기자재의 특성이나 용도 등에 비추어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이 필요하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 등

셋째, **잠정인증**은 평가기준이 없어 제품시험을 할 수 없는 기자재 중에서 전파환경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기자재는 최소한의 기술적 요건, 즉 안테나전력, 불요발사, 주파수 등만 시험을 하고, 향후에 기술기준이 제정되면 평가기준 제정 후 3개월 이내에 정식인증을 받게 하는 절차이다. 기존에는 평가기준이 없을 시 기준이 제정된 이후 인증을 받도록 하여 장시간이 소요되었던 점과 비교하면 신기술, 신제품 출시를 촉진하고자 산업체 민원을 수용하여 이번 제도 변경 시 새로이 도입한 인증유형이다.

전파법 제58조의2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5에 의거하여, 잠정인증제도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기기 : 신기술을 사용함에 따라 이에 적용할 적합성평가기준이 없는 기자재

둘째, 운영절차 : 최소한의 기술적 요건(안테나 전력, 불요발사, 주파수 등)적용
셋째, 인증조건 : 유효기간, 설치지역 등을 제한
넷째, 정식인증 : 인증기준 제정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정식 인증 의무화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인증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립전파연구원이나 해당 기자재를 시험할 수 있는 지정시험기관을 통해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후에 국립전파연구원에 신청하면 된다. 이 때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국립전파연구원에 인증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한다.

적합인증의 경우, 기존 정부 인증 절차는 유지하되 제출해야 할 서류의 개수를 9개에서 6개로 줄여주었다.

적합인증 신청 시 구비서류로는 적합인증신청서, EU와 국내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사용자 설명서, 대리인 지정서, 외관도,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회로도, 식별부호 신청서(최초)가 있으며, 이를 전파연구원에 전산으로 제출한다. 전산으로 신청 시 5일 이내에 처리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때 비용은 165,000원이 든다.

적합등록의 경우, 국제 표준(ISO 17050)과 유사 규정을 참고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그 외 필요서류는 해당 제품의 다중 후에도 일정 기간(5년 간) 자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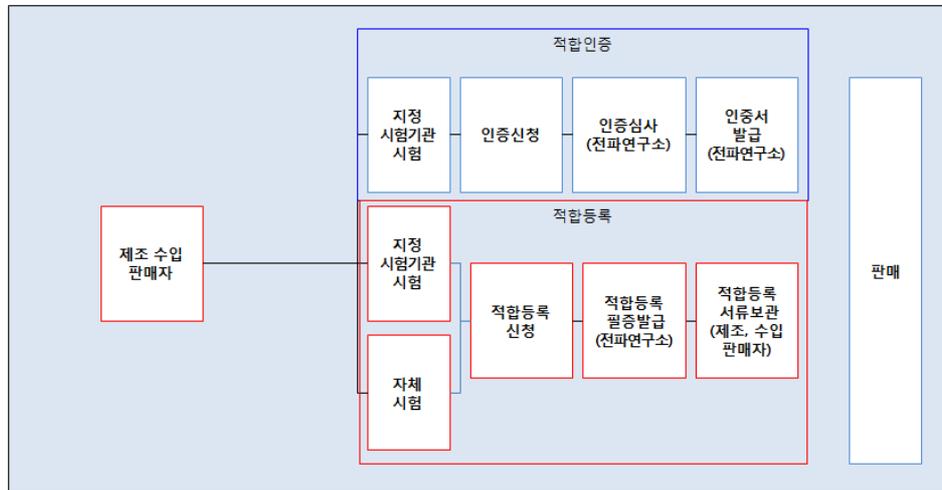
적합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는 적합등록 신청서, 공급자적합성 선언서, EU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사용자 설명서, 대리인 지정서, 식별부호 신청서를 전파연구원에 전산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제출은 하지 않지만 보관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으며, 향후 사후관리 적발 시 전파연구원으로부터 증빙을 요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치하고 있어야 한다.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대리인 지정서, 사용자 설명서, 시험성적서, 외관도,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회로도, 적합등록 신청과 동시에 파생모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적합등록의 경우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산 등록과 동시에 처리가 완료되기 때문에 소요 시간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비용은 55,000원이다.

잠정인증 신청 시 구비서류는 잠정인증 신청서, 자체시험결과 설명서, 사용자 설명서, 외관도,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회로도, 대리인지정서, 식별부호신청서이며, 국립전파연구원에 전산으로 제출한다. 전산 신청 시 60일 이내에 인증서를 발급받게 되며, 수수료는 적합인증과 동일한 165,000원이 부과된다.

[그림 2-2] 적합성평가 유형별 절차 비교



사용 설명서는 한글본과 영문본 모두 허용된다. 회로도는 공통기준(EMC와 전기안전 기준)만을 적용한 경우에 비치 의무를 생략하였으며, 적합인증을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적용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회로도 및 서류의 비치를

생략하여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그리고 적합성평가 신청 당시 파생모델 및 선택적 사용부품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추가적인 변경신고 절차를 생략하였다. 그리고 전기적인 회로는 동일하고 단순 저장 용량만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시험성적서는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처리기간 등)에 근거하여, 국립전파연구원에 시험을 신청하는 경우에 25일이 소요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25일 연장된다.

2. 적합성평가 변경 및 해지7)

인증을 받은 제품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립전파연구원에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때 변경은 제품의 “기술기준과 관련이 있는 변경”과 “기술기준과 관련 없는 변경”으로 구분된다.

기술기준과 관련 있는 변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첫째, 회로의 변경(인쇄회로 포함)이나 부품의 제거(적합등록 대상 기자재의 경우 예외), 대체, 추가로 인한 변경의 경우

둘째, 기기의 외형, 기기 외관 구조물의 구조·재질 또는 인쇄회로 기판의 재질 변경으로 적합성평가기준의 적합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셋째, 완제품으로 인증 받은 기기의 내부에 장착된 구성품의 제거, 대체, 추가로 인한 변경 또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의 경우

그리고 기술기준과 관련 없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 모델명만을 변경하는 경우

둘째, 제조자 또는 제조국가를 변경하는 경우

7)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셋째,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상호·성명·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그리고 국내 인증의 경우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다. 그러나 더 이상 기자재를 생산하지 않거나 수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증서의 원본을 첨부하고 국립전파연구원에 인증 해지를 신청하여 완료할 수 있다. 인증을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해서 인증이 해지된 경우에 국립전파연구원은 그 해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3. 적합성평가 면제 및 취소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수출용 등 판매유통 목적이 아닌 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근거를 두고, 이들의 효율적 사후관리를 위해 면제확인 절차를 도입하였다.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5대 이하에서 100대 이하로 수량을 확대하고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추가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 반입기자재 1대에 한하여 별도의 인증과정 없이 반입신고서 제출만으로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하는 기자재를 면제대상에 추가하였다. 유학생 및 해외 장기 체류자 등에게 출국 전 상대국 이동통신망에 가입하여 제공하는 등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를 면제대상에 추가하였다.

그리고 잠정인증을 받을 때와 기술기준이 제정되어 적합성평가를 받을 때의 적합성평가기준이 동일한 경우, EMC 기준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4. 적합성평가표시

부처마다 다른 적합성평가표시에 의한 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전

의 KCC 마크에서 5개 부처(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환경부, 노동부, 소방방재청)의 적합성평가표시를 통합하여 통합마크인 KC를 변경하였다. 이는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하였으며, 6월 30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 적합성평가 표시를 인정하였다.

<표 2-2> 적합성평가표시 변경사항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11.1.24)
기본도안	 방송통신위원회	
식별부호	인증번호 : XXX-YYYYYYYYYYYYY X : 신청자 식별(신청자별 최초 1회만 신청), Y : 제품모델명(신청자가 임의로 14자리)	KCC-①②③-XXX-YYYYYYYYYYYYY ①: 적합인증-C, 적합등록-R, 잠정인증-I ②: 무선분야-R, 유선분야-T, 전자파분야-E, 복합분야-M ③: 신청인이 제조자-M, 수입자-I, 판매자-S
적합성평가정보 : 신청자 상호명, 모델명, 제조자, 제조국가, 제조연월 (포장 또는 사용자설명서→포장 및 기기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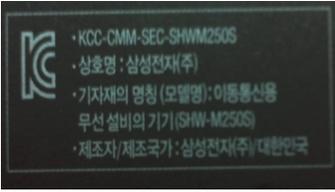
적합성평가표시는 기본 도안과 식별부호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 기종명 명칭(모델명), 제조연월, 제조자 및 제조국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적합성평가표시는 종전에는 매 기기표면에만 표시를 하여서 포장 상태로 유통되는 불법기자재의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서, 최소 포장 단위마다 포장표면에 알아보기 쉽도록 부착의무 부여하였다. 즉 적합성평가표시를 해당 기기의 표면에 서 해당 기기의 표면과 포장재의 표면에까지 확대·변경한 것이다.

단, 적합성평가표시(위의 표에서 기본도안, 식별부호, 적합성평가 정보를 통칭)를 기기와 포장 표면에 부착해야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착할 수 없음을 인정하여 표시를 면제해준다.

첫째, 소형의 제품으로 적합성평가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은 포장에 적합성평가표시하고, 기기표면에 **기본도안** 또는 **식별부호**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 체내 이식형 심장박동기 등 기기표면에 적합성평가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포장에 적합성평가를 표시하는 대신에, 기기표면에 표시하는 것은 면제해준다.

〈표 2-3〉 적합성평가표시 예시

구분	개정 전	개정 후('11.1.24)
기기 표면		
포장		

제 3장 해외 적합성평가제도 연구

제 1 절 미국

1. 방송통신기자재 분야 교역량

<표 3-1> 對미국 방송통신기자재 수출입 현황

[단위 : 달러]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유선 통신 기기	수출	323,280,826	460,185,287	503,561,107	382,731,876	531,542,318
	수입	376,148,412	399,856,467	346,217,893	244,076,436	221,180,196
	무역 수지	(52,867,586)	60,328,820	157,343,214	138,655,440	310,362,122
무선 통신 기기	수출	4,815,054,782	5,998,332,031	8,882,847,534	8,958,265,497	9,148,622,659
	수입	502,072,827	428,920,727	373,661,918	353,822,177	471,101,395
	무역 수지	4,312,981,955	5,569,411,304	8,509,185,616	8,604,443,320	8,677,521,264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출	1,261,698,442	1,411,018,740	1,291,988,275	1,109,621,425	1,363,897,238
	수입	754,175,860	733,121,339	677,884,092	636,699,328	690,675,697
	무역 수지	507,522,582	677,897,401	614,104,183	472,922,097	673,221,541
영상 기기	수출	695,747,483	485,671,530	331,634,838	248,078,517	335,950,793
	수입	72,758,047	76,342,291	86,645,747	83,298,465	78,799,366
	무역 수지	622,989,436	409,329,239	244,989,091	164,780,052	257,151,427
전체	수출	7,095,781,533	8,355,207,588	11,010,031,754	10,698,697,315	11,380,013,008
	수입	1,705,155,146	1,638,240,824	1,484,409,650	1,317,896,406	1,461,756,654
	무역 수지	5,390,626,387	6,716,966,764	9,525,622,104	9,380,800,909	9,918,256,354

<표 3-2> 對미국 방송통신기자재 수출입 상위 5개 품목

[단위 : 달러]

수출			
순	구분	품목	금액
1	무선통신기기	기타무선전화기	4,552,573,608
2	무선통신기기	코드 분할식 전화기	2,745,057,199
3	무선통신기기	무선통신기기부품	575,096,983
4	무선통신기기	시분할식 전화기	556,019,198
5	유선통신기기	유선전송장치	446,862,525
수입			
순	구분	품목	금액
1	컴퓨터 및 주변기기	컴퓨터부품	222,120,507
2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개인용컴퓨터	161,532,554
3	무선통신기기	무선통신기기부품	159,849,308
4	유선통신기기	유선전송장치	144,212,445
5	컴퓨터 및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129,072,594

2. 적합성평가제도

미국은 1934년 개정한 통신법(Communications of Act)의 제302조에 의거하여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정보통신기기에서 발생하는 불요전자파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미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를 설립하였으며, 방송통신기기에 대한 인증업무를 정부차원에서 독점적으로 수행해 왔다. 그러나 기술진보의 급속한 성장과 제품수명주기의 단축, 방송통신기기의 급속한 확대와 빠른 시장진입, 원활한 MRA의 이행, 인증

업무 및 시험기관 관리 등의 업무량 증가의 이유로 FCC에 의한 정부주도형 인증 제도에서 민간주도형 인증제도로 이양되고 있다.

미국 FCC는 1990년대 말 Report and Order(CC Docket No 99-216)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단말장치 인증 규제제도를 완화하였다.

첫째, 공중교환망(PSTN)과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규제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연방규칙 47 파트 68(Code of Federal Regulations 47 Part 68 : CFR Part 68)에 대한 규제완화

둘째, CFR Part 68에서 상호접속을 위한 기술적인 요소와 단말장치 인증절차에 대한 민영화

또한 동 기간 동안 FCC는 GEN Docket No 98-68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인증기관의 복수화 및 민간 인증기관을 도입하는 일련의 조치를 단행하였다.

첫째, 민간인증기관인 TCB(Telecommunications Certification Bodies)제도 도입

둘째,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Technology)를 시험·인증기관 등 적합성평가 기관에 대한 공인기관으로 지정

셋째, 유·무선통신기기의 인증절차를 간소화한 형태로 개편

FCC 인증 대상기기는 CFR 47 Part 15, 18, 95등 규정에 따른 FCC 인증 대상기기는 주로 송·수신기, 정보기기류, 방송수신기(FM, TV, VCR), CB송·수신기 등이 해당된다. 주로 전파발생장치(Radio Frequency Devices) 및 사용시 전파를 발생하는 부품이나 구성요소, 전기통신 네트워크 접속장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체증명(Verification) 대상기기

자체증명 대상기기는 ISM 장비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business Class A 컴퓨터 장비, TV 및 FM 수신기를 포함한다.

적합성선언(DoC) 대상기기

적합성선언 대상 기기는 Class B의 PC 및 주변기기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CB 수신기, super-regenerative receivers, TV 인터페이스 장비, 단말장치, PSTN을 포함한다.

자기 적합성선언(Self-DoC) 대상기기

인증(Certification) 대상기기

TE, PSTN, 컴퓨터 및 주변기기는 적합성평가를 위해 반드시 TCB에, Ultra Wideband, SDR, 신기술은 적합성평가를 위해 반드시 FCC에 제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휴대폰, RF Light, 전자레인지, RC Transmitter, Family Radio Telemetry Transmitter, 무선전화, 워키토키는 적합성평가를 위해 TCB나 FCC 중 어디에 제출되어도 무방하다.

FCC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품목도 있다. 시험기기의 경우 10~100대까지 박람회 전시용으로 1000대까지 인증이 면제된다. 개인이 실제로 미국 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것으로 미국 내 유통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제품은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미국에서 인증과 관련된 법령은 1934년에 제정된 '통신법'(1996년 개정)과 '연방규정집(CFR) Title 47 및 FCC 명령(Report & Order) 및 관련 고시(Notice)등에 규정되어 있다. 한편, 정보통신기기의 시험인증 관련 사항은 다음의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연방 통신법, 연방규정집(CFR) Title 47, FCC 명령(R&O), 고시 및 공인표준기관의 표준 등에 제시되어 있다.

<표 3-3> 미국 적합성평가 근거 법령

시험 인증 관련 사항	관련 법규 및 표준
o 정보통신기기 시험 인증관련 일반 원칙(제251조·제255조)	연방통신법
o 인증에 관한 권한위임에 관한 사항 - 무선기기, EMC 등의 인증의 OET로의 권한 위임 : Part 0. 241 - 유선기기 인증의 CCB로의 권한 위임 : Part 0. 291	연방규정(CFR) Title 47
o 민간인증기관(TCB)지정 및 요구조건에 관한 사항 - 무선기기 : Part 2.960, 2.962 - 유선단말기기 : Part 68.160, 68.162	
o 인증제도 관련사항: Part 2, Part 68 - Verification : Part 2, Part 68 - DoC : Part 2. 906, 1071~1077 - Certification : Part 2. 907, 1031~1061 - SDoC : Part 68. 320, 324, 350	
o 무선기기의 인증 관련 사항 - 비의도 방사기기에 대한 인증 : Part 15.101 - GMPCS에 대한 잠정인증 : Part 25.10	
o 유선기기의 인증관련사항 : Part 68 - 유선단말기기 인증조건 : Part 68. 300~354	
o 민간인증기관의 운영조건에 관한 사항 - FCC Public Notice DA 99-1640	
o 전기통신 네트워크 접속규제 인증가이드 : TIA/EIA TSB 129-A	FCC 고시 TIA/EIA 표준

주1) OET : Office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WCB : Wireline Competition Bureau
TIA : Telecommunication Industries Association EIA : Electronics Industries Association
TSB : Telecommunication Systems Bulletin

미국의 인증제도는 기관별로 규제기관, 지정기관, 인정기관, 인증기관이 분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각 기관별 기능과 역할이 매우 전문적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 3-4> 미국 적합성평가 운영 체계

기관의 주요 기능	담당기관	주요 역할
규제기관 (Regulatory Authority)	- FCC(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 FCC는 인증규제를 개발하고 MRA 상대국의 외국 CAB를 인정함
지정기관 (Designating Authority)	-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 FCC와의 협약을 통하여 미국 CAB의 자격을 평가하고, 통신법 상 FCC의 지정업무를 대행함 · MRA 시 다른 MRA 국가의 적합성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미국 CAB를 지정함
인정기관 (Accreditation Body) - Phase I	- NVLAP(National Voluntary Lab Accreditation Program) - A2LA(American Association of Lab Accreditation)	· MRA 1단계 인정기관
인정기관 (Accreditation Body) - Phase II	-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 MRA 2단계 인정기관
시험기관 (Testing Lab)	- NIST, ANSI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 사설시험기관	· 시험업무의 수행
인증기관 (TCB)	- FCC에 의하여 지정받은 민간 인증기관	· 인증업무 수행

미국의 적합성평가절차는 FCC 인증 유형에 따라 구분된다. 그래서 제조자 자체 증명, 적합성선언, 제조자 적합성 선언, 인증의 4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자체증명(Verification)

장비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시험 후 자체 인증하는 방식이다. Section 2.957에 의거하여 해당 제품이 관련 규정을 준수함을 증명하기 위해 시료(제품 샘플)나 대표 데이터를 FCC에 제출하는 것이 특별히 요구되지는 않는다.

둘째, 적합성선언(DoC)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시험기관 또는 사설시험 기관 에서 장비의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시험 후 이를 근거로 기술기준과 부합함을 제조자가 자체 선언하는 방식이다. FCC CFR section 2.909에서 정의한 당사자(Responsible party)가 장비가 적용 기술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보장하기 위한 추가 필수 절차를 밟거나 시험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CFR section 2.1076에서 예외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경우, 장비의 샘플이나 시험 데이터를 해당 기술기준 준수의 증거로 FCC에 제출할 필요는 없다. 적합성선언 대상 기기들은 NVLAP, A2LA 혹은 MRA(상호인정협정)의 규정 하에 FCC가 지정한 인정 시험기관에 의해 인정된 시험기관에서 반드시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자기 적합성선언(SDoC)

제조자가 제3의 공인 시험기관에서 장비의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시험 후 이를 근거로 기술기준과 부합함을 제조자가 자체 선언 하는 방식이다.

<표 3-5> 자체증명, 적합성선언, 자기 적합성선언 유형의 적합성평가절차

자체증명(Verification)	적합선언(DoC)	공급자 적합선언(SDoC)
시험(시험기관) ↓ 시험성적서 발급(시험기관) ↓ 자체보관 ↓ 등록	시험(시험기관) ↓ 시험성적서 발급(시험기관) ↓ DoC발행(신청자) ↓ 자체보관 ↓ 등록	시험(시험기관) ↓ 시험성적서 발급(공인시험기관) ↓ SDoC발행 (신청자) ↓ 자체보관 ↓ ACTA 등록

주1) 인증유형별 서류 등록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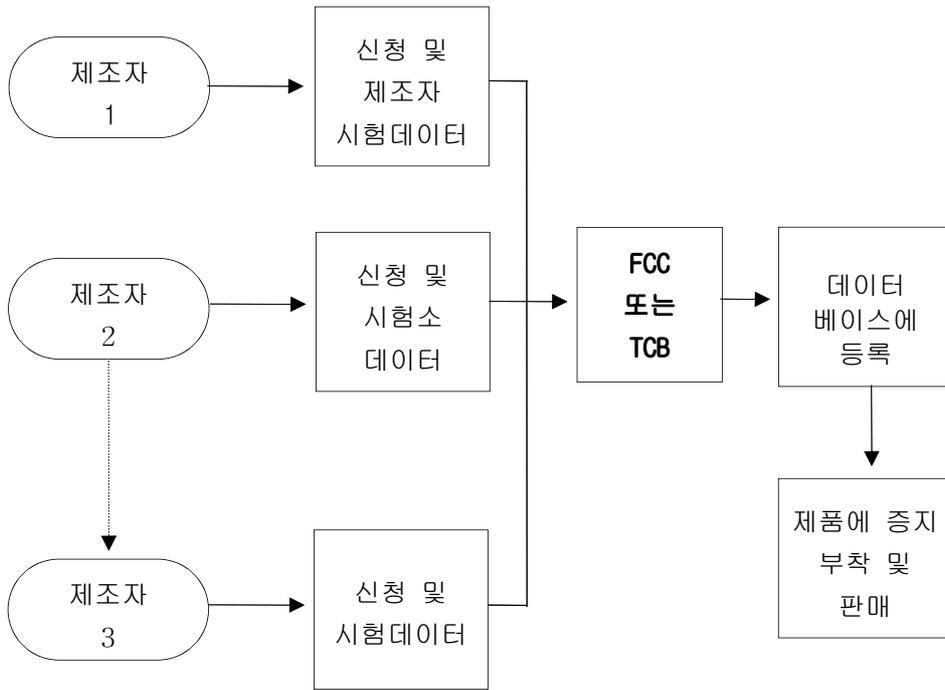
- 자체증명, 적합성선언 : 시험 -> Form 730 및 성적서 등 서류 제출 -> 수수료납부 -> FCC OET 데이터베이스 등록
- 자기 적합성선언 : 시험 -> Form 730 및 성적서 등 서류 제출 -> 수수료납부 -> ACTA 서식(SDoC)에 따른 등록

넷째, 인증 (Certification)

제조자가 FCC나 FCC의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인 TCB에 인증을 신청하고 TCB가 제조자의 신청내용을 토대로 심사하여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방식이다. FCC는 인증 절차 하에 장비를 허가하기 위해서 TCB를 지정할 수도 있다. TCB는 대상 제품이 FCC의 요건을 충족시키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신청서를 처리해야 하며, 장비 허가에 대하여 서면 인증서를 발행해야 한다. 본 인증서에 서는 TCB와 인증서 발급 당국을 밝혀야 한다.

우선, Grantee code 신청한다. 그리고 FCC Form 731 및 성적서등 서류를 구비하여 전자신청한다. 수수료 납부한 후 TCB/FCC 인증서를 획득하면 FCC 데이터베이스 등록하면 된다. 이 때 유선기기의 경우 ACTA 서식에 따라 ACTA 데이터베이스 등록한다.

[그림 3-1] 인증절차



FCC 인증의 경우, 신청자(Applicant)/수여자(Grantee) 코드를 취득하는데 총 6~9주가 소요된다. 제품 시험의 경우,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며, 총 2~5일이 소요되지만 시험의뢰 제품이 많을 경우에는 시험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험기관마다 상이하며, 시험기관이라도 제품의 종류와 탑재된 기술난이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FCC는 인증수수료를 고시하고 있는데 민간인증기관은 이와는 별도로 자율적으로 인증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제품인가 신청서(Application for Equipment Authorization)를 제출할 때는 다음과 같이 총 17개 서류를 포함시켜야 한다. FCC 수여자코드, FCC 등록번호

(RFN), 에이전시 위임장, 제품 설명서, 튜업 방법, FCC 수여자코드 라벨 상품, 라벨 위치, 사용자 설명서, 종합계통도, 회로도, 부품명세서, 비밀 요청서, 외부사진, 내부사진, 시험 성적서, 시험 셋업 사진, SAR(Specific Absorption Rate, 전자파흡수율) 또는 MPE(Maximum Permissible Emissions, 최대허용방사)⁸⁾ 데이터

FCC로부터 수여자 코드를 접수하고 송금 통지서(FCC Form 159) 제출 후 수여자코드를 접수할 때까지 공인된 시험소에서 제품시험을 실시하고 시험결과보고서(Test Report) 및 관련 자료를 받은 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FCC FORM 731 1부 작성 후 관련 수수료를 첨부하여 FCC에 제출한다.

자체증명(Verification) 시에는 다음의 서류들을 보관해야 한다.

자체증명의 경우, 1) 적합성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변경사항(디자인 원본 설계도 원본 등), 2) 적합성보증을 위한 제품검사와 시험절차, 3) 시험기관에서 수행한 적합성 평가와 관련된 자료(시험인력정보 및 서명, 시험장비, 시험데이터, 시험방법, 디버깅 리스트, 시험대상장비, 보조장비 식별자(FCC ID 및 일련번호, 비의도 및 의도방사 시험을 위한 배치도 등)를 보관해야 하며, 이는 제품 단종 후 2년 또는 장비 등에 대한 수사, 행정소송 제기 통보 후 판결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적합선언(DoC/SDoC)시에는 자체증명과 보관해야 하는 서류들이 동일하며, 그 외 추가조립에 따른 별도 시험 없는 적합선언 시에 1) 조립 구성품 리스트, 단위 구성품에 대한 적합성정보사본, 2) FCC 인증구성품에 의한 조립시 FCC ID 정보, 3) 조립과정시 장비변경리스트, 사용설명서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 자료는 제품 단종 후 2년 또는 장비 등에 대한 수사, 행정소송 제기 통보

8) 무선통신기기 중 Portable Device(인체에서 20Cm 이내) : SAR, Mobile Device는(인체에서 20Cm 이상) : MPE

후 판결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미국에서 대상기기에 대한 인증마크 표시방법은 대상기기의 시험방법 등을 기술하고 있는 기술기준에서 각각 기술하고 있다. 자체증명의 경우, 적합성평가표시는 FCC CFR Title 47 Part 15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 라벨의 문구와 간섭문제 정보를 표시한다.

<표 3-11> 인증마크 표시방법 근거 규정

구분	종류	인증방식	인증마크표시방법
무선 기기	비의도 방사 기기	Part 15 Subpart B 15.101	Part 15.19
	의도방사기기	Part 15 Subpart C 15.201	"
	비허가 개인 통신서비스 기기	Part 15 Subpart D 15.305	Subpart D Part 15.311
	산업·과학·의료용 기기	Part 18 Subpart B 18.203	Part 18 Subpart B 18.209
	유선 단말 장치	Part 68 Subpart A 68.102, Subpart C 68.201 이하	Part 68 Subpart D 68.300

<표 3-12> 인증 및 자체증명 표시(Labeling) 요구사항

인증 및 자체증명에 의해 승인된 제품
1) 허가된 무선서비스 관련 수신기(예 FM, TV 등)
This device complies with part 15 of the FCC Rules. Operation is subject to the condition that this device does not cause harmful interference.
2) Stand-alone cable input selector switch(CATV)
This device is verified to comply with part 15 of the FCC Rules for use with cable television service.
3) TV Interface Devices 중 Transfer switch가 없는 제품

This device is intended to be a receiver that is not used to receiver over-the air broadcast signals. Connection of this device in any other fashion may cause harmful interference to radio communications and is in violation of the FCC Rules, Part 15.

4) 무선전화시스템

"Privacy of communications may not be ensured when using this phone"

5) 기타기기류

This device complies with part 15 of the FCC Rules. Operation is subject to the following two conditions: (1) This device may not cause harmful interference, and (2) this device must accept any interference received, including interference that may cause undesired operation.

<표 3-13> 적합성선언 표시(Labelling) 요구사항

적합성 선언으로 승인된 제품							
1) 제품이나 시스템에 의하여 승인된 제품	<table border="1"> <tr> <td>Trade Name</td> <td>Model Number</td> </tr> <tr> <td></td> <td>Tested To Comply With FCC Standards</td> </tr> <tr> <td colspan="2">FOR HOME OR OFFICE USE</td> </tr> </table>	Trade Name	Model Number		Tested To Comply With FCC Standards	FOR HOME OR OFFICE USE	
Trade Name	Model Number						
	Tested To Comply With FCC Standards						
FOR HOME OR OFFICE USE							
2) 승인된 부품으로 조립된 완제품	<table border="1"> <tr> <td>Trade Name</td> <td>Model Number</td> </tr> <tr> <td></td> <td>Assembled From Tested Components (Complete System Not Tested)</td> </tr> <tr> <td colspan="2">FOR HOME OR OFFICE USE</td> </tr> </table>	Trade Name	Model Number		Assembled From Tested Components (Complete System Not Tested)	FOR HOME OR OFFICE USE	
Trade Name	Model Number						
	Assembled From Tested Components (Complete System Not Tested)						
FOR HOME OR OFFICE USE							
3) 기타 정보표시가 필요한 사항							
- 유통 및 수입 시							
: 이름 및 모델번호 등의 제품의 FCC 식별자							
: Part 15 규정을 준수한다는 문구							
: 적합성평가 책임자의 식별자(이름, 주소, 전화번호)							
- DoC 절차 시							
: 제품이 Part 15 규정을 준수한다는 문구							
: 단위 구성품으로 제품을 조립한 적합성평가 책임자의 식별자(이름, 주소, 전화번호)							
: 시스템에 사용된 단위 구성품이 DoC 절차로 인증 받은 경우, 단위 구성품에 대한 적합성 정보문구의 사본							
- 추가 조립에 의한 무시험 DoC 절차 시							
: 이름 및 모델번호 등 조립품의 식별자							

: 조립에 사용된 단위 구성품의 식별자, DoC 절차로 인증을 받은 단위

FCC 규칙은 FCC의 기기 장비 허가 프로그램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시험기관은 시험기관은 NVLAP, A2LA나 MRA의 조건 하에 FCC가 지정한 인정 시험기관에 의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에는 200개 이상의 FCC 시험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정 시험기관이 존재한다.

필수 장비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장비의 미국 시장에서의 수입·판매·운용은 불법이다. 이 때 불법 제품은 시장에서 수거되며, 그 제품의 제조업자는 벌금을 물게 된다. FCC 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수입 제품들은 세관에서 지연될 수 있다.

FCC 인증은 최초로 받은 인증이 영구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인증유효기간은 없다. 인증 유형에 따라 인증 변경 및 갱신의 조건이 다르다.

자체증명의 경우, 제품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별도의 입증 절차가 요구되지 않지만 제품의 EMI 특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재인증이 요구된다. **공급자 적합선언** 또는 **적합선언**의 경우에는 적용 기술기준의 주요 사항 변경이나, 대표자 변경 등 신청당시의 주요 기재사항 변경 시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이 때 DoC는 제품에 대한 EMI 특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정도의 변경이 이루어지면 재시험과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인증**의 경우, 공급자 적합선언 또는 적합선언에 준하여 적용 기술기준의 주요사항 변경이나 대표자 변경 등 신청당시 주요 기재사항 변경 시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시장에서 유통시키는 경우,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마케팅(수입, 판매, 임대, 광고, 선적, 배포)행위가 불가능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인증 받지 않은 기기에 대한 벌칙은 위반 유형을 특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공통적으로 위반일수 당 벌금 \$10,000 이하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할 수 있다.

<표 3-9> 미인증 기기에 대한 벌칙

벌칙	내용
제501조에 따른 유죄선고	사안마다 \$10,000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제501조에 따른 규칙위반	미국정부에 의한 점유 및 압류
제503조에 따라 고의 또는 거듭하여 FCC 연방통신규정을 위반하는 자	동일사안을 연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위반일수 당 \$10,000이하(개별위반으로 간주) 벌금

인증된 기기의 사후관리는 FCC와 TCB가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그리고 TCB 사후관리는 FCC와 NIST에서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제 2 절 유 럽

1. 방송통신기자재 분야 교역량

<표 3-10> 對EU 방송통신기자재 수출입 현황

[단위 : 달러]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유선 통신 기기	수출	221,526,449	222,800,745	212,902,104	116,116,164	118,145,541
	수입	73,896,376	147,140,272	186,213,592	102,947,505	140,750,629
	무역 수지	147,630,073	75,660,473	26,688,512	13,168,659	-22,605,088
무선 통신 기기	수출	7,274,465,766	8,001,376,178	8,081,623,110	5,430,867,610	3,874,587,196
	수입	411,365,137	396,612,939	525,223,910	356,795,911	261,049,266
	무역 수지	6,863,100,629	7,604,763,239	7,556,399,200	5,074,071,699	3,613,537,930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출	1,844,508,840	2,095,159,986	1,659,887,796	1,126,516,182	1,363,651,702
	수입	440,772,818	480,805,880	499,204,870	323,295,206	309,668,310
	무역 수지	1,403,736,022	1,614,354,106	1,160,682,926	803,220,976	1,053,983,392
영상 기기	수출	9,340,501,055	10,319,336,909	9,954,413,010	6,673,499,956	5,356,384,439
	수입	926,034,331	1,024,559,091	1,210,642,372	783,038,622	711,468,205
	무역 수지	8,414,466,724	9,294,777,818	8,743,770,638	5,890,461,334	4,644,916,234
전체	수출	7,095,781,533	8,355,207,588	11,010,031,754	10,698,697,315	11,380,013,008
	수입	1,705,155,146	1,638,240,824	1,484,409,650	1,317,896,406	1,461,756,654
	무역 수지	5,390,626,387	6,716,966,764	9,525,622,104	9,380,800,909	9,918,256,354

<표 3-11> 對EU 방송통신기자재 수출입 상위 3개 품목

수출입	구분	품목
수출	유선통신기기	유선전송장치, 유선통신기기부품
	무선통신기기	휴대폰(GSM), 휴대폰 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보조기억장치(HDD), 모니터
수입	유선통신기기	유선전송장치, 유선통신기기부품
	무선통신기기	휴대폰 부품, 레이더 및 항행용무선기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보조기억장치, 컴퓨터 주변기기

2. 적합성평가제도

유럽의 인증제도는 CE(Conformité Européenne / European Conformity) 인증이라고도 불리며 강제인증이다. CE는 프랑스어 “Communaute Europeen”의 약자로, 영어로는 “European Communities”이고 유럽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1958년 프랑스인 장모네(Jean Monnet, 1888.11.9~1979.3.16)의 주창으로 유럽경영공동체가 설립된 이래 유럽연합체로 통합되어, 1985년 12월 단일 유럽법을 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1992년 12월 31일까지 유럽 역내시장의 기술적, 물리적 장벽을 제거한다.”라는 것으로 여기서의 역내시장이란 내부적인 장벽이 없는 상품, 사람,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 지역을 의미한다. 이로 인하여, 유럽통합과 함께 제품의 안전관련 인증 제도를 각국별로 운영(영:KITE, 독:GS, 프:NF)하던 것을 1993. 7. 22 EU(European Union) 이사회 결의(93/465/EEC)에 따라 “CE마킹”으로 통일하였다.

유럽연합 개별회원국은 대부분 유럽표준규격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CE제도로써 방송통신기기 인증을 갈음하고 있으며, CE인증을 의무 획득함으로써 자국 내 방

송통신기기의 판매·유통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즉, CE 마킹은 해당제품이 European Union (EU)와 European Free Trade Area (EFTA)에 합법적으로 판매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단, CE마크는 제품의 신뢰성 또는 품질보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제품이 안전과 건강 그리고 소비자의 보호와 관련된 EU규정 또는 지침 및 유럽표준 규격의 필수 요구사항, 즉 “기본적인 조건”을 준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CE 인증의 적용국가는 다음과 같다.

EU(유럽연합) :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영국,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체코, 키프로스,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EU준회원국 : 크로아티아, 터키, 유고슬라비아

유럽연합 내에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조자는 인증 신청 대상 제품에 해당하는 지침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 중 방송통신기기는 아래의 3개 지침중 하나를 적용해야 한다.

첫째, R&TTE 지침(Directive 1999/5/EC on Radio and telecommunications terminal)

둘째, EMC 지침(Directive 2004/108/EC on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셋째, LVD 지침(Directive 2006/95/EC on Low Voltage Devices)

그럼 지금부터는 각 지침별 대상품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R&TTE 지침**은 유무선 통신장비에 대한 규제지침으로 “주파수를 사용하는 모든 무선기기”와 “공중통신망에 장착하는 모든 유선단말기”를 대상품목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이동통신(2G,3G)을 포함한 무선랜, RFID 등의 모든 무선기기와 유선전화, ISDN 단말기 등 유선기기가 대상품목에 포함된다.

[그림 3-1 R&TTE 지침 대상품목(예시)]



둘째, **EMC 지침**은 전기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규제지침으로 “전자파 장애를 생성 하거나 또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전기전자 부품들을 포함하는 장비 및 설치물과 함께 모든 전기전자 기구들”을 대상품목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스스로 전자파를 발생하여 다른 기기의 오작동에 영향을 주거나 반대로 다른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해 자기가 오작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전자파**는 의도하지 않은 곳에서 발생한다. 컴퓨터에서, TV에서 그리고 냉장고의 냉각모터에서 전자파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이 대상품목에 포함됩니다.

[그림 3-2] EMC 지침 대상품목(예시)]



셋째, **LVD 지침**은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규제지침으로 통상 ‘전기안전인증’으로 통용되고 있다. LVD지침은 “특정전압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모든

전기기기”를 대상품목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특정전압 범위란 정격전압 기준으로 50V~1000VAC 또는 75V-1500VDC를 의미하며, 가정 또는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그림 3-3] LVD 지침 대상품목(예시)



다음은 위에서 언급된 세 지침에 포함되지 않는 면제품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R&TTE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장비로는 1) 양방향성 위성방송기기, 2) 시험장비, 3) 음성 및 TV 방송서비스의 수신에만 사용되는 무선장비, 4) 9kHz 미만 또는 3000GHz 초과 대역에서 운용되는 송신기와 비무선 통신네트워크 기반장비가 있다.

EMC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장비는 1) 전기적·전자적 부품이 없는 장비, 2) EMC 지침의 적용으로부터 명백히 면제받는 경우로 **Directive 1999/5/EC (R&TTE Directive)**의 무선장비 및 통신용 단말장비는 R&TTE 지침을 따르고, Regulation 1592/2002에 명시된 항공용 제품, 부품, 기구와 ITU Radio Regulation에 명시된 무선 아마추어용 무선장비가 있으며, 3) 유럽공동체의 다른 세부 지침의 적용을 받는 장비가 있다. 이 경우, EMC 지침의 Article 1(4)에 근거하여 장비에 대한 EMC 요건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보다 구체적인 다른 지침의 적용을 받을 경우, EMC 지침은 그러한 다른 지침의 의무 적용일로부터 EMC 요건에 관하여 해당 장비에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을 중단한다.

<표 3-12> 다른 세부 지침의 적용을 받는 장비

-
- o 방사 및 내성 EMC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장비
 - 세부 Directive 72/245/EEC 및 2004/104/EC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 능동이식용 의료기기: Directive 90/385/EEC
 - 의료기기: Directive 93/42/EEC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Directive 98/79/EC
 - Directive 96/98/EC의 적용을 받는 해상장비
 - Directive 75/322/EEC의 적용을 받는 농업용·산림용 트랙터
 - Directive 97/24/EC의 범위 내에 속하는 2륜 또는 3륜 자동차

 - o 내성과 관련하여 EMC 지침의 적용을 면제받는 장비
 - 측정기구: Directive 2004/22/EC
 - 수동형 중량측정기구: Directive 90/384/EEC Annex I-8(2)의 적용을 받는 것
-

4) 본래부터 양호한 장비도 EMC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 원래 지닌 물리적 성질에 의해 무선통신장비 및 기타 장비가 의도대로 운영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전자파 방사를 생성하거나 그러한 전자파 방사를 가중시킬 수 없고 또한 의도된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전자파 방해 하에서 허용 불가능한 지장 없이 운영되는 장비는 EMC 지침 적용 대상에서 예외 된다.

<표 3-13> EMC 특성이 없는 장비 목록

-
- 각각의 케이블, 케이블링 및 케이블 부속품
 - 자동 변환기 없이 저항성 부하물만을 포함하는 장비
 - . 제어장치, 자동 온도조절장치, 환풍기가 없는 단순형 가정용 난방기기
 - 배터리 및 완충기(능동형 전자회로가 없는 것)
 - 증폭장치 없는 헤드폰, 확성기
 - 능동형 전자회로 없는 Pocket lamp
 - 회로 내에서의 단락오류 또는 비정상적 상황을 해결하는 동안 일시적인 방해만을 유발하고 능동형 전자부품 또는 능동형 구성요소가 없는 퓨즈 및 누전 차단기 등의 능동형 전자부품을 포함하지 않는 보호장비
 - 방해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노화과정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부분적 절연압력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EMC 제품표준이 아닌 다른 제품표준에 속하는 기술규정에 따라 통제되고, 능동형 전자적 구성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고압장비
 - . 고압 유도장치
-

-
- . 고압 변환기
 - 기타
 - . Capacitor(예: 역률교정용 Capacitor)
 - . 유도 전동기
 - . Quartz watch(무선 수신기 등의 추가기능 없음)
 - . 필라멘트 램프(전구)
 - . 능동형 전자적 구성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가정용·건물용 스위치
 - . TV 및 라디오 방송수신용 수동형 안테나
 - . 플러그, 소켓, 단자 등
-

5) 최종 사용자를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 완제품이 다른 장치에 병합되기 위한 산업용 부품만을 위해 만들어진 대상기기를 말한다. 6) 구성요소/하위 부품의 경우로, 최종 사용자 외의 사람에 의해 장치 및 관련 하위 부품에 병합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구성요소와 하위 부품은 “장치”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EMC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표 3-14> 구성요소/하위 부품 예시

-
- 전기회로 또는 전자회로의 일부를 형성하는 전기적 또는 전자적 구성요소
 - 저항기, Capacitor, 유도기, 필터
 -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전류제어기, triac 등
 - 집적회로
 - 전자기적 단순계전기
 - LED(Light Emitting Diode)
 - 단순 자동온도조절장치
 - 음극선관
-

LVD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장비는 1) 폭발환경에서 사용되는 전기기기, 2) 방사선 및 의료용 전기기기, 3) 화물 및 승객용 엘리베이터의 전기 부품, 4) 전력계(Electricity meters), 5) 가정용 플러그·소켓, 6) 전기식 펜스의 제어기, 7) 선박, 항공기, 철도에서 사용되는 특정한 전기기기로서, 가맹국이 참가하고 있는 국제기관에 의해 제정되어진 안전 규격에 적합한 기기

유럽연합의 인증제도 관련 법령은 법적 구속력의 강도에 따라 지침(Directive), 규칙(Regulation), 결정(Decision)으로 나뉘며, 이외 법령은 아니나 입법 자료로서 활용되는 녹색(Green Paper), 권고(Recommendation) 및 의견(Opinion) 등의 형태가 존재한다.

유럽연합의 유-무선통신단말기기 상호인정지침(R&TTE 지침)은 기존의 전기통신단말기기 상호인정지침(TTE 지침)의 내용을 통합 규정한 것으로 2000년 4월 8일 발효되었다. R&TTE 지침의 발효로 EU 시장 진출을 위해 유럽 시험기관이 주관이 되는 형식승인(Type approval) 제도와 국가별 인증(National Approval)제도도 완화되었다.

<표 3-15> EU의 적합성평가제도 근거 법령

구분	적용범위
R&TTE지침 1999/5 EC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전기통신단말장치: 의사소통 및 직/간접적으로 공공통신망에 접속되는 통신기기 o 무선통신기기: 무선 주파수의 송·수신으로 통신하는 기기 o 기타의료기기, 차량·교통 관련 기기 및 지침의 부록에서 기술한 기기(적용 예외기기: 비상업용 아마추어 무선기기 / 케이블 및 전선 / 민간항공장비 / 방위 및 공중 안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장치 / 범죄나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통신기기 / 선박용 제품 / 수신전용 TV 및 라디오 / 공중 관제통제장치)
EMC 지침 89/336/EEC 이의개정지침 92/31/EEC 및 93/68/EEC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장비 또는 시스템이 처한 전자파환경에서 그 어떤것에 간섭을 받거나 주지 않고 제 기능을 만족케 하는 능력을 구비토록 함 o 전자기 방해를 일으킬 수 있거나 또는 이러한 방해파에 의해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기 (가정용 라디오 및 텔레비전 수상기, 산업용 제조설비, 이동식 무선장비, 무선전화기, 의료장비 및 과학기기, 정보기술장비, 가정용 전기기기, 항공 무선장비 및 해양무선장비, 교육용 기자재, 통신망 관련기기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전송기기, 조명등, 형광등)
Low Volt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예상 또는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 인해 사용자 및 서비스 요원에

지침 73/23/EEC, 이의 개정지침 93/68/EEC	<p>계 상해 또는 손상을 입힐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기기를 설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AC 50~1000V 또는 DC75~1500V 정격전압을 가진 전기 제품 (적용 예외기기: 폭발 환경에서 사용되는 전기기기 / 방사선 및 의료용 전기기기 / 화물용 및 승객용 엘리베이터의 전기부품 / 전기계량기 / 옥내용 플러그 및 소켓 / 전기 철조망 제어기 / 전파방해기기 / 국제기구에서 작성한 안전규정에 적합한 선박, 항공기, 철도에 사요되는 특수 전기기기 등)
합의표준 (harmonized standar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유럽연합의 위임을 받아 각 지침이 요구하는 필수적 요구사항 (Essencial Requirements)이 포함된 유럽표준화기구(ETSI, CEN CELENEC)가 제정하는 표준들임 o 현재 CELENEC의 EN 60950 시리즈, EN 61000 시리즈 등과 ETSI의 EN 300 내지 303 시리즈 등이 제정 운영되고 있음

<표 3-16> 유·무선기기의 제품별 기술기준

제품군	기술기준
Land mobile service	<p>ETS 300 086, ETS 300 086/A2</p> <p>I-ETS 300 113, ETS 300 113, ETS 300113/A1</p> <p>EN 300 219, I-ETS 300 219; I-ETS 300 219/A1</p> <p>ETS 300 296, ETS 300 296/A1</p> <p>ETS 300 341, ETS 300 341/A1</p> <p>ETS 300 390, ETS 300 390/A1</p> <p>BAPT 225 ZV1/2098</p> <p>FTZ 17 TR 2010, FTZ 17 R 2019, FTZ 17 R 2030, FTZ 17 R 2032</p> <p>FTZ 17 TR 2049</p> <p>AS 4295, RSP 100, RSS-119, RSS-133, RSS-134, RSS-212, RFS21</p> <p>RFS25, RFS26, RFS27, RFS28, RFS31, RFS32, RFS39</p> <p>EIA/TIA-603,47 CFR Part 24,47 CFR Part 90</p>
Aeronautical mobile service	<p>FTZ 17 TR 2013, RegTP 321 ZV 034, RegTP 321 ZV 039</p>

	47 CFR Part 87, Maritime mobile radio EN 300 152, ETS 300 152, ETS 300 162,AS/NSZ 4330 AS/NSZ 4415,RSS-182,RSS-187,RFS 33,47 CFR Part 80
Short range devices / Low power devices	EN 300 220-1,EN 300 220-2, EN 300 330, I-ETS 300 330; I-ETS 300 330/A1 EN 300 440, I-ETS 300 440; I-ETS 300 440/C1 BAPT 211 ZV 3/2099,BAPT 211 ZV 037/2050 BAPT 222 ZV 122, BAPT 222 ZV 125 FTZ 17 TR 2014, FTZ 17 TR 2015 FTZ 17 R 2028, FTZ 17 R 2033 FTZ 17 TR 2100, AS 4268.1, AS 4268.2 RSS-123, RSS-210, RSS-213 RFS 29, 47 CFR Part 15
Wireless microphones	EN 300 422,I-ETS 300 422, 47 CFR Part 15
Wideband data transmission systems	ETS 300 328; ETS 300 328/A1 47 CFR Part 15
CB radio	ETS 300 135, ETS 300 135/A1 ETS 300 433, ETS 300 433/A1, ETS 300 433 A2 47 CFR Part 95
On-site paging systems	ETS 300 224; ETS 300 224/A1
Satellite Earth Stations	TBR 026,TBR 027,TBR 028,TBR 030,TBR 041,TBR 042 TBR 043,TBR 044,ETS 300 157,ETS 300 158 ETS 300 159,ETS 300 254, ETS 300 255,ETS 300 332 ETS 300 423,ETS 300 424, BAPT 213 ZV 02,BAPT 222 ZV 27

	BAPT 222 ZV 31,BAPT 222 ZV 32,RSS-170,47 CFR 25
Broadcasting transmitters	<p>ETS 300384; ETS 300384/A1</p> <p>Digital radio relay systems</p> <p>EN 300 198,EN 300 234,ETS 300 234,EN 300 431,EN 301 126-1</p> <p>EN 301 390,EN 301 461,BAPT 211 ZV 12/38 GHz</p> <p>BAPT 211 ZV 11/26 GHz,RegTP 321 ZV 038, RegTP 321 ZV 042</p> <p>BAPT 211 ZV 01/7 GHz,BAPT 211 ZV 13/4 GHz,BAPT 211 ZV 027/13 GHz</p> <p>BAPT 211 ZV 20/6,8 GHz,BAPT 211 ZV 02/23 GHz</p> <p>BAPT 211 ZV 11/26 GHz,BAPT 211 ZV 028/28 GHz</p> <p>BAPT 211 ZV 038/15 GHz, 47 CFR 101</p>
European digital cellular telecommunications system(GSM)	ETS 300 609-4, EN 301 087, Clause 8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EMC	<p>EN 300 279, ETS 300 279; ETS 300 279/A1</p> <p>E-DIN ETS 300 329, ETS 300 329</p> <p>EN 300 339, ETS 300 339, ETS 300 340; ETS 300 340/A1</p> <p>EN 300 342-1, ETS 300 342-1, E-DIN ETS 300 342-1</p> <p>ETS 300 342-2, E-DIN ETS 300 342-2</p> <p>ETS 300 342-3, EN 300 385, ETS 300 385, ETS 300 385/A1</p> <p>EN 300 386, ETS 300 386-1, EN 300 386-2</p> <p>ETS 300 386-2-2, ETS 300 386-2-3, ETS 300 386-2-4</p> <p>ETS 300 445, ETS 300 445/A1,ETS 300 446,ETS 300 447</p>

	<p>ETS 300 673,ETS 300 680-1, ETS 300 680-2</p> <p>ETS 300 682,ETS 300 683, ETS 300 684, ETS 300 717</p> <p>ETS 300 741,ETS 300 826, EN 300 827,EN 300 828</p> <p>EN 300 829,EN 300 830,EN 300 831,EN 300 832</p> <p>EN 301 091,EN 301 670,FTZ 12 TR 1, Juni 87</p> <p>FTZ 12 TR 1, Jan.93,47 CFR 18</p> <p>ANSI C95.1-1991 , ANSI C95.3-1991</p> <p>ANSI/IEEE C63.4-1992 , FCC MP-5,FCC OET Bulletin 65</p>
--	--

<표 3-17> 유럽 적합성평가 운영 체계

시험인증체계		역할
규제/지정기관		o 유럽의 각 국가
인정기관(EA)		o 유럽지역내의 국가 간 인정에 대한 통일된 방식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
EOTC		o 유럽집행위원회의 인증업무를 총괄하는 범 유럽차원의 시험인증기관
인증기관	Notified Body	o 지침에 기술된 적합성평가를 실시하는 제3자 기관으로 각 회원국의 사법권이 미치는 지역에 존재 o 국제권고표준(ISO 17065)에서 정하는 자격과 지침이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기관으로 개별회원국이 EU 집행위원회 및 다른 회원국에 통지함 o 무선통신기기에 대한 적합성 평가 과정에 관여하며 시험인증관련 전문가 의견(Expert Option)제시
	Competent Body	o EMC 지침상의 TCF검사와 EMC Testing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정된 기관
시험기관 (Test House)		o 시험(Testing), 필수요구사항(Essential Requirements), 시장감독(Market Surveillance) 등에 대한 조연을 수행 o 시험 장비의 공동개발 및 기술지원·교육 수행 o 제조자의 시험 지원 및 관련 테스트 실시
시장감독기관 (Market)		o 제조자의 자기인증(DoC) 확대에 의한 검사, 조사, 시험 등 일련의 사후관리 활동 수행

Surveill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시장에서 무작위 추출, 소비자 단체등의 신고, 여론 층의 문제 제기, 경쟁사의 신고 및 전년도 부적합 제품 대상 o 개별국의 기술규정에 부합한지 여부 검토와 적합성 확인 조치 병행
네트워크 운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제조자의 단말기기 설계의 원활화를 위한 네트워크 접속 관련 기술적 정보 공시 o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기기가 부적절한 경우 접속 차단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주1) EOTC(European Organization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 : 유럽의 시험 및 인증 조직

주2) EA(European Cooperation for Accreditation) : 유럽인정기관협력기구

다음부터는 지침별 적합성평가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첫째, R&TTE지침 인증절차

제조자가 유럽연합 내에서 유·무선통신기기를 출시코자 하는 경우 제품이 유선기기인지 혹은 무선기기인지에 따라서 제조자가 선택하여야 할 인증방식이 구분된다.

우선 유선기기(통신용 단말기나 전화기 등)의 경우에 제조자는 규제기관의 관여가 가장 적은 Annex II(Internal Production Control 방식)를 선택할 수 있다. 물론, 제조자가 자사 제품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Annex IV(Technical Construction File Route방식), 또는 Annex V(Full Quality Assurance 방식)를 택할 수 있다.

그리고 무선기기의 경우에 해당 무선기기가 유럽연합이 정한 합의된 주파수대역과 관련 표준을 사용하는 기기인지 여부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선택방식이 다르다. 유럽연합이 정한 합의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기기에 대하여 제

조자는 Annex III(Internal Production Control + Specific Apparatus Test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물론, 앞의 경우에서처럼 제조자가 자사 제품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Annex IV(Technical Construction File Route 방식), 또는 Annex V(Full Quality Assurance 방식)를 택할 수도 있다. **유럽연합이 정한 합의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지 않는 무선기기의 경우에는 Annex IV(Technical Construction File Route 방식), 또는 Annex V(Full Quality Assurance 방식)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또한 무선통신기기에 대하여는 R&TTE 지침에서 개별회원국의 전파 환경특성에 따라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관련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별 회원국들은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제정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제조자들은 이러한 개별 회원국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서 정한 기술적 사항도 포함하여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의 준수는 CE-Marking 과정에 포함되어 이루어지며 개별 회원국 해당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별도 인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표 3-18> R&TTE 지침에 따른 적합성평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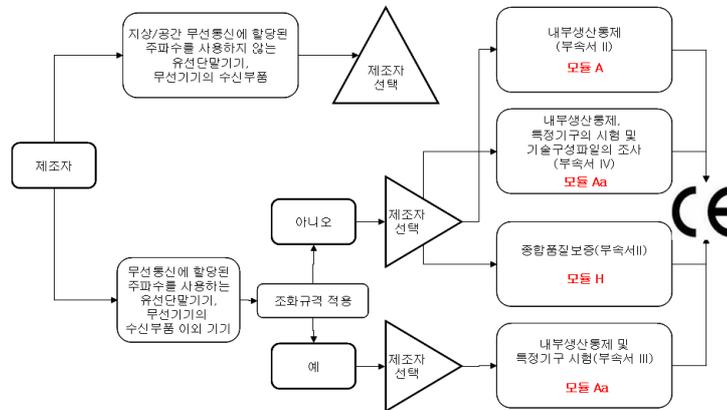
Annex II (자체생산관리)	Annex III (자체제조관리 + 특정기기시험)	Annex IV (기술문서파일)	Annex V (완전품질보증)
CE 마킹부착 적합성선언서 작성 기술문서(*1) 작성 10년간 보관	CE 마킹부착 적합성선언서 작성 기술문서(*1) 작성 무선시험실시(NB) 10년간 보관	CE 마킹부착 적합성선언서 작성 기술문서파일(*2) 작성후 NB 승인 무선시험실시(NB) 10년간 보관	CE 마킹부착 적합성선언서 작성 완전품질보증업무 수행후 NB 승인 10년간 보관

주1) 기술문서(Technical Documentation)

- General description of the equipment
- Design and manufacturing drawings
- Schemes of components, circuits, etc.
- List of standards applicable and/or description of the technical solutions adopted

- Test reports
- 주2) 기술문서파일(Technical Construction File)
 - Technical Documentation
 - Declaration of Conformity based on radio test suites

[그림 3-5] R&TTE 지침에 근거한 CE-Marking 부착 순서도



방송통신기기 CE 절차는 유럽연합이 제품별로 정한 8개 A~H 모듈 중에서 A 및 H 모듈을 적용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R&TTE 지침 Annex II,III,IV,V의 4가지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표 3-19> R&TTE 지침에 따른 Annex 구분

구분	Annex II	Annex III	Annex IV	Annex V
모뎀 및 전화	○		○	○
합의된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기		○	○	○
합의되지 아니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기			○	○

- 주1) 합의된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기: EU내 통합화·표준화된 무선기기(DECT, GSM 등)
- 주2) 합의되지 아니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기: 통합화·표준화되지 않아서, 주파수가 다르거나 사용하지 않는 국가가 있는 무선기기(PMR, SRD, Analog Cordless Phone 등)

Annex II, Internal Production Control 방식이라고도 하며 모듈 A방식으로, 제조자가 인증지침의 필수요건을 맞추는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검토한 기술문서(Technical Documentation)를 첨부한 후에 제품이 필수요건에 부합함을 선언하는 방식이다. 제조자는 EU에서 정한 표준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이는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제조자 스스로가 개발 제품이 필수 요구 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선언하여 마크를 부착하고 시장에 판매하는 것으로, 관련 서류는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는 모뎀, 유선전화기 등 유선통신기기에 적용된다. Internal Production Control + Specific Apparatus Test 방식이라고도 하며, Annex II의 경우와 같이 제품에 대한 자체 판단에 추가해서, 특정 기기에 대해서 실험을 했다는 내용을 담은 기술 문서를 첨부하여 제품이 필수요건을 맞춘다고 선언하는 방식이다. 제조자는 합의표준(harmonized standards)을 사용해야 하며, 그 표준에서 실험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된 기관이 설정한 절차에 따른 실험을 해야 한다. 이는 Annex II에 필수적인 Radio 시험이 추가되는 것으로 DECT, GSM과 같이 합의표준이 있는 무선기기에 적용된다.

Annex IV, Technical Construction File Route로 칭하기도 하며 Internal Production Control의 방식(Annex III)대로 제조자 자신이 적합함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정된 기관이 검토하고, 의견을 주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 제조자가 기술 문서를 제출한다. 지정 기관은 4주 내에 의견을 발부하여야 하며,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제작사는 제품을 유통시킬 수 있다. 무선통신기기의 경우에는 시행한 실험 절차 및 방식도 제출해야 한다. 제조자는 지정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문서(TCF: Technical Construction File)를 구비하여야 하며 이는 10년간 보관되어야 한다. 국가별로 독자적인 주파수를 사용하거나 유럽연합차원의 합의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무선기기에 주로 적용됨. PMR, SRD, 아날

로그 무선전화기 등이 있다.

Annex V, Full Quality Assurance 방식이라고도 하며 모듈 H의 방식으로, 제조자가 지정기관에 의해서 심사를 받고, 회원국 주관청의 감독을 받는 품질보증 체계를 운영하면서 제품이 인증지침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선언하는 방식이다. 즉, 모든 품질 시스템의 인증(Full Quality Assurance, FQA)으로, 설계, 제조, 시험 등 전반에 걸친 과정이 지정기관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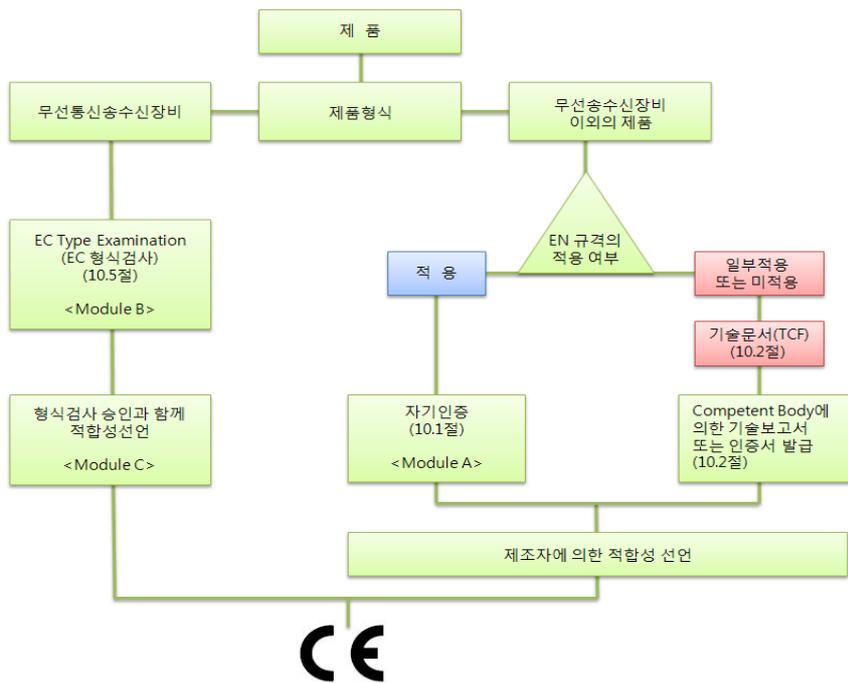
EMC지침에 따른 기기의 종류별로 인증절차는 상이하며 이는 다음과 같다.

국제 전기 통신 연합(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ITU)에서 규정한 방송용 수신기와 원격통신 단말기기의 경우, Notified Body에 의해 EU 형식시험 증명서를 받아 적합성선언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때 이 적합성선언서에는 1) EU 선언서가 언급한 기기의 설명, 2) 적합성을 선언한 규격에 관련된 내용 또는 해당하는 경우, 본 지침의 규정에 기기가 적합하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실시된 국내제도에 관한 내용과의 관련성, 3) 제조자 대신에 서명할 권한이 주어진 사람 또는 대리인 식별, 4) 해당하는 경우에는, Notified Body에서 발행된 EU 형식시험 증명서를 포함해야 한다. 이 때 Notified Body 가 제품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기술 파일 제출이 필요한데, 이 기술 파일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제조자의 명칭 및 주소, 또는 가능하면, Notified Body 의 명칭 및 주소, 2) 적합성선언서, 3) 제품의 일반적 기술, 4) 조작 설명서, 5)설치 설명서, 6) 구성부품, 조립품, 전기회로 등의 설계도, 생산도면, 7) 제품 기능이해에 도움이 되는 기술 및 설명, 8)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적용된 규격 리스트, 및 적용 규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구되는 EMC 보호수준을 실현하기 위하여 실시된 해결책의 설명, 9) 필요한 경우, 설계계산노트, 10) 시험성적서

그 밖의 기기에 적용하는 EN 규격이 존재할 경우, 적합성선언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기술 파일 요구는 특별히 하지 않지만 위의 내용에 따라서 작성하는 것이 좋다.

드물지만 적용할 EN 규격이 존재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존재하는 경우, 기술 파일을 작성하여, Competent Body 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Competent Body에서 기술보고서 또는 증명서를 취득하여 적합성선언서를 작성하면 된다.

[그림 3-6] EMC 지침에 근거한 CE-Marking 부착 순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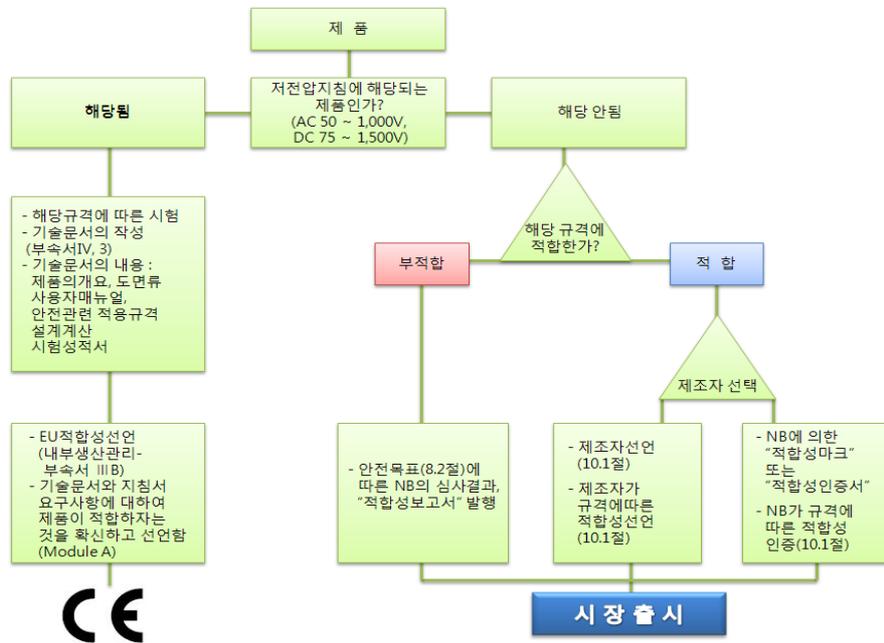


우선 저전압 지침의 대상 기기는 교류 50-1000 V 및 직류 75-1500V의 정격전압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기기로 한다.

저전압지침 73/23/EEC "특정한 전압 범위 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설계되어진 전기기기에 대한 가맹국 법률의 조화에 관한 지침"은 1973년 2월에 채택되었고 각 회원국에서 사용되어 왔다. 당시에는 CE Marking의 요구가 없었지만 이 지침은 20년에 걸쳐 유지·사용되어 왔다. 그러다가 다른 지침과의 정합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CE Marking에 관한 지침 93/68/EEC(1973년 7월 22일)에 의한 개정으로 CE마크가 강제되었다.

저전압 지침에 따른 적합성평가 시에도 다른 지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술 파일 및 적합성선언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림 3-7] 저전압 지침에 근거한 CE-Marking 부착 순서도



적합성선언서에는 1) 제조자 또는 EU 지역 내의 대리인 명칭, 2) 전기기기의 설명, 3) 적용규격의 번호, 4) 해당되는 경우, 적합성선언 규격번호, 5) 제조자 대신에 서명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의 성명(대리인), 6) 적합성 선언일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기술문서에는 1) 해당 전기기기의 개요, 2) 개념 설계, 제조 도면, 부품도, 서브 어셈블리(부속 조립부품)조립도, 회로도, 3) 도면의 이해나 전기기기의 조작에 필요한 기술과 설명, 4)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한 규격 리스트, 및 규격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는 본 지침의 안전 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취한 대책 기술, 5) 설계 계산이나 실시한 시험 등의 결과, 6) 시험성적서를 포함해야 한다.

다음은 유럽 적합성평가 신청 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EU는 공급자 적합선언(SDoC)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인증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없다. 다만, 제조사 요구에 따라 NB(Notified Body)의 인증을 거칠 경우 통상 1~2주 소요된다. 또한 공급자 적합선언을 할 경우에도 별도로 소요되는 비용은 없다. 단, NB의 인증을 거칠 경우 소요경비는 NB마다 상이하며 또한 동일한 NB 또는 시험소라도 제품의 종류와 탑재된 기술난이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공급자적합선언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제조사가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공급자 적합성 선언서는 제조자를 대신해서 의무를 지는 권한을 가진 자가 서명해야 한다. 이 선언서가 정말로 중요하게 인정되려면 CE 마킹 프로세스가 제대로 이행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자가 서명해야 한다. 본 선언서의 효과는 제품에 부착된 CE 마킹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 책임지는 자(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있다.

인증마크는 CE 마크를 부착하며, 이는 의무사항으로 방송통신기자재의 판매 및 유통을 위해서는 해당 제품에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CE 마킹은 유럽연합 지침의 모든 조항을 따른다는 표시이며, 적합성을 선언한 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CE 마킹의 모든 책임을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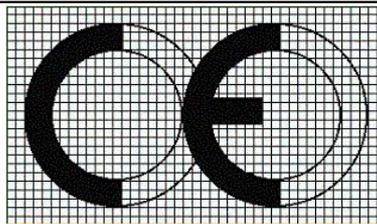
[그림 3-8] CE 마크



CE마크는 EU지침 93/465/EC에 근거하여 CE마크를 제작하고 부착해야 한다.

CE 마킹 도안은 다음 그림과 같은 형태이며 일반적으로 세로길이가 5mm 이상 되도록 제품 또는 그 제품의 명판(Data Plate)에 부착해야 하는데, 부착할 공간이나 기타 이유로 마킹이 불가능한 경우 포장이나 첨부된 문서에 부착할 수도 있다.

<표 3-20> CE 마킹 도안



준수 사항

- CE마크는 눈에 잘 보이고, 지워지지 않고, 합법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 CE마크는 가로 세로 1mm의 정사각형 모눈종이에 지름 20mm와 14mm인 두 개의 원이 겹친 모양으로, 크기의 확대 또는 축소 시에도 비율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
- CE 마킹은 가시적이어야 하며, 읽기 쉽고 지워지지 않게 제품이나 데이터 표(data plate)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품의 특성 상 불가능하거나 이외의 절차로 보 증할 수 있다면 포장지나 동봉되는 문서에 부착되어야 한다.

다음은 Annex에 따른 CE 마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첫째, Annex II의 CE마크 부착은 NB가 관계되지 않은 경우에 제조자가 적합성 선언을 하고 CE마크를 부착한다. 제품은 형식, 일련번호, 제조자 또는 판매자 이름 등으로 표시한다.

[그림 3-9] Annex II의 CE 마크



둘째, Annex III, IV, V의 CE마크 표시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NB가 관계되는 경우에 CE마크와 해당 NB의 ID Number를 같이 표시한다.

[그림 3-10] Annex III, IV, V의 CE 마크



셋째, 기타 무선기기의 CE마크 표시는 제품이 속해 있는 class에 따라 상이하 다. Class II 무선기기의 경우에는 NB의 ID Number뒤에 Equipment Class Identifier Number를 같이 표시한다. Class II 무선기기에는 사용자가 허가를 필요로 하는 무선기와 국가에서 제한하는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기기가 해당된다.

CE ! 표시는 유럽차원의 합의된 주파수가 없는 무선기기나 합의된 표준이 없는 기기에 대하여 붙이는 일종의 잠정마크이다. CE ! 표시의 유효기간은 없으며, NB의 자체 확인후 부착한다. 해당기기에 대하여는 EU 집행위원회에 보고 후 EU 차원의 합의된 주파수 배분, 합의표준 개발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림 3-11] 기타 무선기기의 CE 마크



유럽의 인증은 최초에 받은 인증이 영구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단, 유럽연합 지침 및 적용 기술기준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급자 적합선언을 다시 이행해야 한다. 단, NB의 인증을 획득한 경우에는 NB에 변경을 신청, NB에서 변경내용 검토 후 '신규' 또는 '변경'으로 처리한다.

유럽에서 시장 감독 권한은 EC(유럽위원회)가 가지고 있다. 여기서 감독이란 위원회에서 나온 감독관이 소매업자, 제조업자 혹은 수입업자로부터 추가 조사를 위해 제품을 하나 선정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조사 과정에서 위원회는 해당 제품이 모든 관련 기술 기준/요건을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시정 조치 행위는 CE 미준수의 정도/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EU 이사회 규정은 각 회원국이 CE 마크를 국내법으로 도입하여 시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CE 마크의 운용 및 관련 통관검사, 시장 감시 및

단속, 위반 시 조치는 각 회원국의 의무이자 관할 사항이다. CE 마크가 없는 제품은 역내 시장으로 반입 및 판매할 수 없으며, 위반 시는 제품 회수, 벌금부과 또는 징역형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내법(national law)에 의해 결정된다. 처벌 규정은 각 회원국 별로 차이가 있으나, CE 마크 부착의무 위반 시 수입업자에게 최대 7천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유럽연합의 사후관리는 유럽연합의 사후관리기구(Market Surveillance)와 개별 회원국의 규제기관과의 합동 관리, 인증기관(Notified Body)의 관리 감독이 이루어진다. 해당 기관들은 소비자의 불만제기, 경쟁업체의 고발 등으로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수시 정기 사후관리를 통해 CE-Mark의 획득여부, 자국 기술규격에 부합한지 여부, DoC 절차에 따른 기록보관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벌칙의 유형은 개별 회원국의 규제내용에 따라 상이하나 경미한 위배사항에 대한 경고, 벌금 부과, 징역 등으로 대별될 수 있다.

제 3 절 일본

1. 방송통신기자재 분야 교역량

<표 3-21> 對일본 방송통신기자재 수출입 현황

[단위 : 달러]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유선 통신 기기	수출	99,314,499	113,848,352	101,618,423	144,419,658	176,748,882
	수입	55,787,724	76,080,918	59,358,824	49,493,978	73,893,630
	무역 수지	43,526,775	37,767,434	42,259,599	94,925,680	102,855,252
무선 통신 기기	수출	835,872,855	870,919,813	1,117,885,649	1,345,445,257	1,408,267,577
	수입	700,360,642	665,882,522	975,537,818	847,399,838	608,290,976
	무역 수지	135,512,213	205,037,291	142,347,831	498,045,419	799,976,601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출	802,210,837	793,675,350	677,943,184	513,989,677	584,815,763
	수입	850,099,816	965,211,907	874,462,433	546,599,314	557,423,160
	무역 수지	(47,888,979)	(171,536,557)	(196,519,249)	(32,609,637)	27,392,603
영상 기기	수출	234,316,816	201,488,227	164,539,054	176,111,597	238,066,294
	수입	460,446,103	397,397,343	410,930,868	337,444,426	331,488,901
	무역 수지	(226,129,287)	(195,909,116)	(246,391,814)	(161,332,829)	(93,422,607)
전체	수출	1,971,715,007	1,979,931,742	2,061,986,310	2,179,966,189	2,407,898,516
	수입	2,066,694,285	2,104,572,690	2,320,289,943	1,780,937,556	1,571,096,667
	무역 수지	(94,979,278)	(124,640,948)	(258,303,633)	399,028,633	836,801,849

<표 3-22> 對일본 방송통신기자재 수출입 상위 5개 품목

[단위 : 달러]

수출			
순	구분	품목	금액
1	무선통신기기	무선중계기	402,977,924
2	무선통신기기	무선전화기	366,745,177
3	무선통신기기	시분할식 전화기	264,465,220
4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전산기록매체	162,756,263
5	유선통신기기	유선전송장치	143,175,191
수입			
순	구분	품목	금액
1	무선통신기기	무선통신기기부품	280,026,075
2	컴퓨터 및 주변기기	컴퓨터부품	231,892,651
3	영상기기	비디오카메라	224,408,058
4	무선통신기기	무선중계기	154,399,105
5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전산기록매체	76,469,791

2. 적합성평가제도

일본의 적합성평가 유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유선단말기기 인증과 전파법에 의한 특정무선기기 인증으로 구분되며, 이외 정보기기에 대하여는 전자파자주 규제협의회(VCCI)⁹⁾의 단체 자율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9) 전자파장해자주규제협의회(VCCI) : Voluntary Control Council for Interference

2004년 1월 26일, 기존의 인증 제도를 운영하면서 규제완화 및 인증제도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전면적인 인증 제도를 개편 운영할 것으로 제안하였고 그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 등을 해당 개편운영체계에 맞추어 개정하였다. 이는 민간부문의 역량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단말기기에 대하여 국가의 대행기관인 지정인증기관이 사전 인정하던 기존의 제도를 개정한 것이다.

<표 3-23> 일본 적합성평가제도 개정 포인트 및 상세 내용

개정 포인트	내 용
지정인증기관에서 등록인증기관으로 이행	-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시키는 자이면 누구나 등록 가능한, 소위 제 3자 인증기관으로서의 등록인증기관으로 이행 - 단말기기의 기술기준적합인정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총무대신의 등록을 받은 자가 등록인증기관이 됨
기술기준적합 자기확인제도의 도입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특정단말기기에 대하여 등록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는 이전 방법과 더불어 자체적으로 기술기준 적합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기술기준적합 자기확인제도가 도입됨
국가에 의한 사후조치의 도입	- 이전에는 지정인증기관이 모든 단말기기를 사전에 체크했지만, 기술기준적합자기확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단말기기에 대하여 시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례에 따라 개선명령, 표시금지, 방해방지명령 및 무표시로 간주하는 등의 국가에 의한 사후조치가 도입됨

일본은 2004년 1월 인증규제 완화 이후 민간인증기관이 인증하지 않는 기기 등에 대한 인증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인증을 민간인증기관에 위탁하였다. 또한 단말기기 및 일부 특정무선설비에 관해서는, 제조자들이 스스로 기술 기준의 적합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적합성선언제도(DoC/SDoC)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성을 가진 인증기관만이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다수의 제3자 민간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확대하였다.

그리고 기존 공익법인 3개 업체를 포함한 다수의 등록인증기관이 인증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인증기관에 의한 인증취득을 원칙으로 하나, 2004년부터는 일부 유·무선기기에 대하여 공급자적합선언(SDoC)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이다.

일본은 인증제도의 운영 및 사후관리 역할로 그 기능이 변화하고 주로 민간인증기관을 등록하는 기능, 민간인증기관들의 관리 감독, 시장 내 유통되는 인증기기에 대한 사후관리, 관련 소비자 불만의 접수 및 처리 등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일본 적합성평가 대상기기는 크게 단말기기와 특정 무선기기로 나뉜다.

첫째, 단말기기에는 1) 전화망에 연결되는 단말기기(전화기, 교환기, 휴대폰, 모뎀, 팩스 등), 2) 무선페이징설비에 연결되는 단말기기, 3) ISDN 망에 연결되는 단말기기, 4) 임대회선 또는 디지털전송설비에 연결되는 단말기기가 있다.

둘째, 특정무선기기는 크게 1) 면허가 필요 없는 특정 무선설비와 2) 포괄면허에 해당하는 특정무선설비, 3) 검사가 면제되는 그 밖의 무선설비, 4) 형식검정 대상설비, 5) 특별 특정 무선설비로 나뉜다.

연구개발, 전시, 개인이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무성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품목이 있다.

일본의 단말기기 인증제도와 관련한 적용 법령은 크게 '국내 인증제도의 시행'과 '해외국가와 맺은 유·무선단말기기 상호인정협정의 추진을 위한 후속법령'으로 나눌 수 있다.

<표 3-24> 일본 적합성평가제도 근거 법령

구분	법령
국내 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한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통신사업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전파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단말설비 등 규칙 ○ 무선설비규칙 ○ 단말기기의 기술기준적합인정 및 설계에 관한 인증에 관한 규칙 ○ 특정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적합증명 등에 관한 규칙 ○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인정시험사업자 등에 관한 성령 ○ 인정점검사업자 등 규칙 ○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한 지정 기관을 지정한 성령 ○ 전기통신사업법 관계 심사기준 ○ 전파법 관계 심사기준
해외 국가와의 상호인정협정 시행을 위한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기기에 관계된 적합성 평가의 유럽공동체와의 상호 인정의 실시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특정 기기에 관계된 적합성 평가의 유럽공동체와의 상호 인정의 실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정 조사 기관 등에 관한 성령 ○ 특정 기기에 관계된 적합성 평가의 유럽공동체와의 상호 인정의 실시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규정한 지정 조사 기관을 지정한 성령 ○ 특정 기기에 관계된 적합성 평가의 유럽공동체와의 상호 인정의 실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표시등에 관한 성령

일본 정보통신기자재의 인증은 국가기관인 총무성과 민간인증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일본적합성인증협회(JAB)는 유럽연합 및 싱가포르와의 MRA 추진을 위한 지정인정기구(Designated Accreditation Body)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경영시스템, 시험소, 요원, 제품의 대부분의 인정분야를 커버하고 있어, 일본의 대표 인정기관(Accreditation Body)으로 볼 수 있다.

<표 3-25> 일본 적합성평가제도 운영 체계

기관의 주요 기능	담당 기관	관련 담당업무
규제기관	총무성	- 인증규제의 개발
등록기관	총무성	- 일본 및 외국의 시험 및 인증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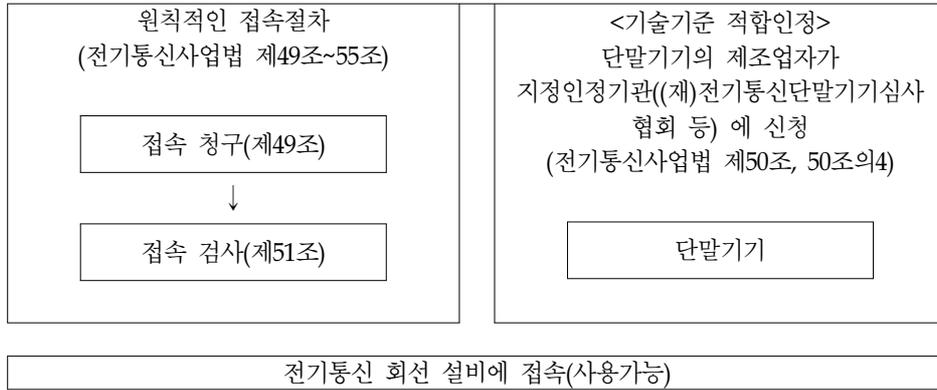
지정기관		가 일본 내 시험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등록업무 수행
인정기관	JAB(Japan Accreditation Board) (재단법인)일본적합성인정협회	- 외국과의 MRA 시 활용하는 인정기구 - 적합성평가체계의 거의 모든 분야의 인정을 실시(경영시스템, 시험소, 요원, 제품)
시험기관	o 단말기기 및 무선설비 : 일반시험기관 o 지정시험기관 제도 폐지(04.1) (시험능력이 있는 제조자는 누구나 시험성적서 발행가능) o 정보기기 : VCCI 승인시험기관 o SDoC에 의한 자체시험	- 단말기기, 무선설비, 정보기기 등에 대한 시험업무 * 인정시험사업자(단말기기) 및 인정 점검 사업자(무선설비) 역할 폐지
인증기관	o 등록인정(증명)기관 (개편전 : 지정인정기관) (직접시험가능) - JATE, TELEC - DSPR, Chemitox - JARD(아마추어무선국 협회) - TUV(추후라인란드)동경지사	

일본 적합성평가 절차는 근거 법령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절차

단말기기 제조업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총무대신, 지정 인정기관 또는 승인 인정기관이 단말기기(또는 단말기기의 설계)의 기술기준적합에 대해 단말기기의 설계, 시험 데이터 등을 기초로 심사한다. 심사 결과 적합할 때에는 성령으로 지정한 마크를 해당 단말기기에 부착한다. (단말기기 설계 인증의 경우는 신청자가 각각의 단말기기에 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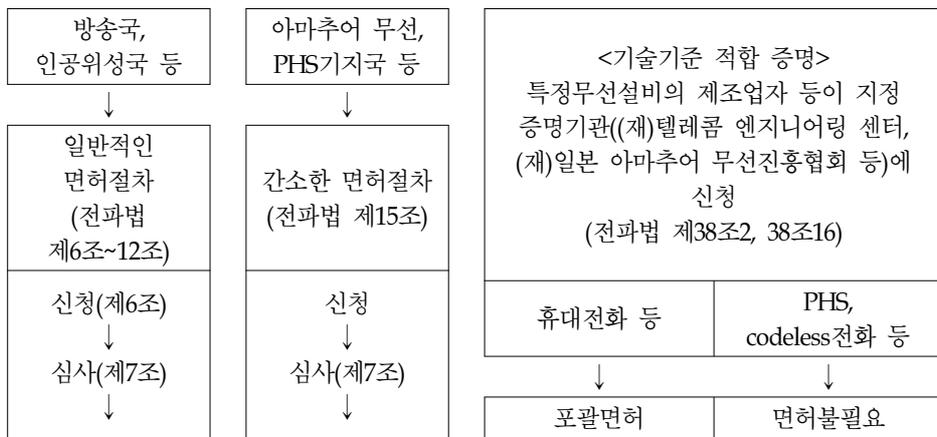
<표 3-26> 일본의 전기통신기기 기술기준 적합인정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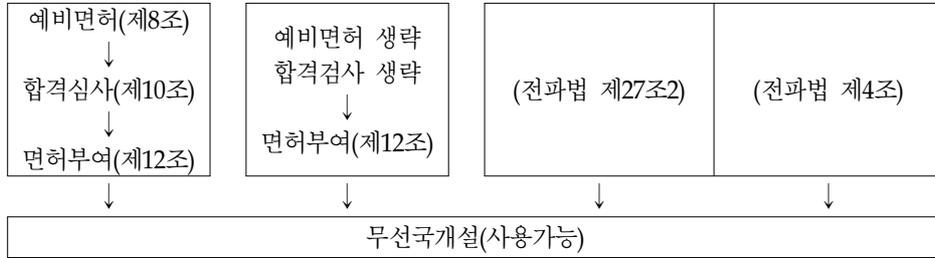


둘째, 전파법상의 절차

특정 무선설비의 제조업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으면 총무대신, 지정증명기관 또는 승인증명기관은 특정무선설비(또는 특정무선설비 공사설계)의 기술기준 적합에 대해 특정무선 설비 공사설계, 시험데이터 등을 기초로 심사한다. 그리고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정되면 성령으로 지정한 마크를 해당 기기에 부착한다. (특정무선설비의 공사설계 인준은 신청자가 각각의 특정무선설비에 표시를 부착)

<표 3-27> 일본의 특정무선설비 기술기준 적합증명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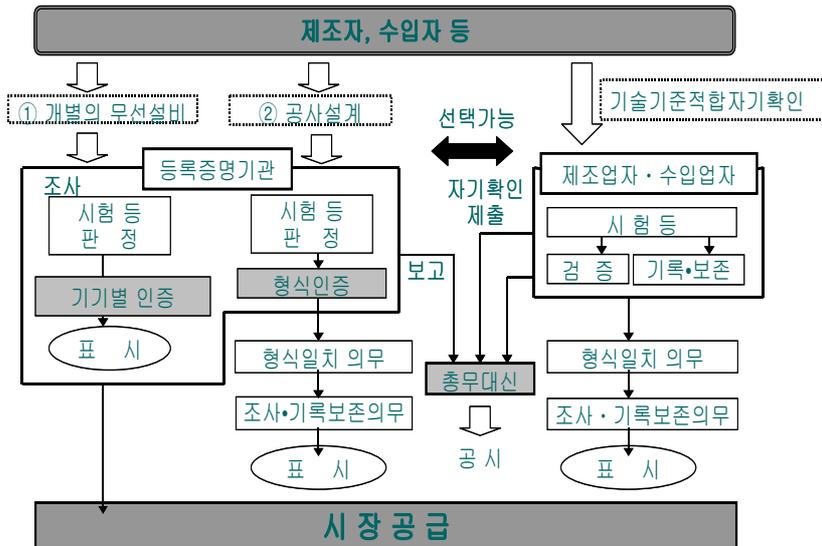
셋째, 기술기준적합확인(SDoC) 절차

총무성이 정한 시험방법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공급자가 직접 시험을 수행하거나 외부시험소를 이용한다.

넷째, 형식검정절차

제조자가 총무성 산하 정보통신연구기구(NICT)에 시험 인증을 의뢰하여, 형식검정서를 발급받는다.

[그림 3-12] 일본의 형식검정절차



그리고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을 살펴보면, JATE 및 TELEC의 업무규정상 인증 심사 소요기간은 15일이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5일 정도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

기술기준적합증명의 경우, 한 건당 신청 기본료는 20,000엔이다. 단, 먼저 제출한 동일한 무선설비로 공사설계서의 기재에 변경이 없는 경우의 기본료는 13,000엔이다. 그리고 추출시험에 대한 1대당 시험 수수료는 1대째 시험수수료 및 2대째 이후에 곱하여 시험수수료의 금액의 합이 된다. 그리고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기술기준적합증명 업무를 한 경우의 경비는 다음과 같다.

우선, 증명원의 파견비는 1) TELEC 사무소와 기술기준적합장소와의 사이에 이동에 필요로 하는 시간 수에 대해서 1시간당 4,800엔으로 한다. 단, 1시간미만 수는 올림으로 한다. 2) 전기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 수는 사용하는 교통기관의 표준소요시간에 따른 것으로 하고, 동 기준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 TELEC과 신청자 쌍방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여비의 경우, TELEC의 여비규정에 따른다.

그리고 인증 유형에 따라,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상이하다.

첫째, 인증절차(기술기준적합증명, 적합인증)시 제출서류는 아래 표와 같다.

<표 3-28> 인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구분	첨부 서류	설명
1	기기개요 설명서	○ 단말 기기의 명칭, 용도, 구성, 기능 및 사양의 개요에 대해 설명한 자료
2	시험 결과	○ 단말 기기에 대해서, 기술 기준 및 기술적 조건에 적합하고 있는

	보고서(주1)	것을 설명한 자료로, 다음의(1)및(2)에 적합하는 시험 결과를 기재한 서류 및 해당 시험 결과가 다음의(1)및(2)에 적합하는 것을 나타내는 서류를 말한다. (1) 전기통신 사업법 제87조 제 1항제2호의 교정 등을 받은 측정 기기 등을 사용해 간 것인 것.(주2) (2) 기술 기준 마다 총무 대신이 따로 고시하는 시험 방법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간 시험인 것.(기술적 조건에 대해서는, 해당 기술적 조건과 관련되는 전기 통신사업자, 당 협회 및 신청 기기와 관련되는 제조업자의 삼자에 합의한 시험 방법, 외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해 간 시험인 것.)
3	외관도	○ 단말 기기의 외관, 구조 및 치수를 기재한 도면
4	접속 계통도	○ 단말 기기 및 해당 기기와 접속되는 다른 기기와 전기 통신회선 설비와의 접속 방법을 기재한 도면 및 해당 기기에 대해서, 회로의 구성을 각 기능 블록의 접속 구성으로서 기재한 도면
5	블럭도	○ 해당 기기에 대해서, 회로의 구성을 기재한 도면
6	조작 매뉴얼	○ 단말 기기 취급 및 조작의 방법을 설명한 자료
7	확인 방법서	○ 단말 기기의 설계에 대한 인증과 관련되는 신청의 경우에 필요한 자료이며, 해당 설계에 근거하는 단말 기기의 모두가 해당 설계에 합치하는 것의 확인의 방법과 관련되는 사항을 기록한 자료이며, 구체적으로는 인정등 규칙 별표 제3호에 정하는 자료

(주1) 시험 결과 보고서의 제출이 없는 경우는, 단말 기기(실기)의 제출이 필요함. 이 경우, 추가된 수수료를 받게 된다.

(주2) 시험 때 사용한 측정기 등 마다 다음을 기재한 자료를 제출한다.

1.명칭 또는 형식, 2.제조 사업자명, 3.제조 번호, 4.교정 등의 연월일, 5.교정 등을 실시한 사람의 이름 또는 명칭

(주3) 규칙 별표 제3호에 정하는 자료로 바꾸어 단말 기기 취급과 관련되는 공장 등의 전부가 규칙 별표 제3호로 내거는 사항의 모두에 적합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쪽인가 또는 이것에 준하는 등록증(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표 3-29> 확인 방법서의 기재사항(인정 등 규칙 별표 제3호)

기재사항	기재해야 할 내용
1 조직 및 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 전기통신 사업법 제57조제1항의 의무(이하 「설계 합치 의무」라고 한다.)의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를 관리해, 실행해, 검증하기 위한 조직 및 관리 책임자의 책임 및 권한의 분담이 명확하게 되고 있는 것의 설명
2 설계 합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관리 방법	○ 설계 합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말 기기 취급에 있어서의 관리 방법에 관한 규정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문서로서 정비되어 거기에 기초를 두어 설계 합치 의무가 적절히

	이행되는 것의 설명
3 단말 기기의 검사	o 설계 합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말 기기의 검사 순서 그 외 검사에 관한 규정이 문서로서 정비되어 거기에 기초를 두어 검사가 적절히 행해지는 것의 설명
4 측정기기 등의 관리	o 단말 기기의 검사에 필요한 측정기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 문서로서 정비되어 거기에 기초를 두어 측정기 등의 관리가 적절히 행해지는 것의 설명
5 그 외 사항	

둘째, 적합성선언(기술기준자기적합확인)시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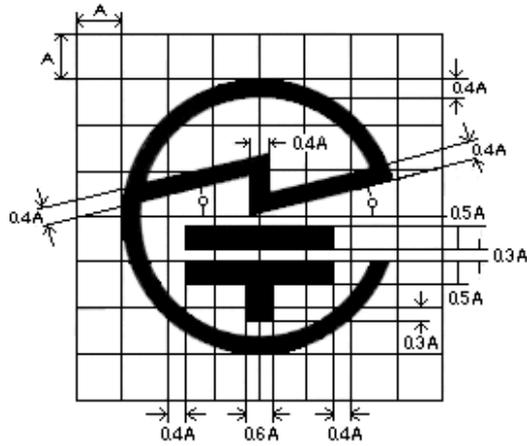
적합성 확인 후 SDoC 서식과 1)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 2) 제품의 기기 종별, 등급 및 형식, 3) 기술기준적합에 사용된 확인방법 및 결과 개요, 4) 형식에 관한 자기입증의 경우 형식과 동일하다는 입증물, 5) 사업장/공장 명칭, 소재지, 검증에 사용된 측정기 명칭 및 교정기록 등의 서류를 제출한다.

적합성평가 마크 부착도 인증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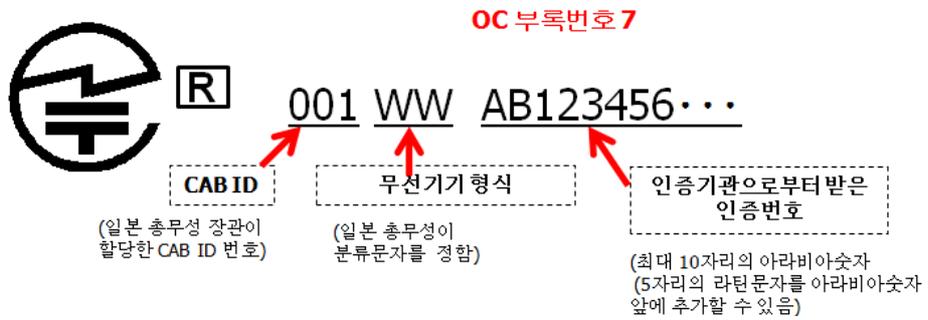
첫째, 기술기준 적합증명 표시

인증 받은 제품은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인증표시는 인증 마크와 인증번호로 구성되며. 크기는 직경 5mm 이상(부피가 100cc 이하인 경우 3mm 이상)되어야 하고, 재질은 쉽게 손상이 되지 않아야 하고, 색채는 인증표시를 편하게 식별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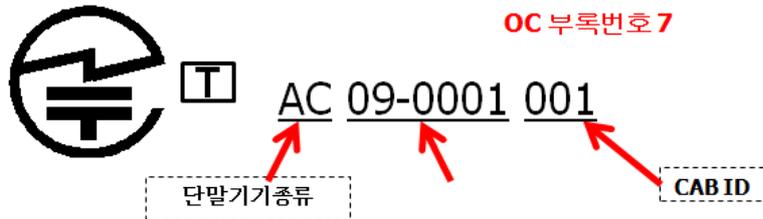
[그림 3-13] 인증마크 도안



[그림 3-14] 인증된 무선기기의 인증 표시



[그림 3-15] 인증된 전기통신단말기기의 인증 표시



둘째, 기술기준 자기적합확인 표시

[그림 3-16] 자기인증에 따른 인증 표시



일본의 경우에도 최초 인증이 영구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인증 유효기간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인증 변경 및 갱신 조건도 일본 역시 인증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제조사 자기적합확인(SDoC), 기술기준 적합증명/인정(Certification)의 신청 당시 기록했던 주요 사항(적용 기술기준의 주요 사항 이나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인증 갱신 기간은 없다.

일본에서는 VCCI가 제품의 사료,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 구매(시료용), 서류 검토의 방법을 통해 사후 시장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인증 미필시에는 1)경고, 2)벌금, 3)허가 중지, 4) 허가 취소의 제재조치가 가해지며, 총무성은 인증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제품을 적발 시에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방해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방해금지 명령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 또한 1억 엔 이하의 벌금형의 법인 중과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 4 절 베트남

1. 방송통신기자재 분야 교역량

<표 3-45> 對베트남 방송통신기자재 수출입 현황

[단위 : 달러]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유선 통신 기기	수출	23,711,589	4,450,457	9,191,648	5,711,848	6,503,424
	수입	58,013	2,021,747	15,253,947	8,717,574	13,406,999
	무역 수지	23,653,576	2,428,710	(6,062,299)	(3,005,726)	(6,903,575)
무선 통신 기기	수출	243,482,091	179,314,353	101,208,796	270,630,164	757,964,093
	수입	975,762	665,250	1,885,958	65,036,008	73,675,153
	무역 수지	242,506,329	178,649,103	99,322,838	205,594,156	684,288,940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출	30,930,860	40,790,180	36,469,663	50,249,722	48,005,434
	수입	13,086,615	20,394,497	15,822,842	13,078,872	25,657,245
	무역 수지	17,844,245	20,395,683	20,646,821	37,170,850	22,348,189
영상 기기	수출	27,710,935	43,925,947	38,824,239	36,838,981	54,352,882
	수입	273,900	10,752,733	9,100,487	11,695,570	10,081,981
	무역 수지	27,437,035	33,173,214	29,723,752	25,143,411	44,270,901
전체	수출	325,835,475	268,480,937	185,694,346	363,430,715	866,825,833
	수입	14,394,290	33,834,227	42,063,234	98,528,024	122,821,378
	무역 수지	311,441,185	234,646,710	143,631,112	264,902,691	744,004,455

<표 3-46> 對베트남 방송통신기자재 수출입 상위 5개 품목

[단위 : 달러]

수출			
순	구분	품목	금액
1	무선통신기기	무선통신기기부품	660,272,422
2	무선통신기기	코드분할식전화기	57,214,108
3	영상기기	칼라TV부품	53,058,342
4	컴퓨터 및 주변기기	컴퓨터부품	20,775,666
5	무선통신기기	시분할식전화기	15,451,914
수입			
순	구분	품목	금액
1	무선통신기기	무선통신기기부품	70,317,387
2	컴퓨터 및 주변기기	잉크젯프린터	9,961,505
3	영상기기	비디오카메라	9,650,772
4	유선통신기기	유선통신기기부품	9,148,632
5	컴퓨터 및 주변기기	컴퓨터부품	8,224,166

2. 적합성평가제도

현재 베트남은 인터넷과 이동통신이 급격한 확산 일로에 있으며, 컴퓨터와 정보기기, 통신기기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IT 전략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미개척시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휴대폰과 교환기, CDMA 시스템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KT와 SK텔레콤 등 통신사업자들의 진출도 가속화하고 있어 향후 관련 중소기업들의 동반진출 역시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베트남 인증제도는 1995년 우정통신부 산하 과학기술 국제협력국(DGPT)에서 최초로 유선기기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면서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후 국제협력국의 인증업무가 1999년 우정통신품질부(PTQC)로 이관되면서 유무선 및 IT기기로 그 분야가 확대되었다. 우정통신품질부는 베트남의 인증기관으로서, 인증관련 규정 및 기술기준을 신설·시행하고 있으며, 외국과의 상호인정협정 체결의 주체로서 다양한 분야에 관여하고 있다.

베트남은 아시아 국가최초로 우리나라와 방송통신기자재분야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한 국가로서, 2011년 8월 그 대상 분야가 유, 무선통신기기 및 컴퓨터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부분의 인증시험을 국내에서 처리할 수가 있다. 우리기업은 제품만 가지고 국내 지정시험기관을 방문하면 언제든 베트남 인증 시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우리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방송통신기자재 분야 인증대상 기기는 교환기, 인터넷접속장비, PABX 교환기, 전송장비, 광섬유, 동선, 무선전화기, ISDN용 단말장치, 각종 전파송수신기, TELEX, FAX, 페이저, 핸드폰, 비디오폰, 자동전화기 등을 포함한 무선기기, 무선기기, 유무선통신단말기 및 IT기기 등을 포함한다.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전파 송신기와 수신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용주파수 및 채널에 대한 MPT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표준적합성인증의 범위에 주파수 및 채널에 대한 인증이 포함되어 있어 PTQC 인증을 받을 경우 별도의 승인절차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베트남은 중고기기에 대한 인증과 수입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베트남으로 중고기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전체 수출물량의 15~25%를 대상으로 성적보고서를 발부 받아 제출해야 한다. 수입 중고기기에 대한 인증절차는 신제품에 대한

인증절차와 동일하며, 반드시 베트남 내에서 승인된(recognized) 시험기관에 의한 시험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베트남 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수입기기에 대해서는 산업표준을 적용하여 인증을 수행하며, 신청인은 해당 산업표준과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하여 인증을 신청해야한다.

베트남의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관련 법령은 우정통신법과 같은 법의 시행령으로 구성되는 기본법령, 인증 및 지정관련 세부법령들(MPT 부령), 유무선 및 EMC 등에 대한 기술표준들(MPT 부령)이 있다.

첫째, 기본법령

전파법, 전기통신기본법에 해당하는 우정통신법(Ordinance No.43)과 시행령인 Decree No.157 및 Decree No.160 등으로 이루어진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정통신 주무 부처는 전기통신 품질관리에 대한 표준을 제정한다.(Ordinance No.43, 제53조25항)

우정통신 주무 부처는 품질관리의 수행을 위하여 국내 및 해외 시험조직들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규정하고 시험 및 측정을 위한 소관 관청을 지정한다. (Ordinance No.43, 제54조1항)

베트남과 해외국, 또는 베트남과 국제기구 사이의 표준 및 전기통신 품질에 대한 상호 인정은 인정베트남이 체결하였거나 가입하고 있는 국제조약의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Ordinance No.43, 제54조2항)

우정통신부는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전기통신 기기 가운데 표준적합성 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기들의 목록을 공표한다. (Decree No.160, 제52조3항)

우정통신부는 전기통신 기기에 대한 품질관리의 내용과 형식, 절차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Decree No.160, 제52조6항)

<표 3-32> 베트남 적합성평가 근거 법령

법령	규정번호	공표일	주요내용
표준적합성인증에 관한 규정 (Certification of standard compatibility of postal and telecommunications supplies and equipment)	D e c i s i o n No.285/2000/Q D-TCBD	29/03/2000	표준적합성 인증서의 발급 과정과 절차, 사후관리, 행 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표준적합성인증대상 기기목록 (List of telecom supplies and equipment which are compulsory to obtain certificate)	D e c i s i o n No.477/2001/Q D-TCBD	16/06/2002	표준적합성 인증을 취득해 야만 하는 대상 설비 및 기 기의 목록을 규정
인증마크의 발급과 부착에 관한 규정 (Regulation on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standard conformity stamps)	D e c i s i o n No.41/2004/Q D-BBCVT	05/10/2004	인증마크의 발급과 부착에 관한 세부 규정
인증마크부착 대상기기목록 (List of telecom equipment which must be affixed with standard conformity stamp)	D e c i s i o n No.42/2004/Q D-BBCVT	05/10/2004	인증마크 의무부착 대상기 기 목록과 마크의 부착방법 을 규정
시험기관의 지정에 관한 규정 (Designation of telecommunications testing laboratories)	D e c i s i o n No.171/2003/Q D-BBCVT	29/10/2003	베트남 정부에서 지정하는 국가공인시험기관 지정규칙

해외 지정시험기관의 승인에 관한 규정 (Recognition of designated foreign testing laboratories by the Ministry of Posts and Telematics of Vietnam)	Decision No.172/2003/Q D-BBCTV	29/10/2003	베트남 정부에서 지정하는 해외공인시험기관 지정규칙
---	--------------------------------------	------------	--------------------------------

한국의 경우 시험기관에 대한 인정과 지정업무, 그리고 기기에 대한 인증업무가 모두 국립전파연구원으로 일원화되어 있으나, 베트남의 경우에는 미국, 유럽연합 등 해외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적합성평가 기관이 각각 분리되어 있다. 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업무는 우정통신부 과학기술국(STD)에서, 시험·인증업무는 우정통신부 품질관리소(PTQC)가 각각 수행하며, 시험기관에 대한 인정업무는 과학기술부 표준품질국(STAMEQ) 산하의 베트남시험기관인정기구(VILAS)에서 수행한다.

그리고 상호인정협정 체결 시 해외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승인 업무와 베트남 지정시험기관의 상대국 지정통보 업무는 우정통신부 과학기술국(STD)에서 담당한다.

<표 3-33> 베트남 적합성평가 운영 체계

분야	베트남	비고(한국)
규제기관	우정통신부(MPT)	방송통신위원회
인정기구	베트남 시험기관인정기구(VILAS)	국립전파연구원(구 전파연구소)
지정기관	우정통신부 과학기술국(STD)	국립전파연구원(구 전파연구소)
인증기관	우정통신부 품질관리소(PTQC)	국립전파연구원(구 전파연구소)
시험기관	지정 시험기관	지정 시험기관(민간)

다음 단락부터는 베트남의 주요 적합성평가 운영 기관들의 조직 구성과 역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3-34> 베트남 우정통신부(MPT)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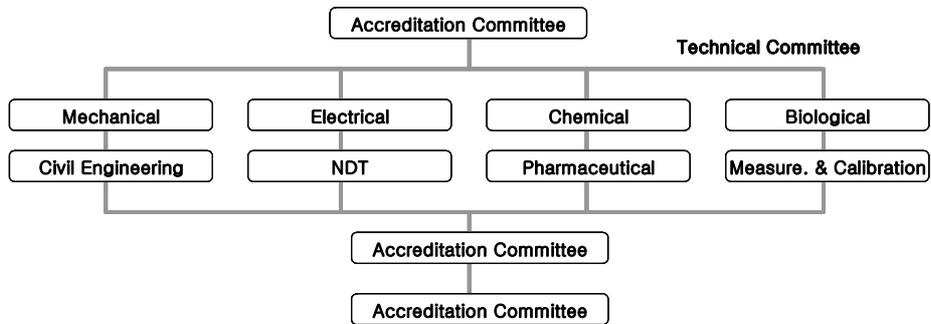


베트남 시험기관인정기구(VILAS)

'95년 과학기술부(MOST) 표준품질국(STAMEQ) 산하에 설립된 인정사무국(BoA)의 세부 조직으로서, ISO/IEC 가이드 17025에 따라 시험기관에 대한 인정업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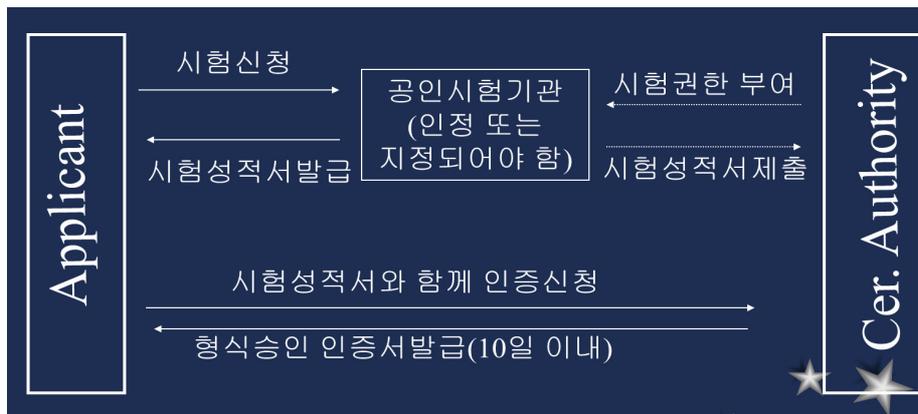
수행한다. ISO/IEC 17025에 의한 일반기준 이외에 Electrical(통신포함)을 비롯한 8개 분야에 대한 세부기준을 설정, 특정 시험방법에 대한 인정을 부여한다. 즉, VILAS 인정에는 ISO/IEC 17025 이외에 세부 자격요건이 추가되며, 구체적인 시험방법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8개의 분야별 Technical Committee에서 기술적 검토 후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그림 3-17] 베트남 시험기관 인정기구(VILAS) 조직도



베트남의 적합성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3-18] 베트남 적합성평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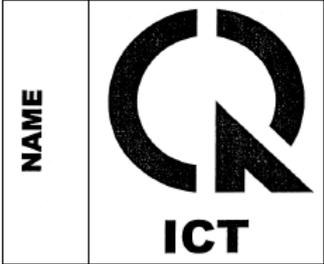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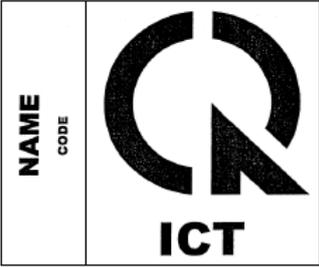
베트남 인증 기간은 근무일 기준으로 10일 이내 정도가 소요된다. 단, 검토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서면으로 통보하고, 특별한 사유로 인증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인증 처리기간은 최대 2달을 넘기기 않는다.

인증시 소요 비용은 “우정통신기기 인증서 발급 요금에 대한 규정 Decision 150/2000/QD-BTC dated 19/09/2000 of the Minister of Finance, Fees for granting of standard conformity certificates for postal and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and supplies)에 근거하여, 인증신청서류 제출과 함께 PTQC에 납부하며, 요금수준은 베트남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에 의해 정해진 바를 따른다. 이 때 인증수수료에 시험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수입 또는 제조되는 기기의 수량과 관계없이 일괄 징수한다. 대략적인 인증 수수료는 핸드폰 20만원, 무선전화기 40만원, 광섬유 전송장비 70만원 수준이다.

인증 신청 시 Decision 285, 제11조에 근거하여, 1) 인증신청서(주어진 양식), 2) 수입 또는 수출 허가증, 투자결정서(투자 프로젝트를 위해 수입되는 기기들의 경우), 또는 제조허가증(정부 공증인에 의해 공증된 것), 3) 기술문서(기술적 설명, 회로도, 기술스펙, 기기의 사진, 사용자설명서), 4)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 모든 신청서류는 모든 신청서류는 영어로도 작성이 가능하며, 인증기관(PTQC)은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토록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 적합성평가 표시는 인증 유형에 따라 다르며, 이는 아래 표와 같다.

<표 3-35> 베트남 적합성평가 표시

인증 유형	설명	인증 표시
적합성선언 (DoC)	NAME에는 인증신청자 또는 베트남 현지대리인의 기관명을 기입한다.	
형식승인	NAME에는 인증신청자 또는 베트남 현지대리인의 기관명을 기입한다. CODE에는 PTQC 승인 후 발급된 인증번호를 기입한다.	

모든 인증에는 일련번호와 함께 기기 유형에 따른 식별기호가 부여되며,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해당 일련번호와 식별기호가 기재된 라벨이나 스탬프를 제품에 부착, 또는 인쇄 후 제품을 판매해야 한다.(Decision 285 Article 10)

MPT에서는 표준인증스탬프의 견본을 발행하며, 스탬프에는 1) 스탬프 명칭, 2) 스탬프 발행자의 이름, 3) 기기 유형과 제조국, 4) 스탬프 코드의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표 3-36> 표준인증스탬프 의무부착 대상기기(Decision No.42/2004/QD-BBCVT)

순번	기기의 명칭
1	- Terminals connected to the public-service telephone network (PSTN) through double-wire analog interfaces
1.1	- Fixed automatic telephones
1.2	- Cordless telephone (extended subscriber type)
1.3	- Facsimile equipment
1.4	- External modems
2	- Hand-held mobile terminals
2.1	- GSM terminals
2.2	- CDMA terminals
2.3	- PHS terminals

물론 인증대상 기기라고 할지라도 위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스탬프 부착은 권고사항일 뿐 의무사항은 아니다. 스탬프 의무부착 대상 기기들은 주로 PSTN 단말기나 무선전화기, 팩스, 핸드폰, 모뎀 등과 같은 개인 통신기기들에 해당한다. 스탬프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어진 양식에 의한 신청서와 구비서류, 스탬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서류제출 후 3일 이내에 스탬프를 발급한다. 그리고 스탬프를 발급받은 자는 항상 그 사용 내역을 기록하여 보관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Decision No.41 Article 12) 그리고 내년 12월 15일 이전에 정해진 양식에 따른 스탬프 사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Decision 41 Article 14)

위에서 살펴보았던 국가들과 달리, 베트남의 표준적합성 인증서에는 유효기간이 존재한다. 단말기와 무선기기의 경우 2년이며 교환기와 전송장비의 경우 3년이다. 유효기관의 경과에 따른 인증의 갱신을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는 없으며, 최초 인증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Decision No.285, Article 21) 제품의 기술적 조건 즉, 기술스펙이 변경된 경우 인증서를 변경하여야 하며, 이때에도 다시 최초인증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 인증서를 변경해야 한다.(Decision 285 Article 21)

품질관리소(PTQC)는 기술기준을 위배하거나 제반 행정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인증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인증의 재취득은 처음 인증취득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Decision 285 Article 23)

베트남 정부는 무선기기에서 발사하는 주파수 이용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1억 VND(약 4,800 USD)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공지하였는데, 2011년 6월 27일자 법령 51/2011/ND-CP에서는 각종 RF 관련 규정위반에 대한 벌금의 범위 및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1년 9월 1일 이후 적발된 장비에 한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표 3-37> 벌금규정(51/2011/ND=CP)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파수 면허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위반
: 2만 VND ~ 1억 VND○ 전파의 품질, 방사선 안전성 및 EMC에 관한 규정 위반
: 20만 VND ~ 3천만 VND○ 주파수 및 위성 궤도의 등록에 관한 국제 협력 규정 위반
: 3천만 VND ~ 7천만 VND |
|---|

제 5 절 브라질

1. 방송통신기자재분야 교역량

<표 3-38> 對브라질 방송통신기자재 수출입 현황

[단위 : 달러]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유선 통신 기기	수출	5,446,655	12,710,633	4,882,555	1,767,800	3,590,230
	수입	219,273	385,679	82,229	79,573	273,565
	무역 수지	5,227,382	12,324,954	4,800,326	1,688,227	3,316,665
무선 통신 기기	수출	1,024,504,698	843,289,783	1,132,104,108	1,055,507,267	977,067,301
	수입	2,205,418	6,566,987	1,390,245	2,324,466	1,796,478
	무역 수지	1,022,299,280	836,722,796	1,130,713,863	1,053,182,801	975,270,823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출	243,607,740	246,466,866	177,314,279	213,664,590	249,701,043
	수입	327,003	421,347	822,457	178,823	580,729
	무역 수지	243,280,737	246,045,519	176,491,822	213,485,767	249,120,314
영상 기기	수출	290,572,792	265,148,864	381,709,364	289,316,932	467,434,546
	수입	35,108	12,202	440,474	379,675	130,407
	무역 수지	290,537,684	265,136,662	381,268,890	288,937,257	467,304,139
전체	수출	1,564,131,885	1,367,616,146	1,696,010,306	1,560,256,589	1,697,793,120
	수입	2,786,802	7,386,215	2,735,405	2,962,537	2,781,179

	무역 수지	1,561,345,083	1,360,229,931	1,693,274,901	1,557,294,052	1,695,011,941
--	----------	---------------	---------------	---------------	---------------	---------------

<표 3-39> 對브라질 방송통신기자재 수출입 상위 5개 품목

[단위 : 달러]

수출			
순	구분	품목	금액
1	무선통신기기	무선통신기기부품	957,273,868
2	영상기기	칼라TV부품	458,146,327
3	컴퓨터 및 주변기기	컴퓨터부품	95,099,920
4	컴퓨터 및 주변기기	HDD	65,656,587
5	컴퓨터 및 주변기기	데이터디스플레이	61,829,730
수입			
순	구분	품목	금액
1	컴퓨터 및 주변기기	무선통신기기부품	1,639,128
2	컴퓨터 및 주변기기	HDD	391,510
3	유선통신기기	유선통신기기부품	273,514
4	유선컴퓨터 및 주변기기통신기기	컴퓨터부품	100,522
5	무선통신기기	무선중계기	68,863

2. 적합성평가제도

브라질은 수입품의 인증에 대하여 까다롭고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브라질의 인증은 크게 전기안전 및 EMC 분야의 INMETRO 인증과 정보통신 분야의 ANATEL 인증으로 구분된다. 브라질 시장에서 정보통신기자재를 유통하고자 한다면 위 인증을 반드시 획득한 후 수출해야 한다.

INMETRO(Instituto Nacional de Metrologia, Normalização E Qualidade Industrial)는 브라질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생산성 및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1973년 12월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 INMETRO 산하 Conmetro(측정표준 및 품질에 관한 국가 정책을 수립할 책임이 있는 국가 측정 표준, 표준화 및 산업 품질 이사회)에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정한 측정표준 및 품질에 관한 국가 정책을 이행한다.

INMETRO의 주요 임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 측정 표준을 관리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 또는 다른 국가의 표준과의 동등성을 확립하기 위해 국제/지역 비교에 참여함으로써 국제단위계(SI)의 단위로 측정표준의 소급성을 유지하고, 소급성을 해당 국가의 측정 표준으로 확장하여 그 측정표준을 국제적 수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세계에서 인정을 받는다. 이 모두는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는데 필요하다. 그리고 제품, 공정, 서비스 및 인력 분야에서 규정의 승인을 포함하는 적합성 평가 프로그램(강제 혹은 임의)을 개발한다. 교정기관 및 시험기관, 숙련된 시험 공급자, 인증기관, 검사, 드릴링 기타의 인정 활동을 계획 및 이행한다. 이 모두는 국가의 기술 서비스 인프라의 개발에 필요한 것들이다. 각종 제품의 적합성평가를 주관하여, 기준에 합당한 제품에 한하여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적합성평가는 ABNT/ISO, IEC등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브라질 적합성 평가 기준인 SBAC도 적용한다.

ABNT(Associação Brasileira de Normas Técnicas, 브라질 국립 기술표준협회)는 국립 기술표준협회로, 브라질의 전 산업에 걸친 임의표준을 개발하는 비영리 조직입니다. 1940년 각종 기술 분야에서 품질을 향상시키고 세계 규격을 갖추

도록 장려하고자 설립되었다. ISO, IEC, COPANT, AMN 등 세계 인증기관과 협약을 맺고 있어, 이 기관들에서 심사를 받은 후에 브라질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INMETRO는 실제로 브라질에서 제품의 인증을 책임지는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INMETRO에서 발급하는 인증서가 없는 제품은 브라질 시장에서 유통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브라질에서 유통되는 전기·전자제품은 INMETRO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ANATEL(Agência Nacional de Telecomunicações)은 1997년에 수립된 브라질 정보통신부 산하 독립 기관으로, 브라질 전기통신 장비의 인증 및 승인 규칙의 제정을 책임진다. 정보통신 관련 장비의 경우, 반드시 ANATEL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1)OCD(지정 인증기관)을 통해서 적합 인증서를 부여받은 후에, 2) ANATEL을 통해 HOMOLOGATION 면허를 획득해야 한다.

ANATEL 인증의 경우, 기술에 관한 대리인 지정서를 요구하고 있다. 2008년 가을부터 브라질에 거주하는 대리인이 서명한 대리인 지정서를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이 대리인은 해당 제품의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게 된다. 이 대리인 지정의 경우 ANATEL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며, 브라질 시장 진입을 까다롭게 만드는 장벽이 되고 있다.

인증유형별 대상품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INMETRO 인증

INMETRO 인증은 강제인증과 임의인증으로 구분되는데, 강제인증은 제작 과정이나, 사용법, 유통과정에서 개인 안전·공중위생, 환경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품목 예시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40> INMETRO 인증 대상 품목 예시

구분	대상 품목
강제 인증	의료기기
	차단기
	위험한 장소에 사용되는 전기기기
	가스장치(압력 조절기 및 호스)용 장비
	스위치, 플러그, 소켓
	안정기
	소선 및 케이블
임의 인증	조명기기
	가정용 전자기기 및 구성요소
	IT기기
	소비자용 전자제품

<표 3-41> INMETRO 강제인증 대상 제품 및 서비스 종류 : 92개(2011년 7월 기준)

	대상 품목
1	Cables, plugs and sockets
2	Net NOx reducing agent Automotive - ARLA 32
3	Apparatu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drinking water
4	Bicycle Rims adult usage
5	School supplies
6	Party items
7	Bars and steel wires for the reinforcement for concrete structures
8	Drinkers
9	Children's cots
10	Power cable with extruded solid insulation, PVC for voltages 0.6 / 1.0 kV
11	Steel-general use
12	Cables and flexible cords insulated with PVC, Application-specific connectors in cords and appliances in voltages up to

	500V
13	Cables and flexible cords for voltages up to 750 v, with insulation / coating extruded polyvinyl chloride (PVC)
14	Flexible cables insulated with EPR rubber, for specific applications in connector cords and appliances in voltages up to 500 V
15	Monobloc plastic chair
16	Inner Tubes Bicycle Tire Use Adult
17	Helmet Use in Industry
18	Helmets for drivers and passengers of motorcycles and the like
19	Bodywork urban bus - Standardization
20	Pacifiers
21	Seamless steel cylinders, for the storage of methane gas vehicle
22	High pressure cylinders to store compressed natural gas as fuel in vehicles propelled
23	Mattresses and mattresses made of polyurethane foam fluxível
24	Automotive Components
25	Components of compression systems for compressed natural gas and compressed natural gas
26	System components for compressed natural gas
27	Components of exhaust systems and fuel supply
28	Insulated with polyvinyl chloride (PVC), for rated voltages of 450/750 V, uncovered, for fixed
29	Connections malleable iron for conducting fluids
30	Joint Director (Handlebars Handlebars &Support) Bike Adult Use
31	Bicycle Brake Sets Adult Use
32	Frame and Fork Set Bike Adult Use
33	Construction Vessels accessible to public transportation of passengers
34	For intermediate bulk containers (IBC) used nop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35	Disposable plastic cups

36	Use ropes Bike Adult
37	Flexible cords with insulation extruded chlorosulfonated polyethylene (CSP) for voltages up to 300 V
38	Circuit Breakers
39	Fixture container
40	Child restraint device
41	Large packs used i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42	Packaging reconditioned used in land transportation of Dangerous Goods
43	Remanufactured packaging used in land transportation of Dangerous Goods
44	Protective Equipment (PPE) - Rubber Insulating Gloves
45	Protective Equipment (PPE) - Ask for Particle Filtering Semifacial
46	Axis pods
47	Packing for land transport safety matches
48	Packaging destined for the canning of alcohol
49	Packing used in land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50	Electrical Equipment for Explosive Atmospheres, in the Conditions of flammable gases and vapors and combustible dusts
51	Electrical System of Sanitary Surveillance in
52	Single phase voltage stabilizers, AC voltage with output, rated voltage of 250 V in powers of up 3kVA/3KW
53	Fire extinguishers
54	Affordable Manufacture of Motor Characteristics for Urban Public Transport of Passengers
55	Affordable Manufacture of Motor Characteristics for Road Passenger Transport Collective
56	Safety matches
57	Type fuses and cartridge type stopper
58	Pressure gauges for fire extinguishers
59	Switches for electrical household and similar fixed
60	Liquids for hydraulic brakes for automotive vehicles

61	Gloves, Surgical and non surgical procedures from natural rubber, synthetic rubber and rubbers
62	Bottles and bottle nipples
63	Plasticized PVC hoses, LPG for domestic installations
64	Nipples Adult Bike Use
65	Pressure cookers
66	Crank and Pedal Bike Adult Use
67	King Pin-road vehicle designed to transport cargo and dangerous goods
68	Plugs and sockets for household and similar
69	Bicycle tires adult usage
70	New Tires Motorcycle, Scooter and Moped, Motor Passengers, including mixed-use, and towed, Commercial Vehicles, Light Commercial Vehicles and Towed
71	Condoms
72	PROVE - National Conformity Certification of Motor Vehicles - Emissions
73	Fifth-wheel used in road vehicles designed to transport Cargo and Dangerous Goods
74	Rays Bike Adult Use
75	Electronic ballasts fed alternating current for tubular fluorescent lamps rectilinear, circular and compact
76	Ballasts for tubular fluorescent lamps
77	Transportable containers for liquefied petroleum gas - LPG
78	Low-pressure regulators for liquefied petroleum gas (LPG) for up to 4 kg
79	Automotive Wheels
80	Safety of Household and Similar Devices
81	Safety bicycle use child
82	Safety toys
83	Service adaptation fixture container
84	Underground storage tank of fuel put into reseller

85	Portable tanks used in land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86	Air Storage Tanks Petroleum and other fuels
87	Carbon steel tubes for common uses in conducting fluids
88	Non-metallic underground pipe for automotive fuel
89	Vehicle carrying container
90	Fans table, column and air circulators
91	Laminated safety glass for windshield-propelled road vehicle
92	Safety glass for automotive road vehicles

강제인증의 경우에는 INMETRO 인증마크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지만, 임의인증의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판단하여 인증마크 부착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자사 제품의 품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경향이 있다.

ANATEL 강제인증 대상은 무선통신 기능을 갖춘 제품들로 한다. 그리고 제품 인증 유지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제품을 분류하고 있다.

<표 3-42> ANATEL 강제인증 대상 분류

유형 구분	장비 유형
카테고리 I	- 모뎀, 팩스, 핸드폰, VoIP 핸드폰, 일반 전화 단말기, 케이블 등
카테고리 II	- 통신용 장비의 일부로 카테고리 I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 : WLAN 및 무선기기, 안테나, 근거리용 통신 장비, 디지털 라디오 등
카테고리 III	- 통신장비 간의 연결 및 네트워킹 관련 장비 중 카테고리 I과 II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 : 광케이블, 멀티플렉서, 배터리, 전원 전지, 라우터 등

브라질 시장에서 유통하고자 하는 모든 제품은 브라질 기술표준협회(ABNT)의 기술규정(NBR, 브라질 국가 표준)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 브라질 국가 기술규정은 대부분이 IEC 규격에 기반을 두고 있다.

브라질의 적합성평가는 이미 언급하였듯이 크게 INMETRO(Instituto Nacional de Metrologia, Normalização E Qualidade Industrial)와 ANATEL(Agência Nacional de Telecomunicações) 인증으로 구분된다.

INMETRO는 인증의 종류에 따라 전문 인증기관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하여 테스트를 거친 후에 자격을 부여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인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한 전문 인증기관을 허가, 산하에 두고 있다.

<표 3-60> INMETRO 산하 인증기관과 역할

인증기관	역할
OCS (품질시스템인증기관)	- 시스템 품질 인증 - 근거 규정 : ABNT, ISO 9001, 9002, 9003 - 위 규정에 근거하여 인증서 발급
OCP (제품인증기관)	- 강제검사 또는 임의검사 분야에서의 제품 품질 인증 - 근거 규정 :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 각종 국내·지역·국제 규정을 적용
OCA (환경 통제제도 인증기관)	- 환경관리 시스템 인증 - 근거 규정 : NBR ISO 14001, 14004, 14010, 14011, 14012
OPC (인력인증기관)	- 허가 기준으로 ISO/IEC Guia 62, na EN 45013 e nas orientacoes da IATCA e IAAC를 적용
OTC (훈련 기관)	- 인력양성 기관에 대한 INMETRO의 인증

인증기관 인정 업무는 INMETRO 내의 인증기관인정부서(Division of Accreditation of Certification Bodies, Dicor)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2011년 7월 기준 INMETRO가 인정한 인증기관은 총 65개 기관이다.

<표 3-44> INMETRO 인정 인증기관 리스트

no	기관명
1	FCAV - Fundação Carlos Alberto Vanzolini
2	IFBQ - Instituto Falcão Bauer da Qualidade
3	TÜV Rheinland do Brasil Ltda
4	ABNT - Associação Brasileira de Normas Técnicas
5	IQB - Instituto Brasileiro de Qualificação e Certificação
6	CEPEL - Centro de Pesquisas de Energia Elétrica
7	INOR - Instituto da Normalização na Segurança, Saúde, Qualidade, Produtividade, Avaliações e Juízo Arbitral
8	IQA - Instituto da Qualidade Automotiva
9	CCB - Centro Cerâmico do Brasil
10	IEE - Instituto de Eletrotécnica e Energia
11	FBTS - Fundação Brasileira de Tecnologia da Soldagem
12	PUC - Pontifícia Universidade Católica - NPT/SP Núcleo de Pesquisa Tecnológica
13	ICQ Brasil - Instituto de Certificação Qualidade Brasil
14	BRTÜV Avaliações da Qualidade S. A.
15	Det Norske Veritas Certificadora Ltda
16	BVQI do Brasil Sociedade Certificadora Ltda
17	IBC - Instituto Brasileiro de Certificação
18	ACTA - Supervisão Técnica Independente
19	MVM Certificadora
20	INT- Instituto Nacional de Tecnologia
21	TECPAR - Instituto de Tecnologia do Paraná
22	CETESEV - Centro Tecnológico de Segurança Veicular
23	IBAMETRO - Instituto Baiano de Metrologia e Qualidade
24	IBP - Instituto Brasileiro de Petróleo, Gás e Biocombustíveis

25	UL do Brasil Certificações S/C
26	IRAM - Instituto Argentino de Normalización
27	CERTA QUALIDADE
28	NCC - Associação NCC Certificações do Brasil
29	CERTIFICA - Instituto de Avaliação da Qualidade de Produtos da Cadeia Agro Alimentar
30	Rina Brasil Serviços Técnicos Ltda
31	SGS ICS Certificadora Ltda
32	ABRACE - Avaliações Brasil da Conformidade e Ensaio
33	ITAC - Instituto Tecnológico de Avaliação e Certificação da Conformidade Ltda
34	WQS Certificações de Produtos Ltda
35	ICEPEX - Instituto de Certificação para Excelência na Conformidade
36	Instituto de Pesos e Medidas do Estado de São Paulo - IPEM-SP
37	IGCERT SERVIÇOS ADMINISTRATIVOS LTDA
38	FONDONORMA - Fondo Para La Normalizacion Y Certificacion de La Calidad.
39	ICBR - Instituto de Certificações Brasileiro S.A.
40	BRASIL CERT AVALIAÇÕES DA QUALIDADE LTDA
41	Concepta Certificadora Ltda
42	SENAI SP - Serviço Nacional de Aprendizagem Industrial
43	Master Associação de Avaliação de Conformidade
44	INNAC - Inst. Nacional de Avaliação da Conformidade em Produtos
45	CERTIFIED Serviços de Certificação Ltda
46	BSI Brasil Sistemas de Gestão Ltda
47	IEX - Instituto de Certificação Ltda.
48	SEIVA Consultoria, Projetos & Gestão Ambiental Ltda.
49	IPEM-MG - Instituto de Pesos e Medidas do Estado de Minas Gerais
50	Associação Control Union Certificates

51	Instituto Mineiro de Agropecuária
52	Proquality Serviços Ltda EPP
53	Senai-RS Certificação
54	Nacional Certificadora Ltda
55	CERT ID Certificadora Ltda
56	Centro Tecnológico Brasileiro da Conformidade - CTBC
57	Serviço Nacional de Aprendizagem Industrial - SENAI CETIND
58	SGS DO BRASIL LTDA
59	IBD Certificações Ltda
60	Ecocert Brasil Certificadora Ltda
61	Centro Latino Americano de Certificação de Produtos e Sistemas Ltda
62	IMO Control do Brasil Ltda
63	AGRICONTROL Ltda.
64	Instituto Nacional da Qualidade e Desenvolvimento Social - ISOPOINT
65	Fundação Prósementes de Apoio à Pesquisa

ANATEL은 정보통신부(Ministry of Telecommunication) 소속 기관으로, 통신 기기 관련 각종 법률 및 규정을 제정한다. 정보통신 장비 사업자들은 ANATEL이 인정하는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을 통해 품질인증 및 등록절차를 마쳐야 브라질 시장에서 제품을 유통시킬 수 있다. ANATEL이 지정한 OCD(지정 인증기관)는 통신 분야에서의 적합성 평가 절차를 실행하여, 인증서를 발급한다. SBAC(브라질 자체 적합성평가기준)와 ANATEL이 채택한 기술기준에 의거하여 INMETRO가 인정한 시험기관에서 실험을 수행하고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표 3-45> ANATEL 인정 인증기관 리스트

ANATEL이 인정한 인증기관 리스트
TÜV RHEINLAND BRASIL

NCC CERTIFICATIONS ASSOCIATION OF BRAZIL
CPqD FOUNDATION
UCIEE - UNIÃO CERTIFICADORA
VANZOLINI FOUNDATION
IPDE - INSTITUTO DE PESQUISA, DESENVOLVIMENTO E EDUCAÇÃO
OCP-TELI - ORGANIZAÇÃO CERTIFICADORA
IBRACE - INSTITUTO BRASILEIRO DE CERTIFICAÇÃO
ACTA - SUPERVISÃO TÉCNICA INDEPENDENTE
TECPAR - INSTITUTO DE TECNOLOGIA DO PARANÁ
UL CERTIFICATIONS ASSOCIATION OF BRAZIL
CTCP - CENTRO TECNOLÓGICO DE CERTIFICAÇÃO E PESQUISA
MASTER Association for Assessment of Conformity Telecom

브라질 적합성평가 운영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46> 브라질 적합성평가 운영 체계

기관의 주요 기능	담당기관	주요역할
규제기관 (Regulatory Authority)	- ANATEL	.
지정기관 (Designating Authority)	- INMETRO (국립계량품질기술원) - ANATEL	- 시험기관 지정
인정기관 (Accreditation Body)	- INMETRO - ANATEL	- 인증 및 시험기관 인정의 무를 지고 있는 국립 인정기관 · 2007년 11월 28일, Decree No. 6.275에 의거하여 설립
시험기관 (Testing Lab)	- INMETRO 인정 시험기관	- 반드시 INMETRO로부터 인정받아야 함
인증기관 (Certification Body)	- OCP : INMETRO 지정 인증기관 - OCD : ANATEL 지정 인증기관 - ANATEL	- ANATEL 지정 인증기관 · 통신 분야 장비의 인증 - INMETRO 인정 인증기관

브라질 인증 유형별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NMETRO 강제인증의 경우, 1) 인증 신청 양식지(formulario 12)¹⁰⁾ 작성한다. 2) 증빙서류[Contrato Social(업체 대표, 재무구조 등을 명시한 서류), CNPJ(사업자 등록증)] 구비 후, 구비서류를 OCIPEM에 우편을 통하거나 직접 제출한다. 3) 인증 신청서 검토 후, 인증 취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한하여 OCIPEM은 인증 취득 신청 절차 및 검사 비용 등을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이 때 OCIPEM은 각종 제품 품질 검사 결과를 종합, 인증 승인 가능성 판단한다.

ANATEL 인증 절차는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한다. 이 때 샘플을 송부한다. 2) 시험을 실시한다. 3) 서류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친다. 4)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브라질 인증 시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은 대상 제품 및 제품의 사양에 따라 상이하지만, 대체로 최소 15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소요된다. OCIPEM은 인증 신청서를 검토한 후에, 인증 취득 대상 제품에 향해서 인증 취득 신청 절차 및 검사 비용 등을 통보한다.

<표 3-47> 브라질 인증유형별 비교

인증 구분	근거 규정	브라질 내 대리인	공장심사	소요시간
INMETRO	Resolution 001/92, NBR	지정	심사	6주
ANATEL	Resolution	지정	심사 없음 (ISO인증서로 대체)	8~10주

10) OCIPEM(<http://www.ocipem.sp.gov.br>)에서 다운로드

인증 신청시 제출 서류도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INMETRO 인증의 경우, 1) 제품 사양이 포함된 사용 설명서(영어와 스페인어), 2) 요구되는 포르투갈 정격과 라벨, 3) 판매 브로셔 / 제품 사양서, 4) 대리인 지정서, 5) 시험 성적서, 6) 강제 인증 시, 최초 및 사후 공장 검사, 7) 공장 및 제조자 ISO 인증서, 8) 시료를 제출해야 한다.

ANATEL 인증의 경우에는 1) 제품 사양이 포함된 사용 설명서(영어와 스페인어), 2) 판매 브로셔 / 제품 사양서, 3) 회로도(구성도), 4) 내부 및 외부 제품 사진, 5) ANATEL 라벨(바코드 번호, ANATEL 로고), 6) 대리인 지정서, 7) 시험 성적서, 8) 블록선도, 9) 조립 도면(PCB/구성요소 배치도), 10) 작동 설명서, 11) BOM, 12) 공장 및 제조자 ISO9001 인증서(Category I 제품의 경우 ISO 인증서를 제출해야 함), 13) 시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신규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완제품 3세트를 제출해야 하고, 인증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완제품 1세트를 안전 시험용으로 제출해야 한다.

브라질 적합성평가 마크도 인증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INMETRO 인증의 경우, INMETRO 마크와 함께 인증서를 취득한 인증기관의 마크를 함께 부착해야 한다. 강제인증의 경우에는 INMETRO 인증마크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INMETRO 인증마크 우측에 인증기관(예, UL 등)의 마크도 함께 부착해야 하지만, 임의인증의 경우에는 인증마크를 반드시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표 3-48> 브라질 인증유형별 인증마크 비교

인증 종류	인증마크
INMETRO	
ANATEL	 <p>- HHHH : 4문자의 순차 번호로 제품의 승인을 식별한다. - AA : 2개 숫자로 승인 연도를 식별한다. - FFFF : 4개 숫자로, 제품의 제조업체를 식별한다.</p>

브라질 인증의 경우, 일반적으로 2년간 유효하다. 이 때, ANATEL 인증의 경우에는 그 분류에 따라 인증서의 유효기간과 갱신 조건도 상이한데 이는 다음과 같다.

<표 3-49> ANATEL 인증 구분 및 유효기간

카테고리	인증서 유효기간
카테고리 I	- 인증서는 매년 갱신해야 한다. : 여기에는 안전성 재시험 및 제품이 처음 승인되었을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여전히 제조되고 있다는 증거의 제시가 포함될 수도 있다.
카테고리 II	- 인증서는 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카테고리 III	- 인증서는 유효기간이 없으며, 브라질 표준이 변경된 경우에만 갱신한다.

인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제조업자는 갱신 신청을 할 수 있고 반드시 인증기관의 담당자와 의논해야 한다.

ANATEL 인증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제품 사진(내부 및 외부), 제품에 변경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한 서류, 안전에 대한 시험성적서(위의 카테고리 I과 II 제품의 경우에는, 인증서 연장 시에 안전에 대한 시험을 실시)를 제출해야 하며, 소요 기간은 인증서 연장 신청으로부터 약 2~3주이다.

브라질 시장에서 INMETRO 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제품은 가압류 처분된다. 품질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120일 이내 해당 제품은 무기한 압류 처분되며, 제조업자나 수입업체는 정식으로 고발된다. 그 외 경고, 벌금, 승인 정지 및 취소, 지정 정지 및 취소와 같은 처벌이 있을 수 있다.

제 6 절 멕시코

1. 방송통신기자재 분야 교역량

<표 3-50> 對멕시코 방송통신기자재 수출입 현황

[단위 : 달러]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유선 통신 기기	수출	3,561,786	16,094,567	38,809,770	4,409,872	4,020,230
	수입	55,043,685	72,236,296	56,681,031	53,868,851	45,886,733
	무역 수지	(51,481,899)	(56,141,729)	(17,871,261)	(49,458,979)	(41,866,503)
무선 통신 기기	수출	816,149,662	675,352,024	615,990,410	303,423,918	332,722,836
	수입	49,849,500	53,119,104	63,648,252	102,354,772	108,310,097
	무역 수지	766,300,162	622,232,920	552,342,158	201,069,146	224,412,739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출	277,243,602	190,223,102	126,307,570	142,487,379	213,847,809
	수입	25,279,433	40,472,994	61,282,808	42,459,346	60,728,979
	무역 수지	251,964,169	149,750,108	65,024,762	100,028,033	153,118,830
영상 기기	수출	1,526,773,277	1,507,025,336	1,333,423,333	536,588,868	961,385,145
	수입	1,239,554	252,494	540,419	2,818,637	4,373,586
	무역 수지	1,525,533,723	1,506,772,842	1,332,882,914	533,770,231	957,011,559
전체	수출	2,623,728,327	2,388,695,029	2,114,531,083	986,910,037	1,511,976,020

	수입	131,412,172	166,080,888	182,152,510	201,501,606	219,299,395
	무역 수지	2,492,316,155	2,222,614,141	1,932,378,573	785,408,431	1,292,676,625

<표 3-51> 對멕시코 방송통신기자재 수출입 상위 5개 품목

[단위 : 달러]

수출			
순	구분	품목	금액
1	영상기기	칼라TV부품	953,063,525
2	무선통신기기	시분할식 전화기	169,922,605
3	컴퓨터 및 주변기기	휴대용컴퓨터	128,070,019
4	무선통신기기	무선통신기기부품	112,013,745
5	컴퓨터 및 주변기기	데이터디스플레이	50,078,777
수입			
순	구분	품목	금액
1	무선통신기기	무선통신기기부품	95,988,268
2	유선통신기기	유선전송장치	34,248,798
3	컴퓨터 및 주변기기	컴퓨터기기	22,597,077
4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개인용컴퓨터	19,372,339
5	유선통신기기	유선통신기기부품	9,242,014

2. 적합성평가제도

멕시코는 1992년 경제부(SE-Secretaria de Economia)가 본격적으로 제품 검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멕시코의 적합성

평가는 1988년 발표되고 1992년에 개정된 표준 및 계측에 관한 연방법(Metrology and Standardization Federal Law)의 규제 조항에 근거하여 진행된다. 이 법에 근거하여 표준국이 신설되고 여기에서 인증 제도를 주관하게 된다. 표준화(품목 별 표준규격 제정 및 개정), 인증(안전검사, NOM 마크 승인 및 발급), 검사 및 시험기관 승인 및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멕시코는 사전검사 대상품목과 사후검사 대상품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품목에 대하여 사전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멕시코의 **NOM(공식표준)**은 강제적 기술규정으로, 이에 근거하여 멕시코에서 사용되고 유통되는 제품 및 시스템의 안전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NOM 마크를 부착함으로써 해당 제품이 관련 표준의 요건을 충족시켰음을 증명한다. 적합성 평가는 전기, 전자제품, 가스기기, 전선, 통신기기에 적용되는 NOM 규격에 따라 인증 대상 제품이 안전한지의 여부를 평가합니다. NMX(Mexican standards)는 품질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한 자발적 멕시코 표준으로, 국가 표준 기구나 기술 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규정이다. 멕시코에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NOM 규격을 만족하고 멕시코의 인증기관으로부터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인정받은 국가기관에서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멕시코 연방법에 의하면, 주파수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은 반드시 **COFETEL의 형식승인** 인증서를 획득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접속기기는 해당 제품의 안전과 관련한 NOM 인증과 통신장비 형식인증인 COFETEL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NOM 규격에 따른 강제인증 대상기기는 표준 및 계측에 관한 연방법(Metrology and Standardization Federal Law)의 규정에 근거하여, 주로 전기, 전자

제품, 가스기기, 전선, 통신기기 등이 해당된다. 멕시코 연방법에 의하면, 주파수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들은 NOM 형식승인 인증을 획득해야 하는데, 24볼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전기제품은 전기안전 NOM 인증 대상이 된다. 통신 및 정보기술장비, 가전제품, 조명기기 등 인체나 안전의 위험 가능성을 안고 있는 제품들을 들 수 있다.

<표 3-52> NOM 인증 대상기기

구분	세부품목
NOM-001	- 무선장비, 모니터, DVD, TV, 전자레인지, 무선전화, 응답기, 프로젝터 등
NOM-016	- 사무기기 : 팩스, 복사기, 전자 타자기 등
NOM-019	- 정보처리기기 같은 IT 제품 : 컴퓨터, 서버, 키보드, 마우스, 프린터, 하드디스크, 노트북, 전기와 연결된 모든 컴퓨팅 기기
NOM-003	- 위의 제품을 제외한 일반적인 가정용 기기 : 다리미, 전기 오븐, 전기 칼, 드라이어, 선풍기, 믹서기와 같은 가전기기

RF, 무선, 블루투스, 와이파이, 3G 기능을 갖춘 제품들을 포함한 통신장비는 멕시코 연방전기통신위원회(COFETEL) 인증을 추가로 획득해야 한다. 이 때 COFETEL의 인증 대상기기 중에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는 제품도 있고(통신장비) 아직 마련되지 않은 제품도 있는데,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멕시코 내에서의 시험이 필수는 아니지만, 대신 이 장비들이 COFETEL의 형식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COFETEL이 인정한 전문가(engineer)가 서명한 기술 문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표 3-53> COFETEL 인증 대상기기

구분	세부 품목
NOM-151	- 아날로그 통신 장비 : 집전화, 모뎀, POST 인터페이스로 접속하는 라우터, POX 라우터, PSTN과 연결하는 모든 장비
NOM-152	- 디지털 통신 장비 : E1 인터페이스를 가진 라우터
NOM-083	- UHF와 VHF 대역의 페이징 장비,
NOM-084	- 중계장치(trunking equipment)
NOM-088/1	- 2.4GHz 대역의 마이크로웨이브 장비
NOM-088/2	- 7, 10.5, 15, 23, 38GHz 대역의 마이크로웨이브 장비

현재 멕시코에는 전기안전에 관하여 4개의 NOM 표준이 존재한다.

<표 3-54> NOM 인증 관련 근거 법령

구분	주요 내용
법	연방통신법 - 정보통신기기 인증제도에 대한 기본 규제
	계측과 표준에 관한 멕시코 연방법 - 적합성 체계를 강제인증인 NOM과 자율인증인 NMX로 정의 -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NOM 강제인증 규정 : 즉, NOM 인증을 획득하여야 멕시코 시장에서의 제품 판매 가능
	멕시코 세관법 - 멕시코 내 제품 수입, 유통업체의 의무 등 규정
표준 (NOM)	NOM-001-SCFI-1993 - 다른 전원에서 운용되는 가정용 전자제품 - 형식승인을 위한 전기안전 기준 및 시험 방법
	NOM-016-SCFI-1993 - 다른 전원에서 운용되는 사무실용 전자제품 - 형식승인을 위한 전기안전 기준 및 시험 방법
	NOM-019-SCFI-1998 - 데이터처리 장비
	NOM-003-SCFI-2000 - 가전제품

위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COFETEL 인증의 경우 근거 법령이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RF 장비에 대한 COFETEL 인증의 근거 규정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통신 장비에 대한 COFETEL 인증의 근거 규정은 존재하며 다음과 같다.

<표 3-55> COFETEL 인증 근거 법령

구 분
NOM-151-SCT1-1999
NOM-152-SCT1-1999
NOM-083-SCT1-2002
NOM-084-SCT1-2002
NOM-088/1-SCT1-2002
NOM-088/2-SCT1-2002

전기안전 NOM 인증프로그램은 두 곳의 멕시코 인증기관(ANCE와 NYCE)에서만 운영되고, 통신관련 인증프로그램은 COFETEL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2009년 9월 기준, 경제부 산하 표준국에 등록된 멕시코 NOM 인증기관은 제품에 따라서 총 23개이다.

NOM 인증과 관련한 두 개 인증기관 중 ANCE는 1992년 멕시코 건축 및 표준에 관한 연방법의 제정으로 설립된 민간 규격개발 및 인증기관으로, 전기 및 가스 제품에 대한 멕시코 NOM(강제인증) 및 NMX(자율인증)에 대한 적합성 평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ISO/IEC 65에 따라 허가된 제품인증기관인 동시에, 멕시코 인정기구(EMA)에 의해 인정받고, ISO/IEC 17025에 따라 허가된 시험기관이기도 하다.

그리고 NYCE는 비영리 기관이며 멕시코 정부로부터 허가된 인증기관으로, 전자제품 및 통신, IT기기에 대한 규격 개발 및 인증을 담당하고 있다.

멕시코의 적합성평가 운영 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56> 멕시코 적합성평가 운영 체계

기관의 주요 기능	담당기관	주요 역할
규제기관	COEFTEL	- 멕시코의 전기통신 및 무선방송의 효율적인 개발 및 규제, 촉진, 감독 기관 - 인증규제 개발 - 교역국과의 MRA 체결
지정기관	- COFETEL	- 네트워크 장비 임시 인증을 위한 전문가 등록
인정기관	- DGN - EMA (멕시코 인정 기구)	- 시험기관 인정 - 인증기관 인정
시험기관	- ANCE - NYCE	- 전기부문 : 전기제품, 가스 관련 제품, 가정용 기기 등의 분야에 대한 검사 시행, NOM 발급 - 전자부문 : 전자제품, 전산정보 및 통신 관련 제품, 타이어 등 고무제품 등 검사 시행, NOM 발급
인증기관	- ANCE - NYCE - COFETEL	- 전기부문 - 전자부문 - 통신장비

정보통신기자재를 멕시코 시장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COFETEL과 NOM 인증 모두 취득해야 한다. NOM 인증(멕시코 공인규격 안전 인증은 제품의 안전기

준 준수에 관한 인증이며, COFETEL 형식인증은 네트워크 접속 및 연결기기 인증이다.

멕시코 연방법에 의거, NOM 인증의 신청자는 멕시코 내에 등록된 기업이어야 하며, 멕시코 현지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인증 신청자가 제품의 품질과 신뢰성을 책임진다. 그리고 NOM 인증과 COFETEL 인증 모두 멕시코 내 현지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우선, **NOM 인증**의 적합성평가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예비 신청

NOM을 획득하고자 할 때, 멕시코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에 바로 시험 의뢰를 하면 되지만, 수입품의 경우에는 먼저 통신국 등 NOM 인증기관에 제품의 견본 수입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제품 견본의 수입 수량을 품목별로 3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NOM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제외), 수입목적이 NOM 인증신청을 위한 견본 검사 의뢰용임을 명시해야 한다. 이 때 견본의 시험을 위해 시험기관을 공인시험소 중에서 한 곳을 신청자 임의로 선정할 수 있다. 신청서 상에는 제품형태, 브랜드명, 모델명, 시리즈 번호, 원산국명, 발송국명, 통관 세관명, 견본 개수, 선택한 공인시험소명 등을 표시해야 한다.

2) 예비 평가

견본의 검사를 의뢰 받은 공인 시험기관에서는 제품의 특성을 분석하고, 적합여부에 대한 소견서를 작성한다.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시정할 수 있도록 그 이유를 명시해주어야 한다.

3) 본 신청

신청인은 통신국 또는 ANCE 및 NYCE 등 NOM 발급 인증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각종 NOM 승인 신청 서류를 제출한다.

4) 본 평가

위의 인증기관은 신청 서류를 심사하여, 서류상 문제가 발견되면 반려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부처로 보낸다. 그리고 이 부처에서 시험 결과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기준의 충족여부를 검사한다.

5) 평가회의

신청 서류의 심사 및 평가 이후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이 때 인증 신청인 혹은 대리인을 참석시켜 질문 한다.

6) 인증서 교부

최종적으로 기준을 충족시켰음을 판정할 경우, NOM 인증서를 발급한다. 이 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반려시키며 그 사유를 명시한 불합격 통지서를 발부합니다. 이 때 신청자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신청할 수 있다.

<표 3-57> NOM 인증 절차

견본수입허가 신청
견본수입 허가 취득, 견본 수입
시험검사용 견본 시험기관에 제출
견본 시험·분석·검사 실시
시험분석 결과보고서와 적합·부적합 여부에 대한 소견서 발급 (부적격으로 판명되면, 문제점 보완 후 재신청 할 수 있음)
인증기관에 NOM 인증신청서 제출
서류심사 (구비서류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 후 재신청 할 수 있음)
신청서 등록
시험성적서 등 제출 서류 정밀 심사

NOM 기준 충족여부 판정
판정결과 통보 (불합격으로 판정되면, NOM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음)
NOM 인증서 취득

COFETEL 인증은 관련 규정이 존재하는 제품도 있고(통신장비) 아직 마련되지 않은 제품에 따라 구분된다.

1) 임시인증

공식 시험절차를 거치지 않은 장비에 대하여 신청하는 인증 형태로, COFETEL에 등록된 전문가는 제출 서류(기술문서)를 확인하여 규격에의 부합여부를 판단한다. 이 때, 제출 서류는 모두 스페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2) 정식인증

공식 시험절차를 거친 장비에 대하여 신청하는 인증 형태이다. 임시 인증과 달리 인증 전문가의 규격 부합여부 확인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멕시코 적합성평가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NOM 안전인증의 경우, 표준국, NYCE, ANCE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7일(근무일)이내 검사를 완료하고 인증서를 발급하는데 서류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반송시킨다. **COFETEL 인증**의 경우에는 견본 제출로부터 평균 6주후에 COFETEL 인증서가 발급된다. 인증 비용은 역시 제품 품목별로 상이하다.

인증 신청시 제출 서류를 인증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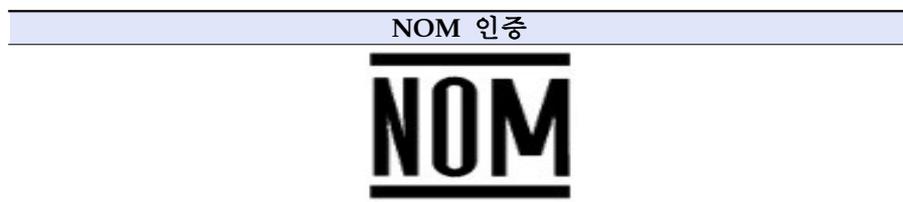
첫째, **NOM 인증 신청**에서 안전검사 신청 시에는 1) 안전검사 신청서, 2)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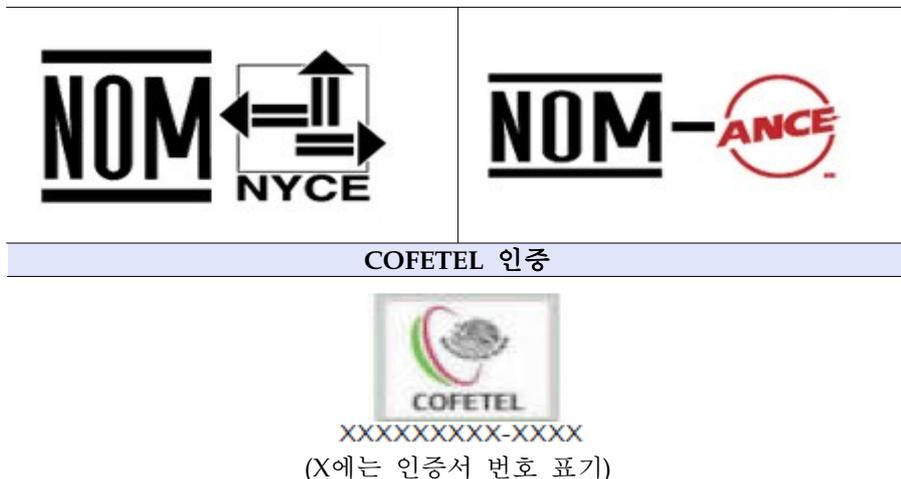
검사 신청 계약서, 3) 연방 납세자 등록증 사본, 4) 공인시험소 검사보고서나 소견서를 제출한다. NOM 인증 신청 전에 견본품(3개)을 공인시험소에 제출하여 긍정소견서나 적격판정 검사보고서를 사전에 획득한 후에, NOM 신청서 등 여타 서류와 함께 NOM 발급기관(ANCE, NYCE)에 제출한다. 5) 각 NOM 표준에서 규정한 품목별 기술 명세서(작동·서비스 지침서 및 매뉴얼, 팜플렛 또는 제품 사진, 기술사양서, 설치명세서, 품질보증서, 제품 전기 그림 등), 6) 선언서(신청 품목이 신제품인지, 중고품인지, 재생품 혹은 단종품인지의 여부를 명시하고, 해당 내용이 사실임을 선언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둘째, COFTEL 인증 신청 시에는 1) 제품 스펙을 포함한 사용자 설명서(영어 및 스페인어), 2) 제품의 내부 및 외관 사진, 3) 판매 브로셔/제품 스펙, 4) LETTER OF AUTHORIZATION, 5) FCC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6) 블록도, 7) 회로도, 8) 외관도, 9) 작동 방법, 10) BOM, 11) 공장 및 제조업체 ISO 인증, 12) 견본을 제출한다.

멕시코의 적합성평가 마크는 NOM 인증의 경우 NOM 마크와 함께 인증을 받은 인증기관의 마크도 함께 표시해야 하지만, COFETEL 인증의 경우에는 COFETEL 마크만 표기하되 하단에 인증서 번호를 함께 나타내주어야 한다.

<표 3-58> 멕시코 적합성평가 마크





최초 NOM 인증은 1년간 유효하며, 최초 COFETEL 인증의 경우에는 임시 인증서를 발급한다. COFETEL 인증의 경우, 임시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후에 만료기간이 없는 영구 인증서를 신청할 수 있다.

NOM 인증의 경우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갱신 가능하며, 이는 신규 신청으로 간주된다. 인증서 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사후관리 등 방문조사를 하고, NYCE 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COFETEL 인증의 경우 임시 인증서가 유효한 동안 인증서 소유자 변경은 신규 신청을 통해 가능하지만, 만료기간이 없는 영구 인증서의 경우 인증서 소유자를 변경할 수 없다. 그리고 임시 인증서는 인증서 기간 만료 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멕시코는 제품이 NOM 또는 COFETEL 인증서를 획득하지 못했거나 NOM/COFETEL 사양을 준수하지 못할 때 그 해당 기관은 즉시 시판을 금지하고 제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제품이 널리 유통된 것일 경우, 생산자, 제조자, 수입업자 및 배포자는 제품을 즉시 시장에서 회수해야 한다. 그리고 표준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적발한 것들은 제품을 교체하고, 판매를 금지해야 합니다.

벌금의 경우, 규정의 이행을 지연하게 되면 시에서 강제로 일일최소임금의 최고 20,000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때 벌금은 경과일을 기준으로 부과될 수도 있다.

제 7 절 러시아

1. 방송통신기자재 분야 교역량

<표 3-59> 對러시아 방송통신기자재 수출입 현황

[단위 : 달러]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유선 통신 기기	수출	16,128,029	117,714,062	65,167,478	5,843,863	12,227,219
	수입	615,350	888,671	493,818	472,886	478,517
	무역 수지	15,512,679	116,825,391	64,673,660	5,370,977	11,748,702
무선 통신 기기	수출	184,222,046	858,867,315	790,360,384	364,722,498	375,316,790
	수입	22,030,851	4,717,658	11,882,915	14,739,814	66,720,342
	무역 수지	162,191,195	854,149,657	778,477,469	349,982,684	308,596,448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출	13,332,184	22,073,977	36,705,763	57,840,975	71,997,110
	수입	11,842,184	655,181	2,126,677	3,578,766	774,108
	무역 수지	1,490,000	21,418,796	34,579,086	54,262,209	71,223,002
영상 기기	수출	90,948,493	65,109,674	171,491,519	215,429,906	324,063,019
	수입	45,153	238,848	465,286	520,766	1,593,262
	무역 수지	90,903,340	64,870,826	171,026,233	214,909,140	322,469,757
전체	수출	304,630,752	1,063,765,028	1,063,725,144	643,837,242	783,604,138

	수입	34,533,538	6,500,358	14,968,696	19,312,232	69,566,229
	무역 수지	270,097,214	1,057,264,670	1,048,756,448	624,525,010	714,037,909

<표 3-60> 對러시아 방송통신기자재 수출입 상위 5개 품목

[단위 : 달러]

수출			
순	구분	품목	금액
1	영상기기	칼라TV부품	274,370,871
2	무선통신기기	무선전화기	150,023,788
3	무선통신기기	시분할식 전화기	96,806,999
4	컴퓨터 및 주변기기	컴퓨터부품	41,510,802
5	영상기기	TV카메라	33,347,147
수입			
순	구분	품목	금액
1	무선통신기기	레이더	60,736,764
2	무선통신기기	무선통신기기부품	5,134,940
3	영상기기	VCR	915,375
4	컴퓨터 및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566,826
5	영상기기	영상기록매체	346,021

2. 적합성평가제도

러시아의 인증제도는 GOST-R이라고도 불리며, 일부 적합성선언을 포함한 강제 인증과 자율 인증으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GOST란 러시아어 국가규격의 영문 표기이며, R은 러시아(Russia)를 나타낸다.

이는 러시아 시장의 개방으로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러시아연방정부는 자국 내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자국 내의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1992년 소비자보호법(Law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he Protection of Consumer Rights), 1993년 제품 및 서비스의 인증에 관한 법(Law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he Cert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을 제정하여, 수입품 통관 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GOST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강제인증제도 도입하였다. 1993년부터 강제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1997년 7월부터 러시아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제품에 GOST-R 마크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적합성 선언은 1998년 “제품 및 서비스 인증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에서 자기선언에 의한 적합보증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면서 이행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연방 기술조정 및 도량기관(Federal Agency on Technical Regulation and Metrology)이 수입 제품의 적합성 평가 시스템의 구현을 책임지고 있는데, 이는 2004년 대통령령 No.314-4에 의거하여 러시아연방표준위원회(GOSSTANDART OF RUSSIA)가 변경된 것이다.

GOST-R 인증은 **강제인증**으로, 러시아로 수출되는 거의 모든 제품이 획득해야 한다.

<표 3-61> 강제인증 대상품목

식품류(육류, 어패류, 채소류, 과일류, 곡물류, 유지류, 주류 및 음료 등)
가축류
동물의 생활 및 건강과 관련된 제품(사료, 백신 등)
살충제 및 화학비료
유전자 변경 결과를 포함하는 제품과 서비스
난방기구류

전기, 전자 제품 및 부품
운송기기 및 금속 제품
화학제품(비료, 세제, 기타 화학제품, 고무 등)
목재류(원목 및 가공품)
신발, 의류, 편물
금속제품
기계류(생산기기, 기계부속품)
중장비 설비 및 그 부품
의류 및 스포츠 용품
안전장비 및 관련 제품 등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 보호를 위한 도구
에너지 소비 제품과 에너지 자원, 가스와 석탄
우주항공장비
화재 관련 제품
무기 관련 제품

대상 제품 및 서비스 목록은 러시아 연방법에 의해 결정되며 정기적으로 갱신된다. 그리고 강제 인증은 수출 횟수에 따라 단일선적인증과 연속생산인증으로 구분되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 표에 잘 나타나있다.

<표 3-62> 수출 횟수에 따른 강제인증 분류

구분	내용
단일 선적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횟수가 단발적(일회성)인 경우 - 특정 물품의 정해진 수량에 대해 인증 - 수출업체가 계약서나 인보이스로 러시아에 고객(수입업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연속 선적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이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 정해진 기간 동안 선적회수와 수량에 관계없이 다양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 인증서가 발급된 이후 러시아 기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허가 받은 인증기관에서 연간 검사 실시
--	-----------------------

인증서에는 인증대상의 명칭과 HS 코드, 강제인증 발급 시 요구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러시아 인증제도에서는 GOST-R 인증 이외에도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에 따라 추가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통신 기기류의 경우 CFC 인증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표 3-63> CFC 인증 대상품목 예시

CFC 인증 대상품목 예시
GSM 900/1800 이동전화
CDMA 2000 기지국
PSTN 단말 장비
FM 송수신기
CDMA 2000 이동전화
무선장비
가입자 단말접속장치

2004년 12월 31일 공포된 러시아 연방 법령 N896에 따라 강제인증품목으로 분류된 물품에 대하여 Communication Facility Conformance(CFC) 증명서가 수입통관 및 러시아 연방에서 유통 및 사용 시 요구된다. 2007년 5월 7일부로 무선장비(Wireless Equipment)의 GOST-R 인증과 러시아연방 Radio Frequency Center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수입통관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러시아 보건부에서 발행하는 위생검사증명서(Hygenic Certificate)가 필요한 제

품은 CSR(국가등록) (구 위생인증: Hygienic Conclusion)을 받아야 한다. 이 CSR 은 러시아 인증법이 개정하면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사람이 직접 섭취하거나 접촉하는 물품들에 대한 인체의 안정성을 증명한다.

<표 3-64> CSR 대상품목 예시

CSR 대상품목 예시
완구, 화장품, 가구, 조리기기, 에어컨, TV, 건축자재, 식품 등 (유효기간: 5년)
몸에 접촉하는 제품 (ex: 완구, 화장품, 식품 등)
물, 음식과 접촉하는 제품 (ex: 부엌용품, 냉장고 등)
X-ray를 발생하는 제품 (ex: 모니터, TV 등)
마이크로파를 방사하는 제품 (ex: 무선전화기, 노트북 등)
소음과 진동 발생제품 (ex: 복사기, 프린터, 에어컨 등)

자율 인증은 강제 인증 대상이 아닌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수행된다. 강제 인증 대상 품목의 범위를 줄이고자, 자율 인증 제도를 채택하여 도입하였다.

그리고 1) 1개만 인도되는 상품, 2) 개인적 사용을 위한 상품으로,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 3) 외교관계의 목적으로 반입되는 경우(외국 대표부 관계자 혹은 국제 기구 종사자가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는 강제인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GOST-R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인증 면제 대상이 된다.

러시아에서 인증 관련 법령은 러시아연방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다. 러시아 연방 기술조정 및 도량기관의 주요 임무(기술 규제, 표준화, 적합성보증 등)는 기술 규정에 관한 연방법(Federal Law "On technical regulating")에서 규정되어 있다.

<표 3-65> 러시아 적합성평가제도 근거 법령

시험 인증 관련 사항	관련 법규 및 표준
o 시험 인증관련 일반 원칙(기술 규정에 관한 연방법)	러시아연방법
o 인증제도 관련사항 - 강제 인증 (기술 규정에 관한 연방법) - 적합성 선언 (제품 및 서비스 인증에 관한 연방법)	러시아연방법
o 인정 권한 위임(시행령 No. 294, 2004년 6월 17일) - 적합성평가기구 및 시험기구 인정 권한	러시아연방정부 시행령
o 인증 대상 제품 - 강제인증 대상 제품(시행령 No. 1013, 1997년 8월 13일) - 적합성 선언 대상 제품	러시아연방정부 시행령

러시아 적합성평가 체계는 이미 언급하였듯이 러시아 연방 기술조정 및 도량기 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 관련 활동 기관들이 미국, 유럽, 일본 보다는 덜 분리되어 있다.

<표 3-66> 러시아 적합성평가 운영 체계

기관의 주요 기능	담당 기관	주요역할
규제기관	러시아 연방 기술조정 및 도량기관 (Federal Agency on Technical Regulation and Metrology)	- 러시아 연방정부로부터 관련 규정 준수여부의 관리·감독 역할을 위임 받음
인정기관	러시아 연방 기술조정 및 도량기관	-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의 인정 업무 수행 ¹¹⁾
시험기관	한국 산업 기술시험원 (KTL) 등 2500개	
인증기관	러시아 연방 기술조정 및 도량기관 등 1100개	

11)

http://www.gost.ru/wps/portal/pages.en.Activity?WCM_GLOBAL_CONTEX

GOST-R 인증의 경우, 인증받고자 하는 제품의 샘플 테스트를 통해서 위생검 사증명서를 획득한 후에 GOST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GOST 인증서(COC) 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인증 받고자 하는 제품의 HS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de 확인한다. 이는 제품이 소비자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시험, 검사, 적용, 인증 등의 달리 규정되기 때문에, 인증 신청 전에 HS Code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2) 제공되는 양식에 따라 시험 및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3) 시험용 샘플을 채취하여, 규격에 따라 시험이 진행되며 시험 과정의 사항들 을 문제점과 함께 기술정보를 작성한다.

4) 시험결과에 따라 GOST 인정서와 GOST 인증 마크가 발급된다.

위의 적합성평가 절차는 연속 생산으로 인증을 받는 경우에 한하며, 1년에 1회 이상 제품의 품질과 GOST 마크에 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공장 검사를 인증기 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인증서의 유효 기간은 최장 3년이다.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의 GOST 인증서 발급에는 1~2주 정도가 소요되 며, 시험비용과 인증비용 역시 대상 제품 및 수행 기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 다.

GOST-R 인증 신청 시에는 1) 해당제품의 H.S. Code(제조자/수출업자 정보(주소, 전화, 팩스, 대표자이름 등), 부품 목록 포함), 2) 제품 사용설명서, 카탈로그 (러시아어), 3) 정확한 제품이름 (Model, Type name 포함), 4) GOST-R 마크를 포 함한 러시아어 라벨, 5) 시험용 샘플 및 기술문서(회로도, 구조도, 조립도 등, 6)

T=gost/GOST/Activity

ISO91001 인증서, 7) 공장심사 보고서, 8) 시험성적서(전기전자 제품의 경우, CB 성적서 및 인증서 인정)를 제출해야 한다.

러시아 인증 마크도 역시 인증 종류에 따라 구분된다.

<표 3-67> 러시아 적합성평가 마크

인증 마크	인증 종류
	<p>- 강제인증 : 인증마크 표시는 GOST R 50460-92 규정을 따른다. : GOST R 로고와 함께 마크 하단의 XX XX에는 인증기관의 코드를 표시하여, 인증 받은 기관을 나타낸다.</p>
	<p>- 자기선언 : 인증마크 표시는 GOST R 50460-92 규정을 따른다. : 인증기관 코드는 표시하지 않는다.</p>
	<p>- 자율인증 : 자율인증 로고를 부착하며, 인증기관 코드는 표시하지 않는다.</p>

이미 언급하였듯이 강제인증의 인증서는 단일선적인증의 경우에는 해당 선적건에만 유효하며, 연속생산인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1년, 2년 3년(최대 유효기간)인 세 종류가 존재한다. 그리고 연속생산인증의 경우, 한 번의 인증으로 유효

기간 동안은 추가로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인증 변경 시에는, 인증 만료 최소 6개월 전에 인증기관으로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이 때, 초기 인증획득 시 제출한 모든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진행하며, 필요시에는 재시험이 요청될 수도 있다.

적절한 승인 절차 없이 러시아 시장으로 유입되는 제품 또는 적절한 승인 없이 유통되는 것이 발견된 제품들은 즉시 시장에서 몰수될 것이며, 제조자/지역대리점은 다음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벌금 : 2011년 7월부터 새로운 벌금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제조자/지역대리점에는 최대 35,000 달러(US)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강제인증 대상제품이 미인증 상태로 판매될 경우, 처벌을 가한다.

인증 취득 후 규격 미달제품이 발견될 경우, 해당기업에 10일 이내 시정 조치를 내리는데, 해당기업이 시정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제품을 모두 환수할 수 있으며, 법적책임을 묻게 된다. 이 때 법원에서 제품 환수판결을 내리면 해당기업은 환수 기한 내에 제품을 모두 수거한다. 그리고 법원 판결이후 한 달 이내에 소비자들에게 제품 환수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해당기업이 기한 내에 제품을 환수하지 않을 경우, 감독기관에서 제품 환수 조치를 내리며, 해당기업이 관련비용을 부담한다.

제 8 절 국내외 적합성평가 비교 분석

1. 방송통신기자재 분야 교역량

본고에서는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에서 2006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50개국을 대상으로 전체 IT 분야 수출, 수입 현황을 조사한 자료를 참고하여, 전체 자료 중 MRA 대상기기를 선정하였다. 이 때 방송통신기자재분야 MRA 대상기기는, 우선 정보통신기기의 대분류를 선택하여 하위 분류 중에서 유무선 통신기기와 정보기기(컴퓨터 및 주변기기), 그리고 영상기기를 대상으로 하였다.

對유럽 방송통신기자재 교역량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EU FTA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무역수지의 경우 2008년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다, 적합성평가절차의 경우 한국에서 유럽 시장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상의 변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경우 종전의 공급자 자기적합선언(SDoC)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절차상의 간소화로 인한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對베트남 교역량 현황을 조사한 결과로는, 이번 MRA 범위가 정보통신기기 전 분야로 확대되면서 베트남과의 IT 분야 교역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또한 베트남은 동남아 거점국가로서 국내 기업의 동남아시아 진출에 있어 교두보가 되어,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하여 이번 MRA 확대이행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베트남을 통해 동남아시아내 인접국가로의 진출이 더욱 용이해지고 또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對페루 교역량을 조사한 결과, 원래도 정보통신분야의 교역이 활발하지 않은데다가 페루 적합성평가제도 자체의 미흡한 부분(인증제도의 수준 차이 등)으로 인하여 FTA 및 MRA 체결에 따른 효과는 현 시점에서 미흡할 것으로 보인다.

2. 적합성평가절차

해외 주요국의 적합성평가절차는 인증유형별로 구분되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었다.

우선 미국은 인증 유형에 따라 4가지 절차로 구분되는데, 이 유형별 적합성평가 절차는 모두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인증의 경우만 제외하고 나머지 세 인증 유형(자체증명, 적합선언, 공급자 자기적합선언)의 경우에는 필요 서류를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여 결과를 등록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이 때 관련 서류는 자체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인증의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수수료와 함께 제출한 후 민간 인증기관이나 FCC의 인증을 받은 증명서(인증서)를 FCC의 DB에 등록하면 완료된다.

유럽은 유럽연합 내에서 유통시키고자 하는 제품의 유무선 여부에 따라 인증방식이 구분된다. 유선기기의 경우에는 규제기관의 관여가 가장 적은 절차를 따르며, 이 외 추가적으로 자사 제품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자 한다면 추가적인 절차를 자율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무선기기의 경우에는 유럽연합내 여러 국가들이 서로 합의된 조화 주파수 대역과 관련 표준을 준수하는 기기인지의 여부에 따라 준용하는 절차가 상이하다.

일본은 근거 법(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에 따라 준용하는 절차가 구분된다.

러시아는 다른 국가와 달리 특이할 만한 절차가 하나 존재하는데, 이는 인증 대상 제품의 샘플 테스트를 통해서 위생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위생검사증명서를 획득한 후에 GOST 인증서를 취득한다. 이는 대사 제품이 소비자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시험, 검사, 적용, 인증 등이 달리 규정되기 때문에 HS 코드를 확인해야 한다.

브라질,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 등은 현지 국가에 등록된 현지 대리인을 반드시 통해서 인증을 신청하거나 현지 공장 실사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등 타국에 비해 까다로운 적합성평가절차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의 경우 본 인증 신청 전에 예비 신청 절차를 통해 견본(샘플)의 검사를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이처럼 해외 주요국의 적합성평가절차를 살펴본 결과, 적합성평가 체계의 발전 정도와 성숙도가 낮은 국가일수록 더 강력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전 규제를 강화하여 사후 조치를 보다 편리하게 하려는 의도로 짐작된다.

3. 시험 및 인증 비용

해외 주요국의 시험 및 인증 수수료를 조사한 결과, 대상 제품의 시험을 수행하는 기관마다 비용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동일 시험기관이라고 할 지라도 제품의 종류와 탑재도니 기술의 난이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증 수수료의 경우에도, 각 국별로 인증 유형에 따라 수수료를 상이하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FCC가 법령에 근거하여 고시하고 있으나, 인증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민간인증기관의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었다.

유럽의 경우 공급자의 자체적 시험에 근거한 적합성 선언(SDoC)이 주 인증 형태이기 때문에 시험 및 인증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고시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제조사의 요구에 따라 NB의 인증을 거칠 경우에는 이 NB에 따라 그 비용이 상이하게 책정된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 NB나 시험기관을 거치더라도, 대상 제품의 종류와 그 제품에 탑재된 기술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해당 제품이 준수하는 지침에 따라 인증 수수료, 절차 등이 상이하다.

일본은 각 인증 유형별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단말기 종류에 따라 신규인 경우와 변경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일일이 고시하고 있으며, 인증 및 시험 수수료 외에 직접 대상 제품이 있는 곳으로 출장을 가서 적합성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제반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 따른 증명원의 파견비, 여비(출장비) 등도 규정하여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조사 대상국 중 가장 상세하고 체계적인 수수료 틀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등의 국가에서의 시험 및 인증 수수료도 수행기관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확한 정액 요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4장 방송통신기자재 상호인정협정

제 1 절 추진 배경

1. 상호인정협정(MRA) 개념 및 특징

1-1. 상호인정협정(MRA) 개념 및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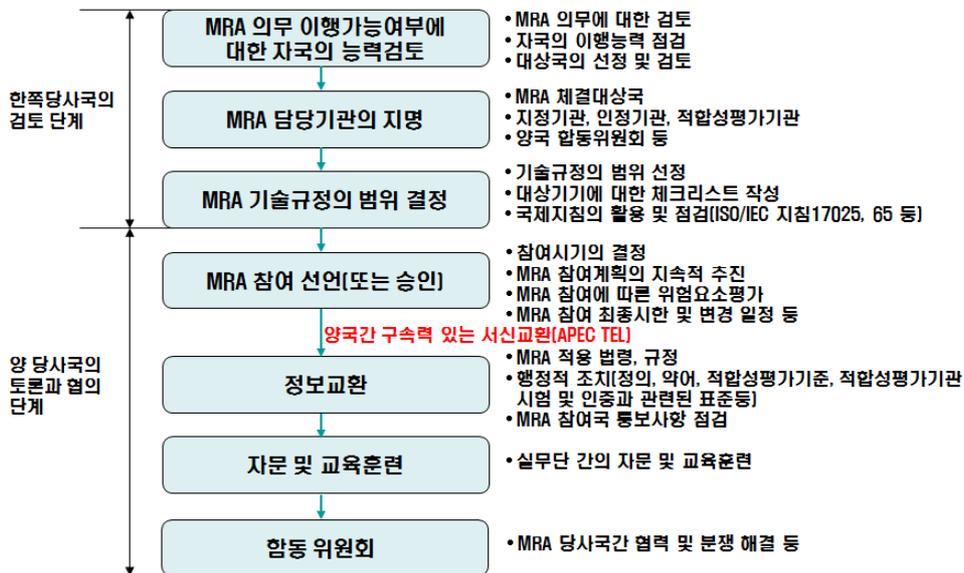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협정 대상품목 교역 시에 협정 체결국 또는 체결 기관(양자 또는 다자간)이 승인한 적합성평가기관의 시험 성적서나 인증서를 상호 인정하는 것이다. 수입국의 기술기준에 따라서, 수출국에서 정보통신기자재를 시험하거나 이에 대한 인증을 부여하면 이 결과를 수입국이 인정하는 것이다.

<표 4-1> MRA 체결 전후 이행절차 비교

구분	이행절차
체결 전	
체결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국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수입국이 인정 <p>1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국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를 수입국이 인정 <p>2단계</p>

이 때 MRA는 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인정하는(시험성적서 인정) 1단계와 인증결과를 인정하는(인증서 인정) 2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의 이행방안으로 상대국이 지정한 시험기관을 인정하고, 2단계 이행방안으로 상대국의 인증기관을 인정하게 된다. 이는 수입국에서 이행해야 하는 절차를 수입 전 수출국에서 실시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여 교역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그림 4-1] MRA 추진 절차



WTO/TBT 협정의 발효와 FTA의 확대에 의하여 무역장벽의 철폐를 통한 자유무역이 활성화되고 국가 간 MRA 체결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WTO/TBT 주요내용 >

- WTO/TBT협정(Technical Barriers to Trade) : 세계무역기구의 기술무역장벽협정
 - 회원국은 수입품과 동종의 국산품에 대해 기술표준, 인증 등 절차상의 차별 금지
 - 회원국의 국제표준 준수 의무를 권고, 국가 간 무역촉진을 위해 적극적인 MRA 추진

세계 각국은 자국의 적합성평가 제도 및 기술기준을 유지하는 동시에 기술 장벽

을 제거하여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MRA를 활용하고 있다. FTA 협상이나 APEC-TEL을 통한 MRA 체결을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에 대하여 상호 긴밀한 정보 교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여한다.

MRA 체결로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관세장벽(NTB)/기술무역장벽(TBT)의 제거나 최소화를 통해 협정 체결 당사국간 교역 촉진

둘째, 제품출시기간 단축 및 벤더들을 위한 생산비 절감

셋째, 규정 및 적합성평가 프로세스의 투명성 제고

넷째, 체결 당사국에 최신기술 접근성 보장

다섯째, 통신장비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여섯째, 인증 대상 제품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비자 선택권 증가(다양화)

일곱째, 적합성평가 산업의 발전 및 정부 시험기관의 비용 절감

※ MRA는 기술표준 및 규정의 조화에 대한 합의는 아님

여덟째, 비즈니스 비용 절감, 경쟁력 향상

아홉째, 체결 대상국 규제기관 간의 협력 강화

이에 반하여, MRA 체결로 상대국 제품의 시장 유입이 보다 용이해지면서, 시장 잠식 가능성이 증대될 수 있다. 그리고 MRA에 따른 시험 및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MRA 협정 하에 승인된 수출국 기관이기 때문에 수입국에서 대상 제품의 감시 및 적발 문제가 용이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1-2. MRA 체결의 필요성

첫째, 국내 소비자의 선택 기회 확대

MRA는 수출국에서 시행한 제품의 시험, 검사, 인증을 수입국에서 다시 요구하

는 불필요한 규제를 타파한다. 이는 국내 소비자들이 외국의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둘째, 제조업체의 수출 지원

시간적, 금전적 비용 절감 : MRA는 제품 등을 수출할 때,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시험성적서, 인증서 및 마킹 등의 이중적인 발급을 미연에 방지하여 시간적 및 금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기와 같이 제품수명이 짧고 시장선점이 중요한 첨단산업의 경우에는 MRA체결국과 비체결국간의 시간 경쟁력의 차이가 아주 크다.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 MRA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원거리 시장의 규제제도의 이해나 접근에 있어서 제한을 받으며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특히 유리하다.

셋째, 적합성평가 기관의 경쟁력 향상 계기

MRA 하에서는 능력 있고, 투명하며, 공정한 평가기관만이 상대국의 적합성평가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되며, 당연히 국내 수출업체들은 상대국 당국으로부터 지정받는 능력 있는 평가기관만을 찾게 되므로 무능력하고, 불투명하며, 불공정한 평가기관은 국내 및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게 되므로 경쟁력 향상의 계기가 된다.

넷째, 국내 규제 제도 개선의 기회

MRA는 자국 국민의 안전과 국가자산에 대한 보호 업무의 일부를 상대국에게 맡기는 성격이기 때문에 규제를 불합리하게 하고,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정, 관리업무를 부실하게 하는 국가와 MRA를 체결하고자 하는 국가는 없다. 따라서 MRA를 체결하고자 하는 국가는 자국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공급자선언제도 도입과 시험·검사·인증(형식승인제도)·마킹과 관련된 제도를 선진화 시켜야 하므로 제도개선의 촉매가 될 수 있다. MRA를 통하여 규제

자원의 효율적 재분배 : 상대국에서 수행한 적합성평가를 의지함으로써 규제당국의 제한된 인적·물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재분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다섯째, 국제적 대세에의 편승 및 주도권 확보

이미 MRA가 국제적 대세가 되어있는데 이 대세를 타지 못한다는 것은 폐쇄적이고 후진적인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인상을 세계 각 국에 주게 되어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어차피 무역에 기반을 두어 국가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입장이라면 적극적으로 MRA에 대처하고 주도하여 세계 정보통신 산업에서 한국의 우위를 최대한 이용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이 더 낫다. MRA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국내 제조 산업을 보호하고 인증시장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MRA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별로 서로 다른 규제시스템

국가별로 상이한 역사와 구조에 의해 발생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MRA 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극복하는데도 많은 시간과 비용 및 상호이해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시험기관 지정 및 인증 관련 국가 규제기관들의 반감

규제기관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규제권한을 풀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 어려움과 권한 박탈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어떤 이들은 자국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외국에 맡기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그 효과를 의심할 수도 있다.

셋째,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의 우려

MRA로 인해서 수입되는 외국의 우수 제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위축되고 이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불안감과 국내 인증시장도 외국의 우수한 시험, 인증기관에 일거리를 빼길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1-3. MRA 종류 및 특징

MRA는 체결 주체 및 적용범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류될 수 있다.

<표 4-2> MRA 종류 및 특징

구분	종류	주요 내용
주체	양자간 (Bilateral MRA)	- 양국 적합성평가기관의 적합성평가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구속력 있는 협정 (예) 미-EU MRA, 호주-뉴질랜드 MRA, 일-싱/EU EPA MRA, 한-미 APEC TEL 1단계 MRA, 한-EU FTA
	다자간 (Multi-lateral MRA)	- 지역경제협력체 또는 표준화 단체 회원국 간 적합성평가결과를 상호 인정하도록 하는 구속력이 있거나/없는 협정 (예) - 구속력 有 : CE-Marking MRA, IECCE-CB Scheme - 구속력 無 : APEC TEL MRA, CITES MRA, GMPCS에 관한 ITU와 회원국 간 MoU
적용 범위	적합성평가 결과 (MRA-CA)	- (1단계) : 수출국 적합성평가기관이 수입국 기준으로 실시한 시험 성적서를 수입국에서 인정 후 별도인증 - (2단계) : 수출국 적합성평가기관이 수입국 기준으로 실시한 시험 성적서 및 인증서를 수입국에서 인정
	기술기준 동등성 (MRA-ETR)	- 국제표준이 있는 EMC, 무선기기 등에 대하여 회원국 간 기술기준 동등성을 인정하여 국제표준과 유사 동일한 항목은 재시험 등 적합성평가절차를 생략하자는 협정 - 2010년 APEC TEL에서 합의, MRA 참여여부는 자율적
	인정기구간 (ILAC-MRA, IAF-MLA 등)	- (시험) 국제 또는 지역 시험기관 인정기구협의체에 가입한 회원국 인정기구가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상호 인정하는 협정 (예) ILAC/APAC MRA (한국 : KOLAS)

	- (인증) 국제인정포럼(IAF)에 가입한 회원국 인정기구가 인정한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상호 인정하는 협정 (예) IAF-MLA (한국 : KAS(제품) 및 KAB(품질경영))
--	---

양자간 MRA는 양국의 이해가 부합하는 경우에 신속한 MRA 추진이 가능하며 당사국의 일대일 협상에 의존한다. 그러나 당사국 간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 MRA 형식 및 범위에 대한 표준 모델을 구가별로 별도로 개발하기가 어렵다. MRA 대상 제품 및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경우에는 재협상을 요구하게 되고 이 때 시간 및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게 된다. 이에 양자간 MRA 체결과 동시에 다자간 MRA에 참여함으로써 기존에 마련된 MRA의 틀을 양자간 협상 시 활용하거나, 양자간 FTA 체결 시에 MRA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논의하는 등 응용 방안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등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FTA 체결을 통한 MRA를 이행하는 경우, FTA 효력이 MRA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다자간 MRA와 달리 협정체결 결과가 강제 구속력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FTA는 체결 단계에서 국회비준 요구 등 체결 절차가 복잡하다. 그리고 국회 비준이 지연되거나 협상이 중단되는 경우, 자연스럽게 MRA 추진도 지연될 수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예상치 못한 지연 등의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FTA를 통한 MRA의 이행 등 관련 행정 절차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다자간 MRA는 모든 회원국 간에 MRA 효력이 직접 발생하지 않는다. 참여 당사국들이 양자 간 협상을 추진하는 경우, 기존의 MRA 틀을 활용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다. 이 때 모든 회원국이 MRA를 체결해야 한다는 등의 강제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회원국 간 MRA 이행을 위해서 별도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추가 조치 및 체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 구체적인 MRA 종류와 유형별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APEC-TEL을 통한 MRA 체결을 하는 경우가 있다.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증대를 위한 역내 각료들의 협의 기구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총 21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경제협력기구 내에 TEL(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Working Group)은 APEC 고위관리회의 중 경제·기술협력 운영위원회(SCE) 아래 11개 실무 그룹 중 정보통신 실무그룹으로, 회원국 간 정보통신 분야의 효율적인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1990년 설립, 자유화 운영그룹(LSG), ICT 개발 운영그룹(DSG), 보안 및 번영 운영그룹(SPSG)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MRA TF는 위의 세 개 운영그룹 중 자유화 운영그룹에 소속되어 있으며, TF 형태로 운영된다.

APEC-TEL은 APEC 회원국 간 통신 및 관련 기기 적합성평가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서 무역을 촉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제 3차 APEC 정보통신장관 회의(1998년 6월 2~5일, 싱가포르)에서 정보통신기기 MRA 기본안을 승인하면서, 1999년 7월 1일 APEC-TEL MRA가 발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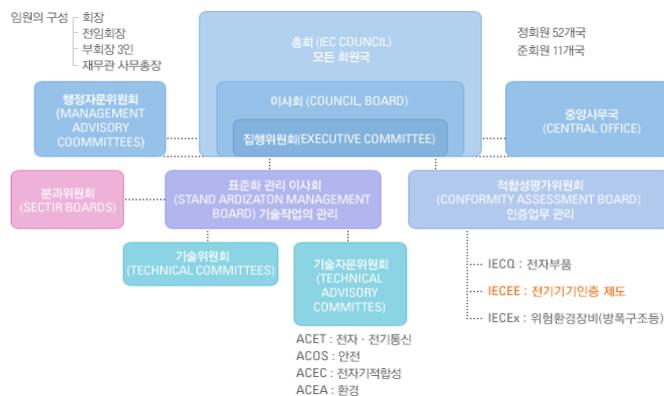
<표 4-3> APEC-TEL MRA 협정문 주요 내용

조항	주요 내용
전 문	APEC MRA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이 아님
제1조	MRA의 목적은 정보통신기기 교역을 촉진하기 위함
제2조	APEC MRA는 시험성적서 상호인정과 인증서 상호인정의 두 단계로 나뉘며, 회원국은 선택에 따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에만 참여할 수도 있고, 인증서까지 상호 인정하는 2단계에 참여할 수도 있음
제3조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등 중요 용어들에 관한 정의 및 해석 규정
제4조	적용범위는 단말 장치와 유선, 무선, 지상 및 위성기기를 포함한 기타 통신 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기임
제5조 ~ 제7조	지정기관(Designation Body) 및 인정기관(Accreditation Body)에 의한 시험기관/인증기관(적합성 평가기관)의 지정/인정을 모두 허용

제8조 ~ 제13조	적합성 평가기관의 기술적 능력에 대한 입증, 1단계 및 2단계 절차에 대한 참여개시, 정보교환 등 MRA의 효과적 이행 지원을 위한 공동위원회의 구성의 필요성과 공급자 독점정보(Propriety Information)의 보호 등을 규정
제14조 ~ 제117조	MRA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규제기관이 가지는 고유한 권한의 존중, 수수료 차별의 금지, 협정문 개정 및 폐기의 절차, 부속서의 삽입 및 그 내용 등
부속서 (Appendix)	A : 적합성평가기관의 지정 및 감시 요건 B : 시험기관의 상호 인정 및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의 시행절차 C : 인증기관의 상호 인정 및 인증서 상호인정의 시행절차
첨부서 (Annex)	첨부서 1 : 1, 2단계 MRA를 위한 기술기준 목록 첨부서 2 : 1, 2단계 MRA를 위한 지정기관, 인정기구 목록 첨부서 3 : 1, 2단계 MRA를 위한 지정 적합성평가기관 목록 첨부서 4 : 1, 2단계 MRA를 위한 승인 적합성평가기관 목록

둘째, **IECEE CE Scheme을 통한 MRA 체결**을 들 수 있다. IECEE CE Scheme은 1985년부터 국제전기전자위원회(IEC)내에서 운영되어 온 전기전자 제품 및 부품에 관한 적합성시험 및 인증 운영체제이다. 이를 통한 MRA는 전기안전 및 전자파 분야의 IEC 국제표준규격에 따른 회원국 시험인증기관의 시험 또는 인증서를 상호 인정하는 제도로서 의의가 있다. 현재 52개 MB(Member Body 1국가별 1대표기관, 회원국), 66개 NCB(National Certification Body, 국가인증기관)와 293개 CBTL(CB Testing Laboratory, 시험기관)가 회원으로 등록, 한국은 1987년 12월에 가입하였다.

[그림 4-2] IECEE CE SCHEME 조직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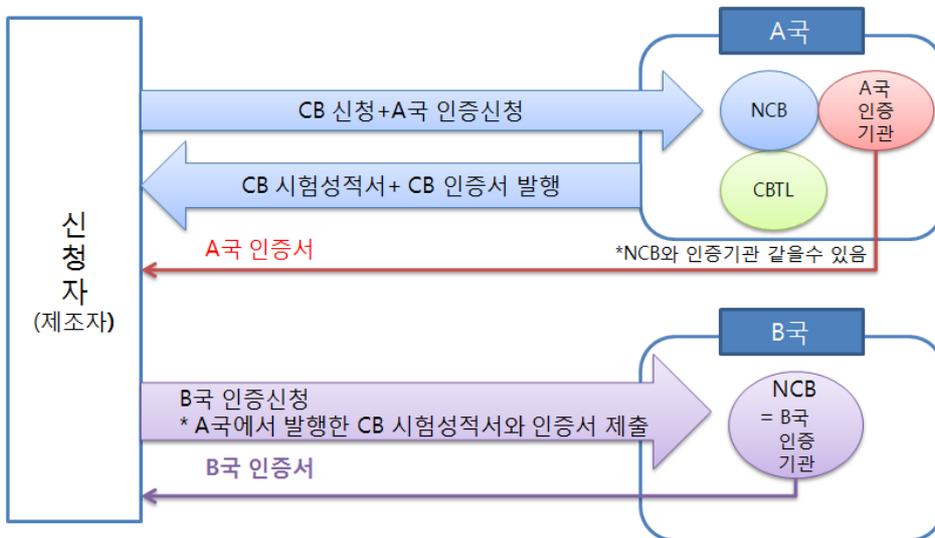
한국의 경우 IECEE CE SCHEME에 따른 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4-4> IECEE CE SCHEME에 근거한 한국 기관 현황

기관	한국 기관
회원국 대표(MB)	기술표준원
인증기관(NCB)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화학융합시험연구원
시험기관(CBTL)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전기연구원, 원텍, 에스텍,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CE Scheme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1) 회원국 대표기관(MB)과 국가인증기관(NCB)과 협정이 체결되어야 하며, 2)시험기관(CBTL) 신청 시 소관 인증기관(NCB)을 지정해야 한다.

[그림 4-3] CE SCHEME에 따른 상호인정절차



현재 CE Scheme은 전기용품과 방송통신기기 분야를 인정하고 있다.

전기용품 분야의 경우, 한국은 외국제품에 대한 안전 인증 시 IECEE 회원국의 CBTL이 시험하고 NCB가 인증한 CB 인증서를 수용하고 있으나, IECEE 규정에 따라 시료 등을 제출받아 시험결과를 추가적으로 확인한다. CBTL이 시험한 결과 (시험성적서) 자체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소관 NCB가 승인한 인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IECEE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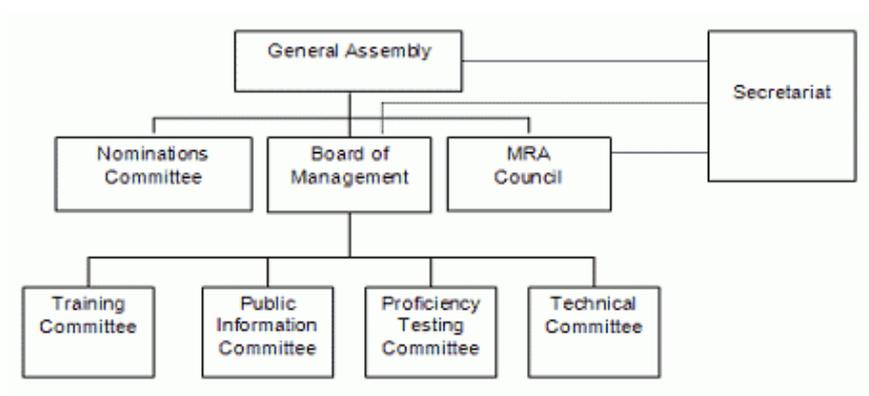
방송통신기기 분야의 경우에는 방송통신 전기안전 또는 전자파 CB 시험성적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셋째, **APLAC MRA**가 있다.

APLAC은 아시아·태평양 시험기관 인정 협력체로, 해당 지역에서 시험기관과 검사기관의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간 인정업무의 초화를 추구하며, 공인 시험·측정·검사 결과의 상호 인정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조직되었다.

APLAC은 1992년 정보교환, 인정절차 조화, 시험 및 검사결과 상호 수용을 위한 MRA 개발 등의 역할 수행을 위해 포럼을 구성한 것이 그 발단이 되었다. APLAC은 1) 시험 및 검사기관의 능력 개발을 육성하고 역내의 인정활동을 역외의 인정활동과 조화시켜 시험결과의 상호인정을 촉진시키고, 2) APLAC의 회원기관은 시험기관이나 검사기관이 특정 시험이나 검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를 평가, 인정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그림 4-4] APLAC 조직 구성도



APLAC은 APEC 표준 및 적합성 소위원회(Sub-committee on Standards and Conformance, SCSC)의 업무 지원과 회원 간 정보교환, 기술지침문서 개발, 시험 소간 비교, 시험소 평가사 교육 그리고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절차 및 규정개발 등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그리고 총회 이사회, MRA 위원회, 임명 위원회, 숙련도 시험위원회, 기술 위원회, 훈련 위원회, 공공정보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2년 임기의 의장이, 선출된 회원 기관에서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경제력을 고려한 비용과 인증기관의 규모를 고려하여 분담금을 결정한다.

APLAC MRA는 보통 국가가 주체가 되는 규제분야의 MRA가 아닌, 국제기구 등에서 주관하는 비규제 분야의 MRA를 대상으로 한다. APLAC 가입 인정기구 들은 해외 파트너가 수행한 인정의 동등성을 상호 인정하게 되며, 한 인정기구로부터 평가받은 시험·검사기관은 다른 나라의 인정기구로부터의 별도 평가 없이 시험검사능력을 인정받게 된다.

1997년 11월 19일 도쿄에서 KOLAS를 비롯한 6개국 7개 회원 기관 간에 체결

을 시작으로, 2011년 현재 APLAC MRA 서명 국가는 15개국 20여 기관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한국의 KOLAS는 1998년 10월 가입하였다.

넷째, **CITEL(Inter-American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MRA**로, 미주 지역 전기통신 협의체를 통한 상호인정협정이 있다. CITEL은 미주 지역 내 통신 장비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다자간 상호인정협정으로, 현재 35개 회원국과 200여 이상의 준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9년 10월 29일 미주기구(OAS)의 서명으로 승인되었는데, 미주 지역 정부 간의 다자간 협상으로 강제성을 띠지는 않는다. 적합성평가기관과 이 적합성평가기관이 수출국의 장비가 수입국의 기술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시험 및 인증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것이다. 유·무선 장비, 네트워크 단말 장치, 지상파 및 위성 장비와 이 장비들의 EMC, 유무선 기술기준 등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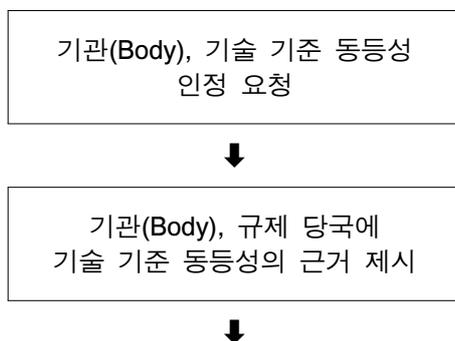
CITEL MRA는 전체적으로 APEC-TEL MRA와 매우 유사하며, CITEL MRA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협정문의 상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참가 당사국들은 서신을 교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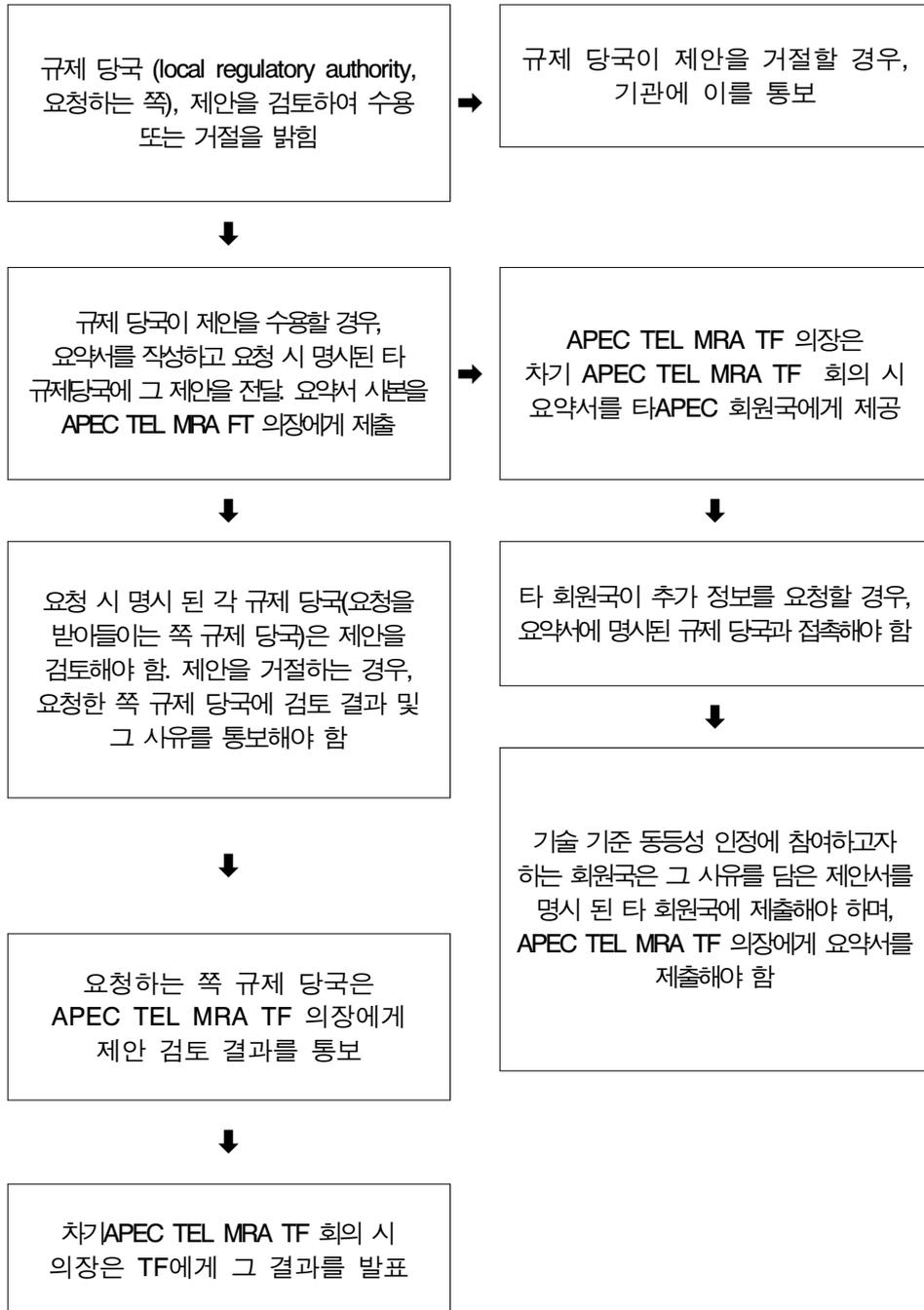
기술기준동등성 MRA(MRA-ETR)은 제 6차 정보통신장관회의(TELMIN6, '05. 6. 페루)에서 MR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기술요건 동등성의 필요성을 APEC 회원국 장관들이 동의한 이후, MRA TF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협정 당사국간의 협의를 통해 서로의 상이한 기술기준 구성요소를 상호 인정하고, 궁극적으로 APEC 회원국 간에 체결된 MRA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무역장벽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각 APEC 회원국 대 회원국 간에 상호 자발적으로 협상을 추진하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는 협정이다.

<표 4-5> MRA-ETR 협정문 주요 내용

목차	주요 내용
정의	기술기준, 기술동등성등 정의 수록
목적	MRA-ETR의 목적을 동일제품의 반복시험 및 시장출시 비용 감소 등을 들
일반규정	협정의 효력(자발적) 및 대상(양자간)과 이행(다른 당사국의 요청 수락시)등 규정
범위	기술기준에 적용됨을 규정
동등성 인정절차	기술기준 동등성 이해당사자가 요청시 상대국 수락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절차 규정
협정 개시 및 참여 시작	APEC TEL 의장에 통보함으로써 개시
정보교환 및 관리	규제당국 MRA 페이지, 질의처, 동등성 대상 기술규정 및 기준 제개정 정보등
합동위원회	협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당사국간 합동 위원회 구성 규정
규제당국의 보호조치	이용자 보호 및 그 밖의 위험을 고려하여 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기기에 사후 관리 및 유통 제한 등 조치 규정
협정의 개정 및 종료	협정개정시 회원국 서면 동의와 APEC TEL 승인절차와 협정 종료시 6개월 전 고지 규정
부록 A 기술기준 동등성 인정절차	협정 당사국간 기술기준 동등성 인정절차 상세규정

[그림 4-5] MRA-ETR 추진 절차





1-4. 국내 MRA/FTA 체결 현황

<표 4-6> 국내 MRA 추진 현황

구분	국가	체결방식	주요 내용
시험 성적서 상호 인정	체결	양자 캐나다 ('97.1) MRA→APEC TEL MRA('01년)	· 97년 양자 MRA 형태로 체결, APEC TEL MRA 발효 후 APEC TEL 서신교환으로 형태로 전환
		미국 ('05.5) APEC TEL MRA (서신교환)	· 유선, 무선, 정보기기 분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베트남 ('06.1) APEC TEL MRA (서신교환)	· '06.1 유선기기에 한정된 MRA 이행→'11.8 무선 및 정보기기에 확대 *베트남측에서 최근 국내시험기관 인정서를 공식 요구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 중
		칠레 ('08.6) FTA (APEC TEL 방식 준용)	· 한-칠레 FTA 이행조치로 FTA 발효후 1년 이내 APEC TEL MRA 1 단계 이행 합의 후 체결 (08.6)
인증서 상호 인정	체결	FTA 유럽 연합 (09.10)	<p>· 한-EU FTA에 양국간 전기전자 및 EMC 분야 MRA 이행 합의 후 체결(09.10)</p> <p><한-EU FTA 발효(11.7) 이후 적합성평가절차></p>
시험 성적서 상호 인정	협상	-	-
인증서 상호 인정	협상	캐나다 APEC TEL 방식	'10년 이후 MRA 2단계 확대 및 양국간 사후관리 협력 양해각서 체결 논의 중 * 2단계 이행전제로 인증/인정업무 분리 등 국제적 적합성평가체계 구축
		미국 FTA	· 한-미 FTA 이행조치로 FTA 발효후 1년 이내 APEC TEL MRA 2 단계 이행 합의 * 2단계 이행전제로 인증/인정업무 분리 등 국제적 적합성평가체계 구축

	싱가폴	FTA	· 한-싱 FTA 이행조치로 APEC TEL MRA 1단계 또는 2단계 이행 합의 * 2단계 이행전제로 인증/인정업무 분리 등 국제적 적합성평가체계구축
기타 (협상중단)	일본	FTA	· 한-일 FTA 협상에서 인증서 상호인정을 잠정 합의하였으나 농수산분야 협상결렬로 무기중단

<표 4-7> 국내 MRA 근거 법령 현황

정부	법령	조문
행안부	전자서명법	제27조의2(상호인정) ① 정부는 전자서명의 상호인정을 위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외국의 인증기관 또는 외국의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 또는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법적 지위 또는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그 협정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부와 전자서명의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정부와 협정이 체결된 경우 외국의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는 공인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5조(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① 정부는 국내 인정기구와 국제인정협력기구 간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권장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협정이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협정」과 조화를 이루며 관련 국제기준에 규정된 공정관행(公正慣行)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관련 기관에 권고하여야 한다.
지경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안전인증) 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면제받거나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만)를 면제받을 수 있다.

	<p>1. 연구·개발, 수출 또는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p> <p>2.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p> <p>3.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인증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p> <p>4. 제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은 경우</p> <p>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p> <p>②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의 변경을 받아야 한다.</p> <p>③ 안전인증기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과 공장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p> <p>④ 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하는 경우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른 조건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하며, 해당 제조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p>
<p>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시행령</p>	<p>제2조(안전인증의 면제) 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1.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는 수출 전용(專用)의 것(외국에 수출한 제품으로서 수리 또는 보수를 위하여 반출을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것을 포함한다)</p> <p>2. 수입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포함된 것만 해당된다)</p> <p>3. 학교, 연구소 또는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p> <p>4. 「전파법」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국 또는 방송시설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p> <p>5.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위한 시료(試料)</p>

	<p>로 사용하는 것</p> <p>6.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p> <p>7.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한정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고시하는 것</p> <p>②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이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품시험(이하 "제품시험"이라 한다) 또는 같은 호에 따른 공장심사(이하 "공장심사"라 한다)를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p> <p>2.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간 체결한 상호인정협정의 내용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나 해당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p> <p>3.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제품시험의 면제</p> <p>4.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은 해당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 다만, 안전인증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받은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기준이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기준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에만 면제한다.</p> <p>5.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면제나 해당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 다만,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성의 인정기준이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기준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에만 면제한다.</p>
<p>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시행규칙</p>	<p>제8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 인정 등) ①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p> <p>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p> <p>2.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p> <p>3. 별표 2 제10호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중에서 「전파법」 제57조에 따른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정보기기류(情報機器類)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기관이 시험을 한 경우</p> <p>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서 「전파법」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p> <p>나. 「전파법」에 따라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상대국</p>

	<p>가로부터 지정받은 시험기관(국제규격인 ISO/IEC 17025에 적합한 경우에만 해당된다)</p> <p>※ 전파법 개정에 따라 향후 개정될 필요성이 있음</p> <p>② 영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안전인증의 면제나 해당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면제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인증의 면제</p> <p>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시험의 면제</p>
<p>품질경영 및공산품 안전관리 법</p>	<p>제14조(안전인증 등) ①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 또는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외국제조업자"라 한다)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산품 모델(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p> <p>②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안전인증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⑥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의 안전인증대상공산품 또는 공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⑦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p> <p>⑧안전인증기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p> <p>⑨안전인증기관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는 국내·외의 기관과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의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p>
<p>품질경영 및공산품 안전관리 법</p>	<p>제15조 (상호인정계약의 체결절차)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 범위 등을 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시행규칙	
신에너지 및재생에 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 법	<p>제20조(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설비인증기관에 대하여 표준화기반 구축, 국제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신에너지 및재생에 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 법시행령	<p>제23조(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및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시설 등의 구입비용 2. 국제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제안 등에 드는 비용 3.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4. 국제표준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드는 비용
지식경제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p>제16조(직무) 기술표준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표준 정책 및 산업(정보통신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표준화 정책의 수립·운영, 국가표준제도 확립의 지원 2. 제품[공산품, 전기용품, 정보통신산업제품(방송통신기자재·무선설비 및 전자과기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3. 산업표준·안전기준·적합성·산업기반기술 등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연구·개발지원 및 인증 4.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계량, 측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국제상호인정 및 국제협력의 추진 5. 표준화 및 제품안전 관련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 6. 품질경영정책의 수립·추진 <p>제18조(하부조직) 기술표준원에 기술표준정책국·제품안전정책국·지식산업표준국 및 적합성정책국을 둔다.</p> <p>제19조(기술표준정책국) ① 기술표준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1.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관련 자유무역협정 및 소관 분야의 상호인정협정과 관련된 사항</p> <p>제22조(적합성정책국) ① 적합성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p>

		<p>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5. 교정·시험·제품인증·계량·측정 및 그 밖의 적합성 분야의 국제상호인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p>
환경부	환경기술 개발및지원에관한 법률	<p>제24조의2(환경표지등의 국가 상호 인정) ① 정부는 환경표지등의 상호 인정에 관하여 외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하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p>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p>제27조(형식승인의 국가간 상호인정) ① 정부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국정부의 승인 등을 얻은 측정기기에 대하여는 상호인정의 조건으로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p> <p>②정부는 측정기기의 형식승인에 대한 상호인정의 시행에 관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p> <p>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p>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p>제58조의2(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4.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5. 「항만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6. 「광산보안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때에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7.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에 따른 형식신고를 한 경우 8. 「선박안전법」 제7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p>②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이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또는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에 한정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p>인증을 받은 경우</p> <p>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p> <p>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p> <p>4.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p> <p>5.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p> <p>③ 안전인증이 면제되는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공산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안전인증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제품 및 용도설명서</p> <p>2.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제1항 제1호만 해당한다)</p> <p>3.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의 인증증서 및 시험성적서(제2항제1호만 해당한다)</p> <p>4.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 또는 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험성적서(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만 해당한다)</p> <p>④ 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 면제신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고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방통위	전기통신 기본법	<p>제33조의3(형식승인의 국가간 상호인정) ① 정부는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에 관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p> <p>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국정부의 인증을 얻은 전기통신기자재를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인정하거나 외국시험기관을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그 협정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p> <p>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에 관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p> <p>※ 전파법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로 변경</p>
	전파법	<p>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이하 "상호인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p>

		<p>할 수 있다.</p> <p>② 상호인정협정의 절차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p>
	전파법 시행령	<p>제77조의12(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법 제58조의8에 따른 외국정부와의 상호인정협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적합성평가의 효력에 관한 사항</p> <p>2. 적합성평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p> <p>3.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에 관한 사항</p> <p>4. 그 밖에 적합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p>제10조(방송통신융합정책실) ① 방송통신융합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 밑에 융합정책관·전파기획관 및 방송진흥기획관 각 1명을 둔다.</p> <p>⑨ 전파방송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4.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정책 수립 및 상호인정협정</p> <p>제14조(전파연구소) ① 전파연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소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p> <p>⑦ 녹색인증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4. 국가 간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의 체결 지원</p>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p>제11조(심사정책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p> <p>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국가 간 상호인정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p>

제 2 절 APEC-TEL MRA 참가 결과

1. 제43차 APEC-TEL MRA TF 회의 주요 내용

<표 4-8> 제43차 APEC-TEL MRA TF 회의 개요

	내 용
일시	2011년 3월 27일 ~ 28일
참석자	총 15개국 30여명 대표단 (대만, 캐나다 등)
장소	중국 베이징

국가별 법령, 관련 기술기준 및 MRA 이행 변동사항 보고

참가국들은 각자 MRA 이행 변동사항 및 상호인정 시험소 수 증감현황을 보고하였는데, 한국은 전파법개정사항(인증제도 개편), 인증마크변경사항(KCC→KC), MRA 상대국과의 진행상태 및 시험소 수 등을 보고하였다. 또한 한국은 전파법 개정(적합인증과 적합등록으로의 인증체계 개편) 사항과 이를 기반으로 한 인증마크 변경(KCC마크→KC마크)과 그 발효시점('11.1)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MRA 체결 현황 및 체결 상대국과의 이행 현황을 보고하였다. 또한 MRA-CA 이행을 통해 파급되는 효과를 환산하여 보고한 내용은 MRA-CA 확대와 관련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TF 프로젝트 E : MRA-ETR

42차 회의에서 조사한 'MRA 이행 및 사후관리 관련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MRA-CA 및 MRA-ETR의 이행 활성화를 위한 트레이닝·워크숍 및 사후관리 프로젝트 추진 방안 세부내용을 논의하였다. 이는 캐나다에서 준비, 보고, 이행, 사후관리로 구성된 초안을 작성하였고, 이 초안에 대하여 각국의 의견수렴을 통

하여 세부내용 수정하였다.

기존 MRA(MRA-CA) 이행 확대와 함께, 신규 MRA(MRA-ETR)와 관련하여 TELMIN8 승인으로 이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 내용이 요구됨에 따라, 가이드라인 및 국가별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였다. MRA TF 차원의 트레이닝·워크숍 진행, 사후관리 관련 정보 및 업무공유 등 양적·질적인 협력 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MRA-ETR의 실질적인 이행은 국가관 이해관계의 부분에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며, 협의국가 확대의 경우에는 복잡한 수정내용이 필요한 문제이므로, 빠른 시행 보다는 시간을 갖고 보다 확실한 준비를 갖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회의 중 논의된 가이드라인의 초안에 기초하여 차기회의에서 심화된 내용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MRA TF 프로젝트 F : MRA의 이행 및 편익

42차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MRA 이행 관련 경험 공유 등을 위한 트레이닝·워크숍 개최와 관련하여 세부내용 논의하였는데, 4개국의 트레이닝 요청으로 전체 트레이닝을 실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하여 트레이닝을 원하는 4개국에 대한 상세내용 파악한 후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사후관리 분야 협력 논의

신규프로젝트로 제안된 '사후관리 분야 협력'에 대해 캐나다 측에서 작성한 가이드라인의 초안이 발표되었다.

2. 제44차 APEC-TEL MRA TF 회의 주요 내용

<표 4-9> 제44차 APEC-TEL MRA TF 회의 개요

	내 용
일시	2011년 9월 22일 ~ 23일
참석자	총 14개국 35명 대표단 (참석국가 : 대만, 말레이시아, 미국, 브루나이, 베트남, 싱가포르, 일본, 중국, 캐나다, 태국, 필리핀, 한국, 호주, 홍콩)
장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가별 법령, 관련 기술기준 및 MRA 이행 변동사항 보고

한국 등 5개국이 아래와 같이 MRA 이행 변동사항을 보고하였다.

<표 4-10> MRA 변동사항 보고사항

국가	세부 내용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지정기관 명칭 변경) 전파연구소의 공식명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8월 19일, 한국 방송통신기자재 지정기관의 공식 명칭이 기존의 전파연구소에서 '국립전파연구원'으로 변경 - 기관의 공식 영문 명칭은 기존의 Radio Research Agency에서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로 변경되었으나, 영문 이니셜은 변경하지 않고 기존의 'RRA'를 그대로 사용 o APEC-TEL MRA 이행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 미국, 베트남, 칠레와 MRA 1단계를 체결·이행하고 있음 1. 한-베트남 MRA 대상 분야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8월 2일, 베트남과 MRA 대상 분야를 확대하였음 ▶ 한-베트남 MRA 대상 분야 확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50%;">변경 전</th> <th style="width: 50%;">변경 후</th> </tr> </thead> <tbody> <tr> <td>유선기기</td> <td>방송통신기자재 전 분야</td> </tr> </tbody> </table>	변경 전	변경 후	유선기기	방송통신기자재 전 분야
변경 전	변경 후				
유선기기	방송통신기자재 전 분야				

2. 상호인정 시험기관 현황

- 지난 43차 APEC-TEL 회의 이후, APEC-TEL MRA를 통한 국내의 시험기관 지정 현황은 변화 없음

▶ MRA 1단계 하에 타 회원국에 의해 인정받은 대한민국 시험기관

국가	시험소 수
미국	27
캐나다	4

▶ MRA 1단계 하에 대한민국에서 인정한 타 회원국 시험기관

국가	시험소 수
미국	75
캐나다	11

o (법제도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

- 최근 기술기준의 개정사항이 많고, 이전 회의기간 동안 누락된 보고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2011년 9월 기준 대한민국의 전파 관련 모든 법령 및 기술기준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구분	제목	법령번호	개정일(시행일)	
법령	전파법	법률 제10393호	2010. 7.23(2011. 1.24)	
	전파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2605호	2010.12.31(2011. 1.24)	
고시	적합성 평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011-15호	2011. 6. 8.	
	기술 기준	무선설비규칙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1-31호	2011. 5.12.
		전자파보호기준	전파연구소고시 제2011-17호	2011. 7. 5(2011.10. 5)
		전자파 장애방지 기준	전파연구소고시 제2011-18호	2011. 7. 5(2011.10. 5)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전기안전에	전파연구소고시 제2011-14호	2011. 2. 28(2012. 1. 1)

	관한 기술기준	
	<p>o 기타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10월 6일, 대한민국은 아시아 국가 최초로 EU와 FTA를 체결, 동 협정은 2011년 7월 1일에 발효 - 협정문에 의거하여 EMC 및 전기안전 분야에 대하여 EU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인정 	
미국 FCC	<p>o 법령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이트스페이스(WS)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S 규칙 제정(FCC 10-174)은 TV방송국이 운용되지 않는 곳에서 디지털TV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과 관계있음 : WS 장비 사용자들이 TV 방송국에 간섭을 야기하지 않는 곳에서 장비를 등록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가용 채널 목록을 파악하기 위해서 10개의 민간 데이터베이스 조사기관을 설립 : 무선 마이크는 WS 장비는 아니지만, 해당 대역에서 운용 가능 : FCC 시험기관은 규칙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세 차례 워크샵 개최 - 장비 허가에 관한 정보 제공은 FCC 지식 데이터베이스 (www.fcc.gov.labhelp나 www.fcc.gov)에서 확인 가능 - 장비 허가 프로세스의 업데이트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해, FCC OET(Office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공학기술부)는 규칙 제정(안)을 입안 중 : 면허권자 코드에 부여할 숫자 조합이 모자라게 되면서, 기존의 세 개 숫자 조합에서 다섯 개로 변경하는 규칙 제정 요구 : 그 외 개정사항이 고려되고 있으며, 공공 의견 수렴 예정 <p>o FCC 공식 웹사이트 재편</p> <p>o 표준 관련 이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SI:C 63.4(저전압 장비 9kHz~40GHz에 대한 RF 측정), C63.10(비면허 무선장비 시험), C63.19(Hearing Aid Compatibility)의 개정된 버전 재검토 <p>o APEC-TEL MRA 이행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CC가 MRA 1단계를 통해 인정한 적합성평가기관(CAB)은 총 290개 기관이며, 이 중 148개 기관은 APEC 회원국의 기관임 - FCC는 4개 APEC 회원국(캐나다, 홍콩, 일본, 싱가포르)과 MRA 2단계를 체결·이행중이며, 총 인정 적합성평가기관은 34개 기관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인증된 총 장비는 11,627개이며, 이 중 11,454개는 TCB에 의해 서, 나머지 173개는 FCC에 의해 인증되었음 - 인증이 필요한 총 장비의 98% 이상은 MRA 2단계 적합성평가기관에 의해 승인되었음 - 2011년 9월 16일까지 인증된 장비 수는 총 9,034개로, 이 중 8,913개는 TCB에 의해, 나머지 121은 FCC에 의해 인증 																																				
미국 NIST	<p>o APEC-TEL MRA 이행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현재 아래 표의 국가들과 MRA 1단계 및 2단계를 체결·이행하고 있음 ▶ MRA 1단계 및 2단계 하에 타 회원국에 의해 인정받은 미국 적합성평가기관(CAB)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30%;">APEC 회원국</th> <th style="width: 35%;">미국 CAB 수 (MRA 1단계, 시험기관)</th> <th style="width: 35%;">미국 CAB 수 (MRA 2단계, 인증기관)</th> </tr> </thead> <tbody> <tr><td>호주</td><td>21</td><td></td></tr> <tr><td>캐나다</td><td>33</td><td>17</td></tr> <tr><td>대만(BSMI)</td><td>87</td><td></td></tr> <tr><td>대만(NCC)</td><td>15</td><td></td></tr> <tr><td>홍콩</td><td>9</td><td>1</td></tr> <tr><td>한국</td><td>70</td><td></td></tr> <tr><td>싱가포르</td><td>28</td><td>4</td></tr> <tr><td>베트남</td><td>7</td><td></td></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인정기구 현황 : APEC-TEL MRA 하에 지정 및 인정 기능을 수행하는 적합성평가기관(CAB)에 의해 인정된 인정기구 ▶ 인정 유형(시험기관 혹은 인증기관)에 따른 미국의 인정 기구 현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40%;">인정 유형</th> <th style="width: 60%;">인정 기구</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left; vertical-align: middle;"> 시험기관 인정 (ISO/IEC 17025) </td> <td>American Association for Laboratory Accreditation (A2LA)</td> </tr> <tr> <td>ANSI-ASQ National Accreditation Board/ACLASS (ACLASS)</td> </tr> <tr> <td>National Voluntary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 (NVLAP)</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left; vertical-align: middle;"> 인증기관 인정 (ISO/IEC Guide 65) </td> <td>American Association for Laboratory Accreditation (A2LA)</td> </tr> <tr> <td>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td> </tr> </tbody> </table>	APEC 회원국	미국 CAB 수 (MRA 1단계, 시험기관)	미국 CAB 수 (MRA 2단계, 인증기관)	호주	21		캐나다	33	17	대만(BSMI)	87		대만(NCC)	15		홍콩	9	1	한국	70		싱가포르	28	4	베트남	7		인정 유형	인정 기구	시험기관 인정 (ISO/IEC 17025)	American Association for Laboratory Accreditation (A2LA)	ANSI-ASQ National Accreditation Board/ACLASS (ACLASS)	National Voluntary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 (NVLAP)	인증기관 인정 (ISO/IEC Guide 65)	American Association for Laboratory Accreditation (A2LA)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PEC 회원국	미국 CAB 수 (MRA 1단계, 시험기관)	미국 CAB 수 (MRA 2단계, 인증기관)																																			
호주	21																																				
캐나다	33	17																																			
대만(BSMI)	87																																				
대만(NCC)	15																																				
홍콩	9	1																																			
한국	70																																				
싱가포르	28	4																																			
베트남	7																																				
인정 유형	인정 기구																																				
시험기관 인정 (ISO/IEC 17025)	American Association for Laboratory Accreditation (A2LA)																																				
	ANSI-ASQ National Accreditation Board/ACLASS (ACLASS)																																				
	National Voluntary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 (NVLAP)																																				
인증기관 인정 (ISO/IEC Guide 65)	American Association for Laboratory Accreditation (A2LA)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
	- 현재 통신기기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추가 MRA 체결을 준비 중
대상 국가	상태
일본	- 인증기관의 인정 시행 중 (지난 43차 회의 이후 총 4개 기관 인정)
멕시코	- 지난 43차 회의 이후 NEW - 2011년 5월 26일, 시험기관 인정을 위해 MRA 1단계 체결 - 18개월의 신뢰구축 기간 부여, 현재 미시행중
EEA* (유럽경제 지역), EFTA** (유럽자유무역연합체)	- R&TTE 지침(19개의 미국 NB)과 EMC 지침 (25개의 미국 NB) 하에, NB의 인정 시행중
CITEL	현재 미시행중
캐나다	<p>o (기술기준- MRA 1단계) 지난 43차 APE TEL 이후로 캐나다 산업성 (Industry Canada)는 유무선기기에 대한 일부 기술기준 개정</p> <p>▶ 2011년 3월 이후로 변경된 기술기준</p> <p>1. RSS-119 - 27.41~960MHz 대역을 사용하는 육상이동 및 고정업무에서 운용중인 무선 송·수신기(Radio Transmitters and Receivers operating in the Land Mobile and Fixed service) (2011년 6월 11일)</p> <p>▶ 캐나다 산업성은 다음의 절차를 개정하고 있음</p> <p>1. CB-02 : 무선기기의 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에 적용되는 인정 기준, 행정 및 운영상의 요구사항</p> <p>- 시장 감독 분야는 검사 기준에 관한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으며, 이는 1년 내에 인증기관의 검사 대상제품의 개수를 산출하는 방법을 명확히 할 것임</p> <p>2. CB-01 : 인증기관 요건</p> <p>- 외국 인증기관에 대한 기존 요건을 REC-CB에서 CB-01로 변경하면서, 국내(캐나다)와 외국 인증기관에 적용되는 요건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음</p> <p>o (캐나다의 MRA 이행 업데이트) 캐나다는 통신기기의 적합성평가에 관</p>

	<p>한 APEC TEL 1단계 및 2단계 MRA를 지속적으로 이행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단계 하에서 캐나다는 6개 회원국에 의해 인정된 13개의 캐나다 시험기관을 지정, 캐나다의 기준에 따라 시험을 하는 APEC 회원국의 51개의 해외 시험기관을 인정. 해당 정보는 http://strategis.ic.gc.ca/epic/internet/inceb-bhst.nsf/en/tt00065e.html, http://strategis.ic.gc.ca/epic/internet/inceb-bhst.nsf/en/tt00064e.html - 2 단계 하에서 캐나다는 3개 회원국의 기술 기준을 인증하기 위한 2개의 캐나다 인증기관을 지정했으며, 캐나다의 기준에 따름을 인증하기 위해 18개의 해외인증기관을 인정. 더 많은 정보는 http://strategis.ic.gc.ca/epic/internet/inceb-bhst.nsf/en/tt00068e.html, http://strategis.ic.gc.ca/epic/internet/inceb-bhst.nsf/en/tt00067e.html 																
<p>대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APEC-TEL MRA 하에, 대만의 규제 및 지정 기구는 NCC(National Communications Commission, 국립 통신 위원회)임 - 대만 시험기관과 APEC-TEL MRA 회원국에 의해 인정받고자 하는 대만 인정기구들의 지정 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음 - 대만 적합성평가기관의 접수 요건은 다음의 URL을 참고 http://www.ncc.gov.tw/english/gradation.aspx?site_content_sn=8 o MRA 이행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5개국과 MRA 1단계, 1개국과 MRA 2단계를 체결·이행하고 있음 1. MRA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RA 1단계 하에 타 회원국에 의해 인정받은 대만 시험기관 <table border="1" data-bbox="464 1406 1262 1653"> <thead> <tr> <th>국가</th> <th>시험소 수</th> </tr> </thead> <tbody> <tr> <td>호주</td> <td>8</td> </tr> <tr> <td>캐나다</td> <td>9</td> </tr> <tr> <td>홍콩</td> <td>3</td> </tr> <tr> <td>싱가포르</td> <td>6</td> </tr> <tr> <td>미국</td> <td>7</td> </tr> </tbody> </table> ▶ MRA 1단계 하에 대만이 인정한 타 회원국 시험기관 <table border="1" data-bbox="464 1738 1262 1823"> <thead> <tr> <th>국가</th> <th>시험소 수</th> </tr> </thead> <tbody> <tr> <td>호주</td> <td>1</td> </tr> </tbody> </table> 	국가	시험소 수	호주	8	캐나다	9	홍콩	3	싱가포르	6	미국	7	국가	시험소 수	호주	1
국가	시험소 수																
호주	8																
캐나다	9																
홍콩	3																
싱가포르	6																
미국	7																
국가	시험소 수																
호주	1																

	<table border="1"> <tr> <td>캐나다</td> <td>5</td> </tr> <tr> <td>싱가포르</td> <td>2</td> </tr> <tr> <td>미국</td> <td>15</td> </tr> </table>	캐나다	5	싱가포르	2	미국	15									
캐나다	5															
싱가포르	2															
미국	15															
	<p>2. MRA 2단계</p> <p>▶ MRA 2단계 하에 대만이 인정한 타 회원국 인증기관</p> <table border="1"> <tr> <td>국가</td> <td>시험소 수</td> </tr> <tr> <td>캐나다</td> <td>1</td> </tr> </table>	국가	시험소 수	캐나다	1											
국가	시험소 수															
캐나다	1															
홍콩	<p>○ (MRA 이행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콩은 1999년 처음으로 MRA 1단계를 시행하기 시작, 2005년 4월에 MRA 2단계에 참여 - 현재 5개국(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대만, 미국)과 MRA 1단계를 시행중이며, 이 중 캐나다, 미국과는 MRA 2단계를 시행 <p>1. MRA 1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43차 회의 이후로 홍콩은 총 7개의 지정 시험기관을 보유 (캐나다가 인정한 1개 시험기관, 싱가포르가 인정한 1개 시험기관, 미국이 인정한 5개 시험기관) - 총 14개 시험기관을 인정 (대만이 지정한 3개 시험기관, 싱가포르가 지정한 1개 시험기관, 캐나다가 인정한 1개 시험기관, 미국이 인정한 9개 시험기관) <p>▶ MRA 1단계 하에 타 회원국에 의해 인정받은 홍콩 시험기관</p> <table border="1"> <thead> <tr> <th>국가</th> <th>시험기관 수</th> <th>시험기관명</th> </tr> </thead> <tbody> <tr> <td>캐나다</td> <td>1</td> <td>Intertek Testing Services Hong Kong Ltd.</td> </tr> <tr> <td>싱가포르</td> <td>1</td> <td>Calibration & Testing Laboratory Sun Creation Engineering Limited</td> </tr> <tr> <td rowspan="4">미국</td> <td rowspan="4">5</td> <td>The Hong Kong Standards and Testing Centre Ltd.</td> </tr> <tr> <td>CMA Industrial Development Foundation Limited</td> </tr> <tr> <td>Intertek Testing Services Hong Kong Ltd.</td> </tr> <tr> <td>TUV Rheinland Hong Kong Ltd.</td> </tr> </tbody> </table>	국가	시험기관 수	시험기관명	캐나다	1	Intertek Testing Services Hong Kong Ltd.	싱가포르	1	Calibration & Testing Laboratory Sun Creation Engineering Limited	미국	5	The Hong Kong Standards and Testing Centre Ltd.	CMA Industrial Development Foundation Limited	Intertek Testing Services Hong Kong Ltd.	TUV Rheinland Hong Kong Ltd.
국가	시험기관 수	시험기관명														
캐나다	1	Intertek Testing Services Hong Kong Ltd.														
싱가포르	1	Calibration & Testing Laboratory Sun Creation Engineering Limited														
미국	5	The Hong Kong Standards and Testing Centre Ltd.														
		CMA Industrial Development Foundation Limited														
		Intertek Testing Services Hong Kong Ltd.														
		TUV Rheinland Hong Kong Ltd.														

		Bureau Veritas Hong Kong Limited
<p>▶ MRA 1단계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콩은 또한 대만에 의해 지정된 시험소 3곳을 포함하여 총 14개의 시험 기관을 인정하였으며, 여기에는 캐나다에 의해 지정된 1곳 및 그 외는 미국에 의해 지정된 곳임 <p>▶ MRA 1단계 하에 홍콩이 인정한 타 회원국 시험기관</p>		
국가	시험 기관 수	시험기관명
캐나다	1	National Technical Systems Inc.
대만	3	Telecommunication Equipment Testing Center, Telecommunication Laboratories, Chunghwa Telecom Co. Ltd.
		Telecom Laboratory Intertek Testing Services Taiwan Ltd.
		Advance Data Technology Corporation (Lin Kou Laboratories)
싱가포르	1	TUV SUD PSB Pte Limited
미국	9	Intertek Testing Services NA Inc.
		MiCOM Labs
		TUV Rheinland of NA, Inc.
		Advanced Compliance Solutions, Inc.
		Compliance Worldwide, Inc.
		Bay Area Compliance Laboratories Corp.
		SIEMIC, Inc.
		Intertek Testing Services NA Inc.
Electro Magnetic Test, Inc.		
<p>2. MRA 2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홍콩은 캐나다가 인정한 1개 인증기관과 미국이 인정한 2개 인증기관을 보유 <p>▶ MRA 2단계 하에 타 회원국에 의해 인정받은 홍콩 인증기관</p>		

국가	인증 기관 수	인증기관명
캐나다	1	Nemko Canada Inc.
미국	2	Bay Area Compliance Laboratories Corp.
		SIEMIC, Inc.
▶ MRA 2단계 하에 홍콩이 인정한 타 회원국 인증기관		
국가	인증 기관 수	인증기관명
캐나다	1	Intertek Testing Services Hong Kong L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RA 이행과 관련한 상세 정보 및 절차는 OFTA 웹사이트 (http://www.ofta.gov.hk/en/tec/apectel_mra.html) 에서 확인 가능 - 홍콩은 모든 APEC 회원국과 MRA 1 및 2단계 절차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 		

TF 프로젝트 E : MRA-ETR

TF 의장이 '기술기준동등성에 관한 상호인정협정(MRA-ETR)' 프로젝트의 이행을 위해 가이드라인(안) 보고하였는데, 이 가이드라인(안)은 캐나다에서 준비, 보고, 이행, 사후관리로 구성된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각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내용을 수정하고 있다.

각 회원국은 MRA-ETR의 도입 여부를 공지한 이후에 이행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때 자신들의 ETR 이행 여부 및 관련 사항을 MRA-TF 의장에서 통보해야 한다. 의장에게 통보할 경우 기술기준 결정 사항, 관련 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는 타 회원국들이 양 당사국의 MRA-ETR 이행 현황을 파악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MRA 교육(트레이닝)

지난 43차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대로 MRA 이행 관련 경험 및 의견 공유 등

세부 내용 논의하였다.

트레이닝의 대상에 관련 장비 업체들도 포함시켜서 MRA-ETR이 무엇인가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해야 한다. 실질적인 산업 관계자들은 APEC-TEL 회의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MRA-ETR의 트레이닝의 대상을 회의 참가자인 규제기관 및 정부 관계자들을 포함한 산업 전문가까지 확대하여야 하는데, 이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관계자들이 실제 산업계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MRA-ETR은 새로운 분야인데다가 매우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인 문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산업계의 불안·불평 등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완벽한 MRA-ETR 이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각국에 배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사후관리 사례연구

대만에서 “2010년 시장 감독 활동”이란 주제 하에 사후관리에 관한 대만의 사례를 발표하였다. 전파위원회)의 시장 감독활동 결과 보고

<표 4-11> RCB 2010년 시장 감독활동 결과

유형	인증 건수	샘플 개수	전체 인증대비 샘플 비율	적발 건수
LP CTRFD*	1,722	92	5.34%	22
TTE**	853	45	5.28%	0

주) CTRFD(Controlled Telecommunication Radio Frequency devices)
TTE(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s) : 유선통신단말기기

<표 4-12> NCC 2010년 시장 감독활동 결과

장비		샘플 수	적발 건수
와이파이	AP	5	1
	PDA	1	0
블루투스	MP3	1	0
	MP4	1	0
장난감 (RC cars/헬리콥터)		4	2
위키토키		6	0
총 계		18	3

그 외 산업계 참여 촉진을 위해 TF 의장은 회원국 내 관련 산업종사자들이 MRA- CA 이행에 관한 경험을 좀 더 공유할 수 있도록 선행 사례 발표를 독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제 3 절 기 체결 FTA/MRA 확대 이행에 따른 정책 지원

1. 한-EU FTA 체결에 따른 적합성평가 상호인정 고시 제정

2011년 12월 기준, 우리나라는 APEC 4개 회원국과 방송통신기자재 분야 적합성평가 MRA를 체결하고 있다. EU와는 FTA 체결을 통해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MRA가 자동으로 체결되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APEC-TEL MRA를 제외하고 FTA를 통해 적합성평가 MRA를 최초로 체결하는 것이다. 한-EU FTA는 2010년 10월 체결하였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송통신기자재분야 적합성평가 상호인정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였다. 이 적합성평가 고시(방통위고시 제2011-37호)는 2011년 7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

한-EU FTA의 대상이 되는 기기로 유·무선 통신기기를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 제품을 포함한다. 이 제품들을 국내 시장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내 기술 기준에 따라 기기의 안전성 및 기준 적합여부를 증명한 후 인증 표시를 제품에 부착해야 한다. 그리하여 MRA를 통해 이 기자재에 대한 확인, 즉 시험을 EU 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MRA 적용범위는 '전자파적합성(EMC)' 및 '전기안전(Electrical safety)' 기술 기준으로 규정된다.

EU 측은 현재 적합성평가절차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적합성평가기관의 개입이나 인정된 시험기관에서의 제품 시험을 요구하지 않는 공급자 적합성 선언(SDoC) 제도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제조업자는 EU의 규격에 근거하여 자기 스스로 시험을 수행하고, CE 마크를 제품에 부착하여 유럽 시장에 유통시키게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언급하였듯이 2011년 1월 전파법의 개정을 통해 기존 적합성평가 제도를 정부가 직접 관장하던 정부주도 인증제도에서 민간중심의 인증제도로 변경하였다. EU에서 시험한 후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국내 시장에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하는, EU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에 근거한 공급자 적합성선언 절차를 선택하였다.

[그림 4-6] 한국에서 EU로 수출시 적합성평가 절차



우리나라의 변경된 적합성평가제도 하에 유럽의 제조업자들은 좀 더 간소화된 적합성평가 절차를 거치게 되었다. 기존에 유럽 제조업자들은 국내로 와서 국내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수행한 후에 전파연구원에서 인증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변경된 제도 하에서는 유럽 제조업자들이 유럽 내의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받은 후에 국내로 와서 등록절차를 거치면 인증 표시를 부착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4-7] EU에서 한국으로 수출시 적합성평가 절차



2. 한-베트남 MRA 적용범위 확대 시행에 따른 고시 개정

우리나라는 베트남과 2006년 1월에 MRA 1단계를 체결하여 시행하였으나 적용 범위가 유선기기에 한정되어 있고 MRA 지정 또는 승인된 시험기관이 없어서 MRA 체결로 인한 역할이 미비하였다. 그리하여 양국 간 MRA 이행 및 방송통신기자재분야 교역의 활성화를 위해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존의 유선기기에 국한되었던 것을 무선 및 정보기기로 확대하면 무선기기, 소출력 기기, 컴퓨터, PDA 등 주요 방송통신기기를 다수 포함하게 된다.

[그림 4-8] 한-베트남 MRA 적용범위 확대



그리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은 2011년 5월 26일 MRA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합의하였고, 한-베트남 MRA 확대고시 (방통위고시 제2011-41호)를 발표하였다.

양국 간 방송통신기자재분야 MRA 적용범위의 확대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기, 컴퓨터 등 무선·정보기기 수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은 인구가 약 1억 명에 이르지만 이동전화 가입률이 10% 안팎으로, 국가 자체가 시장 잠재력

이 큰 국가 중 하나이다. 특히 문화적 수용도가 높고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서, 베트남 시장에서 단말기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경우 콘텐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등 베트남 2차 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라오스, 태국 등 인접국가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별 교역량 조사에서 살펴보았듯이, 對베트남 방송통신기기 수입이 적기 때문에 MRA 적용범위의 확대에 의한 국내 시장의 영향력을 미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베트남은 인증 시 CE시험성적서를 인정해주고 있다. 그리고 베트남측에서 제공한 MRA 적용범위 기술기준 리스트를 보면, 베트남 기술기준 제정 시에 근거가 된 국제규격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대부분이 EN, IEC 규격이었다. 이를 근거로 베트남 기술기준은 EN규격과 동일할 것으로 추정하여, 베트남 기술기준과 해당 규격을 비교해보았다.

비교 결과, 유럽 규격은 계속해서 개정되어 현재 신버전이 나와 있지만, 개정 전 구버전에 근거한 베트남 기술기준은 개정되지 않고 있어서 일부 상이한 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베트남 기술기준은 유럽 규격에 근거하나,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리하여 유럽 규격만을 확인하여 베트남 기술기준을 판단할 수는 없으며, 꾸준히 검토해야 한다.

3-3. 한-페루 FTA 체결에 따른 이행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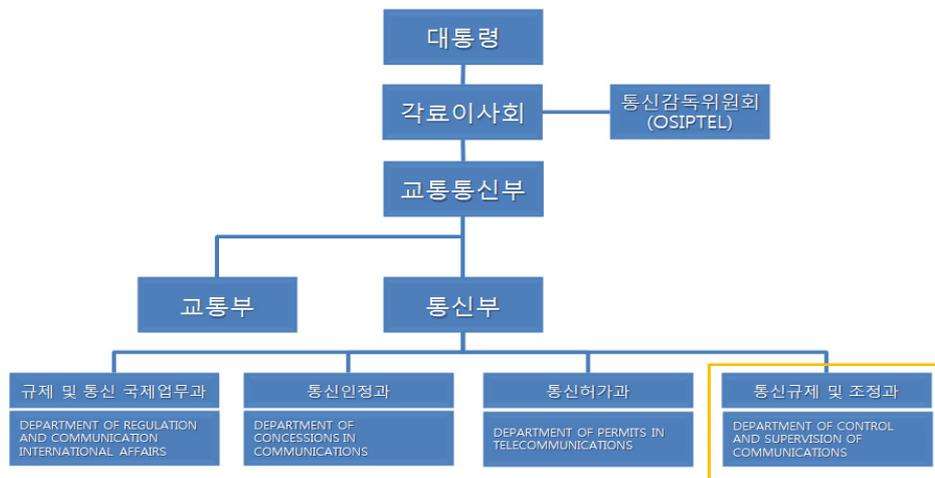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3월 21일 페루와 FTA를 체결하였고, 이는 동년 8월 1일 발효되었다.

페루는 방송통신기자재 분야 적합성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공인시험 및

인증을 요구하지 않는 서면승인 절차를 도입하고 시행하고 있다. 통신법 제 63 조(Art. 63 TUO of the Telecommunications Law)와 페루관보(El Peruano) D.S No. 001-2006-MTC(인증 요건 및 절차, '06.1.21.)에 의거하여, 신청자는 장비의 기술 특성을 기재한 인증신청서 제출 후 기술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서면검토를 받아 인증마크를 부착하지 않고 시장에 유통시킨다.

페루의 적합성평가기관으로 우선 페루교통통신부(MTC)를 들 수 있다. 이는 방송통신 시장의 감시 및 규제역할을 총괄하는 곳으로, 국가 통신정책 수립, 주파수 이용계획 수립 및 관리, 주파수 및 기술기준 제개정, 방송통신기자재 인증 및 시장 감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4-9] 페루 교통통신부 조직도



주) 통신규제 및 조정과에서 적합성평가 신청·접수 및 인증서 발급하고 있다.

페루의 적합성평가 절차는 크게 사전등록과가 인증신청으로 나뉜다.

첫째, 사전등록

인증 대상 제품을 교통통신부 '통신규제 및 조정과'에 사전 등록하는데, 이 때 신청자 정보(상호, 주소, 연락처 등)와 제품의 형태, 수량 등 기본정보를 함께 제출한다.

둘째, 인증신청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통신규제 및 조정과'로 서면 신청한다.

- (신청서) 신청제품의 상표, 모델, 이름 및 제조자 주소 등 수록
- (본인확인서) DNI(주민등록등본에 해당되는 본인확인서) 또는 대리인일 경우 증명서 사본
 - (사용자설명서) 제품설명, 상표, 모델명, 제조자 주소 및 기술담당자 수록한다. 영문 또는 스페인어를 권고하며, 외국어일 경우 간단한 번역집 수록해야 한다. 페루와 MRA 체결국의 인증서로 대체 가능(DS No. 020-2008-MTC)
 - (기술명세서) 페루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가 작성한 세부기술명세서와 블록다이어그램 및 회로도를 제출한다. 국내외에서 발급하여 통용되는 시험성적서와는 다른 것으로, 기술적 특성을 기술한 서류이다.
 - (SAR 인증서) 휴대용 단말기기는 국제시험기관 또는 당국에 인증서를 제출하는데, 주파수가 2.2GHz이고 출력 50mV 이하 장비는 제외된다.

그러나 페루의 적합성평가 제도에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미국(FCC)과 캐나다(IC)의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위의 서류들을 모두 대체할 수 있다.

셋째, (인증서 발급)

제출서류 검토 후 30일 내 인증서를 발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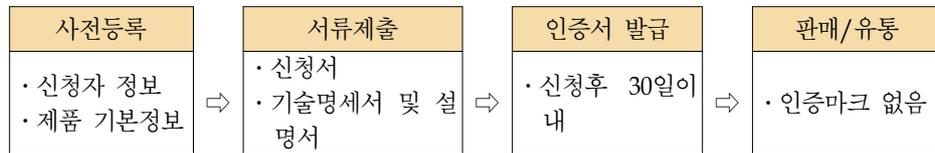
넷째, (판매/유통)

인증서 수령 후 별도의 인증마크를 부착하지 않고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다섯째, (인증정보 공개)

매월 인증품목 목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그림 4-10] 페루의 적합성평가 절차



<표 4-13> 對페루 방송통신기자재 수출입 현황

(단위 : 미 달러)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유선 통신 기기	수출	813,246	1,087,078	859,858	1,145,433	1,249,232
	수입	4,587	0	1,837	1,074	114
	무역 수지	808,659	1,087,078	858,021	1,144,359	1,249,118
무선 통신 기기	수출	27,081,418	53,240,238	26,695,261	16,629,156	24,529,968
	수입	266,917	2,848	15,388	2,288	1,022
	무역 수지	26,814,501	53,237,390	26,679,873	16,626,868	24,528,946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출	8,762,392	5,402,594	6,418,271	11,692,441	18,654,615
	수입	604	4,685	12,868	2,522	1,734
	무역 수지	8,761,788	5,397,909	6,405,403	11,689,919	18,652,881
영상 기기	수출	11,913,454	12,119,919	8,883,335	26,710,061	6,259,098
	수입	2,087	0	4,292	1,649	3,454
	무역 수지	11,911,367	12,119,919	8,879,043	26,708,412	6,255,644
전체	수출	48,570,510	71,849,829	42,856,725	56,177,091	50,692,913
	수입	274,195	7,533	34,385	7,533	6,324
	무역 수지	48,296,315	71,842,296	42,822,340	56,169,558	50,686,589

페루와의 수출입 상위 5개 품목을 아래 표와 같이 살펴보면, 주로 방송통신기자재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방송통신기자재분야 MRA 체결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표 4-14> 對페루 방송통신기자재 수출입 상위 5개 품목

(단위 : 미 달러)

수출			
순	구분	품목	금액
1	컴퓨터 및 주변기기	휴대용 컴퓨터	16,878,052
2	무선통신기기	시분할식 전화기	13,363,166
3	무선통신기기	무선전화기	10,117,259
4	영상기기	LCD TV	4,146,360
5	영상기기	CRT TV	1,044,041
수입			
순	구분	품목	금액
1	영상기기	카스테레오	2,113
2	컴퓨터 및 주변기기	프린터	1,083
3	무선통신기기	무선통신기기부품	1,022
4	영상기기	음향기기부품	922
5	컴퓨터 및 주변기기	컴퓨터부품	638

우리나라는 페루와의 FTA를 체결하면서 그 적용범위를 방송통신기자재로 하였다. 관련 분야의 주요 내용으로 자국의 절차와 동일하게 수행된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수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페루의 적합성평가 제도 조사 결과, 한-페

루 FTA 협정은 적합성평가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나, 양국의 규제수준 차이로 인해 현재로서는 적합성평가 상호인정의 체결로 인한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페루가 국제적 적합성평가체계를 구축 할 때까지 우리측 대응사항 없으나, 진행상황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4-15> 한국과 페루의 적합성평가제도 비교

국 가	내 용
한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 시험 및 인증절차 필수 - 인증표시 필수 <li style="padding-left: 20px;">: KC 마크
페 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 시험 및 인증절차 요구되지 않음 - 별도의 인증마크 요구되지 않음 - 서면 등록으로 절차 완료

제 4 절 전략적 FTA/MRA 체결을 위한 추진체계 확립

1. 배경 및 필요성

현재 국내 MRA는 FTA와 달리, 협상 체결 시 참고 지침이 될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행정절차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MRA 체결과 관련한 행정 체계의 부재는 전체 협상 단계에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협상에 대비하여 상대국에 대한 사전 연구 부족, 실제 협상 단계에서의 혼선 및 전문성 결여, 협상 이후의 사후조치(이행절차 마련 등) 미흡 등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리고 MRA 체결의 당위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MRA 자체의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위에서 언급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국내 MRA 행정절차 확립을 위해 MRA 체결업무의 추진절차 및 추진 단계별 이행 사항 등을 규정하여 MRA 체결 절차를 포괄적으로 명문화하고자 한다. 이는 MRA 체결 및 이행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MRA 체결 과정에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고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의 활동을 통해 정책의 균형성과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우선적으로 국내외 관련 사례 연구를 통해 “MRA 체결 지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관련 공청회 개최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실제 산업계 종사자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수렴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MRA 체결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혜택을 연구함으로써, MRA 체결의 의의와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 사례로는 외교통상부의 'FTA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절차 (대통령 훈령)'을, 해외 사례로는 '호주-뉴질랜드 간 상호인정법률(Trans-Tasman MRA)'와 일본의 '특정 기기 관련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외국과의 상호승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1호)'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국내 사례 연구 : FTA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절차(대통령 훈령)

FTA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게 된 배경으로 크게 한국 정부의 FTA 전략 추진 방향을 들 수 있다.¹²⁾

첫째, 전략적 동시다발 FTA 추진

지난 3년간 주요 대륙별 **교두보 국가와의 FTA 체결을 바탕으로** 하여, FTA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칠레 → 중남미, 싱가포르 → ASEAN, EFTA → EU). 그리고 거대 경제권과의 FTA 추진과 동시에, BRICs 등 미래 거대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급성장하고 있는 **신흥유망국가와의 FTA도 추진**하고 있다.

둘째,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를 목표로 하되,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실리적 접근법**

상품 분야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지향하는 한편, **신흥유망시장**과는 주요상품의 **해외시장확보에** 주력하는 유연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12) 중소기업중앙회, FTA 추진 현황 및 계획, 2006년 8월
(http://www.fta.go.kr/new/ftakorea/korea_psd_new_read.asp)

셋째,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FTA 추진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대통령훈령)』의 제정 및 시행을 통해 FTA 추진 과정에서 일반국민과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치하고 전반적인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FTA 추진실무위원회 ⇒ FTA 추진위원회 ⇒ 대외경제장관회의).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대통령훈령)』에 따른 FTA 추진 절차는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대하며 절차적인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표 4-16> 'FTA 체결절차규정' 제정 경과

날 짜	내 용
1998년 11월	최초 FTA 체결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타결 : '03. 2월)
2002년 3월	동아일보 기사 보도 “한-칠레 FTA 준비없이 조급하게 추진되었다”
2002년~2004년	한-일, 한-싱, 한-ASEAN, 한-EFTA 추진을 위한 산학연 공동연구 및 실무협상 추진
2002년 3월	한-일 FTA 산·학·관 공동연구회 설치
2002년 11월	한-싱 FTA 산·학·관 공동연구회 설치
2004년 2월	한-ASEAN 공동 전문가그룹 구성
2004년 3월	외교통상부, 국무회의에 『FTA체결절차규정』 제정 추진계획 보고 - 그동안 FTA 체결절차 규정 미비로 FTA 체결과정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 향후 FTA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FTA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동 규정 제정 추진
2004년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FTA체결절차규정』 제정 결정
2004년 6월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 제정(대통령훈령 제121호)

FTA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절차의 제정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첫째, FTA 체결과정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 제고
- 둘째, FTA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효율적 의견수렴 및 이익 제고
- 셋째, FTA 추진을 위한 산학관 공동 기반연구 추진근거 마련
- 넷째, FTA 체결 및 협상 전후절차에 대한 실무 매뉴얼로 활용

FTA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절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FTA 상설 추진기구 설치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 하고, FTA 체결과정을 실제 담당할 「FTA 추진위원회」, 「FTA 실무추진단」 및 「FTA 대상국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운영한다.

<표 4-17> FTA 추진기구 구성 및 역할

- o FTA 추진위원회(위원장 : 통상교섭본부장)
 - 관계부처 차관보 또는 실장급 공무원 15인 이내로 구성
 - FTA 전략, 추진 타당성, 협상안 등 심의
- o FTA 실무추진회의(의장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
 - FTA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준비 및 협의
- o FTA 민간자문회의(의장 : 통상교섭본부장)
 - 대외경제전문가 및 관련업계 대표 30인 이내로 구성
 - 대상국과의 FTA 추진 타당성, 영향, 홍보대책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

FT공청회 개최

FTA 체결 및 이행 협의에 대한 관련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

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FTA 협상전후 절차

(협상전 절차) FTA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첫째, FTA 추진 기본전략 수립(대외경제장관회의)

둘째, FTA 협상전 타당성 검토 및 심의(실무추진회의, 민간자문회의)

셋째, 협상개시 의결요청(대외경제장관회의)

(협상절차) 협상대표단 구성, 협상진행 및 보고

첫째, FTA 협상 대표단 구성(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

둘째, FTA 협상안 심의(FTA추진위원회)

셋째, 협상진행 및 보고(국회)

넷째, 가서명(수석정부대표)

(협상후 절차) 협상결과 보고, 보완 및 국회비준

첫째, FTA 협상결과 보고(국회/국민)

둘째, FTA 협상안 보완(FTA추진위원회)

셋째, 국무회의상정, 대통령 재가 및 국회비준

넷째, 협정시행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회 개최(국민)

(이행 절차) 이행방안 수립 및 공고

첫째, FTA 이행위원회 및 산하기구 구성·운영

둘째, 이행방안 수립

셋째, 이행방안 공고(국민)

[그림 4-11] FTA 체결절차

단계	세부절차	민간 의견 수렴절차
협상 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추진 대상국가 내부 검토 ■ 국내 연구기관에서 타당성 연구 실시 ■ 「FTA 대상국 검토위원회」 심의 ■ 공청회 개최등을 통한 의견 수렴 ■ 「FTA 추진위원회」 심의 ■ 「대외경제장관회의」, 협상대상국 결정 ■ 대국회 설명 ■ 산관학 공동연구 실시(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추진위원회」 및 「대상국 검토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참여 ■ 공청회 등을 통해 FTA 추진대상국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
협상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상 추진체제 구성 ■ 정부협상안 준비 ■ 협상 진행 ■ 「대외경제장관회의」 「FTA추진위원회」 심의 ■ 최종 협상안 결정 ■ 협정문 가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단체, 업종별 단체, 민간 전문가 등으로부터 협상에 대한 자문 ■ 협상결과를 관련업계, 연구기관, 민간단체에 설명하고 의견 수렴
협상 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식 서명 절차 ■ 국회비준동의 요청 ■ 대국민 홍보 ■ 보완조치 마련 ■ 국회비준 동의 ■ 발효 ■ 협정 이행에 대한 설명 ■ WTO 통보 및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홍보 ■ 관련업계에 협정 이행에 대한 설명회 개최

자료 :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2004. 3. 9

3. 해외 사례 연구 : 일본 MRA 법률 연구

우선 일본은 대상 국가별로 별도의 MRA 관계 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나, 2001년 7월부터 MRA 시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구분 없이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다. 일본의 “특정 기기 관련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외국과의 상호승인에 관한 법률”은 적합성평가기관의 인정 및 관리를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서, 제도적 참고 자료로서의 활용가치가 높다. 그러나 행정적 후속조치만을 다루고 있어서 국내 행정절차 제정 목적과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호주는 뉴질랜드와의 자유로운 물품 이동을 통한 공동 시장화를 목표로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양국 시장에 공급되는 제품에 대하여 동일한 기술기준 및 인증 제도를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본 법률에서는 양국 간 상호인정 범위 및 분야 별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상호인정협정의 행정체계를 살펴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우선 본고에서는 호주-뉴질랜드 간 상호인정법률과 일본의 MRA 법률 중 일본의 사례만을 선정하여 정리하였음을 알려둔다.

2011년 12월 기준 일본은 EU, 싱가포르, 미국 등 3개국과 MRA를 체결하여 이행 중에 있다.

<표 4-18> 일본 MRA 체결 현황

구분	체결 형태	체결일 (발효일)	상호인정분야	대상법령	주요품목
일-EU	2단계	'01. 4월 ('02. 1월)	o 전기통신기기 o 전기용품	R&TTE, LVD	o 무선도어장치 o RFID

			o 화학품 o 의약품		o 휴대전화
일-싱가 폴	2단계	'02. 1월 (('02. 11월)	o 전기통신기기 o 전기용품	정보통신 개발청(IDA)법, 전기 통신법	o
일-미	1단계	'07. 2월 (('08. 1월)	o EMC 대상기기 o ISM기기	FCC Part 15, 18	o 무선랜 등

일본 MRA 관련 법령은 크게 MRA 법인 '특정 기기 관련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외국과의 상호승인 실시에 관한 법률',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3원화 되어있다. 그리고 그 외 지정 조사기관의 근거를 '특정 기기 관련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외국과의 상호승인 실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지정 조사기관 등에 관한 성령(총무성·경제산업성령 제2호)으로 명문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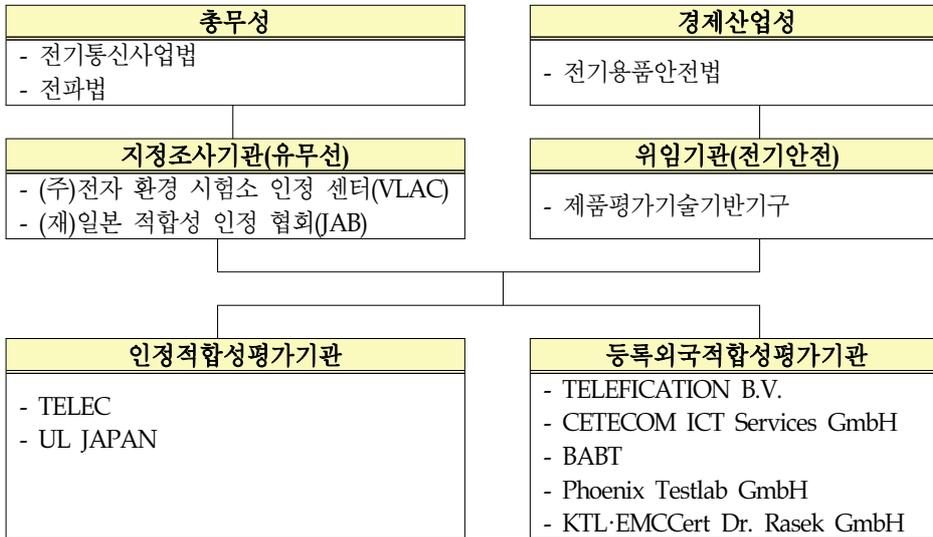
<표 4-19> MRA 관련 법령 주요 내용

근거 법령	주요 내용
법 제2조	MRA 개념 및 관련 용어 정의
법 제3조제3항 시행규칙 제2조	MRA 적합성평가기관 인정신청 및 제출서류
법 제5조제1항 시행규칙 제3조	MRA 적합성평가기관 인정 기준
법 제40조제1항 시행령 제10조	MRA 적합성평가기관 인정 수수료
법 제14조	MRA 적합성평가기관 인정을 위한 심사기관(지정조사기관) 마련
법 제40조제2항 시행령 제11조	지정조사기관에 의한 조사 수수료

근거 법령	주요 내용
법 제17조 성령 제5조	심사기관 지정기준
법 제14~28호	심사기관의 역할 및 권한
법 제31~제34조/ 법 제35조	총무성(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경제산업성(전기용품안전법)의 권한 및 역할

그리고 다음부터는 MRA 체결에 따른 일본의 적합성평가기관 지정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본의 방송통신기자재분야 MRA 주무처는 근거법에 의거 총무성과 경제산업성으로 분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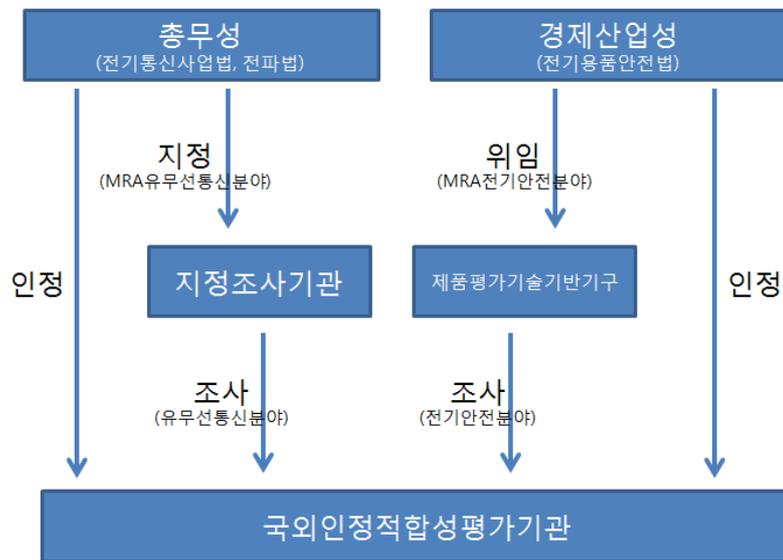
<표 4-20> 일본의 적합성평가기관 지정 체계



국내와 달리 일본은 지정조사기관을 별도로 두어, MRA 하에 인정된 외국의 적합성평가기관을 조사하고 있다. 그리고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지정 조사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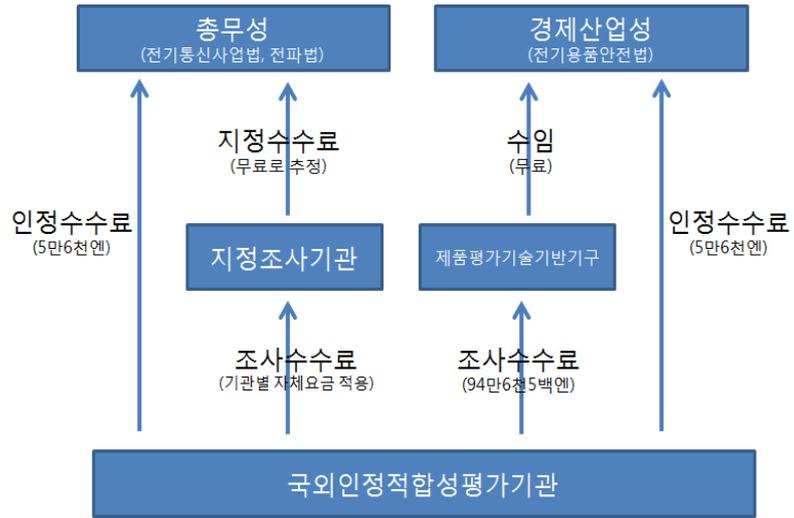
의 역할 및 권한, 선정기준, 수수료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성령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

[그림 4-12] MRA 체결에 따른 적합성평가기관 지정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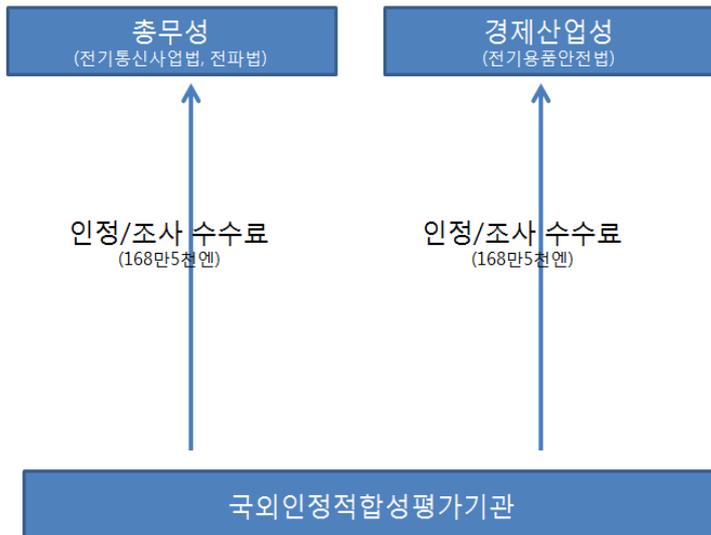
일본의 MRA체결에 따른 적합성평가기관 지정수수료를 살펴보면, 지정조사기관을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와 정부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정조사기관을 통하는 경우, 인정수수료는 주무 부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하지만 조사수수료는 상이하며 이는 다음과 같다.

[그림 4-13] MRA 체결에 따른 적합성평가기관 지정 수수료(1)



그리고 정부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168만 5천 엔을 일괄적으로 부과한다.

[그림 4-14] MRA 체결에 따른 적합성평가기관 지정 수수료(2)



3. 검토 결과

일본 MRA 법령을 연구한 결과, 국내에서 참고할만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현행법상 전문 심사기구를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단, 단기적 관점에선 불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전반적인 MRA 체계의 재정비 측면에서 “국내 전문 심사기구”의 설치에 고려해볼만 하다.

둘째, MRA 체결 전 절차에 관한 사항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MRA 체결에 따른 일방사항(개념 정의 등), 지정절차, 관리 방안 등 일부는 참고할 만하다. 그리고 지정 기준, 인정 및 국외 인정기구 조사 수수료 등 아직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분야에 한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 FTA 훈령에서는 FTA 체결 절차 전 과정을 규정하고 있다. 체결 전 기반연구, 체결 시 참고 가이드라인, 체결 이후 대국민 홍보 등 전반적인 세부사항을 인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 협정 전담 추진위원회와 민간자문회의, 그리고 공청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FTA 체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산업 각계의 의견을 협상 시 반영하는 노력을 통해 대국민 홍보효과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4. MRA 추진절차 규정 제정 방향

국내의 관련 법령 사례 연구 결과, 단 하나의 사례만을 차용하여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므로 일본 및 외교부 자료를 혼용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고 법령 제정 목적에 부합하는 한국형 MRA 체결절차법 마련해야 할 것

이다.

첫째, MRA 추진 단계를 우선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명문화된 절차 없이 추진되었던 MRA 체결에 따른, 적합성평가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상의 보완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MRA 추진 단계를 아래와 같이 마련한 후, 단계별로 주요 이행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표 4-21> MRA 추진 단계 및 단계별 이행사항

추진 단계	내 용
협상 전 단계	- 타당성 검토 : MRA 추진 수요 조사 :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 MRA의 경제적 효과, 상대국 제도 연구 등 분석 연구 수행
협상 단계	- 실제 협상 및 체결 : MRA 추진 가이드라인 준수 : 협상 전담반 운영 : 협상 진행상황 보고 및 설명 : 협상 결과 공포
협상 후 단계	- 시행 및 평가 : 대국민 홍보 : MRA 체결 결과 평가

둘째, MRA 추진·이행 전담반 구성이 필수적이다. MRA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여 추진하는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내외적으로 당위성 및 전문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MRA는 주로 국가 간의 상호 협정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 위원회의 조직을 통해, 별도의 절차 없이 체결 상대국에 국내 기관을 비롯한 국내 정부 관계자들의 전문성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MRA 기반 연구 활성화

본래 MRA 체결의 취지인 수출경쟁력 확보 및 산업 활성화를 염두에 두어, MRA 전 과정에 걸친 철저한 조사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그 예로 체결 대상국 선정 기준 마련, MRA 체결로 인한 파급효과 분석, 실제 국내의 수요 조사 등을 들 수 있다.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국내 적합성평가제도 문제점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내 전파법 개정 사항을 통한 신규 적합성평가제도와 해외 주요국의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이는 국내외 제도를 동등한 수준에서 비교·분석하여 향후 국내 관련 정책 입안에 활용할 수 있는 주요 기초 자료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1년 1월 전파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한국은 통신망 위해 방지, 전파 혼신·간섭 방지, 인체안전 등 사회적 안전장치로서 정부 주도의 일률적인 인증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제품성능 및 제조자의 품질관리 능력 향상, 소비자들의 다양한 용·복합 기기의 사용 및 니즈 증가, 주요 교역국과의 FTA 협상 시 동등한 수준의 적합성평가체계 도입 요구 등으로 인해 국제적 수준에 맞는 적합성평가체계를 점진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기존의 국내 적합성평가제도는 국내 관련 산업의 발전정도와 규제환경, 그리고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사전 규제는 대폭 완화하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와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다시 말해서 종전 정부주도의 강제인증체계는 민간주도의 제3자 중심 적합성평가체제로 변경하였고 이는 최근 제3자 적합성평가제도인 인증제도에서 점차 기자재 공급자의 품질관리 능력을 고려하여, 점차 기자재 공급자의 자체 판단에 따른 SDoC 도입을 확대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국내 적합성평가체계는 3년간의 충분한 연구 및 논의를 거쳐, 유럽 등 주요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SDoC를 그대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국내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도입한 것이다.

국내 적합성평가제도의 변경된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증유형이 보다 간소화되었다. 종전까지는 장비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형식검정, 형식등록, 형식승인, 전자과적합등록의 네 개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나, 변경된 제도 하에서는 네트워크, 인체 등에 미치는 위협 정도(위해도)를 고려하여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의 세 개 유형으로 재분류하였다.

또한 인증유형만 단순화한 것이 아니라 제출 서류 또한 간소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절차를 줄임으로써 사전 규제를 완화하였고,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적합인증의 경우, 기존의 절차는 유지하되 제출 서류는 9종에서 6종으로 간소화하였다. 그리고 적합등록은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등록하도록 하였고 그 외 필요서류는 제품 단종일로부터 5년 간 자체적으로 비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외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도입하였다. 그리고 면제 규정을 악용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면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등 면제조건을 증명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대외적 측면에서, 적합성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보장하여 FTA/MRA 등 국가 간 협정 체결 시 국내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증명하고자 국제적 심사체계를 갖춘 전문심사기구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해외 사례를 통해 살펴 본 결과, 대부분 국가에서 적합성평가기관의 심사평가업무인 인정업무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국내 전과법 개정에서는 해외의 흐름을 반영하여 더 완전한 체계 마련을 기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제2절 정책 제언 - 향후 정책추진 방향-

우선 한국을 비롯 주요 국가들은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제도를 운영할 때 자국 통신 산업의 발전정도와 규제환경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국제적 수준에 맞는 적합성평가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제3자 적합성평가제도인 인증제도에서 점차 기자재 공급자의 품질관리 능력을 고려하여, 점차 기자재 공급자의 자체 판단에 따른 SDoC 도입을 확대하고 있고, 대부분 국가에서 적합성평가기관의 심사평가업무인 인정업무를 구분하여 운영함으로써 적합성평가기관 선정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아울러 적합성평가기관역시 대부분 민간기관에 맡김으로써, 적합성평가업무의 전문성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외 적합성평가제도를 조사·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1자 적합성평가제도의 비중 증대

유럽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인증 유형인, 공급자 자기적합선언(SDoC) 유형을 채택하는 국가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반영하여 국내에서도 2011년 1월 적합성평가제도의 개선을 통해 적합등록 유형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다시 말해서 적합성평가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인증 취득을 용이하게 하여 제조업자의 제품 출시를 돕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사전 규제가 완화되면서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이 해외 주요국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일부 국가(중남미, 러시아 등)에서는 사전 규제를 강화하여 사후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의 변화를 계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전 세계적으로 적합성평가의 주체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전하는 추세
물론 적합성평가의 주체가 민간으로 이양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긴 하나,
이것도 사후규제의 강화와 마찬가지로 적합성평가제도의 발전 정도와 성숙도에
따라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관련 제도가 발전하고 성숙해 있을수록,
각 적합성평가 활동의 주체가 분리되어 있으며, 이 중 인증기관이 정부 자체에서
민간으로 이양되는 것이 주요국들의 현황이었다.

이는 국제적 활동이나 FTA/MRA 등의 협약 체결 시, 국제적으로 상대국에 국
내 기관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

셋째, 이미 언급하였듯이 적합성평가제도의 운영체계가 전문화된 국가일수록
업무별로 수행기관이 확실하게 분리되어 있다.

그러면 향후 세계적 추세에 따르기 위해 고민중인 국가들은 어떠한 점을 고려
해야 할까.

주요 선진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공급자 책임을 중시하는 제1자 적합성평가제도
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첫째, 제품 품질이 일정수준 상향평준화되어 있어야 하며,

둘째, 공급자의 기자재 품질관리능력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효과적인 사후관리나 시장 감시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2011년 전파법 개정을 통해 SDoC와 유사한 적합등록을 도입하였는
데, 이는 지난 3년간 면밀히 검토한 결과였다. 이를 근거로 하여 완전한 SDoC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인증 사항을 정부에 신고토록 하는 중간수준의 SDoC를 도입하여 이제도의 전면도입에 따른 유통환경 혼란을 방지코자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제1자 적합성평가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제3자에 의한 적합성평가제도를 우선 도입함으로써 시장 혼란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때 제3자 적합성평가제도를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적합성평가업무 수행기관의 객관성 및 중립성 확보를 위한 심사평가시스템(이른 바, 국제적 인정시스템)과 사후관리체계의 마련이라고 볼 수 있다.

제 3 절 결 론

본고에서는 국내 적합성평가제도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국의 사례도 살펴보았으며, 이는 향후 FTA/MRA 체결에 대비한 상대국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한 동향 파악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적합성평가의 국제적 흐름을 익힐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신규 MRA 체결 및 범위 등의 확대 이행 시, 상대국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고에서는 방송통신기자제 분야 상호인정협정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고, 그 결과 행정체계 및 근거 법령의 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국내외 사례를 연구하여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외교부 훈령과 일본의 MRA 법령(본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호주의 MRA 법은 참고할 만한 사항이 없어서, 검토 후 제외하였다.) 검토 결과를, 국내 환경 및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반영하면 국내 MRA 행정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MRA 체결 단계에 전반적으로 관련시킴으로써, 정부 간의 일방적인 체결이 아닌 산업계의 실질적인 내용을 협정문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현재로서는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MRA 체결로 인한 성과 및 효과를 가시화하여 협정 체결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FTA/MRA 추진 체계의 확립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외 유사 사례연구를 비롯한 협정 체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 등 장기적인 추진 계획

의 수립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1년 미만의 단기적 정책과제의 형태보다는, 수년간 장기적인 지속사업으로 본 과제에 대한 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강하연, 김성웅, 여혁중, 고영제, 박민정 (2009), 『FTA 협상대상국 방송통신서비스 시장 개방 현황 및 규제제도 조사 자료집』,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강하연, 김성웅, 여혁중, 전용욱, 박민정, 박은지 (2010), 『FTA 협상대상국 방송통신서비스 시장 개방 현황 및 규제제도 현황』,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구제길, 안주영, 주재복, 우병창 (2006), 『정보통신 해외인증제도 조사·분석 연구』
- 박용서, 김세준, 나범석 (2006), 『정보통신 인증관련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 경원대학교
- 송송이, 박윤미, 미국, EU의 적합성평가제도 현황 및 국내 제도 개선 동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신금철, 박정민, 홍용구 (2010), 『국가간 상호인정협정 체결 지원에 관한 연구』, 국립전파연구원
- 이중화, 신호철, 김창완, 김보민, 김욱준 (2009), 『2009년도 주요국의 방송통신 규제 동향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임광선, 임명환, 노일수, 김연배, 백종현 (2004), 『정보통신기기 인증제도 및 MRA 연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장윤성, 송혜숙 (2009), 『심층분석, 러시아의 인증제도 - 새로 도입되는 인증제도와 향후 전망 -』, KOTRA
- 장윤일, 김종운, 고흥남, 양미숙, 송수진, 고영남 (2007), 『정보통신 인증제도 개선 및 상호인정협정 추진 연구』, 국립전파연구원
- 전춘우, 지윤정, 유성준, 성기주 (2006), 『해외 인증제도와 시사점 : 중남미편』,

KOTRA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5), 『베트남의 전기통신기기 인증제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6), 『일본 정보통신기기 인증제도』

해외 문헌

A2LA(2005), "General Requirements for Accreditation of Laboratories"

FCC(1998), "FCC 98-338(GEN Docket No. 98-68)", Report and Order

FCC(1999), "FCC Provides Further Information on the Accreditation Requirements for Telecommunication Certification Bodies, DA 99-1640", Public Notice

FCC(2008), "Permit But Ask Procedure", OET(Office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FCC(2008), "TCB Exclusion List", OET(Office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FCC(2008), "TCB Post-Market Surveillance", OET(Office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NIST (2004). "NVCASE Program Handbook"

NVLAP (2006), "Procedures and General Requirements"

TUV Rheinland Brasil, "General View of the Brazilian Process for Type Approval of Telecommunication Products"

주요 결과물

[결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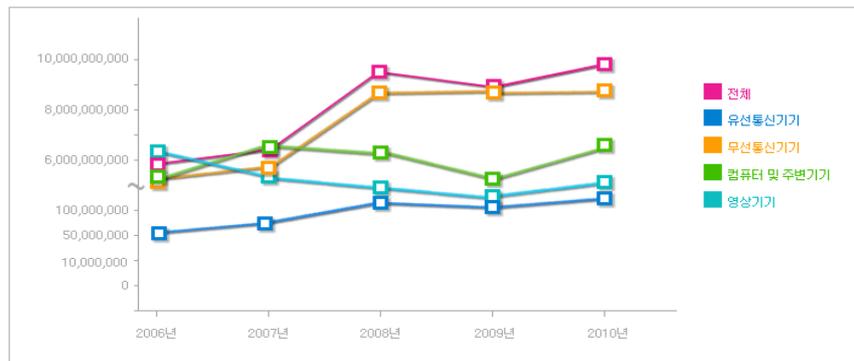
해외 주요국 교역량 조사(raw data)

1.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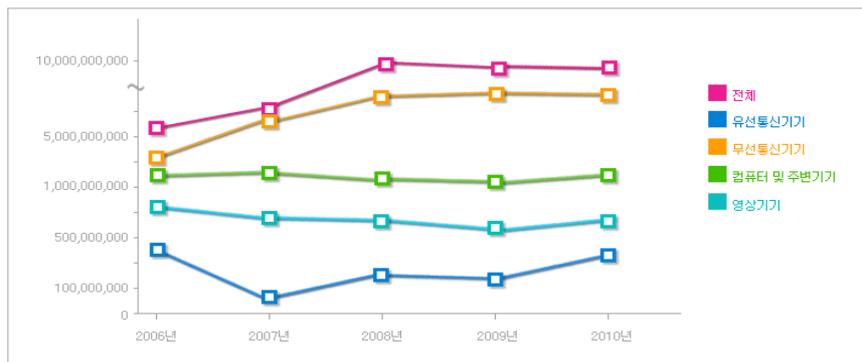
[단위 : 달러]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유선 통신 기기	수출	323,280,826	460,185,287	503,561,107	382,731,876	531,542,318
	수입	376,148,412	399,856,467	346,217,893	244,076,436	221,180,196
	무역 수지	(52,867,586)	60,328,820	157,343,214	138,655,440	310,362,122
무선 통신 기기	수출	4,815,054,782	5,998,332,031	8,882,847,534	8,958,265,497	9,148,622,659
	수입	502,072,827	428,920,727	373,661,918	353,822,177	471,101,395
	무역 수지	4,312,981,955	5,569,411,304	8,509,185,616	8,604,443,320	8,677,521,264
컴 퓨 터 및 주변 기기	수출	1,261,698,442	1,411,018,740	1,291,988,275	1,109,621,425	1,363,897,238
	수입	754,175,860	733,121,339	677,884,092	636,699,328	690,675,697
	무역 수지	507,522,582	677,897,401	614,104,183	472,922,097	673,221,541
영상 기기	수출	695,747,483	485,671,530	331,634,838	248,078,517	335,950,793
	수입	72,758,047	76,342,291	86,645,747	83,298,465	78,799,366
	무역 수지	622,989,436	409,329,239	244,989,091	164,780,052	257,151,427
전체	수출	7,095,781,533	8,355,207,588	11,010,031,754	10,698,697,315	11,380,013,008
	수입	1,705,155,146	1,638,240,824	1,484,409,650	1,317,896,406	1,461,756,654
	무역 수지	5,390,626,387	6,716,966,764	9,525,622,104	9,380,800,909	9,918,256,3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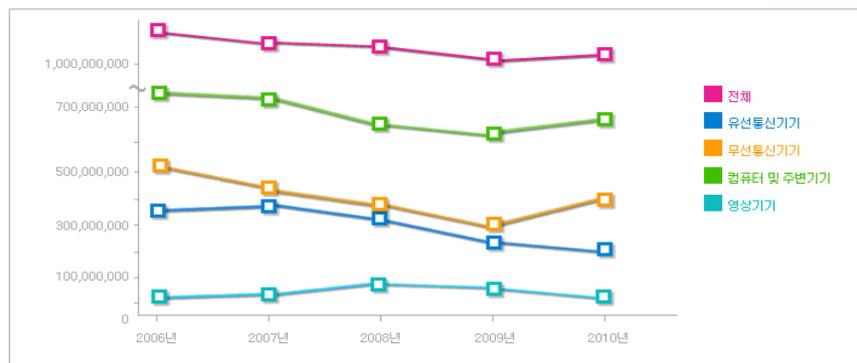
o 무역수지



o 수출



o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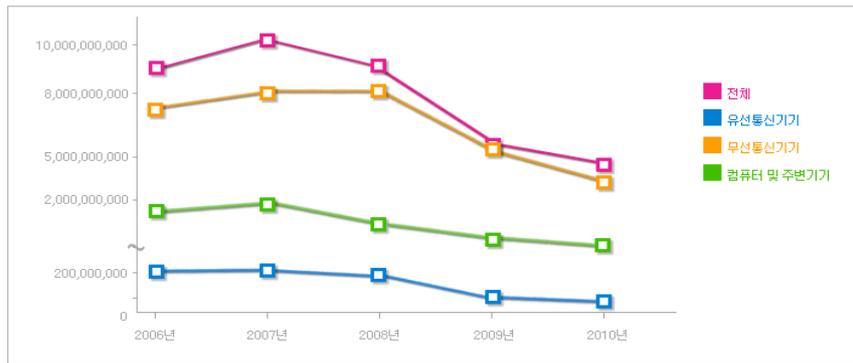


2. 유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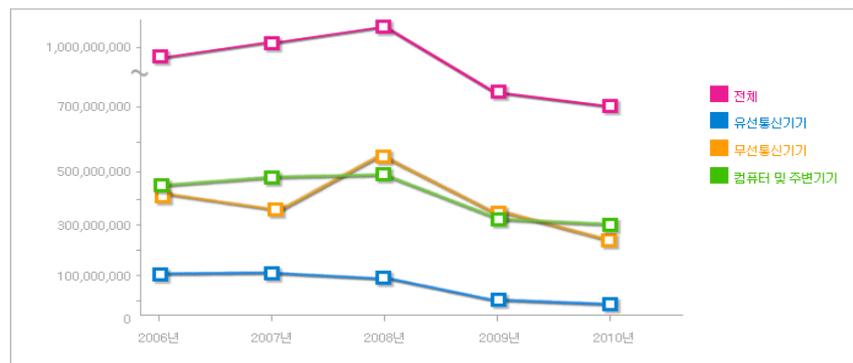
[단위 : 달러]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유선 통신 기기	수출	221,526,449	222,800,745	212,902,104	116,116,164	118,145,541
	수입	73,896,376	147,140,272	186,213,592	102,947,505	140,750,629
	무역 수지	147,630,073	75,660,473	26,688,512	13,168,659	-22,605,088
무선 통신 기기	수출	7,274,465,766	8,001,376,178	8,081,623,110	5,430,867,610	3,874,587,196
	수입	411,365,137	396,612,939	525,223,910	356,795,911	261,049,266
	무역 수지	6,863,100,629	7,604,763,239	7,556,399,200	5,074,071,699	3,613,537,930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출	1,844,508,840	2,095,159,986	1,659,887,796	1,126,516,182	1,363,651,702
	수입	440,772,818	480,805,880	499,204,870	323,295,206	309,668,310
	무역 수지	1,403,736,022	1,614,354,106	1,160,682,926	803,220,976	1,053,983,392
전체	수출	9,340,501,055	10,319,336,909	9,954,413,010	6,673,499,956	5,356,384,439
	수입	926,034,331	1,024,559,091	1,210,642,372	783,038,622	711,468,205
	무역 수지	8,414,466,724	9,294,777,818	8,743,770,638	5,890,461,334	4,644,916,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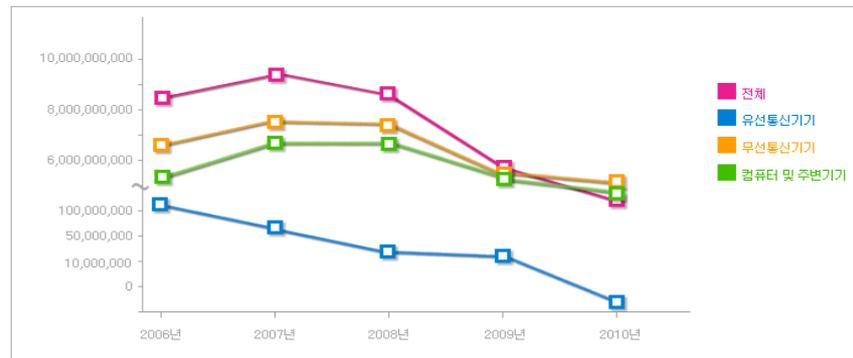
o 무역수지



o 수출



o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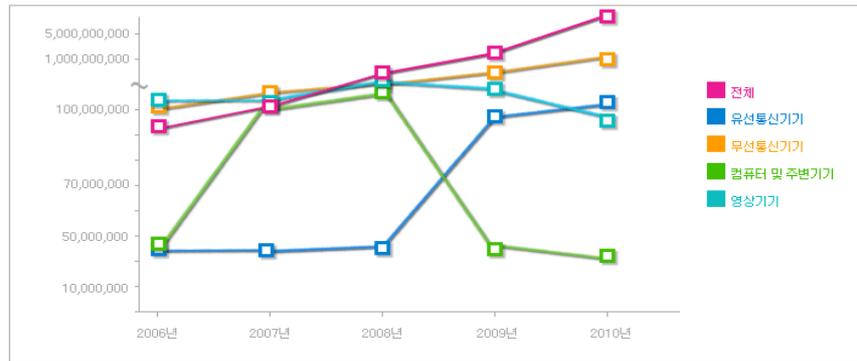


3.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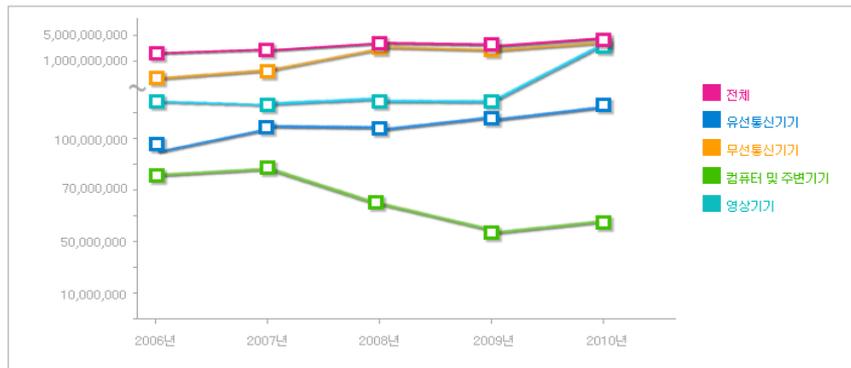
[단위 : 달러]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유선 통신 기기	수출	99,314,499	113,848,352	101,618,423	144,419,658	176,748,882
	수입	55,787,724	76,080,918	59,358,824	49,493,978	73,893,630
	무역 수지	43,526,775	37,767,434	42,259,599	94,925,680	102,855,252
무선 통신 기기	수출	835,872,855	870,919,813	1,117,885,649	1,345,445,257	1,408,267,577
	수입	700,360,642	665,882,522	975,537,818	847,399,838	608,290,976
	무역 수지	135,512,213	205,037,291	142,347,831	498,045,419	799,976,601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출	802,210,837	793,675,350	677,943,184	513,989,677	584,815,763
	수입	850,099,816	965,211,907	874,462,433	546,599,314	557,423,160
	무역 수지	(47,888,979)	(171,536,557)	(196,519,249)	(32,609,637)	27,392,603
영상 기기	수출	234,316,816	201,488,227	164,539,054	176,111,597	238,066,294
	수입	460,446,103	397,397,343	410,930,868	337,444,426	331,488,901
	무역 수지	(226,129,287)	(195,909,116)	(246,391,814)	(161,332,829)	(93,422,607)
전체	수출	1,971,715,007	1,979,931,742	2,061,986,310	2,179,966,189	2,407,898,516
	수입	2,066,694,285	2,104,572,690	2,320,289,943	1,780,937,556	1,571,096,667
	무역 수지	(94,979,278)	(124,640,948)	(258,303,633)	399,028,633	836,801,8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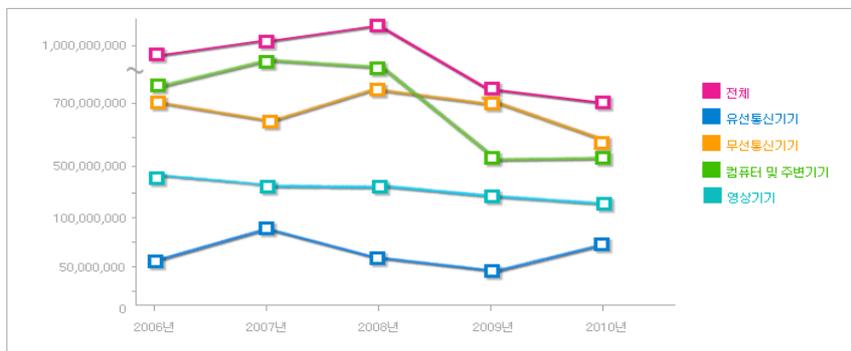
o 무역수지



o 수출



o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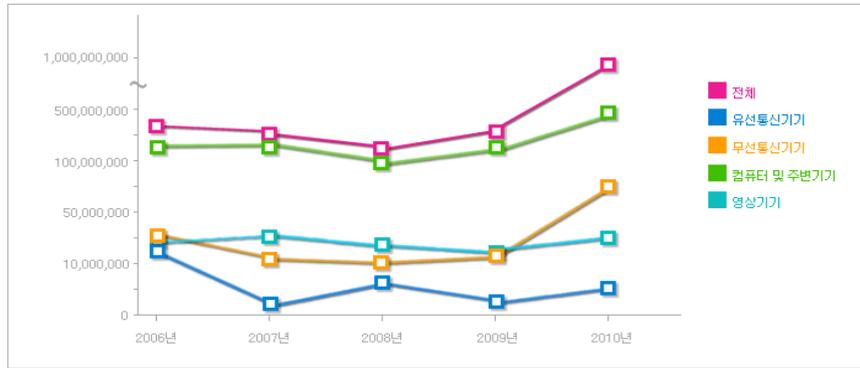


4. 베트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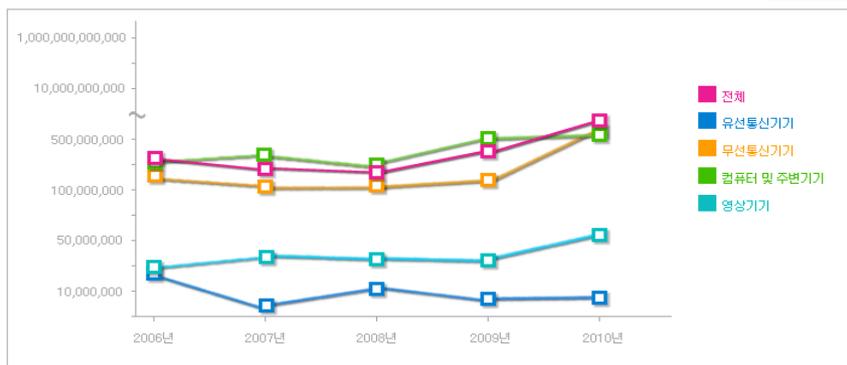
[단위 : 달러]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유선 통신 기기	수출	23,711,589	4,450,457	9,191,648	5,711,848	6,503,424
	수입	58,013	2,021,747	15,253,947	8,717,574	13,406,999
	무역 수지	23,653,576	2,428,710	(6,062,299)	(3,005,726)	(6,903,575)
무선 통신 기기	수출	243,482,091	179,314,353	101,208,796	270,630,164	757,964,093
	수입	975,762	665,250	1,885,958	65,036,008	73,675,153
	무역 수지	242,506,329	178,649,103	99,322,838	205,594,156	684,288,940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출	30,930,860	40,790,180	36,469,663	50,249,722	48,005,434
	수입	13,086,615	20,394,497	15,822,842	13,078,872	25,657,245
	무역 수지	17,844,245	20,395,683	20,646,821	37,170,850	22,348,189
영 상 기기	수출	27,710,935	43,925,947	38,824,239	36,838,981	54,352,882
	수입	273,900	10,752,733	9,100,487	11,695,570	10,081,981
	무역 수지	27,437,035	33,173,214	29,723,752	25,143,411	44,270,901
전체	수출	325,835,475	268,480,937	185,694,346	363,430,715	866,825,833
	수입	14,394,290	33,834,227	42,063,234	98,528,024	122,821,378
	무역 수지	311,441,185	234,646,710	143,631,112	264,902,691	744,004,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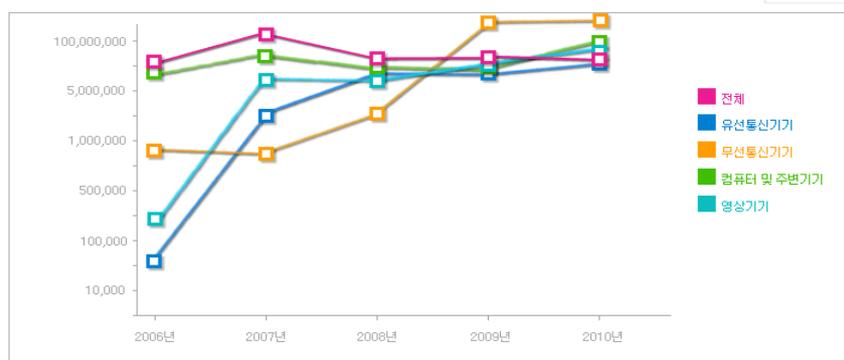
o 무역수지



o 수출



o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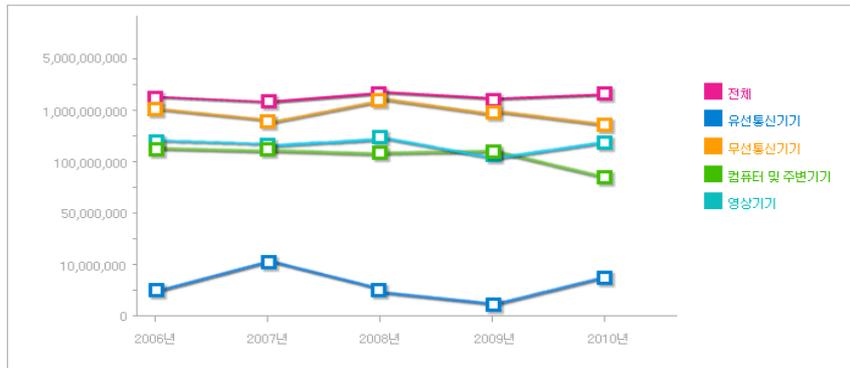


5. 브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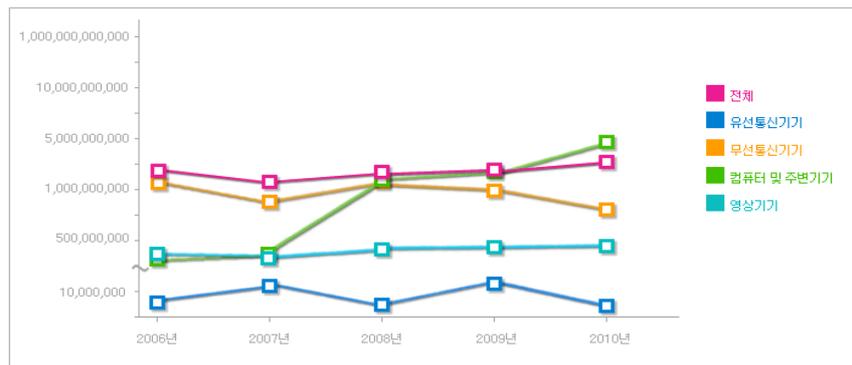
[단위 : 달러]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유선 통신 기기	수출	5,446,655	12,710,633	4,882,555	1,767,800	3,590,230
	수입	219,273	385,679	82,229	79,573	273,565
	무역 수지	5,227,382	12,324,954	4,800,326	1,688,227	3,316,665
무선 통신 기기	수출	1,024,504,698	843,289,783	1,132,104,108	1,055,507,267	977,067,301
	수입	2,205,418	6,566,987	1,390,245	2,324,466	1,796,478
	무역 수지	1,022,299,280	836,722,796	1,130,713,863	1,053,182,801	975,270,823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출	243,607,740	246,466,866	177,314,279	213,664,590	249,701,043
	수입	327,003	421,347	822,457	178,823	580,729
	무역 수지	243,280,737	246,045,519	176,491,822	213,485,767	249,120,314
영 상 기기	수출	290,572,792	265,148,864	381,709,364	289,316,932	467,434,546
	수입	35,108	12,202	440,474	379,675	130,407
	무역 수지	290,537,684	265,136,662	381,268,890	288,937,257	467,304,139
전체	수출	1,564,131,885	1,367,616,146	1,696,010,306	1,560,256,589	1,697,793,120
	수입	2,786,802	7,386,215	2,735,405	2,962,537	2,781,179
	무역 수지	1,561,345,083	1,360,229,931	1,693,274,901	1,557,294,052	1,695,011,9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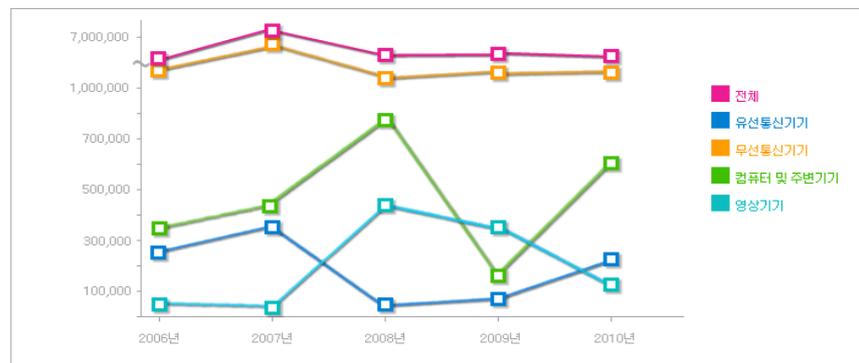
o 무역수지



o 수출



o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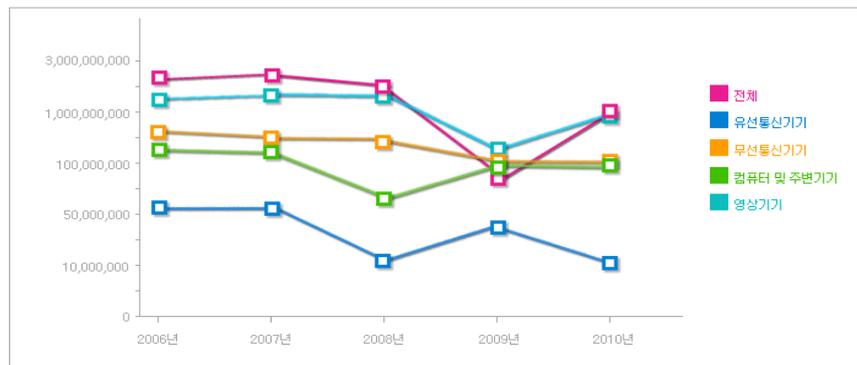


6. 멕시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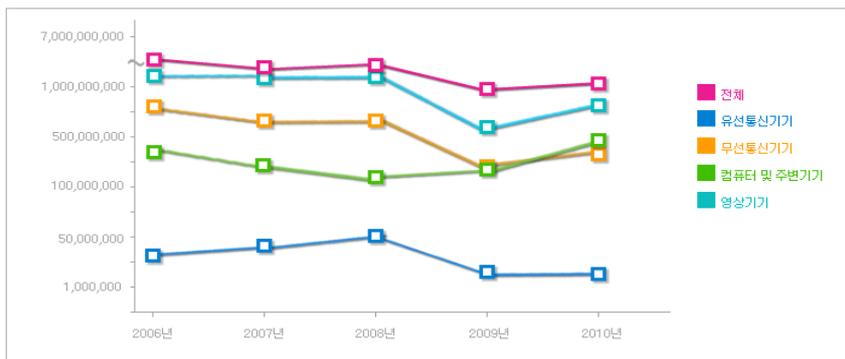
[단위 : 달러]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유선 통신 기기	수출	3,561,786	16,094,567	38,809,770	4,409,872	4,020,230
	수입	55,043,685	72,236,296	56,681,031	53,868,851	45,886,733
	무역 수지	(51,481,899)	(56,141,729)	(17,871,261)	(49,458,979)	(41,866,503)
무선 통신 기기	수출	816,149,662	675,352,024	615,990,410	303,423,918	332,722,836
	수입	49,849,500	53,119,104	63,648,252	102,354,772	108,310,097
	무역 수지	766,300,162	622,232,920	552,342,158	201,069,146	224,412,739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출	277,243,602	190,223,102	126,307,570	142,487,379	213,847,809
	수입	25,279,433	40,472,994	61,282,808	42,459,346	60,728,979
	무역 수지	251,964,169	149,750,108	65,024,762	100,028,033	153,118,830
영 상 기기	수출	1,526,773,277	1,507,025,336	1,333,423,333	536,588,868	961,385,145
	수입	1,239,554	252,494	540,419	2,818,637	4,373,586
	무역 수지	1,525,533,723	1,506,772,842	1,332,882,914	533,770,231	957,011,559
전체	수출	2,623,728,327	2,388,695,029	2,114,531,083	986,910,037	1,511,976,020
	수입	131,412,172	166,080,888	182,152,510	201,501,606	219,299,395
	무역 수지	2,492,316,155	2,222,614,141	1,932,378,573	785,408,431	1,292,676,6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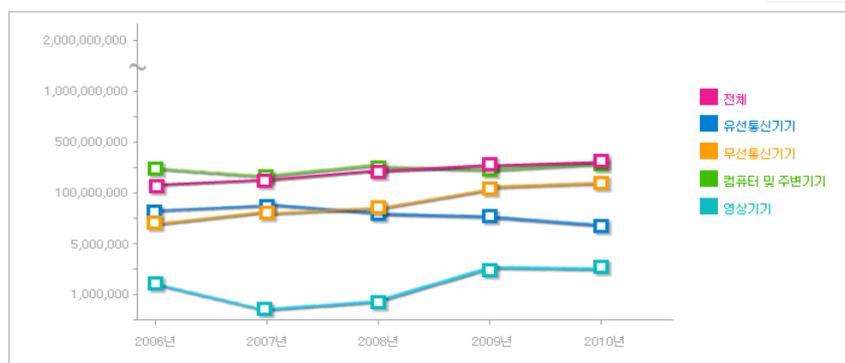
o 무역수지



o 수출



o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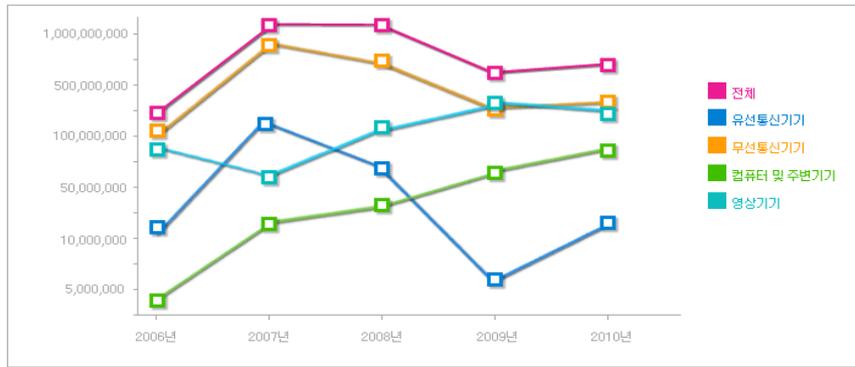
7. 러시아

< 연도별 무역수지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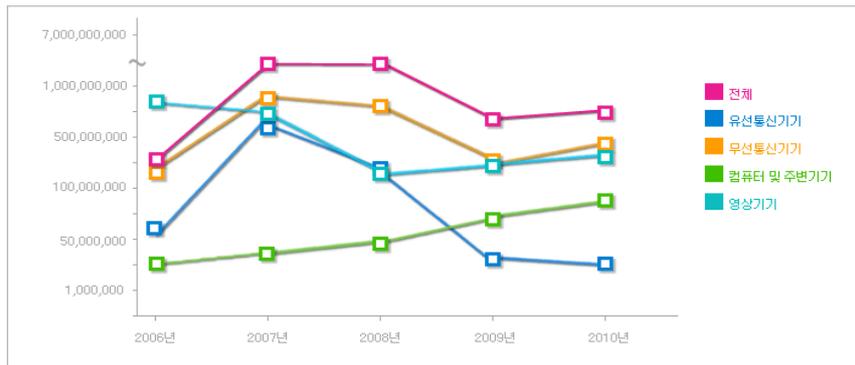
[단위 : 달러]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유선 통신 기기	수출	16,128,029	117,714,062	65,167,478	5,843,863	12,227,219
	수입	615,350	888,671	493,818	472,886	478,517
	무역 수지	15,512,679	116,825,391	64,673,660	5,370,977	11,748,702
무선 통신 기기	수출	184,222,046	858,867,315	790,360,384	364,722,498	375,316,790
	수입	22,030,851	4,717,658	11,882,915	14,739,814	66,720,342
	무역 수지	162,191,195	854,149,657	778,477,469	349,982,684	308,596,448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출	13,332,184	22,073,977	36,705,763	57,840,975	71,997,110
	수입	11,842,184	655,181	2,126,677	3,578,766	774,108
	무역 수지	1,490,000	21,418,796	34,579,086	54,262,209	71,223,002
영상 기기	수출	90,948,493	65,109,674	171,491,519	215,429,906	324,063,019
	수입	45,153	238,848	465,286	520,766	1,593,262
	무역 수지	90,903,340	64,870,826	171,026,233	214,909,140	322,469,757
전체	수출	304,630,752	1,063,765,028	1,063,725,144	643,837,242	783,604,138
	수입	34,533,538	6,500,358	14,968,696	19,312,232	69,566,229
	무역 수지	270,097,214	1,057,264,670	1,048,756,448	624,525,010	714,037,9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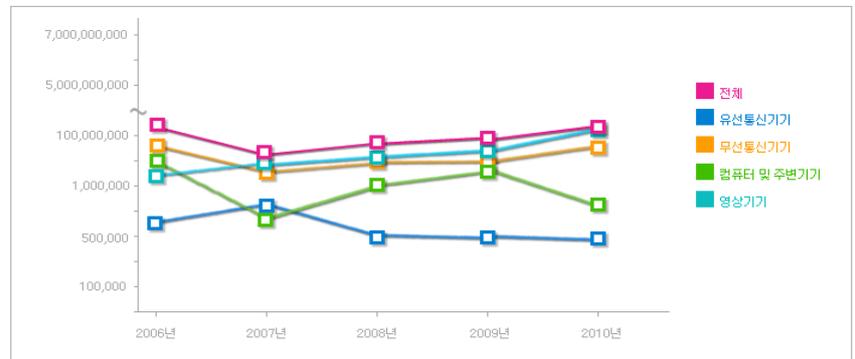
o 무역수지



o 수출



o 수입



[결과 2]

해외 주요국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1. 미국

〈 자체증명 대상품목 〉

구분	세부 품목
무선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 및 FC 방송 수신기 - Stand-alone cable input selector switch - Class B external switching power supplies - Other Class B digital devices & peripherals - Class A digital devices, peripherals & external switching power supplies. - Other ISM eqpt(Part 18) - All other ITE - Pt to pt Microwave - Broadcast transmitters - Aux.BC transmitters - INMARSAT equipment - 106 MHz ELT - Cable TV Relay xtrm - Wildlife tracking xtrm

〈 적합성선언 대상품목 〉

구분	세부 품목
무선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st receivers - CB Receiver (DoC or Certification) - Superregenerative receiver (DoC or Certification), - All other receivers subject to part 15 (DoC or Certification) - TV interface device(DoC or Certification), - Cable system terminal device (DoC only), - Class B personal computers and peripherals((DoC or Certification) - CPU boards and internal power supplies used with Class B

	personal computers (DoC or Certification) - Class B personal computers assembled using authorized CPU boards or power supplies(DoC) - Consumer ISM(Part 18)
--	--

〈 자기 적합성선언 대상품목 〉

구분	세부 품목
유선기기	- PSTN connected Telephone Terminal (SDoC or Certification)

〈 인증 대상품목 〉

구분	세부 품목
유/무선 기기	- Most transmitters - Scanning Receiver - DoC / SDoC 기기 중 선택 기기

2. 유럽

〈 HS 코드에 따른 EMC 대상기기 목록 〉

No.	HS2002 No.	PRODUCT DESCRIPTION (영문명)	PRODUCT DESCRIPTION (한글명)
1	841451	Table, floor, wall, window, ceiling or roof fans,	테이블, 바닥, 벽, 창문, 천장 또는 지붕용의 팬(출력 125W 이하)
2	841459	Fans(excl. Table, floor, wall, window, ceiling or roof fans)	기타 팬 (테이블, 바닥, 벽, 창문, 천장 또는 지붕용의 팬 제외)
3	841460	Hoods incorporating a fan	팬을 결합한 후드(수평면의 120cm 이하인 것)
4	841510	Window or wall air conditioning machines, self-contained	자장식 공기조절기(창문형 또는 벽형)
5	841581	Air conditioning machines incorporating a refrigerating unit and valve for reversal of the cooling/heat cycle, nes.	냉장유니트 및 냉/열 순환 반전용 밸브를 결합한 공기조절기
6	841582	Air conditioning machines incorporating a refrigerating unit, nes.	기타 공기조절기(냉장유니트를 결합한 것)
7	841583	Air conditioning machines comprising a motor-drive	냉장유니트를 결합하지 않은 공기조절기(모터드라이브를 포함한)
8	841810	Combined refrigerator-freezers, with separate external doors	냉장 냉동고(분리된 외부도어를 갖춘 것)
9	841821	Household refrigerators, compression-type	압축식의 가정용 냉장고
10	841822	Household electrical refrigerators, absorption-type	흡수식의 가정용 냉장고
11	841829	Household refrigerators, non-electrical, absorption type	비전기, 흡수식의 가정용 냉장고(기타 가정용 냉장고)
12	841830	Freezers of the chest type, of a capacity <= 800 l	체스트형 냉동고(용량 800 L 이하)
13	841840	Freezers of the upright type, of a capacity <= 900l	직립형 냉동고(용량 900L 이하)
14	841850	Refrigerated or freezing chests, cabinets, display	기타 냉장용 또는 냉동용의 체스트, 캐비닛, 전시용 카운터, 쇼우케

			이스 및 유사 냉동용 기구
15	842211	Dish-washing machines of the household type	가정형 접시세척기
16	842219	Dish-washing machines (excl. Those of the household)	접시세척기 (가정용의 것 제외)
17	842430	Water cleaning appliances with built-in motor	모터가 내장된 정수기(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18	845011	Fully-automatic household or laundry-type washing machines	완전자동의 가정형 또는 세탁소형 세탁기(1회 세탁능력 건조섬유중량 10kg이하)
19	845012	Household or laundry-type washing machines, with built-in centrifugal dryer	원심 탈수기를 내장한 가정형 또는 세탁소형 세탁기(1회 세탁능력 건조섬유중량 10kg이하)
20	845019	Household or laundry-type washing machines, of a dry linen capacity <=10kg, nes.	기타세탁기(1회 세탁능력 건조섬유중량 10kg이하)
21	845020	Laundry-type washing machines, of a dry linen capacity >10kg	세탁기(1회 세탁능력 건조섬유중량 10kg초과)
22	845121	Drying machines, of a dry linen capacity <=10kg	건조기(1회 세탁능력 건조섬유중량 10kg이하)
23	845129	Drying machines for textile yarns, fabrics or made up textiles articles	방직사, 직물 또는 완성된 방직물을 위한 건조기(기타건조기)
24	846912	Typewriters, automatic (excl. Word-processing machines)	자동 타자기 (워드프로세싱기 제외)
25	846920	Typewriters, electric (excl. Automatic typewriters)	전기 타자기 (자동 타자기 제외)
26	850110	Motors of an output <= 37,5 w	전동기(출력 37.5 W 이하)
27	850120	Universal ac/dc motors of an output > 37,5 w	직류/교류 겸용 전동기(출력 37.5 W 초과)
28	850131	Dc motors of an output >37,5w but <= 750w	직류전동기(출력 37.5 W 초과, 750 W 이하)
29	850132	Dc motors and dc generators of an output > 750 w	직류전동기 및 직류발전기(출력 750W 초과)
30	850133	Dc motors and dc generators of an output > 75 kw	직류전동기 및 직류발전기(출력 75kW 초과)
31	850134	Dc motors and dc generators of an output > 375 kw	직류전동기 및 직류발전기(출력 375W 초과)

32	850140	Ac motors, single-phase, of an output > 37,5 w	단상 교류전동기(출력 37.5 W 초과)
33	850151	Ac motors, multi-phase, of an output > 37,5 w but	다상 교류전동기(출력 37.5 W 초과)
34	850152	Ac motors, multi-phase, of an output > 750 w but < 75 kw	다상 교류전동기(출력 750 W 초과, 75 kw 미만)
35	850153	Ac motors, multi-phase, of an output > 75 kw	다상 교류전동기(출력 75 kw 초과)
36	850161	Ac generators "alternators", of an output <= 75 kva	교류발전기(출력 75 kVA 이하)
37	850162	Ac generators 'alternators', of an output > 75 kva	교류발전기(출력 75 kVA 초과)
38	850163	Ac generators 'alternators', of an output > 375 kva	교류발전기(출력 375 kVA 초과)
39	850164	Ac generators 'alternators', of an output > 750 kva	교류발전기(출력 750 kVA 초과)
40	850231	Generating sets, wind-powered	풍력의 발전 세트
41	850239	Generating sets (excl. Wind-powered and powered by spark-ignition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s)	기타발전세트(풍력 및 불꽃점화 내부 연소 피스톤 엔진으로 작동되는 것 제외)
42	850240	Electric rotary converters	(전기 회전 변환기)
43	850421	Liquid dielectric transformers, having a power handling capacity <= 650 kva	유입식 변압기(용량 650 kVA 이하)
44	850422	Liquid dielectric transformers, having a power handling capacity > 650 kva to 1600 kva	유입식 변압기(용량 650 kVA 초과, 1,600 kVA 이하)
45	850423	Liquid dielectric transformers, having a power handling capacity > 1600 kva to 10,000 kva	유입식 변압기(용량 1600 kVA 초과, 10,000 kVA 이하)
46	850431	Transformers having a power handling capacity <= 1 kva	변압기(용량 1 kVA 이하)
47	850432	Transformers, having a power handling capacity > 1 kva to 16 kva	변압기(용량 1 kVA 초과, 16 kVA 이하)
48	850433	Transformers having a power handling capacity > 16 kva	변압기(용량 16 kVA 초과)
49	850434	Transformers having a power handling capacity > 500 kva, nes.	변압기(용량 500 kVA 초과)

50	850440 *	Static converters	정지형 변환기(?)
51	850450 *	Inductors (excl. Inductors for discharge lamps or tubes)	유도자(방전램프용 또는 튜브용 제외)
52	850490	Parts of electrical transformers and inductors, nes.	전기변환기 및 유도자의 부분품(?)
53	850530	Electro-magnetic lifting heads	전자석 리프팅 헤드
54	850590	Electromagnets and their parts (excl. Magnets for medical use)	기타 전자석 및 그 부분품 (의료용 자석 제외)
55	850610	Manganese dioxide cells and batteries (excl. Spent)	이산화망간전지 및 배터리(소모된 것 제외)
56	850630	Mercuric oxide cells and batteries (excl. Spent)	산화수은제전지 및 배터리(소모된 것 제외)
57	850640	Silver oxide cells and batteries (excl. Spent)	산화은제전지 및 배터리(소모된 것 제외)
58	850650	Lithium cells and batteries (excl. Spent)	리튬제전지 및 배터리(소모된 것 제외)
59	850660	Air-zinc cells and batteries (excl. Spent)	에어징크제전지 및 배터리(소모된 것 제외)
60	850680	Primary cells and primary batteries, electric (excl. Spent)	기타 일차 전지 및 일차 배터리 (소모된 것 제외)
61	850690	Parts of primary cells and primary batteries, n.e.	기타 일차 전지 및 일차 배터리의 부분품
62	850710	Lead-acid accumulators of a kind used for starting piston engines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 축전지
63	850720	Lead acid accumulators (excl. Spent and starter batteries)	기타 연산 축전지(소모된 것 및 스타터 배터리 제외)
64	850730	Nickel-cadmium accumulators (excl. Spent)	니켈 카드뮴 축전지(소모된 것 제외)
65	850740	Nickel-iron accumulators (excl. Spent)	니켈 철 축전지(소모된 것 제외)
66	850780	Electric accumulators (excl. Spent and lead-acid, nickel-cadmium, nickel-iron, nickel-hydride, lithium-ion accumulators)	기타 전기 축전지(소모된 것 및 연산, 니켈카드뮴, 니켈아이론, 니켈 수소화, 리튬이온 축전지 제외)
67	850910	Domestic vacuum cleaners, incl. Dry cleaners and wet vacuum cleaners, with self-contained	전동기 내장형 가정용 진공청소기 (드라이클리너, 습식 진공청소기 포함)

		electric motor	
68	850920	Domestic floor polishers, with self-contained electric motor	전동기 내장형 가정용 바닥광택기
69	850930	Domestic kitchen waste disposers, with self-contained electric motor	전동기 내장형 가정용 주방 쓰레기 처리기
70	850940	Domestic food grinders and mixers and fruit or vegetables juice extractors, with self-contained electric motor	전동기 내장형 가정용 식품분쇄기, 믹서기, 과즙 또는 채소즙 추출기
71	850980	Electro-mechanical household appliances, with self-contained electric motor	기타 전동기 내장형 가정용 전기 기기
72	851010	Electric shavers	전기 면도기
73	851020	Hair clippers with self-contained electric motor	전동기 내장형 이발기
74	851030	Hair-removing appliances with self-contained electric motor	전동기 내장형 모발제거기
75	851090	Parts of electric shavers, hair clippers and hair-removing appliances	전기면도기, 이발기, 모발제거기의 부분품
76	851310	Portable electrical lamps, battery or magneto powered, nes.	휴대용 전기램프, 배터리 또는 마그네토로 작동하는 것(전등?)
77	851410	Resistance heated industrial or laboratory furnaces and ovens	저항 가열식의 산업용 또는 실험실용 노와 오븐
78	851420	Furnaces and ovens functioning by induction or dielectric loss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의 노와 오븐
79	851430	Electric industrial or laboratory furnaces and ovens	전기 산업용 또는 실험실용 노와 오븐
80	851440	Industrial or laboratory induction or dielectric heating equipment, nes.	산업용 또는 실험실용의 전자유도식 또는 유전식 가열기기
81	851511	Soldering irons and guns, electric	납땀용의 인두와 건
82	851519	Brazing or soldering machines (excl. Soldering irons)	납땀용 기계(납땀용 인두 제외)
83	851521	Fully or partly automatic machines for resistance welding of metal, fully or partly	전자동 또는 반자동의 저항식 금속용접기

		automatic	
84	851529	Machines for resistance welding of metals, neither fully nor partly automatic	전자동식 또는 반자동식이 아닌 저항식 금속용접기
85	851531	Fully or partly automatic machines for arc welding of metals	전자동식이나 반자동식의 아크 금속용접기
86	851539	Machines for arc welding of metals, incl. Plasma arc welding	아크 금속용접기, 플라즈마 아크 용접 포함
87	851580	Electric machines and apparatus for laser or other	레이저 또는 그 외의 전기기기(?)
88	851610	Electric instantaneous or storage water heaters and immersion heaters	즉시식 또는 저장식의 전기 물가열기 및 투입식가열기
89	851621	Electric storage heating radiators,	전기 저장식 가열 라디에이터
90	851629	Electric space-heating and soil-heating apparatus	전기식 기타 난방기구 및 토양가열기
91	851631	Electric hairdryers	전기 헤어드라이어
92	851632	Electro-thermic hair dressing apparatus (excl. Hairdryers)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헤어드라이어 제외)
93	851633	Electric hand-drying apparatus	전기 손건조기
94	851640	Electric smoothing irons	전기 다리미
95	851650	Microwave ovens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96	851660	Electric ovens, cookers, cooking plates and boiling rings and hobs	전기오븐, 쿠키, 조리판, 보일링 링, 호브
97	851671	Electro-thermic coffee or tea makers, for domestic use	가정용 전기가열식커피메이커
98	851672	Electric toasters, for domestic use	가정용 전기토스터기
99	851679	Electro-thermic appliances, for domestic use	가정용 기타 전열기기
100	851680	Electric heating resistors (excl. Those of agglomerated carbon or graphite)	전열용 저항체(집적된 탄소 또는 그래파이트의 것 제외)
101	851810 *	Microphones and stands therefore (excl. Cordless microphones with built-in transmitter)	마이크로폰 및 스탠드(송신기가 내장된 무선 마이크 제외)

102	851821	Single loudspeakers, mounted in their enclosures	단일형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
103	851822	Multiple loudspeakers, mounted in the same enclosures	복합형 확성기(동일 인클로저에 장착된 것)(?)
104	851829	Loudspeakers, without enclosure	인클로저가 없는 확성기
105	851830 *	Headphones and earphones, whether or not combined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 여부 불문)
106	851840	Audio-frequency electric amplifiers	가청주파 증폭기
107	851850	Electric sound amplifier sets	음향 증폭세트
108	851910	Coin-operated or disc-operated record-players	코인 또는 디스크 작동식 레코오드 플레이어
109	851921	Record players without loudspeaker	확성기를 갖추지 아니한 레코오드 플레이어
110	851929	Record players with loudspeaker (excl. Coin-operated)	확성기를 갖춘 레코오드 플레이어 (코인 작동식 제외)
111	851931	Turntables 'record-decks', with automatic record-changer	턴테이블(레코드데크), 자동레코드 충전기를 갖춘 것
112	851939	Turntables 'record-decks', without automatic record-changer	턴테이블(레코드데크), 자동레코드 충전기를 갖추지 아니한 것
113	851940	Transcribing machines	편집기
114	851992	Pocket-size cassette players 'dimensions <= 170 mm	포켓 사이즈형 카세트 플레이어(넓이 170 mm 이하의 것)
115	851993	Cassette players "play only" (excl. Pocket-size and dictating machines)	재생 전용 카세트 플레이어(포켓 사이즈형 및 녹음기 제외)
116	851999	Sound-reproducing apparatus, not incorporating a sound recording device)	음성 재생기(녹음장비를 결합하지 않은 것)
117	852010	Dictating machines not capable of operating without external power source	외부 전원공급 없이 작동 불가능한 녹음기
118	852032	Magnetic tape recorders incorporating sound-reproducing	음성 재생기능 있는 마그네틱 테이프 레코더
119	852033	Cassette recorders incorporating sound-reproducing	음성 재생기능 있는 카세트 레코더
120	852039	Magnetic tape recorders incorporating sound-reproducing	음성 재생기능 있는 마그네틱 테이프 레코더
121	852090	Magnetic sound recording or	마그네틱 음성 레코딩 또는 재생

		reproducing equipment, nes.	기기
122	852110	Magnetic tape-type video recording or reproducing apparatus for magnetic tape	마그네틱테이프형의비디오레코딩또는 재생기기
123	852190	Video recording or reproducing apparatus, whether or not incorporating a video turning	비디오 레코딩 또는 재생기기, 비디오 전환을 결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24	852510 *	Transmission apparatus for radio-telephony, radio-broadcasting or television	무선전화, 무선방송 또는 텔레비전용의 송신기기
125	852530	Television cameras (excl. Video camera recorders)	텔레비전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 제외)
126	852540 *	Still image video cameras and other video camera recorders	정지화상 비디오 카메라 및 기타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
127	852610	Radar apparatus	레이더기기
128	852691	Radio navigational aid apparatus	항행용 무선기기
129	852692	Radio remote control apparatus	무선원격조절기기
130	852712	Pocket-size radio-cassette players	포켓사이즈형라디오카세트플레이어
131	852713	Radio-broadcast receivers capable of operating without external source of power, nes	외부 전원공급 없이 작동하는 무선방송수신기
132	852719	Radio-broadcast receivers capable of operating with batteries	배터리로 작동하는 무선방송수신기
133	852731	Radio-broadcast receivers, for mains operation only, with analogue/digital reading system	아날로그/디지털 리딩 시스템의 무선방송수신기
134	852732	Radio-broadcast receivers, for mains operation only, with clock	시계가 있는 무선방송수신기
135	852739	Radio-broadcast receivers, for mains operation only, without clock	시계가 없는 무선방송수신기
136	852790	Receivers for radio-telephony, radio-telegraphy	무선전화, 무선전신용의 수신기
137	852812	Television receivers, colour, whether or not incorporating a video recorder or reproducer	컬러 텔레비전 수신기, 비디오 레코더 또는 재생기를 결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138	852813	Television receivers, black and white	흑백 또는 단색의 텔레비전 수신기

		oroothermonochrome	기
139	852821	Video monitors, colour	컬러 비디오 모니터
140	852822	Video monitors, black and white or other monochrome	흑백 또는 단색의 비디오 모니터
141	852830	Video projectors	비디오 프로젝터
142	852910 *	Aerialsandaerialreflectorsofallkind s;parts	각종의안테나와반사식안테나및동부 분품
143	852990 *	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apparatus of headings 8525others	방향 장치를 갖춘 단독으로 또는 주 사용에 적합한 부분품
144	853110	Burglar or fire alarms and similar apparatus	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
145	853180	Electric sound or visual signalling apparatus (excl. Flat/indicator LCD/led panels)	전기식 음향 또는 시각 신호용 기기 (평면/표시기 LCD/led 패널 제외)
146	853510	Fuses for a voltage > 1.000 v	퓨우즈, 전압 1,000 V 초과
147	853521	Automatic circuit breakers for a voltage > 1.000 v	자동차단기, 전압 1,000 V 초과
148	853529	Automatic circuit breakers for a voltage >= 72,5 k	자동차단기, 전압 72.5 k 이상
149	853530	Isolating switches and make-and-break switches, for a voltage >1000v	격리용 개폐기 및 회로 단속용 개폐기, 전압 1000 V 초과
150	853540	Lightning arresters, voltage limiters and surge suppressors for a voltage>1000v	피뢰기, 전압제한기 및 서어지 억제기, 전압 1000 V 초과
151	853590	Electrical apparatus for switching, protecting or making connections to or in electrical circuits, for a voltage >1000v	전기회로의개폐용,보호용,접속용전기기기,전압1000V초과
152	853610	Fuses for a voltage <= 1.000 v	퓨우즈, 전압 1000 V 이하
153	853620	Automatic circuit breakers for a voltage <= 1000 v	자동차단기, 전압 1000 V 이하
154	853630	Apparatus for protecting electrical circuits for a voltage <1000v	전기회로보호용 기기, 전압 1000 V 미만
155	853641	Relays for a voltage <= 60 v	계전기, 전압 60 V 이하
156	853649	Relays for a voltage > 60 v but <= 1.000 v	계전기, 전압 60 V 초과 1000 V 이하
157	853650	Switches for a voltage <= 1.000	개폐기, 전압 1000 V 이하 (계전

	*	v (excl. Relays and automatic circuit breakers)	기 및 자동차단기 제외)
158	853669 *	Plugs and sockets for a voltage <= 1.000 v (excl. Those for coaxial cables and printed circuits)	플러그 및 소켓, 전압 1000 V 이하 (동축케이블 및 인쇄회로의 것 제외)
159	853690 *	Electrical apparatus for switching electrical circuits	전기회로의 개폐용 전기기기
160	853710	Boards, cabinets and similar combinations of apparatus (excl. Numerical control panels)	보드, 캐비닛 및 이와 유사한 기구의 배합 (번호 제어 패널 제외)
161	853720	Boards, cabinets and similar combinations of apparatus for electric control or the distribution of electricity	보드, 캐비닛 및 전기제어 또는 전기배전을 위한 유사한 기구의 조합
162	853810	Boards, panels, consoles, desks, cabinets and other bases for electric control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및기타전기제어기반
163	853910	Sealed beam lamp units	실드비임 램프 유니트
164	853921	Tungsten halogen filament lamps (excl. Sealed beam lamps units)	텅스텐 할로겐의 필라멘트 램프 (실드비임 램프 유니트 제외)
165	853922	Filament lamps of a power <= 200 w and for a voltage >100v	필라멘트 램프, 전력 200w 이하 전압 100 v 초과
166	853929	Filament lamps, electric (excl. Tungsten halogen lamps)	전기 필라멘트 램프(텅스텐 할로겐 램프 제외)
167	853931	Discharge lamps, fluorescent, hot cathode	방전램프, 형광램프, 열음극형의 것
168	853932	Mercury or sodium vapour lamps; metal halide lamps	수은 또는 나트륨 증기 램프, 메탈 할라이드 램프
169	853939	Discharge lamps (excl. Fluorescent, hot cathode lamps)	방전램프(형광램프, 열음극형 램프 제외)
170	853941	Arc-lamps	아크램프(?)
171	853949	Ultraviolet or infra-red lamps	적외선 또는 자외선 램프
172	854011	Cathode ray television picture tubes, incl. Video, colour	텔레비전용 음극선관, 비디오, 컬러의 것 포함
173	854012	Cathode-ray television picture tubes, incl. Video, black and white or other monochrome	텔레비전용 음극선관, 비디오, 흑백 또는 단색의 것 포함
174	854020	Television camera tubes; image	텔레비전용 촬상관, 영상변환관,

		converters and intensifiers and other photo cathode tubes	영상증강관 및 기타 광전관
175	854040	Data/graphic display tubes, colour, with a phosphor dot screen pitch<0.4mm	데이터/그래픽 직시관, 컬러의 것으로서 인광물질 도트화면 간격이 0.4 mm 미만의 것
176	854050	Data/graphic display tubes, black and white or other monochrome	데이터/그래픽 직시관, 흑백 또는 단색의 것
177	854060	Cathode-ray tubes (excl. Television and video-monitors)	음극선관 (텔레비전 및 비디오모니터 제외)
178	854071	Magnetrons	자선관
179	854072	Klystrons	속도변조관
180	854079	Microwave tubes	마이크로웨이브관
181	854081	Receiver or amplifier tubes	수신관 또는 증폭관
182	854089	Electronic valves and tubes (excl. Receiver or amplifier tubes)	전자밸브 및 전자관 (수신관 또는 증폭관 제외)
183	854320	Signal generators, electrical	전기 신호발생기
184	854330	Machines and apparatus for electroplating	전기도금용 기기
185	854340	Electric fence energisers	일렉트릭 펜스 에너지저
186	854389 *	Electrical machines and apparatus, having individual functions	개별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
187	854420	Coaxial cables, antenna feeders	동축케이블, 안테나 공급기
188	854441 *	Telecommunications cables, optical cables (other electric conductors, voltage <80v)	통신 케이블, 광케이블 (기타 전기 유도체, 전압 80v 미만)
189	900912	Laser multifunction printers	레이저 멀티 프린터

< EMC 특성이 없는 장비 목록 >

- 각각의 케이블, 케이블링 및 케이블 부속품
- 자동 변환기 없이 저항성 부하물만을 포함하는 장비
 - . 제어장치, 자동 온도조절장치, 환풍기가 없는 단순형 가정용 난방기기
- 배터리 및 완충기(능동형 전자회로가 없는 것)
- 증폭장치 없는 헤드폰, 확성기
- 능동형 전자회로 없는 Pocket lamp
- 회로 내에서의 단락오류 또는 비정상적 상황을 해결하는 동안 일시적인 방해만을 유

-
- 발하고 능동형 전자부품 또는 능동형 구성요소가 없는 퓨즈 및 누전 차단기 등의 능동형 전자부품을 포함하지 않는 보호장비
 - 방해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노화과정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부분적 절연압력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EMC 제품표준이 아닌 다른 제품표준에 속하는 기술규정에 따라 통제되고, 능동형 전자적 구성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고압장비
 - 고압 유도장치
 - 고압 변환기
 - 기타
 - Capacitor(예: 역률교정용 Capacitor)
 - 유도 전동기
 - Quartz watch(무선 수신기 등의 추가기능 없음)
 - 필라멘트 램프(전구)
 - 능동형 전자적 구성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가정용·건물용 스위치
 - TV 및 라디오 방송수신용 수동형 안테나
 - 플러그, 소켓, 단자 등
-

3. 일본

〈 면허가 필요 없는 특정 무선설비 : 20종 〉

구분	세부 품목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는 특정 무선 설비	1. 시민 라디오	
	2. 코드리스 전화	
	3. 특정소전력 무선국	텔레미터, 텔레컨트롤 및 데이터 전송
		의료용 텔레미터
		체내이식형 의료용 데이터 전송 및 체내삽입형 의료용 원격 계측
		국제 수송용 데이터 전송 설비, 국제 수송용 데이터 제어 설비
		무선 호출
		라디오 마이크
		보청원조용 라디오 마이크
		무선 전화
		음성 어시스트용 무선 전화
		이동체 식별
		밀리파 레이더
		밀리파 화상전송 및 밀리파 데이터 전송
	이동체 검지 센서	
	동물 검지 통보 시스템	
	4. 소전력 시큐리티	
	5. 2.4GHz대 고도화 소전력 데이터 통신시스템(2,400~2,483.5MHz)	
	6. 2.4GHz대 소전력 데이터 통신시스템(2,471~2,497MHz)	
	7. 2.4GHz대 고도화 소전력 데이터 통신시스템(모형 비행기의 무선 조종용)	
8. 2.4GHz대 소전력 데이터 통신시스템(모형 비행기의 무선 조종용)		
9. 5.2, 5.3GHz대 소전력 데이터 통신시스템		
10. 5.6GHz대 소전력 데이터 통신시스템		
11. 준밀리파대 소전력 데이터 통신시스템		
12. 5GHz대 무선엑세스시스템용 육상 이동국(안테나 출력0.01W 이하)		
13. 디지털 코드리스 전화(협대역 TDMA)		
14. 디지털 코드리스 전화(광대역 TDMA)		
15. 디지털 코드리스 전화(TDMA/PFDMA)		
16. PHS 육상 이동국		
17. 협역통신 시스템용 육상 이동국		
18. 협역통신 시스템용 시험국		
19. 초광대역(UWB) 무선 시스템		
20. UWB 레이더 시스템		

〈 포괄면허에 해당하는 특정 무선설비 : 38종 〉

구분	세부 품목
포괄면허 무선국	1. MCA(육상 이동국)
	2. Ku 밴드 VSAT 지구국
	3. Ka 밴드 VSAT 지구국
	4. TDMA 방식(800MHz/1500MHz 대)휴대무선통신용 육상 이동국
	5. CDMA 방식 휴대무선통신용 육상 이동국(휴대무선통신중계는 제외)
	6. W-CDMA 방식 휴대무선통신용 육상 이동국(휴대무선통신중계는 제외)
	7. CDMA2000 방식 휴대무선통신용 육상 이동국(휴대무선통신중계는 제외)
	8. W-CDMA(HSDPA) 방식 휴대무선통신용 육상 이동국 (휴대무선통신중계는 제외)
	9. CDMA2000(1 x EV-DO) 방식 휴대무선통신용 육상이동국 (휴대무선통신중계는 제외)
	10. CDMA2000(EV-DO멀티캐리어)이동국
	10. TD-CDMA 방식 휴대무선통신용 육상 이동국(휴대무선통신중계는 제외)
	11. TD-SCDMA 방식 휴대무선통신용 육상 이동국
	12. XGP(2GHz TDD)용 육상 이동국
	13. MBTDD 625k-MC(2GHz TDD)용 육상 이동국
	14. LTE용 육상 이동국
	15. LTE(2GHz TDD)용 육상 이동국
	16. UMB용 육상 이동국
	17. 모바일 WiMAX(2GHz TDD)용 육상 이동국
	18. UMB(2GHz TDD)용 육상 이동국
	19. 휴대 이동 위성 데이터 통신용 지구국(대지 정지)(옵니트락스)
	20. 휴대 이동 위성 데이터 통신용 지구국(비정지)(오브콤)
	21. 가입자계 다방향용 이동국
	22. 5GHz 밴드 무선엑세스시스템용 육상 이동국
	23. 5GHz 밴드 무선엑세스시스템용 육상 이동국(0.2마이크로 와트 이하)
	24. 1500MHz 밴드 디지털 MCA(육상 이동국)
	25. 800MHz 밴드 디지털 MCA(육상 이동국)
	26. 휴대 이동 위성통신용 지구국(대지 정지)(N-STAR)
	27. 휴대 이동 위성통신용 지구국(비정지)(이리듐)
	28. 인말셋(INMARSAT) 휴대 이동 지구국
	29. ESV 휴대 이동 지구국(선상 지구국)
	30. 루털 가입자 무선
	31. 60GHz 유비쿼터스용 무선 회선용 다방향 육상 이동국
	32. 디지털 공항 무선통신용 육상 이동국 (설비 규칙 제 49조의15의2제1항)
	33. 항공 이동 위성통신 시스템
	34. WiMAX용 육상 이동국
35. MBTDD-W용 육상 이동국	

36. 차세대PHS용 육상 이동국
37. MBTDD 625K용 육상 이동국

〈 그 밖의 무선설비(검사 면제) : 101종 〉

구분	세부 품목
그 밖의 무선설비 (검사를 면제받음)	1. MCA(지령국)
	2. SSB
	3. 디지털
	4. F3E등
	5. 특정 라디오 마이크
	6. 디지털 특정 라디오 마이크
	7. 해상용 DSB
	8. SSB
	9. F3E등
	10. 무선표정
	11. 라디오·부이
	12. 기상 원조국
	13. 퍼스널
	14. 간이 무선
	15. 무선 조종용 간이 무선
	16. 디지털 간이 무선국
	17. 디지털 간이 무선국(캐리어 센스를 비치하고 있는 것)
	18. 950MHz대 간이 무선국
	19. 50GHz대 CR
	20. 구내 무선
	21. 950MHz대 구내 무선(캐리어 센스를 비치하고 있는 것)
	22. 2450MHz대 구내 무선(주파수 호핑 방식을 이용하는 것)
	23. TDMA 방식(800MHz/1500MHz 대) 휴대무선통신용 기지국 등
	24. CDMA 방식 휴대무선통신용 기지국 등
	25. CDMA 방식 휴대무선통신용 펌토셀 기지국
	26. CDMA 방식 휴대무선통신용 실내소형 기지국
	27. W-CDMA 방식 휴대무선통신용 기지국 등
	28. CDMA2000 방식 휴대무선통신용 기지국 등
	29. W-CDMA 방식 휴대무선통신용 펌토셀 기지국
	30. CDMA2000 방식 휴대무선통신용 펌토셀 기지국
	31. W-CDMA 방식 휴대무선통신용 실내소형기지국
	32. CDMA2000 방식 휴대무선통신용 실내소형기지국
	33. W-CDMA(HSDPA) 방식 휴대무선통신용 기지국 등
	34. CDMA2000(1 x EV-DO) 방식 휴대무선통신용 기지국 등
	35. W-CDMA(HSDPA) 방식 휴대무선통신용 펌토셀 기지국

36.	CDMA2000(1 x EV-DO) 방식 휴대무선통신용 펌토셀 기지국
37.	W-CDMA(HSDPA) 방식 휴대무선통신용 실내소형기지국
38.	CDMA2000(1 x EV-DO) 방식 휴대무선통신용 실내소형기지국
39.	TD-CDMA 방식 휴대무선통신용 기지국 등
40.	TD-SCDMA 방식 휴대무선통신용 기지국 등
41.	XGP(2GHz TDD)용 기지국 등
42.	MBTDD 625k-MC(2GHz TDD)용 기지국 등
43.	LTE용 기지국 등
44.	LTE용 펌토셀 기지국
45.	LTE용 실내소형기지국
46.	LTE(2GHz TDD)용 기지국 등
47.	UMB용 기지국 등
48.	모바일 WiMAX(2GHz TDD)용 기지국 등
49.	UMB(2GHz TDD)용 기지국 등
50.	아마추어 무선
51.	가입자계 다방향용 기지국
52.	가입자계 대향용 이동국
53.	텔레미터용등의 고정국
54.	비상경보용 고정국
55.	22GHz대 고정국
56.	5GHz대 무선엑세스시스템용 기지국
57.	5GHz대 무선엑세스시스템용 기지국(0.2마이크로 와트 이하)
58.	5GHz대 무선엑세스시스템용 육상 이동 중계국
59.	5GHz대 무선엑세스시스템용 육상 이동 중계국(0.2마이크로 와트 이하)
60.	1500MHz대 디지털 MCA(디지털 지령국)
61.	800MHz대 디지털 MCA(디지털 지령국)
62.	PHS 기지국
63.	PHS 중계국
64.	PHS 시험국 등
65.	38GHz대 고정국
66.	RZSSB
67.	주파수 자동 선택 RZSSB
68.	주파수 추종 RZSSB
69.	협대역 디지털
70.	주파수 자동 선택 협대역 디지털
71.	주파수 추종 협대역 디지털
72.	차량 감지용 무선표정 육상국
73.	도로 교통 정보 비콘
74.	설비 규칙 제48조 제 1항의 레이더(제3종 레이더)
75.	설비 규칙 제48조 제 3항의 레이더(제4종 레이더)
76.	60GHz대 고속 무선 회선용 기지국

77.	60GHz대 고속 무선 회선용 대향 육상 이동국
78.	협역통신 시스템용 기지국
79.	시정촌 디지털 방재 무선통신용 고정국
80.	디지털 공항 무선통신용 육상 이동국 (설비 규칙 제49조의15의 2 제 1항 및 제2항)
81.	18GHz대 기지국 등 (주파수 분할 복신방식 또는 시분할 복신방식)
82.	18GHz대 육상 이동국(4상 위상 변조(phase modulation)등)
83.	18GHz대 기지국·육상이동중계국(신호 전송 속도 : 6메가바이트 이상)
84.	18GHz대 전기통신 업무용 고정국
85.	18GHz대 공공 업무용 고정국
86.	1500MHz대 전기통신 업무용 고정국
87.	WiMAX용 기지국 등
88.	MBTDD-W용 기지국 등
89.	WiMAX용 펌토셀 기지국
90.	WiMAX용 실내소형기지국
91.	차세대 PHS용 기지국 등
92.	차세대 PHS용 펌토셀 기지국
93.	차세대 PHS용 실내소형기지국
94.	MBTDD 625K용 기지국 등
95.	지상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의 캡필러
96.	지상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의 캡필러(CATV망 등 접속형)
97.	간이형 선박 자동 식별 장치
98.	국제VHF(고정형)
99.	국제VHF(휴대형)
100.	200MHz대 광대역 이동무선통신용 기지국
101.	200MHz대 광대역 이동무선통신용 육상이동국

〈 형식검정 대상 설비 : 7종 〉

구분	세부 품목
항공 해상 무선설 비	1. 항공기에 시설한 무선 설비
	2. 디지털 (digital) 선택 호출 장치
	3. 협대역 직접 인쇄 전신 장치
	4. 위성 비상용 위치 지시 무선 표지
	5. 국제해사위성기구 (INMARSAT) 선박 지구국의 무선 설비의 기기
	6. 선박에 설치한 무선 항해를 위한 레이더 (radar)
	7. 선박 자동 식별 장치

〈 특별 특정 무선설비 : 22종 〉

구분	세부 품목
특별특정 무선설비	1. 무선 전화
	2. TDMA 방식(800MHz/1500MHz대)휴대무선통신용 육상 이동국
	3. CDMA 방식 휴대무선통신용 육상 이동국(휴대무선통신중계는 제외)
	4. W-CDMA 방식 휴대무선통신용 육상 이동국(휴대무선통신중계는 제외)
	5. CDMA2000 방식 휴대무선통신용 육상 이동국(휴대무선통신중계는 제외)
	6. W-CDMA(HSDPA) 방식 휴대무선통신용 육상 이동국 (휴대무선통신중계는 제외)
	7. CDMA2000(1 x EV-DO) 방식 휴대무선통신용 육상 이동국 (휴대무선통신중계는 제외)
	8. TD-CDMA 방식 휴대무선통신용 육상 이동국(휴대무선통신중계는 제외)
	9. TD-SCDMA 방식 휴대무선통신용 육상 이동국
	10. 차세대 PHS(2GHz TDD)용 육상 이동국
	11. MBTDD625k(2GHz TDD)용 육상 이동국
	12. LTE용 육상 이동국
	13. LTE(2GHz TDD)용 육상 이동국
	14. UMB용 육상 이동국
	15. WiMAX(2GHz TDD)용 육상 이동국
	16. UMB(2GHz TDD)용 육상 이동국
	17. 디지털 무선 전화
	18. PHS 육상 이동국
	19. WiMAX용 육상 이동국
	20. MBTDD-W용 육상 이동국
	21. 차세대PHS용 육상 이동국
	22. MBTDD 625K용 육상 이동국

4. 베트남

〈 베트남 인증대상기기 및 기술기준 〉

구 분	대상기자재	적용 기술기준
1.	단말기기	
1.1.	PSTN 아날로그 가입자 인터페이스에 연결되는 단말기기	TCN 68 - 188 : 2000 TCN 68 - 190 : 2003 TCN 68 - 193 : 2000 TCN 68 - 196 : 2001
1.2.	코드리스 전화 단말기기	TCN 68 - 188 : 2000 TCN 68 - 143 : 2003 TCN 68 - 190 : 2003 TCN 68 - 192 : 2003 TCN 68 - 196 : 2001
1.3.	기본요율접속(BRA)을 사용하여 ISDN에 연결된 단말기기	TCN 68 - 189 : 2000 TCN 68 - 190 : 2003 TCN 68 - 193 : 2000 TCN 68 - 196 : 2001
1.4.	GSM 이동국 (Phase 2, 2+)	TCN 68 - 221 : 2004
1.5.	CDMA 이동국	TCN 68 - 222 : 2004 TCN 68 - 245 : 2006
1.6.	PHS 단말기기	TCN 68 - 223 : 2004
2.	무선기기	
2.1.	2.4GHz 대역, 확산대역변조기술을 사용하는 무선기기	TCN 68 - 242 : 2006
2.2.	9KHz~25MHz 근거리 무선기기	TCN 68 - 243 : 2006
2.3.	아날로그TV방송서비스용 송신기	TCN 68 - 246 : 2006
3	IT기기	
3.1.	데스크탑 PC, 서버	TCVN 7189 : 2002
3.2.	노트북 및 포터블 컴퓨터	TCVN 7189 : 2002
3.3.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TCVN 7189 : 2002
3.4.	라우터, 허브, 스위치, 게이트웨이, 브릿지, 방화벽	TCVN 7189 : 2002

5. 브라질

〈 INMETRO 강제인증 대상 제품 및 서비스 종류 : 92개(2011년 7월 기준) 〉

no	대상 품목
1	Cables, plugs and sockets
2	Net NOx reducing agent Automotive - ARLA 32
3	Apparatus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drinking water
4	Bicycle Rims adult usage
5	School supplies
6	Party items
7	Bars and steel wires for the reinforcement for concrete structures
8	Drinkers
9	Children's cots
10	Power cable with extruded solid insulation, PVC for voltages 0.6 / 1.0 kV
11	Steel-general use
12	Cables and flexible cords insulated with PVC,
	Application-specific connectors in cords and appliances in voltages up to 500V
13	Cables and flexible cords for voltages up to 750 v, with insulation / coating extruded polyvinyl chloride (PVC)
14	Flexible cables insulated with EPR rubber, for specific applications in connector cords and appliances in voltages up to 500 V
15	Monobloc plastic chair
16	Inner Tubes Bicycle Tire Use Adult
17	Helmet Use in Industry
18	Helmets for drivers and passengers of motorcycles and the like
19	Bodywork urban bus - Standardization
20	Pacifiers
21	Seamless steel cylinders, for the storage of methane gas vehicle

22	High pressure cylinders to store compressed natural gas as fuel in vehicles propelled
23	Mattresses and mattresses made of polyurethane foam fluxível
24	Automotive Components
25	Components of compression systems for compressed natural gas and compressed natural gas
26	System components for compressed natural gas
27	Components of exhaust systems and fuel supply
28	Insulated with polyvinyl chloride (PVC), for rated voltages of 450/750 V, uncovered, for fixed
29	Connections malleable iron for conducting fluids
30	Joint Director (Handlebars Handlebars &Support) Bike Adult Use
31	Bicycle Brake Sets Adult Use
32	Frame and Fork Set Bike Adult Use
33	Construction Vessels accessible to public transportation of passengers
34	For intermediate bulk containers (IBC) used nop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35	Disposable plastic cups
36	Use ropes Bike Adult
37	Flexible cords with insulation extruded chlorosulfonated polyethylene (CSP) for voltages up to 300 V
38	Circuit Breakers
39	Fixture container
40	Child restraint device
41	Large packs used i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42	Packaging reconditioned used in land transportation of Dangerous Goods
43	Remanufactured packaging used in land transportation of Dangerous Goods
44	Protective Equipment (PPE) - Rubber Insulating Gloves
45	Protective Equipment (PPE) - Ask for Particle Filtering Semifacial
46	Axis pods

47	Packing for land transport safety matches
48	Packaging destined for the canning of alcohol
49	Packing used in land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50	Electrical Equipment for Explosive Atmospheres, in the Conditions of flammable gases and vapors and combustible dusts
51	Electrical System of Sanitary Surveillance in
52	Single phase voltage stabilizers, AC voltage with output, rated voltage of 250 V in powers of up 3kVA/3KW
53	Fire extinguishers
54	Affordable Manufacture of Motor Characteristics for Urban Public Transport of Passengers
55	Affordable Manufacture of Motor Characteristics for Road Passenger Transport Collective
56	Safety matches
57	Type fuses and cartridge type stopper
58	Pressure gauges for fire extinguishers
59	Switches for electrical household and similar fixed
60	Liquids for hydraulic brakes for automotive vehicles
61	Gloves, Surgical and non surgical procedures from natural rubber, synthetic rubber and rubbers
62	Bottles and bottle nipples
63	Plasticized PVC hoses, LPG for domestic installations
64	Nipples Adult Bike Use
65	Pressure cookers
66	Crank and Pedal Bike Adult Use
67	King Pin-road vehicle designed to transport cargo and dangerous goods
68	Plugs and sockets for household and similar
69	Bicycle tires adult usage
70	New Tires Motorcycle, Scooter and Moped, Motor Passengers, including mixed-use, and towed, Commercial Vehicles, Light Commercial Vehicles and Towed

71	Condoms
72	PROVE - National Conformity Certification of Motor Vehicles - Emissions
73	Fifth-wheel used in road vehicles designed to transport Cargo and Dangerous Goods
74	Rays Bike Adult Use
75	Electronic ballasts fed alternating current for tubular fluorescent lamps rectilinear, circular and compact
76	Ballasts for tubular fluorescent lamps
77	Transportable containers for liquefied petroleum gas - LPG
78	Low-pressure regulators for liquefied petroleum gas (LPG) for up to 4 kg
79	Automotive Wheels
80	Safety of Household and Similar Devices
81	Safety bicycle use child
82	Safety toys
83	Service adaptation fixture container
84	Underground storage tank of fuel put into reseller
85	Portable tanks used in land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86	Air Storage Tanks Petroleum and other fuels
87	Carbon steel tubes for common uses in conducting fluids
88	Non-metallic underground pipe for automotive fuel
89	Vehicle carrying container
90	Fans table, column and air circulators
91	Laminated safety glass for windshield-propelled road vehicle
92	Safety glass for automotive road vehicles

6. 멕시코

〈 NOM 인증 대상기기 〉

구분	세부품목
NOM-001	- 무선장비, 모니터, DVD, TV, 전자레인지, 무선전화, 응답기, 프로젝터 등
NOM-016	- 사무기기 : 팩스, 복사기, 전자 타자기 등
NOM-019	- 정보처리기기 같은 IT 제품 : 컴퓨터, 서버, 키보드, 마우스, 프린터, 하드디스크, 노트북, 전기와 연결된 모든 컴퓨팅 기기
NOM-003	- 위의 제품을 제외한 일반적인 가정용 기기 : 다리미, 전기 오븐, 전기 칼, 드라이어, 선풍기, 믹서기와 같은 가전기기

〈 COFETEL 인증 대상기기 〉

구분	세부 품목
NOM-151	- 아날로그 통신 장비 : 집전화, 모뎀, POST 인터페이스로 접속하는 라우터, POX 라우터, PSTN과 연결하는 모든 장비
NOM-152	- 디지털 통신 장비 : E1 인터페이스를 가진 라우터
NOM-083	- UHF와 VHF 대역의 페이징 장비,
NOM-084	- 중계장치(trunking equipment)
NOM-088/1	- 2.4GHz 대역의 마이크로웨이브 장비
NOM-088/2	- 7, 10.5, 15, 23, 38GHz 대역의 마이크로웨이브 장비

7. 러시아

< 강제인증 대상품목 >

식품류(육류, 어패류, 채소류, 과일류, 곡물류, 유지류, 주류 및 음료 등)
가축류
동물의 생활 및 건강과 관련된 제품(사료, 백신 등)
살충제 및 화학비료
유전자 변경 결과를 포함하는 제품과 서비스
난방기구류
전기, 전자 제품 및 부품
운송기기 및 금속 제품
화학제품(비료, 세제, 기타 화학제품, 고무 등)
목재류(원목 및 가공품)
신발, 의류, 편물
금속제품
기계류(생산기기, 기계부속품)
중장비 설비 및 그 부품
의류 및 스포츠 용품
안전장비 및 관련 제품 등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 보호를 위한 도구
에너지 소비 제품과 에너지 자원, 가스와 석탄
우주항공장비
화재 관련 제품
무기 관련 제품

〈 CFC 인증 대상품목 예시 〉

CFC 인증 대상품목 예시
GSM 900/1800 이동전화
CDMA 2000 기지국
PSTN 단말 장비
FM 송수신기
CDMA 2000 이동전화
무선장비
가입자 단말접속장치

[결과 3]

해외 주요국 시험 및 인증 수수료

1. 미국

〈 인증형식별 수수료 〉

구분	비 용	
인증	모든 수신기(TV와 FM 제외)	\$475
	Part 11, 15, 18(수신기 제외)	\$1,220
	다른 장치(all other devices)	\$615
	Class II 변경허가(permissive change)	\$60
	인증의 기밀요구	\$175
	Class III 변경허가	\$615
SDoC	시험수수료 ACTA 등록비(\$ 300)	
DoC	\$ 500~ \$ 1,000	
자체증명	\$ 500~\$ 1,000	

2. 일본

기술기준 설계인증심사에 관한 수수료(비과세)

(2006년 3월 1일)

(엔) 단말기 종류	수 수 료		시험결과보고 등 서류 ¹ 제출 있음				단말기기 시험을 할 경우 ²			
			신규		일부변경 ³		신규		일부변경 ³	
	단독	복합 ⁴	단독	복합 ⁴	단독	복합 ⁴	단독	복합 ⁴		
1. 전화용 설비에 접속하 는 단말기 ⁶⁷	269,	246,	142,	119,	396,	368,	238,	209,		
(1) 전화기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 구내교환설비 또는 버 튼전화장치	400,	383,	84,0	67,0	633,	611,	238,	216,		
① 수용 회선수 1회선	000	000	00	00	000	000	000	000		
② 수용 회선수 2회선이 상	485,	463,	102,	80,0	768,	740,	289,	261,		
	000	000	000	00	000	000	000	000		
(3) 변복조장치, 팩스 기 타단말기	269,	245,	155,	131,	394,	364,	251,	22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 무선호출용 설비에 접 속하는 단말설비	109,	85,0	67,0	43,0	150,	120,	98,0	68,0		
	000	00	00	00	000	000	00	00		
3. 종합디지털통신용설비 에 접속하는 단말기기	267,	243,	153,	129,	391,	361,	249,	21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4. 전용통신회선설비 또는 디지털데이터전송용 설비 에 접속하는 단말기기	127,	104,	90,0	67,0	175,	146,	129,	100,		
① 인터페이스종류 1 ⁵	000	000	00	00	000	000	000	000		
② 인터페이스종류 2이상	136,	111,	96,0	71,0	188,	156,	138,	106,		
	000	000	00	00	000	000	000	000		

¹ '시험결과보고서 등 서류'는 업무규정 별표 제2호에서 정한 서류를 말함

² '시험결과보고 등 서류'의 제출이 없어, 당 협회에서 단말기기의 시험을 하는 경우, 시험항목이 복잡하거나 또는 특별한 측정기 등이 필요로 될 때는 표에 제시하는 금액에 특별요금을 가산한다.

³ '일부 변경'은 이미 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인증에 관한 단말기기와 중요한 부분에서 다른 구조, 기능을 가지는 단말기기의 설계에 대한 인증 신청을 말함

- ⁴ '복합'은 2이상의 단말기기에 대해 동시에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로, 2이상의 단말기가 구조상 일체로 되어 있는 신청을 말함
- ⁵ '인터페이스의 종류'는 전용통신회선설비 등 단말기의 전기적 조건 및 광학적 조건(1999년 우정성 고시 제162호) 별표 제1호부터 별표 제6호에서 정하는 종류를 말함
- ⁶ 전화용 설비에 접속하는 단말기기(일부변경을 제외)에 대해 아날로그전화단말기와 이동전화단말기의 쌍방에 걸칠때는 표에서 제시하는 금액에 3만원 가산한다.
- ⁷ 전화용 설비에 접속하는 단말기기(일부변경을 제외)의 이동전화단말기에서 복수의 방법(PDC, PHS등)에 걸칠 때는 표에서 제시하는 금액에 5만엔을 가산한다.
- 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말기기(일부 변경을 제외)에 대해서는 표에서 제시하는 금액에서 3만엔 감액한다.
- ① 단말설비규칙 제9조(단말설비 내에서 전파를 사용하는 단말기기)만에 관한 기기
 - ② 단말설비 등 제18조(발신 기능) 또는 제30조(아날로그전화단말과 통신하는 경우의 송출전력)만에 관한 기기
- ⁹ 인증을 받은 단말기기의 앞쪽에 접속하는 기기로, 망 제어기능을 갖지 않는 것(일부 변경 제외)에 대해서는 표에서 제시하는 금액에서 5만엔 감액한다.
- ¹⁰ 거액신청자에 관한 인정 심사수수료 요금의 감액에 대해서는 업무규정 제5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다.
- ¹¹ 이미 인증을 받은 단말기기에 대해 해당 인증을 받은 자와는 별도의 자가 새롭게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시험결과보고 등 서류의 제출있음의 일부 변경란에서 제시하는 금액에서 3만엔을 감액한다.
- ¹² 이미 인증을 받은 단말기기에 대해서는 명칭변경의 신청을 하는 경우는 시험결과보고 등 서류의 제출있음의 일부 변경란에서 제시하는 금액에서 3만엔을 감액한다. 복합의 경우는 주요 기능을 갖는 종류의 단말기기에 대한 수수료금에서 3만엔을 감액한 금액으로 한다.

기술기준 적합인정심사에 관한 수수료(비과세)

(2006년 3월 1일)

단말기 종류	수수료(엔)		시험결과보고 등 서류 ¹ 제출 있음		단말기기 시험을 할 경우 ²	
	단독	복합 ³	단독	복합 ³	단독	복합 ³
1. 전화용 설비에 접속하는 단말기 (1) 전화기	27,000	24,000	67,000	64,000		
(2) 구내교환설비 또는 버튼 전화장치	23,000	21,000	76,000	73,000		
① 수용 회선수 1회선						
② 수용 회선수 2회선이상	27,000	25,000	92,000	89,000		
(3) 변복조장치, 팩시밀리 기타 단말기	27,000	25,000	66,000	63,000		
2. 무선호출용 설비에 접속하는 단말설비	25,000	22,000	34,000	31,000		
3. 종합디지털통신용설비에 접속하는 단말기기	27,000	25,000	66,000	63,000		
4. 전용통신회선설비 또는 디지털데이터전송용 설비에 접속하는 단말기기	25,000	23,000	43,000	40,000		
① 인터페이스종류 1 ⁴						
② 인터페이스종류 2이상	27,000	25,000	46,000	43,000		

¹ '시험결과보고서 등 서류'는 업무규정 별표 제2호에서 정한 서류를 말함
² '시험결과보고 등 서류'의 제출이 없어, 당 협회에서 단말기기의 시험을 하는 경우, 시험항목이 복잡하거나 또는 특별한 측정기 등이 필요로 될 때는 표에 제시하는 금액에 특별요금을 가산한다.
³ '복합'은 2이상의 단말기기에 대해 동시에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로, 2이상의 단말기가 구조상 일체로 되어 있는 신청을 말함
⁴ '인터페이스의 종류'는 전용통신회선설비 등 단말기의 전기적 조건 및 광학적 조건 (1999년 우정성 고시 제162호) 별표 제1호부터 별표 제6호에서 정하는 종류를 말함
⁵ 거액신청자에 관한 인정 심사수수료 요금의 감액에 대해서는 업무규정 제5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다.

기술적조건 설계인증심사에 관한 수수료(비과세)

(2006년 3월 1일)

단말기 종류	수수료(엔)		시험결과보고 등 서류 ¹ 제출 있음				단말기기 시험을 할 경우 ²			
			신규		일부변경 ³		신규		일부변경 ³	
	단독	복합 ⁴	단독	복합 ⁴	단독	복합 ⁴	단독	복합 ⁴		
1. 이동통신단말기기	279,300	237,300	180,600	136,500	390,600	336,000	252,000	193,200		
2. 무선호출용 설비에 접속하는 단말설비	132,300	88,200	96,600	52,500	184,800	123,900	134,400	73,500		
① 인터페이스 종류 ¹⁵	142,800	92,400	105,000	54,600	199,500	130,200	144,900	77,700		
② 인터페이스종류 2이상					500	200	900	00		
3. 종합디지털통신용설비에 접속하는 단말기기	296,100	252,000	186,900	142,800	413,700	352,800	262,500	199,500		

¹ '시험결과보고서 등 서류'는 업무규정 별표 제2호에서 정한 서류를 말함

² '시험결과보고 등 서류'의 제출이 없어, 당 협회에서 단말기기의 시험을 하는 경우, 시험항목이 복잡하거나 또는 특별한 측정기 등이 필요로 될 때는 표에 제시하는 금액에 특별요금을 가산한다.

³ '일부 변경'은 이미 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인증에 관한 단말기기와 중요한 부분에서 다른 구조, 기능을 가지는 단말기기의 설계에 대한 인증 신청을 말함

⁴ '복합'은 2이상의 단말기기에 대해 동시에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로, 2이상의 단말기가 구조상 일체로 되어 있는 신청을 말함

⁵ '인터페이스의 종류'는 전용통신회선설비 등 단말기의 전기적 조건 및 광학적 조건 (1999년 우정성 고시 제162호) 별표 제1호부터 별표 제6호에서 정하는 종류를 말함

⁶ 거액신청자에 관한 인정 심사수수료 요금의 감액에 대해서는 업무규정 제5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다.

⁷ 이미 인증을 받은 단말기기에 대해 해당 인증을 받은 자와는 별도의 자가 새롭게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시험결과보고 등 서류의 제출있음의 일부 변경란에서 제시하는 금액에서 3만엔을 감액한다.

⁸ 이미 인증을 받은 단말기기에 대해서는 명칭변경의 신청을 하는 경우는 시험결과보고 등 서류의 제출있음의 일부 변경란에서 제시하는 금액에서 3만엔을 감액한다. 복합의 경우는 주요 기능을 갖는 종류의 단말기기에 대한 수수료금액에서 3만엔을 감액한 금액으로 한다.

기술적조건 적합인정심사에 관한 수수료(소비세 포함)

(2006년 3월 1일)

단말기 종류	수수료(엔)		시험결과보고 등 서류 ¹ 제출 있음		단말기기 시험을 할 경우 ²	
	단독	복합 ³	단독	복합 ³	단독	복합 ³
1. 이동통신단말기기	42,000	37,800	67,200	63,000		
2. 무선호출용 설비에 접속하는 단말설비	27,300	23,100	44,100	37,800		
① 인터페이스 종류 ⁴						
② 인터페이스종류 2이상	27,400	25,200	48,300	39,900		
3. 종합디지털통신용설비에 접속하는 단말기기	44,100	39,900	69,300	65,100		

- ¹ '시험결과보고서 등 서류'는 업무규정 별표 제2호에서 정한 서류를 말함
- ² '시험결과보고 등 서류'의 제출이 없어, 당 협회에서 단말기기의 시험을 하는 경우, 시험항목이 복잡하거나 또는 특별한 측정기 등이 필요로 될 때는 표에 제시하는 금액에 특별요금을 가산한다.
- ³ '일부 변경'은 이미 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인증에 관한 단말기기와 중요한 부분에서 다른 구조, 기능을 가지는 단말기기의 설계에 대한 인증 신청을 말함
- ⁴ '복합'은 2이상의 단말기기에 대해 동시에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로, 2이상의 단말기가 구조상 일체로 되어 있는 신청을 말함
- ⁵ '인터페이스의 종류'는 전용통신회선설비 등 단말기의 전기적 조건 및 광학적 조건 (1999년 우정성 고시 제162호) 별표 제1호부터 별표 제6호에서 정하는 종류를 말함
- ⁶ 거래신청자에 관한 인정 심사수수료 요금의 감액에 대해서는 업무규정 제5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다.

3. 베트남

인증 수수료 (출처 : Decision 150/2000/QD-BTC)

Ordinal number	Description	Fee level (VND 1,000)
1	Switchboards and network access devices (3 years)	
	- Switchboards	8,000
	- Network access devices	5,000
2	PABX switchboards (3 years)	
	- With 128 lines or more	5,000
	- Under 128 lines	2,000
3	Microwave transmission equipment (3 years)	7,000
4	Optic fiber transmission equipment (3 years)	11,000
5	Assorted power source equipment with an output of over 2.5 KW (2 years)	3,000
6	Optic fiber cables (2 years)	6,000
7	Mental communications cables (2 years)	5,000
8	Cordless telephone equipment (2 years)	6,000
9	Terminal equipment for connection to ISDN network (2 years)	5,000
10	Radio transmitters, trancivers with a frequency band of between 9 KHz and 400 GHz, with a capacity of 60 MW or more (2 years)	
	- Radio transmitters, trancivers used in land fixed or mobile radio communications service	5,000
	- Radio transmitters, trancivers used exclusively for television broadcasting	5,000
	- Radio transmitters, trancivers used exclusively for radio broadcasting	3,000

	- Radio transmitters, trancivers used for standard broadcasting (frequency, time)	5,000
	- Radio transmitters, trancivers used for remote positioning and measurement	5,000
	- Radio transmitters, trancivers used for satellite communications (except mobile equipment for maritime and aeronautical use)	5,000
	- Amateur radio transmitters, trancivers	1,000
	- Radio transmitters, trancivers used for mobile maritime services (including support equipment, satellite)	3,000
	- Radio transmitters, trancivers used for mobile aeronautical services (including support equipment, satellite equipment)	3,000
11	Radar equipment and radio support equipment thereof, radio-operated remote control equipment (2 years)	
	- Radar equipment	3,000
	- Radio transmitters, trancivers used for navigation	3,000
	- Radio-operated remote control, warning devices	3,000
12	Assorted power sources with a capacity of up to 2.5 KW (2 years)	3,000
13	Assorted plastic tubes used for underground cable lines (2 years)	5,000
14	Telex machines	3,000
15	Fax machines (2 years)	2,000
16	Pagers (2 years)	1,000
17	Mobile phones (2 years)	3,000
18	Low-speed video telephones (2 years)	5,000
19	Fixed automatic telephones (2 years)	3,000
20	Terminal devices and other suppliers (2 years)	1,000

21	Compatibility of electromagnetic fields	500
----	---	-----

[결과 4]

해외 주요국 인증 및 시험기관 리스트

1. 미국

< 시험신청 기관 리스트 >

지정번호	시험기관명	주소 및 연락처	홈페이지
US0003	IBM Endicott EMC Laboratory	PO Box5825, Union Station, Endicott, New York 13763-5825 USA(IBM Building 065, 1395 Robinson Hill Road, Endicott, New York,13760) / +1-607-429-5351	N/A
US0004	Dell Regulatory Test Lab	13301 McCallen Pass, Austin, Texas 78753 / 512-728-7380	www.dell.com
US0005	IBM Research Triangle Park	3039 Cornwallis Road, Dept, 2D1A, Research Triangle Park, NC 27709 USA / +1-919-254-7598	www.ibm.com
US0007	Hewlett-Packard Company	2055 SH 249, Mailcode 510101,Houston, Texas, USA / +1-281-927-3608	www.hp.com
US0008	Hewlett-Packard Company, Roseville Hardware Test Center	8000 Foothills Boulevard, Ms 5603, Roseville, California 95747-5603 / +1-916-785-5051	www.hp.com
US0011	Hewlett Packard Fort Collins Hardware Test Center	3404 E. harmony Road, MS:63, Fort Collins, Colorado 80528 USA / +1-790-898-6621	www.fchtc.external.hp.com
US0012	3M Product Safety EMC Laboratory	3M Center, Bldg. 235-BE-03, St.Paul, Minnesota 55144 USA / +1-651-736-0932	www.mmm.com

US0013	IBM Poughkeepsie EMC Test Lab	2455 South Road, B/416, MS/P932, Poughkeepsie, New York USA / +1-845-433-9221	N/A
US0017	Northwest EMC, Hillsboro Lab	22975 NW Evergreen Parkway #400,Hillsboro, Oregon 97124 USA / +1-503-844-4066	www.nwemc.com
US0018	Test Site Services, Inc	30 Birch Street, Milford, Massachusetts 01757 USA / +1-508-481-1684	www.testsiteservices.com
US0020	Nemko USA, Inc.	802 N.Kealy Avenue, Lewisville, TX 75057 phone : 1-972-436-9600 ext.273 fax : 1-972-436-2667 e-mail : mike.cantwell@nemko.com	www.nemko.com
US0021	Hewlett-Packard Company, Vancouver EMC Laboratory	18110 S.E.34th street, Vancouver, Washington 98683 USA / +1-360-212-2327	www.hp.com
US0022	Hewlett-Packard Company LSG Hardware Test Center	11311 Chinden Boulevard, Boise, Idaho 83714 USA / +1-208-396-3773	www.hp.com
US0023	Intel Corporation	2801 Center Drive, MS DP1-107, Dupont, Washington 98327 USA / +1-253-371-5620	www.intel.com
US0024	IBM Rochester EMC Lab	3605 North Highway 52, Dept. 515A, Rochester, Minnesota 55901-7829 USA / +1-507-253-6201	www-1.ibm.com/servers/support/ies
US0026	Criterion Technology Inc.	adress : 1350 Tolland Road, Rollinsville, CO 80474 USA phone : 303-258-0100 fax : 303-258-0755	www.criteriontech.com

US0027	Elliott Laboratories, Inc.	684 West Maude Avenue, Sunnyvale, California, 94085-3518, USA / +1-408-245-7800	N/A
US0028	CISCO Systems, Inc.	170 West Tasman Drive, San Jose, California 95134-1706 / 408-853-8550	www.cisco.com
US0036	Electro Magnetic Test Inc.	1547 Plymouth Street, Mountain View, California 94043 / +1-650-965-4000	www.emtlabs.com
US0039	Intertek Testing Services NA, Inc.	1365 Adams Court, Menlo Park, California 94025 USA / +1-607-758-6336 / 607-758-9608	www.intertek.com
US0045	IQS, A Division of Degree Controls	257 Simarano Drive, Marlboro, Massachusetts 01752 USA / +1-508-460-1400	www.iqscorp.com
US0048	Intertek Testing Services NA Inc.	7250 Hudson Boulevard, Suite 100, Oakdale, Minnesota 55128 USA / +1-607-758-6336 / +1-607-758-9608	www.intertek-etlsemko.com
US0052	ITC Engineering Services, Inc.	9959 Calaveras Road, Sunol, California 94586 USA / +1-925-862-2944	www.itcemc.com
US0057	Bay Area Compliance Laboratory Corp.	1274 Anvilwood Avenue, Sunnyvale, California 94089 USA / +1-408-732-9162	N/A
US0060	CKC Laboratories, Inc.	110 North olinda Place, Brea, California 92823 USA / +1-209-966-5240 ext.204 / +1-866-779-9776	www.ckc.com
US0064	EMC Corporation	80 South Street, MS 80-2LK, Hopkinton, Massachusetts 01748 USA / +1-508-249-5020	www.EMC.com

US0064	EMC Corporation	Satellite laboratory : 52 Maple Street, Milford, MA 01757	www.emc.com
US0065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address : 333 Pfingsten Road, Northbrook, IL 60062-2096 phone : 847-664-3894 fax : 847-313-3894	www.ul.com
US0066	Compatible Electronics, Inc.	2337 Troutdale Drive Agoura, CA USA / +1-714-579-0500	www.celectronics.com
US0067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12 Laboratory Drives, Research Triangle Park, NC 27709	www.ul.com
US0068	Chomerics Test Services	Address : 77 Dragon Court, Woburn, Massachusetts 01801 USA Phone : +1 (781) 939-4375 Fax : +1 (781) 935-2758 E-mail : dinman@parker.com	www.chomerics.com
US0069	Oregon Certification EMC Lab	5200N.W. Elam Young Parkway, Hillsboro, OR 97124	www.intel.com
US0072	Aegis Labs Inc.	32231 Trabuco Creek Road, Trabuco Canyon, California 92678 USA / +1-949-454-8259 ext.123 / +1-949-829-6903	www.aegislabsinc.com
US0073	Sun Microsystems, Inc.	220 Jefferson Drive, M/S MPK15-102, Menlo Park, California 94025 USA / +1-650-786-6583	www.sun.com
US0079	Rhein Tech Laboratories, Inc.	360 Herndon Parkway, Suite 1400, Herndon, Virginia 20170-4824 USA / +1-703-689-0368	www.rheintech.com
US0080	TÜV America,	1775 Old Highway 8 N.W., Suite	www.tuvameri

	Inc.	104, New Brighton, Minnesota 55112-1891 USA / +1-978-739-7021	ca.com
US0081	CKC Laboratories, Inc.	22116 23rd Drive, S.E., Suite A, Bothell, Washington 98021 USA / +1-209-966-5240 ext.204 / +1-866-779-9776	www.ckc.com
US0082	CKC Laboratories, Inc.	1120 Fulton Place, Fremont, California 94539 USA / +1-209-966-5240 ext.204 / +1-866-779-9776	www.ckc.com
US0088	Nemko USA, Inc.	11696 Sorrento Valley Road, Suite F, San Diego, CA 92121-1024 USA / +1-858-755-5525 / 858-452-1810	www.nemko.c om
US0089	Atlas Compliance &Engineering, Inc.	1792 Little Orchard Street, San Joe CA 95125 EMI/EMS 726 Hidden Valley Rd., Royal Oaks, CA 95076 EMI 408-971-9743 / 408-971-9783	www.atlasce.c om
US0092	Intertek Testing Services NA, Inc.	27611 La Paz Road, Laguna Niguel, California 92677 USA / +1-607-758-6336 / 607-758-9608	www.intertek. com
US0093	D.L.S. Electronic System, Inc.	1250 Peterson Drive, Wheeling, IL 60090-6454 phone : 1-847-537-6400 fax : 1-847-537-6488 e-mail : bmattson@dlsemc.com	www.dlsemc.c om
US0099	Intertek Testing Services NA, Inc.	5541 Central Avenue, Suite 110, Boulder, Colorado 80301 / +1-303-402-5272	www.ialabs.co m
US0102	TÜV America Inc.	10040 Mesa Rim Road, San Diego, California 92121 USA / +1-651-638-0252	www.tuvameri ca.com

US0103	CKC Laboratories, Inc.	5046 Sierra Pines Drive, Mariposa, California 95338 USA / +1-209-966-5240 ext.204 / +1-866-779-9776	www.ckc.com
US0104	Compliance Certification Services	47173 Benicia Street, Fremont, California 94538 USA / +1-510-771-1104 / 510-661-0888	www.ccsemc.com
US0106	Curtis-Straus LLC	527 Great Road, Littleton, Massachusetts 01460 USA / +1-978-486-8880	www.curtis-straus.com
US0113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333 Pfingsten Road, Northbrook, IL 60062 USA / +1-847-664-3894	www.ul.com
US0123	Professional Testing (EMI), Inc.	1601 FM 1460, Suite B, Round Rock, Texas 78664 USA / +1-512-244-3371 / 512-244-1846	www.ptitest.com
US0128	Intertek Testing Services NA Inc.	1950 Evergreen Boulevard, Suite 100, Duluth, Georgia 30096 USA / +1-607-758-6336 / +1-607-758-9608	www.intertek-etlsemko.com
US0129	MET laboratories, Inc.	33439 Western Avenue, Union City, California 94587 USA / +1-510-378-2201	www.metlabs.com
US0132	Compliance Worldwide, Inc.	357 Main Street, Sandown, New Hampshire 03873 USA / +1 (603) 887-3903 / (603) 887-6445	www.sun.com
US0145	Compatible Electronics Inc	address : 19121 El Toro Road, Silverdo/Lake Forest, California 92676 phone : 714-579-0500 fax : 714-579-1850	www.celetronics.com
US0147	Alcatel-Lucent Global Product Compliance Lab	101 Crawfords Corner Road, Room 11C-165, Holmdel, New Jersey 07733 USA / +1-732-332-6002	www.gpcl.com

US0148	Cisco Systems, Inc.	1414 Massachusetts Avenue, Boxborough, Massachusetts 01719 USA/+1-301-975-5521	www.cisco.com
US0150	Xerox Corporation	mailing address : 800 Phillips Road, Mail Stop 205-99P, Webster, NY 14580 USA	www.xerox.com
US0150	Xerox Corporation	mailing address : 800 Phillips Road, Mail Stop 205-99P, Webster, NY 14580 USA	www.xerox.com
US0155	Compliance Management Group	202 Forest Street, Marlboro, Massachusetts 01752 USA / +1-508-281-5985 ext.222 / +1-508-281-5972	www.cmgcorp.com
US0156	Advanced Compliance Solutions, Inc	5015 B.U. Bowman Drive, Buford, George 30518 USA phone : 1-770-834-8048 ext.208 fax : 1-770-831-8598 e-mail : rabernathy@acstestlab.com	www.acstestlab.com
US0157	Northwest EMC, Sultan Lab	14128 339th Avenue SE, Sultan, Washington 98294 USA / +1-503-844-4066	www.nwemc.com
US0158	Northwest EMC, Irvine Lab	41 Tesla Avenue, Irvine, California 92618 USA / +1-503-844-4066	www.nwemc.com
US0159	Micom Labs	3922 Valley Avenue, Suite B. Pleasanton, California 94566 USA / +1-925-462-0304	www.micomlabs.com
US0160	SIEMIC Laboratories	2206 Ringwood Avenue, San Jose, California 95131 USA / +1-408-526-1188	www.siemic.com
US0160	SIEMIC, Inc.	2206 Ringwood Avenue, San Jose, California 95131	www.siemic.com

US0161	TUV Rheinland Of America, Inc.	1279 Quarry Lane, Suite A, Pleasanton, California 94566 USA / +1-925-249-9123	www.us.tuv.co m
US0162	TÜV America, Inc.	19333 Wild Mountain Road, Taylor Falls, Minnesota 55084-1786 USA / +1-978-739-7021	www.tuvameric a.com
US0163	TÜV America, Inc.	Oakwood Town Road, Millville, Minnesota 55957-0255 USA / +1-978-739-7021	www.tuvameric a.com
US0166	Intertek Testing Services NA Inc.	420 North Dorothy Drive, Richardson, Texas 75081 USA / +1-607-758-6336 / +1-607-758-9608	www.intertek-etl semko.com
US0168	EMC Integrity, Inc.	1736 Vista View Drive, Longmont, Colorado 80504 USA / +1-303-776-7249	www.emcintegri ty.com
US0171	TÜV Rheinland of NA, Inc.	336 Initiative Drive, Building 5, Rochester, NY 14624	www.us.tuv.co m

< 인증신청 기관 리스트 >

No	TCB	Accredited Scope(s)
1	<p>American TCB, Inc. Mr. Mike Violette 6731 Whittier Avenue Suite C110 McLean, VA 22101 Phone 703- 847-4700 Fax 703- 847-6888 Email mikev@atcb.com</p>	<p>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Unlicensed Radio Frequency Devices A1, A2, A3, A4 Licensed Radio Frequency Devices B1, B2, B3, B4</p> <p>Industry Canada's requirements (a) Radio - All Radio Standards Specifications (RSS) in Category I Equipment Standards List Radio (b) Broadcasting - All Broadcasting Technical Standards (BETS) in Category I Equipment Standards List</p>
2	<p>Bay Area Compliance Laboratory Corporation Mr. John Chan 230 Commercial St. Suite 2 Sunnyvale, CA 94086 Phone 408-732-9162 Fax 408-732-9164 Email johnc@baclcorp.com</p>	<p>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Unlicensed Radio Frequency Devices A1, A2, A3, A4 Licensed Radio Frequency Devices B1, B2, B3, B4 Telephone Terminal Equipment</p> <p>Industry Canada's requirements (a) Radio - All Radio Standards Specifications (RSS) in Category I Equipment Standards List Radio</p>
3	<p>CKC Certification Services Mr. Steve Behm 5473A Clouds Rest Mariposa, CA 95338 Phone 209-966-5240 Fax 209-742-6133 Email steve.behm@ckc.com</p>	<p>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Unlicensed Radio Frequency Devices A1, A2, A3, A4 Licensed Radio Frequency Devices B1, B2, B3, B4 Telephone Terminal Equipment</p> <p>Industry Canada's requirements</p>

		(a) Radio - All Radio Standards Specifications (RSS) in Category I Equipment Standards List Radio (b) Broadcasting - All Broadcasting Technical Standards (BETS) in Category I Equipment Standards List
4	Communication Certification Laboratory Mr. Thomas Jackson 1940 W. Alexander St. Salt Lake City, UT 84119 Phone 801-972-6146 Fax 801-972-8432 Email KPT@cclab.com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Unlicensed Radio Frequency Devices A1, A2, A3, A4 Licensed Radio Service Equipment B1, B2, B3, B4 Telephone Terminal Equipment
5	Compatible Electronics, Inc. Mr. Jeff Klinger 114 Olinda Drive Brea, CA 92823 Phone 714-579-0500 Fax 714-528-1992 Email jeff@celectronics.com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Unlicensed Radio Frequency Devices A1, A2, A3, A4 Telephone Terminal Equipment
6	Compliance Certification Services Ms. Barbara Judge 561F Monterey Road Morgan Hill, CA 95037 Phone 408-463-0885 Fax 408-463-0888 Email bjudge@ccsemc.com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Unlicensed Radio Frequency Devices A1, A2, A3, A4 Licensed Radio Frequency Devices B1, B2, B3, B4 Industry Canada's requirements (a) Radio - All Radio Standards Specifications (RSS) in Category I Equipment Standards List Radio
7	Curtis-Straus LLC Mr. Barry Quinlan 527 Great Road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Unlicensed Radio Frequency Devices

	<p>Littleton, MA 01460 Phone 978-486-8880 Fax 978-486-3529 Email jdc@curtis-straus.com</p>	<p>A1, A2, A3, A4 Licensed Radio Service Equipment B1, B2, B3, B4 Telephone Terminal Equipment</p>
8	<p>Elite Electronic Engineering, Inc. Mr. Richard King 1516 Centre Circle Downers Grove, IL 60515 Phone 630-495-9770 Fax 630-495-9785 Email sales@elitetest.com</p>	<p>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Unlicensed Radio Frequency Devices A1, A2, A3, A4 Licensed Radio Service Equipment B1, B2, B3, B4 Telephone Terminal Equipment</p>
9	<p>Federated Certification Company LLC Mr. Morton Flom 3356 North San Marcos Place, Suite 107 Chandler, AZ 85225 Phone 480-926-3100 Fax 480-926-3598 Email general@mflom.com</p>	<p>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Unlicensed Radio Frequency Devices A2, A3</p>
10	<p>Intertek Testing Services, NA Inc. (ETL and Warnock Hersey) Mr. Paul Moliski 3933 U.S. Route 11 PO Box 2040 Cortland, NY 13045 Phone 607-753-6711 Fax 607-756-9891 Email pmoliski@itsqs.com</p> <p>70 Codman Hill Road Boxborough, MA 01719 Tel: 978-263-2662 Fax: 978-263-7086</p>	<p>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Unlicensed Radio Frequency Devices A1, A2, A3, A4 Licensed Radio Service Equipment B1, B2, B3, B4 Telephone Terminal Equipment</p> <p>Industry Canada's requirements (a) Radio - All Radio Standards Specifications (RSS) in Category I Equipment Standards List Radio (b) Broadcasting - All Broadcasting Technical Standards (BETS) in Category I Equipment Standards List</p>

11	<p>MET Laboratories, Inc. Ms. Marianne Bosley 914 W. Patapsco Ave. Baltimore, MD 21230 Phone 410-354-3300 x 412 Fax 410-354-3313 Email MBosley@metlabs.com</p>	<p>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Unlicensed Radio Frequency Devices A1, A2, A3, A4 Licensed Radio Frequency Devices B1, B2, B3, B4 Telephone Terminal Equipment</p> <p>Industry Canada's requirements (a) Radio - All Radio Standards Specifications (RSS) in Category I Equipment Standards List Radio</p>
12	<p>Northwest EMC, Inc Mr. Dave Tolman 22975 NW Evergreen Parkway #400 Hillsboro, OR 97124 Phone 503-844-4066 Fax 503-648-3269 Email dtolman@nwemc.com</p>	<p>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Unlicensed Radio Frequency Devices A1, A2, A3, A4 Licensed Radio Frequency Devices B1, B2, B3, B4</p> <p>Industry Canada's requirements (a) Radio - All Radio Standards Specifications (RSS) in Category I Equipment Standards List Radio</p>
13	<p>PCTEST Engineering Laboratory, Inc. Mr. Randy Ortanez 6660-B Dobbin Road Columbia, MD 21045 Phone 410-290-6652 Fax 410-290-6654 Email randy@pctestlab.com</p>	<p>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Unlicensed Radio Frequency Devices A1, A2, A3, A4 Licensed Radio Service Equipment B1, B2, B3, B4 Telephone Terminal Equipment</p> <p>Industry Canada's requirements (a) Radio - All Radio Standards Specifications (RSS) in Category I Equipment Standards List Radio</p>
14	<p>Timco Engineering, Inc. Mr. Sid Sanders 849 NW State Road 45</p>	<p>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Unlicensed Radio Frequency Devices</p>

	<p>P.O. Box 370 Newberry, FL 32669 Phone 352-472-5500 Fax 352-472-2030 Email sid@timcoengr.com</p>	<p>A1, A2, A3, A4 Licensed Radio Frequency Devices B1, B2, B3, B4</p> <p>Industry Canada's requirements (a) Radio - All Radio Standards Specifications (RSS) in Category I Equipment Standards List (b) Broadcasting - All Broadcasting Technical Standards (BETS) in Category I Equipment Standards List</p>
15	<p>TUV America Inc. Harry Ward Product Manager, TCB Bluetooth Qualification Body 10040 Mesa Rim Road San Diego, CA 92121 Phone 858 678 1422 Fax 858 546 0364 Email hward@tuvam.com</p>	<p>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Unlicensed Radio Frequency Devices A1, A2, A3, A4 Licensed Radio Frequency Devices B1, B2, B3, B4</p> <p>Industry Canada's requirements (a) Radio - All Radio Standards Specifications (RSS) in Category I Equipment Standards List Radio</p>
16	<p>TUV Rheinland of North America, Inc. Mr. Timothy Dwyer Product Safety Division 12 Commerce Road Newtown, CT 06470 Phone 203-426-0888 Fax 203-270-8883 Email tdwyer@us.tuv.com</p>	<p>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Unlicensed Radio Frequency Devices A1, A2, A3, A4 Licensed Radio Service Equipment B1, B2, B3, B4 Telephone Terminal Equipment</p>
17	<p>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Ms. Jodine Smyth 333 Pfingsten Road Northbrook, IL 60062 Phone 847-272-8800 x42418 Fax 847-559-9795</p>	<p>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Unlicensed Radio Frequency Devices A1, A2, A3, A4 Licensed Radio Service Equipment B1, B2, B3, B4</p>

	<p>Email: Jodine.e.smyth@us.ul.com</p> <p>Additional Sites/Locations for TCB Scopes</p> <p>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1655 Scott Boulevard Santa Clara, CA 95050-4169 Tel: 408-985-2400 Fax: 408-296-3256</p>	<p>Telephone Terminal Equipment</p> <p>Industry Canada's requirements (a) Radio - All Radio Standards Specifications (RSS) in Category I Equipment Standards List Radio</p>
18	<p>Siemic Inc. Mr. Snell Leong Product Safety Division 2206 Ringwood Ave. San Jose, California 95131 Phone 408-526-1188 Fax 408-526-1176 Email snell.leong@siemic.com</p>	<p>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Unlicensed Radio Frequency Devices A1, A2, A3, A4 Licensed Radio Service Equipment B1, B2, B3, B4 Telephone Terminal Equipment</p>

2. 유럽

인증신청 기관 리스트

< R&TTE 지침에 의해 Notified Body 목록 >

Member state	ID No.	Notified Body	Competences
Austria	0408	TUV Österreich Prüfstelle für <u>Nachrichtentechnik und EMV</u> Attn : Franz Fegerl Deutschstrasse 10 A-1230 Wien Tel: +43 1 61091-6530 Fax: +43 1 61091-6505 e-mail: emv@tuev.or.at	Annexes III, IV, V
Belgium	0650	BELCOMLAB Carlistraat, 2 B-1140 Evere Tel: +32 2 244 58 88 Fax: +32 2 244 59 99	Ceased as Notified Body
Denmark	0170	<u>Telestyrelsen</u> Holsteinsgade 63 DK-2100 Kobenhavn e-mail: tst@tst.dk	Annexes III, IV
	0189	<u>Telelaboratoriet</u> TDC Mobile Internationale A/S Telegade 2 DK-2630 Taastrup Tel: -45 4334 5501 Fax: -45 4371 5902 e-mail: svlu@tdk.dk	Ceased as Notified Body
Finland	0523	<u>Finnish 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u> P.O.Box 313 FIN-00181 Helsinki Tel: +358 9 6966 494 (Mobile: +358 400 558 994) e-mail: juhani.meronen@ficora.fi	Annexes III, IV
France	0069	<u>Union Technique de l'Automobile, du Motorcycle et du cycle</u> Autodrome de Linas-Montlhery - B.P.212 F-91311 Montlhery Cedex Tel: +33 169 801700 Fax: +33 169 801717 e-mail: utac@utac.com	Annexes III, IV, V

	0081	Laboratoire Central des industries Electriques Avenue General Leclerc, 33-B.P.8 F-92266 Fontenay-aux-Roses Tel: +33 140 956060 Fax: +33 140 958656 e-mail: contact@lcie.fr	Annexes III,IV
	0165	Autorite de regulation des Telecommunications (ART) Square Max Hymans F-75730 Paris Cedex 15 Tel: +33 1 40 47 70 00 Fax: +33 1 40 47 70 70	Ceased as Notified Body Body
	0536	<u>EMITECH</u> Z.A. de l'Observatoire 3,rue des Coudriers F-78180 Montigny le Bretonneux Tel: +33 130 575555 Fax: +33 130 437448 e-mail: direction@emitech.fr	Annexes III,IV
	0573	<u>AEMC Mesures</u> Etablissement de Chassieu 7,rue Georges Mellies F-69680 Chassieu Tel: +33 478 406655 Fax: +33 472 470039 e-mail: chassieu@aemc-mesures.fr	Annexes III,IV
	0574	<u>AEMC Mesures</u> 665,rue de la Maison Blanche F-78630 Orgeval Tel: +33 139 752222 Fax: +33 139 759746 e-mail: aemc.mesures.paris@wanadoo.fr	Annexes III,IV
	1065	<u>CETECOM SARL</u> 2, rue Jacques Monod-Parc Club Orsay Universite F-91893 Orsay Cedex Tel: +33 169 351313 Fax: +33 169 351314 e-mail: info@cetecom.fr	Annexes III,IV
Greece	1002	<u>EMC Hellas SA</u> Messogeion, 2-4 GR-11527 Athens	Annex IV

		Tel: +30 1 7798 365 Fax: +30 1 7797 670 e-mail: emc@haircorp.com	
Germany	0123	<u>TUV Product Service GmbH</u> Ridlerstraße 31 D-80339 Munchen Tel: +49 89 50084872 e-mail: imueller@tuvps.com	Ceased as Notified Body
	0125	<u>Landesgewerbeanstalt Bayern(LGA)</u> Tillystraße 2 D-90431 Nurnberg Tel: +49 911 65555106 Fax: +49 911 65555793 e-mail: lga@lga.de	Annexes III, IV
	0197	<u>TUV Rheinland Product Safety GmbH</u> Am Grauen Stein D-51105 Koln Tel: +49 221 806 1987 Fax: -49 221 806 3905 e-mail: safety@tuv.com	Annexes III, IV
	0678	<u>EMCCERT Dr.Rasek</u> Moggast 72-74 D-91320 Ebermannstadt Tel: +49 9194 796482 Fax: +49 9194 796484 e-mail: emc.cert@emcc.de	Annexes III, IV, V
	0681	<u>BZT-ETS Certification GmbH</u> Storkower Straße 38c D-15526 Reichenwalde Tel: +49 3363 1888220 Fax: +49 3363 1888680 e-mail: bzt@ets-bzt.com	Annexes III, IV, V
	0682	<u>CETECOM ICT Service GmbH</u> Unterturkheimer Straße 6-10 D-66117 Saarbrucken Tel: +49 681 5988721 Fax: +49 681 5988775	Annexes III, IV, V
	0700	<u>Phoenix Test-Lab GmbH</u> Konigswinkel 10 D-32825 Blomberg Tel: +49 52 35 950 024 Fax: +49 52 35 950 028	Annexes III, IV, V
Hungary	1413	MATRIX Testing	Annexes III,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Ltd. Szabadsag ut 290 H-2040 Budaors Tel: +36 23 444600 Fax: +36 23 444601 e-mail: infor@matrix-tanusito.hu	IV, V
Italy	0051	<u>IMQ SpA</u> Via Quintiliano, 43 I-20138 Milano Tel: +39 02 50731 contact point: TBD Fax: +39 02 50991500 e-mail: Info@imq.it	Annexes III, IV, V
	0648	<u>I.S.C.T.I.</u> Viale America 201 I-00144 Roma Tel: +39 06 54442808 Fax: +39 06 5410904 e-mail: organismonotificato@istsupcti.it	Annexes III, IV, V
Luxemb- ourg	0499	<u>Societe Nationale de Certification et d'Homologation Sarl(SNCH)</u> 11,rte de Luxembourg L-5230 Sandweiler Tel: +352 357214-250 Fax: +352 357214-244	Annexes III, IV, V
Nether- lands	0122	<u>NMi Certin BV</u> Postbus 15 NL-9822 ZG Niekerk Tel: +31 594 50 50 05 Fax: +31 594 50 48 04 e-mail: et-deL@nmi.nl	Ceased as Notified Body
	0336	<u>TNO Certification BV</u> Department Electronic Products Systems Postbus 541 NL-7300 AM Apeldoorn Tel: +31 55 549 34 68 Fax: +31 55 549 32 88 e-mail: certification@certi.tno.ni	Annexes III, IV, V
	0344	<u>KEMA Quality BV</u> Postbus 9035 NL-6800 ET Arnhem Tel: +31 26 356 2850 Fax: +31 26 352 5800	Annex V

		e-mail: m.h.t.winters@kema.com	
	0560	<u>Telefication BV</u> Edisonstraat 12a NL-6902 PK Zevenaar Tel: +31 316 583 180 Fax: +31 316 583 189 e-mail: info@telefication.nl	Annexes III, IV, V
Poland	1466	'Gospodarstwo Pomocnicze-Centralne Laboratorium Badan Technicznych Urzedu Regulacji Telekomunikacji i Poczty Ul. Marcina Kasprzaka 18/20 PL-01-211 Warszawa Tel: +48 22 534 91 02 Fax: +48 22 534 91 01 e-mail: a.blaszczyk-mularczyk@urtip.gov.pl	Annexes III, IV
Slovakia	1293	<u>Elektrotechnický a projektový ústav</u> (Electrotechnical Research and Design Institute) Trenčianska 19 SK-018 51 Nova Dubnica e-mail: sktc101@evpu.sk	Annexes III, IV, V
	1355	<u>Vyskumny ústav spojov</u> (Reserch Institute of post and Telecommunications) Zvolenska cesta 20 975 90 Banska Bystrica Tel: +421 48 4324 134 Fax: +421 48 4161 163 e-mail: sktc171@vus.sk	Annexes III, IV
Slovenia	1304	Slovenian Institute of Quality and Metrology(SIQ) Trzaska cesta 2 SLO-1000 Ljubljana Tel: +386 1 4778 100 Fax: +386 1 4778 444	
Spain	0341	<u>Secretaria de Eatado de Telecomunicaciones y para la Sociedad de la Informacion del Ministerio de Ciencia y Tecnologia</u> Plaza de Cibeles, s/n Palacio de Comunicaciones E-28071 Madrid Tel: +34 91 346 15 65 Fax: +34 91 346 15 65	Annexes III, IV, V

Sweden	0402	<u>Swedish National Testing and Research Institute(SP)</u> Box 857 S-501 15 Borås Tel: +46 33 16 50 00 Fax: +46 33 13 55 02	Annexes III, IV, V
	0413	<u>SEMKO AB</u> Box 1103 S-164 22 Kista Tel: +46 8 750 00 00 Fax: +46 8 750 60 30 e-mail: info@semko.se	Annexes III, IV
United Kingdom	0086	<u>BSI Product Services</u> Maylands Avenue UK-HP2 45Q Hemel Hempstead Tel: +44 1442 230442 Fax: +44 1442 231442 e-mail: mike.inman@bsi-global.com	Annex V
	0168	<u>British Approval Board for Telecommunications</u> Claremont House-34 Molesey Road UK-KT12 4RQ Hersham Tel: +44 1932 251251 Fax: +44 1932 251252 e-mail: customer.services@babt.com	Annexes III, IV, V
	0191	<u>Qinetiq Ltd</u> Fraser Range Fort Cumberland Road UK-PO4 9LJ Eastney Portsmouth, Hampshire Tel: +44 23 9233 4507 Fax: +44 23 9283 0017 e-mail: pjgoddard@qinetiq.com	Annexes III, IV
	0359	<u>INTERTEK Testing & Certification Ltd</u> Intertek House, Cleeve Road UK-KT227SB Leatherhead, Surrey Tel: +44 1372 370900 Fax: +44 1372 370999 e-mail: knewman@its-etlsemko.co.uk	Annexes III, IV
	0577	<u>NQA</u> Contact person: Chris Mooney Warwick House Houghton Hall Park Houghton	Annex V

	Regis UK-LU5 5ZX Dunstable, Bedfordshire Tel: +44 1785 228288 Fax: +44 1785 225234 e-mail: Chris.Mooney@nqa.com	
0673	<u>Technology International(Europe) Ltd</u> 60 Shrivenham Hundred Business Park UK-SN6 8TY Swindon Tel: +44 1793 783 137 Fax: +44 1793 782 310 e-mail: martin.green@iti.co.uk	Annexes III,IV
0884	<u>BABT product service</u> Segensworth Road UK-PO15 5RH Fareham , Hampshire Tel: +44 1932 25120 Fax: +44 1932 25120	Ceased as Notified Body
0885	Cambridge Test and Measurement Services(CTMS) Ltd P.O. Box 465 St Andrews Road UK-CB4 1ZJ Cambridge Tel: +44 1223 876876 Fax: +44 1223 876851	Ceased as Notified Body
0886	<u>EMC Projects Ltd</u> Holly Grove Farm, Verwood Road UK-BH24 2DB Ashley, Ringwood Tel: +44 1425 47997 Fax: +44 1425 48063 e-mail: enquiries@emc-projects.co.uk	Annexes III,IV
0888	<u>The Motor Industry Research Association(MIRA)</u> Watling Street UK-CV10 0TU Nuneaton, Warwickshire Tel: +44 (0)24 7635 5000 Fax: +44 (0)24 7635 5355 e-mail: terry.beadman@mira.co.uk	Annexes III,IV
0889	<u>Radio Frequency Investigation Ltd</u> Ewhurst Park UK-RG26 5RQ Ramsdell Tel: +44 1256 855400 Fax: +44 1256 851192	Annexes III,IV

		e-mail: richard.jacklin@rfi-wireless.com	
	0890	<u>SGS UK Ltd</u> South Industrial Estate UK-DH6 5AD Bowburn, County Durham Tel: +44 191 377 2000 Fax: +44 191 377 2020 e-mail: areynard@sgsgroup.com	Annexes III,IV
	0891	<u>TRL EMC Ltd</u> Long Green UK-GL194QH Forthampton, Gloucester Tel: +44 1684 83381 Fax: +44 1684 83385 e-mail: emc@trl-emc.co.uk	Annexes III,IV
	1321	<u>KTL</u> Saxon Way Priory Park West UK-HU13 9PB Hull Tel: +44 1482 801 801 Fax: +44 1482 801 806 e-mail: info@ktl.com	Annexes III,IV and V

[결과 5]

해외 주요국 MRA 추진 현황

1. 미국

□ 미국 정부의 MRA 추진 상황

양자간 협정(복수 분야) : 미국-유럽과 EEA EFTA의 MRA

다자간 협정, 단일 분야 : APEC-TEL MRA, CITEL MRA

양자간 협정(단일 분야) : 미국-일본 간 통신 MRA

□ 미국 MRA 체결 현황

운영	진행 중
유럽 및 EEA EFTA - 유럽연합의 27개 회원국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APEC 1단계 - 중국
APEC 1단계 -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대만, 홍콩, 한국, 베트남	APEC 2단계 - 한국
APEC 2단계 - 캐나다, 싱가포르, 홍콩	일본 - 인증을 위한 상호인정협정(MRA)
일본 (A2LA, NVLAP, VCCI) - 시험보고서의 승인을 위한 서신교환	CITEL - 브라질, 멕시코

□ 지정기관으로서 NIST의 역할

양 MRA 하에 체결 대상국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이를 진행

첫째, MRA하에서의 적합성평가기관의 역량 검증역할

둘째, MRA하에서의 적합성평가기관의 지명과 지정

셋째, MRA하에서의 적합성평가기관의 리스트 마련

넷째, MRA하에서의 적합성평가기관의 성과 관리, 감독

다섯째, MRA하에서의 적합성평가기관의 정지, 철회 재승인

□ 미국-유럽 MRA

○ 1998년 5월 12일부터 시작된 MRA는 양자 간의 복수 분야에 관한 협정

○ 적용 범위 : 통신, EMC, 제약, 전기안전, 의료기기, 레크리에이션 선박 분야

○ 목적 : 각국별 적합성평가절차의 동의 활성화를 통한 무역촉진

□ 미국-일본 시험결과 채택

○ 2007년 2월 26일, USTR과 MOFA 간 서신 교환

○ 적용 범위 : 의도되지 않은 방사체와 ISM 기기

○ 상호 시험결과 인정

- FCC는 일본에 위치한 인정시험기관을 승인

· 이는 ISO/IEC 17025 및 관련 FCC 요구사항을 인정하는 일본 시험기관의 지정을 기반으로 함

· 인정은 VLAC와 JAB 또는 다른 인정기관(A2LA, NVLAP)에 의해 수행될 수 있음

- VCCI는 미국에 위치한 시험소부터의 시험보고서를 채택할 예정

· 이는 NVLAP 또는 A2LA에 의한 인정을 기본으로 함

□ 미국-일본 통신분야 MRA

- 적용 범위 : 유무선 통신기기
- 2007년 2월 16일 워싱턴에서 미국과 일본의 정부에 의해 체결
- 2007년 6월 19일 일본의회 MRA 승인
- 2007년 12월 외교 각서 교환 후, 2008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이행

□ APEC-TEL MRA 이행 현황¹³⁾

- MRA 1단계 및 2단계 체결 및 이행 현황

< APEC-TEL MRA 하에 인정받은 미국 적합성평가기관(CAB) 현황 >

APEC 회원국	미국 CAB 수 (MRA 1단계, 시험기관)	미국 CAB 수 (MRA 2단계, 인증기관)
호주	21	
캐나다	33	17
대만(BSMI)	87	
대만(NCC)	15	
홍콩	9	1
한국	70	
싱가포르	28	4
베트남	7	

- MRA 1단계를 통한 적합성평가기관 인정 현황

- FCC는 총 290개의 적합성평가기관(시험기관)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중 148개 기관이 APEC 회원국의 기관임

13) 2011년 9월 말 기준

- o MRA 2단계를 통한 적합성평가기관 인정 현황
 - FCC는 초 34개 적합성평가기관(인증기관)을 인정하고 있음
 - 총 4개 APEC 회원국(캐나다, 홍콩, 일본, 싱가포르)과 MRA 2단계를 체결·이행 중

- o 인증 현황
 - 2010년 인증된 총 11,627개의 장비가 인증
 - 이 중 11,454개는 TCB에, 나머지 173개는 FCC에 의해 인증

- o APEC-TEL MRA를 통해 인정된 인정기구

< 인정 유형(시험기관 혹은 인증기관)에 따른 미국의 인정 기구 현황 >

인정 유형	인정 기구
시험기관 인정 (ISO/IEC 17025)	American Association for Laboratory Accreditation (A2LA)
	ANSI-ASQ National Accreditation Board/ACLASS (ACLASS)
	National Voluntary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 (NVLAP)
인증기관 인정 (ISO/IEC Guide 65)	American Association for Laboratory Accreditation (A2LA)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

- 현재 통신기기의 적합성평가를 위해 추가 MRA 체결을 준비 중이며, 현황은 다음과 같음

대상 국가	상태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의 인정 시행 중 (지난 43차 회의 이후 총 4개 기관 인정)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43차 회의 이후 NEW - 2011년 5월 26일, 시험기관 인정을 위해 MRA 1단계 체결 - 18개월의 신뢰구축 기간 부여, 현재 미시행중
EEA* (유럽경제지역), EFTA** (유럽자유무역연합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TTE 지침(19개의 미국 NB)과 EMC 지침(25개의 미국 NB) 하에, NB의 인정 시행중
CITEL	현재 미시행중

2. 일본

□ MRA 추진 현황

○ 일본-EU MRA 2단계

- 양국의 MRA 하에 인정된 일본 인증기관은 없으나, EU 인증기관은 두 개 기관이 존재

- TELEFICATION B.V, CETECOM ICT Services GmbH

○ 일본-싱가포르 MRA 2단계

- 양국의 MRA 하에 서로의 인증기관을 인정한 사례가 없음

○ 미국-일본 MRA

- 2007년 MRA 체결, NIST는 2010년 10월초 인증기관 지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

- 시험결과의 인정은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민간기관 간 별도의 MoU를 체결하여 시험결과를 인정하고 있음

- 지정기준에는 미-일 MRA 범주, 적용 법 및 시행령, 시험방법, 미국 인증기관 지정 요건, 체크리스트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3. 중국

□ 개요

○ 배경

- 1990년대부터 중국정부는 ASEAN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시작
- 2000년대 들어서 세계 각국과의 FTA 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 수행

○ FTA 추진 현황

- 2010년 6월 기준, 10개 국가와 FTA를 체결(8개 발효)
- 호주, 이탈리아, GCC(걸프협력회의), SACU(남아프리카 관세동맹),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5개 대륙 30여개 국가(지역경제협력체 포함)와 FTA 체결 추진 중

○ MRA 추진 현황

- 2008년, 중국과 뉴질랜드는 FTA를 통해 EEEMRA(전기전자기기분야의 상호 인정협정 - 중국이 체결한 최초의 MRA)를 체결
 - 중국이 지정·승인한 뉴질랜드 적합성평가기관서 적합성평가(인증)를 받으면 CCC마크를 붙여 중국에 수출할 수 있음
 - 중국 당국이 해외에서 시험·검사되어 인증 받은 결과를 최초로 수용하게 된 것을 의미
- 2008년, 싱가포르와 포괄적 FTA 체결을 통해 MRA를 수용

4. 대만 및 홍콩

□ 대만

○ NCC(National Communications Commission, 국립 통신 위원회)

- APEC-TEL MRA에 근거한 규제 및 지정기관

- 대만 시험기관과 APEC-TEL MRA 회원국에 의해 인정받고자 하는 대만 인정기구들의 지정 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음

○ MRA 이행 현황

- 현재 5개국과 MRA 1단계, 1개국과 MRA 2단계를 체결·이행 중

< APEC-TEL MRA 1단계 하에 타 회원국에 의해 인정받은 대만 시험기관 >

국가	시험소 수
호주	8
캐나다	9
홍콩	3
싱가포르	6
미국	7

< APEC-TEL MRA 1단계 하에 대만이 인정한 타 회원국 시험기관 >

국가	시험소 수
호주	1
캐나다	5
싱가포르	2
미국	15

< MRA 2단계 하에 대만이 인정한 타 회원국 인증기관 >

국가	인증기관 수
캐나다	1

□ 홍콩

○ MRA 이행 현황

- 1999년 최초로 MRA 1단계 체결 및 이행 시작, 2005년 4월 MRA 2단계 참여

- 현재 5개국(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대만, 미국)과 MRA 1단계를 체결·이행중이며, 이 중 캐나다, 미국과는 MRA 2단계 시행 중

○ APEC-TEL MRA

- MRA 1단계 하에 총 7개의 시험기관을 지정하였고, 총 14개 시험기관을 인정하였음

< APEC-TEL MRA 1단계 하에 타 회원국에 의해 인정받은 홍콩 시험기관 >

국가	시험기관 수	시험기관명
캐나다	1	Intertek Testing Services Hong Kong Ltd.
싱가포르	1	Calibration & Testing Laboratory Sun Creation Engineering Limited
미국	5	The Hong Kong Standards and Testing Centre Ltd.
		CMA Industrial Development Foundation Limited
		Intertek Testing Services Hong Kong Ltd.
		TUV Rheinland Hong Kong Ltd.
		Bureau Veritas Hong Kong Limited

< APEC-TEL MRA 1단계 하에 홍콩이 인정한 타 회원국 시험기관 >

국가	시험기관 수	시험기관명
캐나다	1	National Technical Systems Inc.
대만	3	Telecommunication Equipment Testing Center, Telecommunication Laboratories, Chunghwa Telecom Co. Ltd.
		Telecom Laboratory Intertek Testing Services Taiwan Ltd.
		Advance Data Technology Corporation (Lin Kou Laboratories)
싱가포르	1	TUV SUD PSB Pte Limited
미국	9	Intertek Testing Services NA Inc.
		MiCOM Labs
		TUV Rheinland of NA, Inc.
		Advanced Compliance Solutions, Inc.
		Compliance Worldwide, Inc.
		Bay Area Compliance Laboratories Corp.
		SIEMIC, Inc.
		Intertek Testing Services NA Inc.
		Electro Magnetic Test, Inc.

- MRA 2단계 하에 총 3개 인증기관이 인정되었고, 총 1개 인증기관을 인정 하였음

< APEC-TEL MRA 2단계 하에 타 회원국에 의해 인정받은 홍콩 인증기관 >

국가	인증기관 수	인증기관명
캐나다	1	Nemko Canada Inc.
미국	2	Bay Area Compliance Laboratories Corp.
		SIEMIC, Inc.

< APEC-TEL MRA 2단계 하에 홍콩이 인정한 타 회원국 인증기관 >

국가	인증기관 수	인증기관명
캐나다	1	Intertek Testing Services Hong Kong Ltd.

부 록

[부록 1]

FTA/MRA 관련 용어 정리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

- 상대국 적합성평가절차를 자국의 절차와 동등한(equivalent)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근거하여 상대국에서 행해진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수용하기 위한 정 부간 협정
- 상호인정대상(시험성적서, 인증서, 인증마크 등 적합성평가 결과물)에 따라서 MRA의 단계가 구분되며, 최근에는 기술규정 동등성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논의 가 진행되고 있음

<표 1-1> MRA 단계별 상호인정범위

단 계	상호인정범위	내 용
1	시험성적서	상대국(수출국) 시험기관이 자국(수입국) 기술규정에 따라 시험 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승인 (예 : APEC TEL 1단계 MRA)
2	인증서	상대국(수출국) 인증기관이 자국(수입국) 기술규정에 따라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승인 (예 : APEC TEL 2단계 MRA)
3	기술기준	상대국(수출국)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이 상대국(수출국) 기술기준에 따라 발행한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를 인정 (예 : 호주·뉴질랜드 MRA)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

- 정부가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세계의 자유무역을 저해하거나 교란하는 일

기술무역장벽(Trade to Technical Barrier, TBT)

○ 무역 상대국간 서로 상이한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역에 대한 제반 장애요소

적합성평가(Conformity Assessment)

- 특정 평가대상(제품, 시스템 등)이 평가기준(기술기준, 표준 등)에 만족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직·간접적인 제반 절차
- 주체와 적용기준에 따라서, 제1자 적합성평가제도인 '적합선언(DoC)' 또는 '공급자적합선언(SDoC)', 제2자 적합성평가제도인 '조달', 제3자 적합성평가제도인 '인증(Certification)'으로 구분]

<표 1-1> 적합성평가 유형

명 칭	내 용
적합선언 or 공급자적합선언	제조사 또는 책임자가 내부절차에 따라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 적합성평가기준에 만족함을 스스로 밝히는 행위
인증	자격을 갖춘 제3의 기관이 적합성 여부 평가를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기관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그 만족 여부를 입증하는 행위

APEC-TEL MRA

○ 방송통신기기분야 적합성평가 결과의 상호 수용을 위하여 APEC 회원국가 간에 체결한 다자간 상호인정협정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로서 실질적으로는 FTA와 동일한 성격(한-인도

CEPA)

자율안전확인신고

-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수행하고, 인증기관에 신고(등록)

공급자 자기 적합성선언(Self-Declaration of Conformity, SDoC)

-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성 여부를 공급자가 스스로 확인한 후, 적합 마크를 제품에 부착하여 판매하는 방식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 외국제품 및 제품 공급자가 국내시장에서 국내제품 및 제품 공급자보다 열악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원칙(내외국인 차별금지)
- 최근에는 각국이 외국인 투자를 경쟁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하면서, 외국기업에 대해 내국민대우보다 더 좋은 특혜 혹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음

최혜국대우(Most-Favoured Nationa Treatment)

- 통항·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원칙(외국인 간의 차별 금지)으로, GATT의 기본 원칙 중 하나
- 이는 그 나라의 영역에 있어서 외국인 상호간의 대우를 동일하게 하자는 취지이며,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와 병용함으로써,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 기능을 수행하게 됨

[부록 2]

해외 주요국 교역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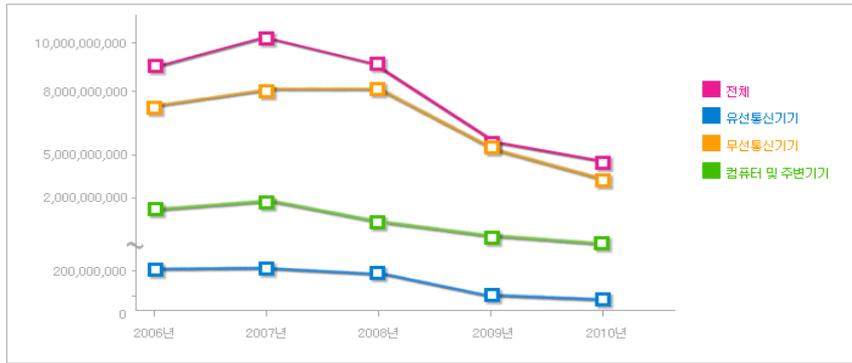
유럽 방송통신기자재분야 교역량

< 연도별 무역수지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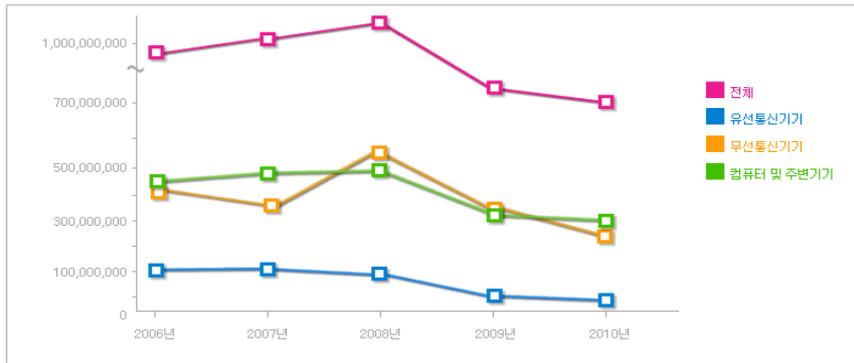
[단위 : 달러]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유선 통신 기기	수출	221,526,449	222,800,745	212,902,104	116,116,164	118,145,541
	수입	73,896,376	147,140,272	186,213,592	102,947,505	140,750,629
	무역 수지	147,630,073	75,660,473	26,688,512	13,168,659	-22,605,088
무선 통신 기기	수출	7,274,465,766	8,001,376,178	8,081,623,110	5,430,867,610	3,874,587,196
	수입	411,365,137	396,612,939	525,223,910	356,795,911	261,049,266
	무역 수지	6,863,100,629	7,604,763,239	7,556,399,200	5,074,071,699	3,613,537,930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출	1,844,508,840	2,095,159,986	1,659,887,796	1,126,516,182	1,363,651,702
	수입	440,772,818	480,805,880	499,204,870	323,295,206	309,668,310
	무역 수지	1,403,736,022	1,614,354,106	1,160,682,926	803,220,976	1,053,983,392
전체	수출	9,340,501,055	10,319,336,909	9,954,413,010	6,673,499,956	5,356,384,439
	수입	926,034,331	1,024,559,091	1,210,642,372	783,038,622	711,468,205
	무역 수지	8,414,466,724	9,294,777,818	8,743,770,638	5,890,461,334	4,644,916,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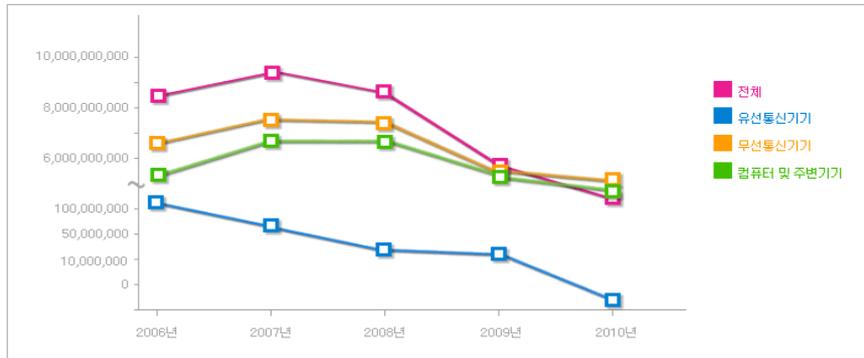
o 무역수지



o 수출



o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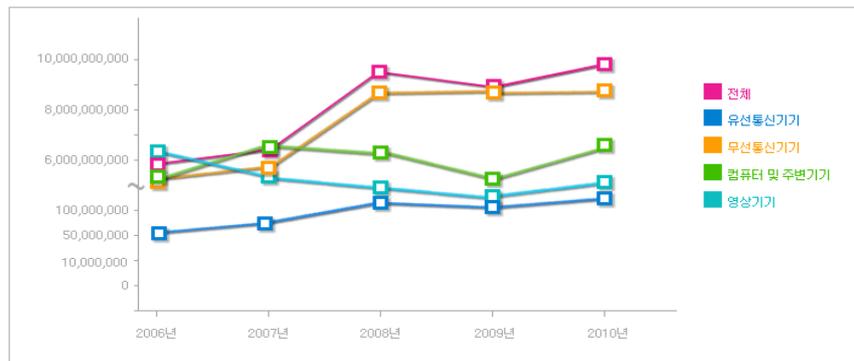
미국 방송통신기자재분야 교역량

< 년도별 무역수지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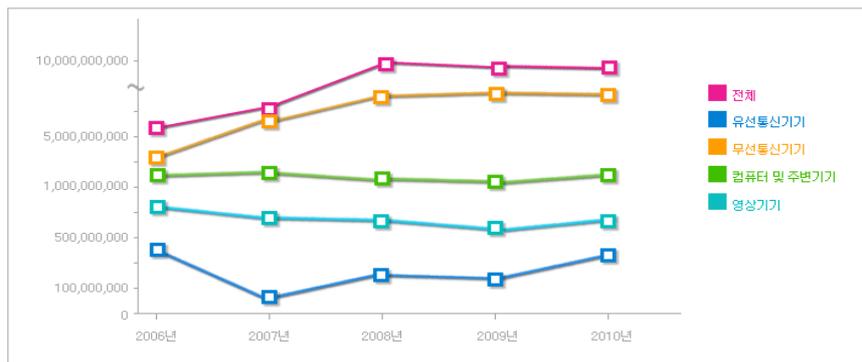
[단위 : 달러]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유선 통신 기기	수출	323,280,826	460,185,287	503,561,107	382,731,876	531,542,318
	수입	376,148,412	399,856,467	346,217,893	244,076,436	221,180,196
	무역 수지	(52,867,586)	60,328,820	157,343,214	138,655,440	310,362,122
무선 통신 기기	수출	4,815,054,782	5,998,332,031	8,882,847,534	8,958,265,497	9,148,622,659
	수입	502,072,827	428,920,727	373,661,918	353,822,177	471,101,395
	무역 수지	4,312,981,955	5,569,411,304	8,509,185,616	8,604,443,320	8,677,521,264
컴 퓨 터 및 주변 기기	수출	1,261,698,442	1,411,018,740	1,291,988,275	1,109,621,425	1,363,897,238
	수입	754,175,860	733,121,339	677,884,092	636,699,328	690,675,697
	무역 수지	507,522,582	677,897,401	614,104,183	472,922,097	673,221,541
영상 기기	수출	695,747,483	485,671,530	331,634,838	248,078,517	335,950,793
	수입	72,758,047	76,342,291	86,645,747	83,298,465	78,799,366
	무역 수지	622,989,436	409,329,239	244,989,091	164,780,052	257,151,427
전체	수출	7,095,781,533	8,355,207,588	11,010,031,754	10,698,697,315	11,380,013,008
	수입	1,705,155,146	1,638,240,824	1,484,409,650	1,317,896,406	1,461,756,654
	무역 수지	5,390,626,387	6,716,966,764	9,525,622,104	9,380,800,909	9,918,256,3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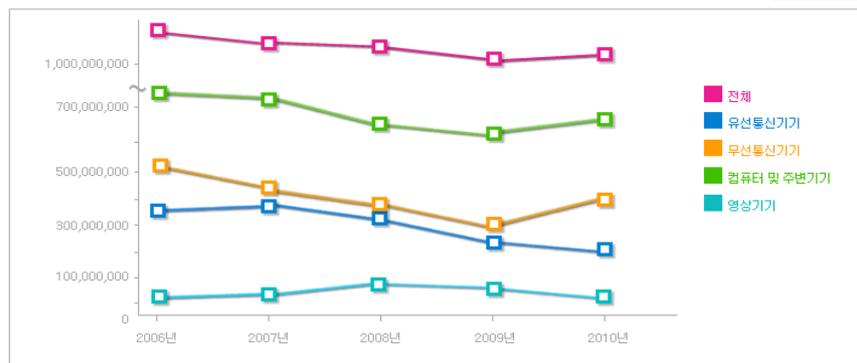
o 무역수지



o 수출



o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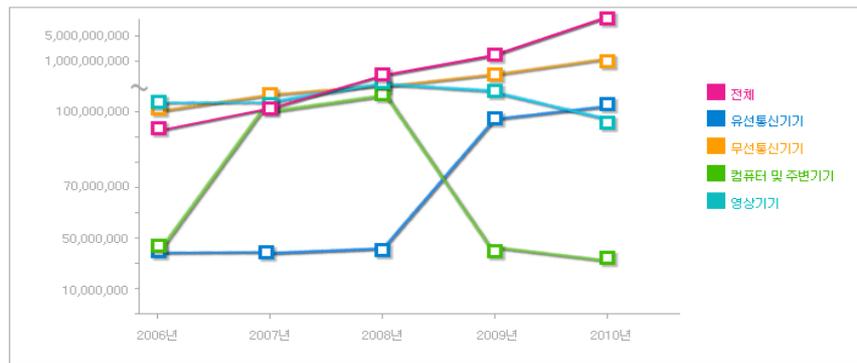
일본 방송통신기자재분야 교역량

< 년도별 무역수지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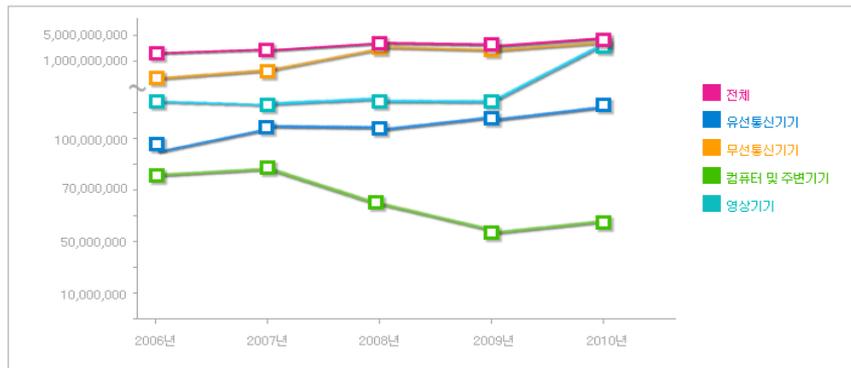
[단위 : 달러]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유선 통신 기기	수출	99,314,499	113,848,352	101,618,423	144,419,658	176,748,882
	수입	55,787,724	76,080,918	59,358,824	49,493,978	73,893,630
	무역 수지	43,526,775	37,767,434	42,259,599	94,925,680	102,855,252
무선 통신 기기	수출	835,872,855	870,919,813	1,117,885,649	1,345,445,257	1,408,267,577
	수입	700,360,642	665,882,522	975,537,818	847,399,838	608,290,976
	무역 수지	135,512,213	205,037,291	142,347,831	498,045,419	799,976,601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출	802,210,837	793,675,350	677,943,184	513,989,677	584,815,763
	수입	850,099,816	965,211,907	874,462,433	546,599,314	557,423,160
	무역 수지	(47,888,979)	(171,536,557)	(196,519,249)	(32,609,637)	27,392,603
영상 기기	수출	234,316,816	201,488,227	164,539,054	176,111,597	238,066,294
	수입	460,446,103	397,397,343	410,930,868	337,444,426	331,488,901
	무역 수지	(226,129,287)	(195,909,116)	(246,391,814)	(161,332,829)	(93,422,607)
전체	수출	1,971,715,007	1,979,931,742	2,061,986,310	2,179,966,189	2,407,898,516
	수입	2,066,694,285	2,104,572,690	2,320,289,943	1,780,937,556	1,571,096,667
	무역 수지	(94,979,278)	(124,640,948)	(258,303,633)	399,028,633	836,801,8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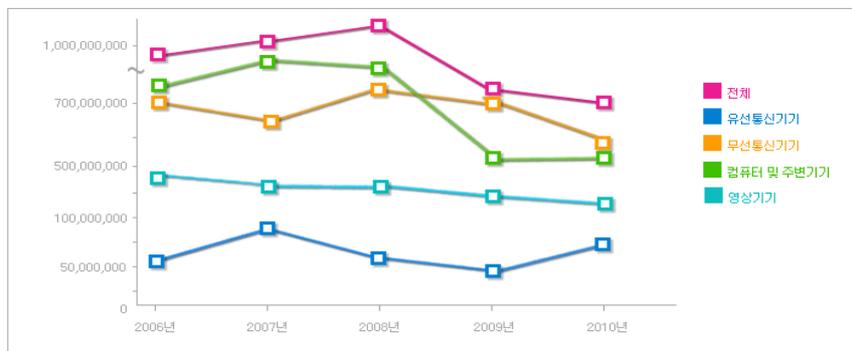
o 무역수지



o 수출



o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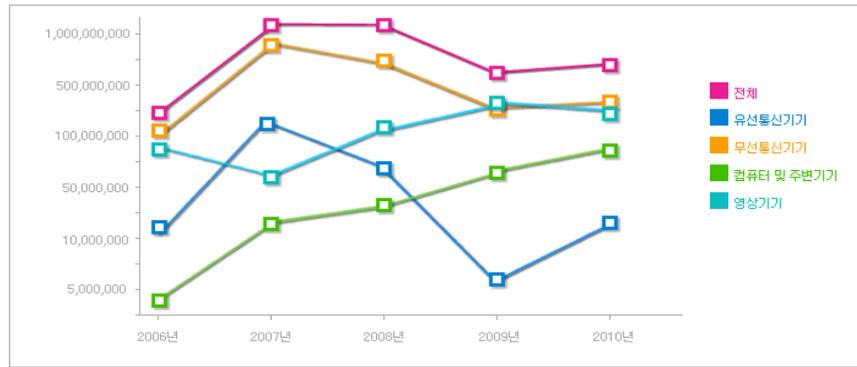
러시아 방송통신기자재분야 교역량

< 년도별 무역수지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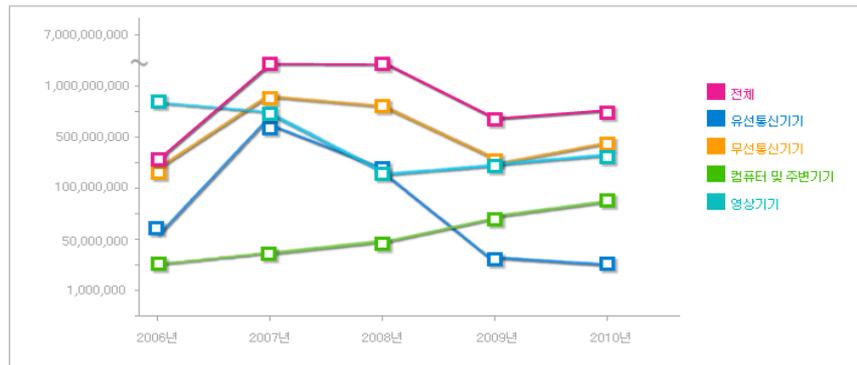
[단위 : 달러]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유선 통신 기기	수출	16,128,029	117,714,062	65,167,478	5,843,863	12,227,219
	수입	615,350	888,671	493,818	472,886	478,517
	무역 수지	15,512,679	116,825,391	64,673,660	5,370,977	11,748,702
무선 통신 기기	수출	184,222,046	858,867,315	790,360,384	364,722,498	375,316,790
	수입	22,030,851	4,717,658	11,882,915	14,739,814	66,720,342
	무역 수지	162,191,195	854,149,657	778,477,469	349,982,684	308,596,448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출	13,332,184	22,073,977	36,705,763	57,840,975	71,997,110
	수입	11,842,184	655,181	2,126,677	3,578,766	774,108
	무역 수지	1,490,000	21,418,796	34,579,086	54,262,209	71,223,002
영상 기기	수출	90,948,493	65,109,674	171,491,519	215,429,906	324,063,019
	수입	45,153	238,848	465,286	520,766	1,593,262
	무역 수지	90,903,340	64,870,826	171,026,233	214,909,140	322,469,757
전체	수출	304,630,752	1,063,765,028	1,063,725,144	643,837,242	783,604,138
	수입	34,533,538	6,500,358	14,968,696	19,312,232	69,566,229
	무역 수지	270,097,214	1,057,264,670	1,048,756,448	624,525,010	714,037,9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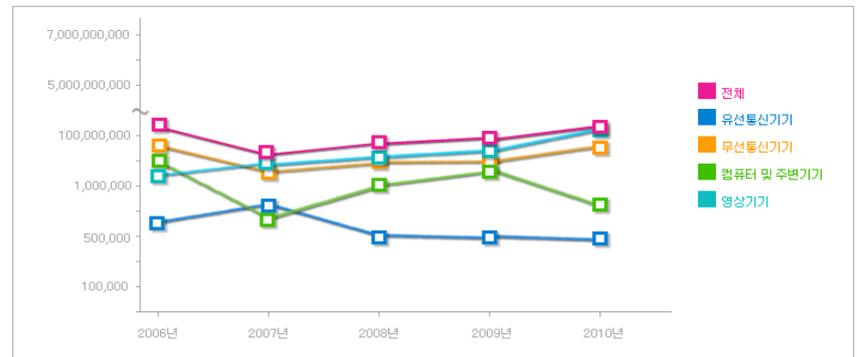
o 무역수지



o 수출



o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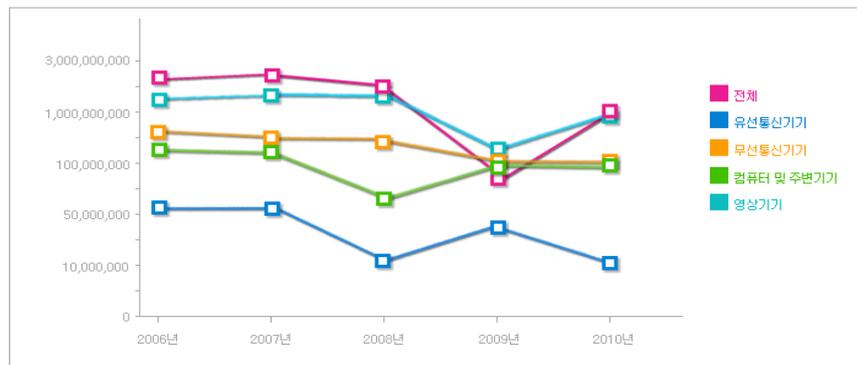
멕시코 방송통신기자재분야 교역량

< 연도별 무역수지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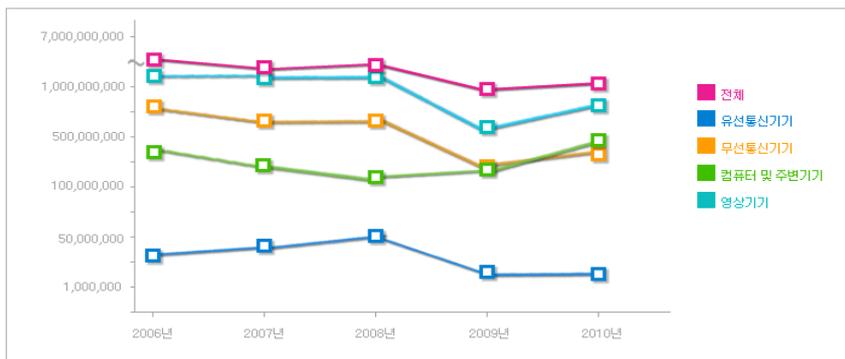
[단위 : 달러]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유선 통신 기기	수출	3,561,786	16,094,567	38,809,770	4,409,872	4,020,230
	수입	55,043,685	72,236,296	56,681,031	53,868,851	45,886,733
	무역 수지	(51,481,899)	(56,141,729)	(17,871,261)	(49,458,979)	(41,866,503)
무선 통신 기기	수출	816,149,662	675,352,024	615,990,410	303,423,918	332,722,836
	수입	49,849,500	53,119,104	63,648,252	102,354,772	108,310,097
	무역 수지	766,300,162	622,232,920	552,342,158	201,069,146	224,412,739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출	277,243,602	190,223,102	126,307,570	142,487,379	213,847,809
	수입	25,279,433	40,472,994	61,282,808	42,459,346	60,728,979
	무역 수지	251,964,169	149,750,108	65,024,762	100,028,033	153,118,830
영 상 기기	수출	1,526,773,277	1,507,025,336	1,333,423,333	536,588,868	961,385,145
	수입	1,239,554	252,494	540,419	2,818,637	4,373,586
	무역 수지	1,525,533,723	1,506,772,842	1,332,882,914	533,770,231	957,011,559
전체	수출	2,623,728,327	2,388,695,029	2,114,531,083	986,910,037	1,511,976,020
	수입	131,412,172	166,080,888	182,152,510	201,501,606	219,299,395
	무역 수지	2,492,316,155	2,222,614,141	1,932,378,573	785,408,431	1,292,676,6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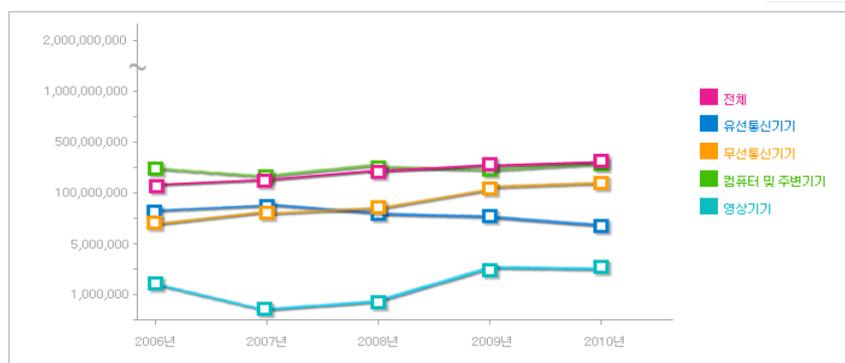
o 무역수지



o 수출



o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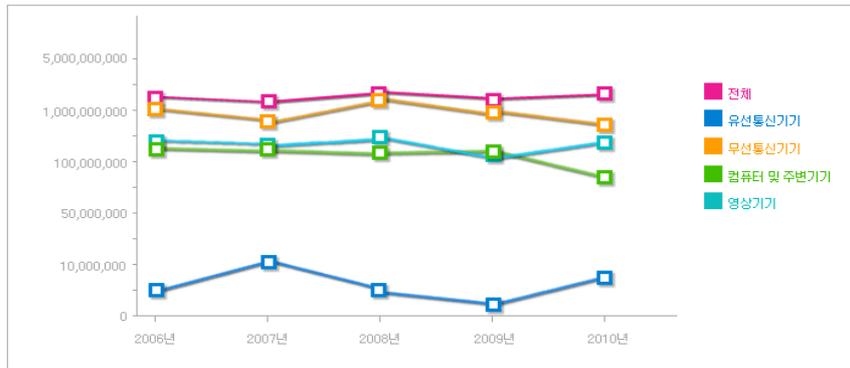
브라질 방송통신기자재분야 교역량

< 년도별 무역수지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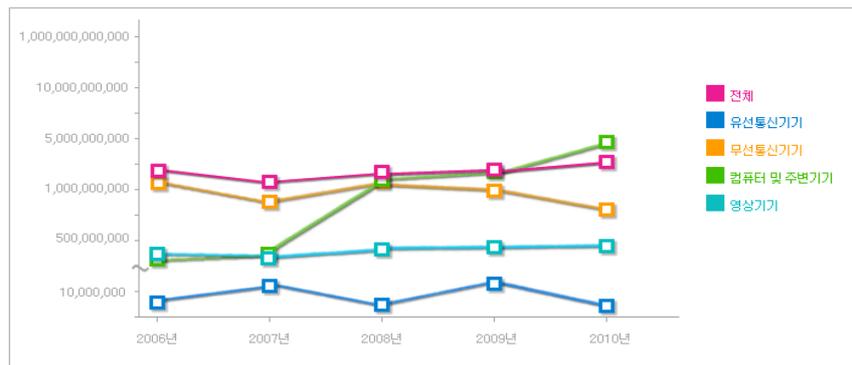
[단위 : 달러]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유선 통신 기기	수출	5,446,655	12,710,633	4,882,555	1,767,800	3,590,230
	수입	219,273	385,679	82,229	79,573	273,565
	무역 수지	5,227,382	12,324,954	4,800,326	1,688,227	3,316,665
무선 통신 기기	수출	1,024,504,698	843,289,783	1,132,104,108	1,055,507,267	977,067,301
	수입	2,205,418	6,566,987	1,390,245	2,324,466	1,796,478
	무역 수지	1,022,299,280	836,722,796	1,130,713,863	1,053,182,801	975,270,823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출	243,607,740	246,466,866	177,314,279	213,664,590	249,701,043
	수입	327,003	421,347	822,457	178,823	580,729
	무역 수지	243,280,737	246,045,519	176,491,822	213,485,767	249,120,314
영 상 기기	수출	290,572,792	265,148,864	381,709,364	289,316,932	467,434,546
	수입	35,108	12,202	440,474	379,675	130,407
	무역 수지	290,537,684	265,136,662	381,268,890	288,937,257	467,304,139
전체	수출	1,564,131,885	1,367,616,146	1,696,010,306	1,560,256,589	1,697,793,120
	수입	2,786,802	7,386,215	2,735,405	2,962,537	2,781,179
	무역 수지	1,561,345,083	1,360,229,931	1,693,274,901	1,557,294,052	1,695,011,9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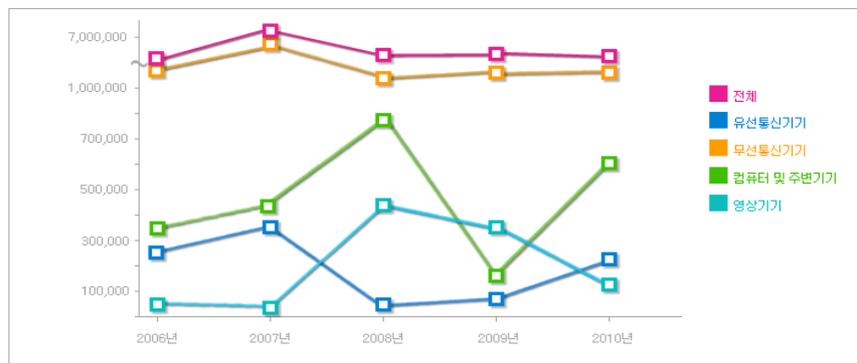
o 무역수지



o 수출



o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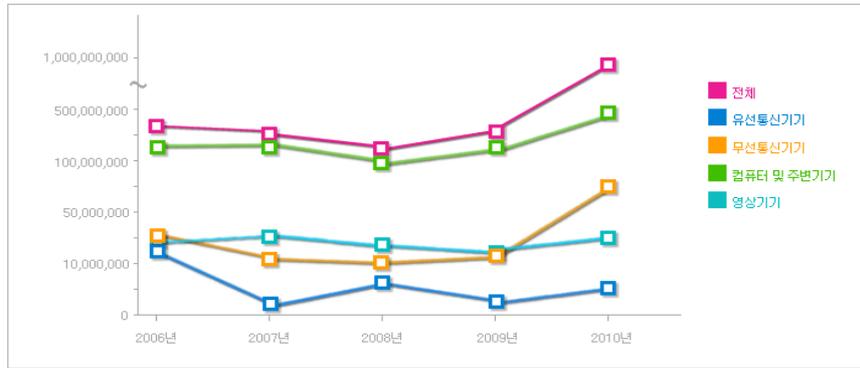
베트남 방송통신기자재분야 교역량

< 년도별 무역수지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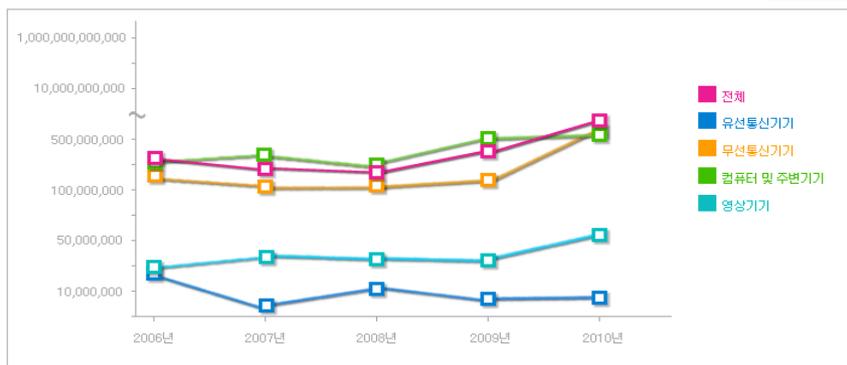
[단위 : 달러]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유선 통신 기기	수출	23,711,589	4,450,457	9,191,648	5,711,848	6,503,424
	수입	58,013	2,021,747	15,253,947	8,717,574	13,406,999
	무역 수지	23,653,576	2,428,710	(6,062,299)	(3,005,726)	(6,903,575)
무선 통신 기기	수출	243,482,091	179,314,353	101,208,796	270,630,164	757,964,093
	수입	975,762	665,250	1,885,958	65,036,008	73,675,153
	무역 수지	242,506,329	178,649,103	99,322,838	205,594,156	684,288,940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출	30,930,860	40,790,180	36,469,663	50,249,722	48,005,434
	수입	13,086,615	20,394,497	15,822,842	13,078,872	25,657,245
	무역 수지	17,844,245	20,395,683	20,646,821	37,170,850	22,348,189
영 상 기기	수출	27,710,935	43,925,947	38,824,239	36,838,981	54,352,882
	수입	273,900	10,752,733	9,100,487	11,695,570	10,081,981
	무역 수지	27,437,035	33,173,214	29,723,752	25,143,411	44,270,901
전체	수출	325,835,475	268,480,937	185,694,346	363,430,715	866,825,833
	수입	14,394,290	33,834,227	42,063,234	98,528,024	122,821,378
	무역 수지	311,441,185	234,646,710	143,631,112	264,902,691	744,004,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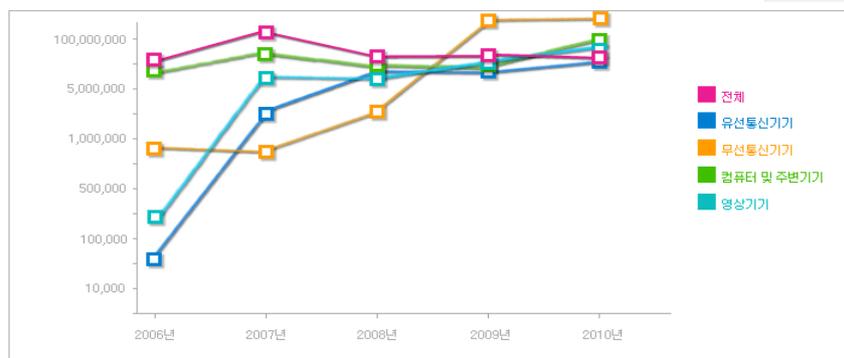
o 무역수지



o 수출



o 수입



[부록 2]

해외 주요국의 적합성평가 관련 서식 모음

유럽

< 공급자 적합선언서 양식 >

공급자 적합성선언		
1) 번호 : _____		
2) 발행자 성명 : _____		
발행자 주소 : _____		

3) 선언 대상품 : _____		

4) 위의 설명된 선언 제품은 아래문서의 요구사항에 적합함.		
문서번호	제목	개정/발행일자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5) 추가 정보 :		

6) 대리자를 위한 서명 :		

(발행 장소 및 일자)		
7) _____		
(이름, 직책) 서명 혹은 발행인에 의해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		



EC Declaration of Conformity

We, the undersigned,

Manufacturer	Tokyo Apparatus Ltd.
Address, City	Nagata-cho 1-11-35, Chiyoda-ku, Tokyo
Country	Japan
Phone number	+ 81 1234507
Fax number/e-mail	+ 81 7654321
Authorised representative in Europe	Mr. E. Veen, Director TAL Europe B.V.
Address, City	Emissionstreet 2, Immunitytown
Country	Belgium

certify and declare under our sole responsibility that the following apparatus:

Description	Seminar Presentation Machine
Manufacturer	Tokyo Apparatus Ltd.
Brand	Honshu
Identification	Model De Luxe
Restrictive use	For residential and office environment only

conforms with the essential requirements of the EMC Directive 2004/108/EC, based on the following specifications applied:

EU Harmonised Standards
EN 55099:2009
EN 55099:2010
EN 55088:2008

and therefore complies with the essential requirements and provisions of the EMC Directive.

Draft EMC Guide 12 October 2006

The following Notified Body has issued a positive Statement of Opinion.

Notified reference	Body	Identification of NB letter of Opinion	Name and address of NB
0000		Nr. 200700234	EMC Services BV NB street 1 EMC City The Netherlands

The Technical documentation is kept at the following address:

Company	Tal Europe B.V.
Address, City	Emission street 2, Immunity town
Country	Belgium
Phone number	+ 32 000000000
Fax number/e-mail	+ 32 88888888 veen@tal.beqlum

Name and position of person binding the manufacturer or his authorised representative	
Mr. Atsushi Gotoh Manager Product Design Tokyo Apparatus Ltd.	20 August 2010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conform ISO 17050)

1. **Number of SdoC:** 23456
2. **Issuer's name:** Electronic Emission Presentation B.V.
Immunitystreet 2
Emission City
Belgium
3. **Object of declaration:** Seminar Presentation Machine
Honshu Model de Luxe
4. **The object of declaration described above is in conformity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following documents:**

Document No:	Title
2004/108/EC	EU EMC Directive (December 2004)
EU Harmonised standards	EN 88099:2009 EN 99099:2010 EN 99088:2008 Part X except Chapter Y
EEP test method: 2009	Test method XYZ. To cover the parts of EN 99088 not being applied
5. **Additional information** A technical documentation nr. Global Presentation nr. YZZ is available to document compliance of the excluded part of the harmonized standard
6. **Signed for and on behalf of:** Electronic Emission presentations B.V.
7. **Date:** 30 August 2010
8. **Name and Function:** Mr. E Veen Managing Director



미국

< FCC TCB Application Form 731 >

EMCCert DR. RAŠEK GmbH
 - Certification Institute -
 Moggast, Boelwiese 5
 91320 Ebermannstadt



Germany

Notified Body R&TTE Directive 99/5/EC
 Notified Body EMC Directive 2004/108/EC
 FCB under the Canada-EC MRA
 TCB under the US-EC MRA

To be completed by EMCCert DR. RAŠEK GmbH	
Project No.	
Scope	
Pre-Check	
Assessor	
Date Filed	
Grant Note(s)	

TCB Application Form 731

Please fill in shaded items:

Item 1. Applicant's complete, legal business name:			
*Applicant's FCC Registration Number (FRN):			
Item 2. Applicant's mailing address:			
Line 1:			
Line 2:			
P.O. Box:			
City:			
State:		Country (if outside USA):	
		Zip/Postal Code:	
Item 3. FCC ID	*Grantee Code:	*Equipment Product Code (14 characters maximum):	
Item 4. Person at the applicant's address to receive grant or for contact:			
First Name:		Last Name:	
Title:		Telephone:	
E-mail:		Fax No.:	
Item 5. Test Firm:			
Firm Name:		Telephone:	Ext: Fax: No.:
First Name :		Middle Initial:	Last Name:
Address Line 1:		P.O. Box :	
Address Line 2:		City:	State:
Country (if outside USA):		Zip/Postal Code:	
E-mail:			
Item 6. FCC Registered Test Site Number (required for Part 15 and 18):			

EMCCert DR. RAŠEK GmbH • Moggast, Boelwiese 5, 91320 Ebermannstadt, Germany
 Tel.: +49-9194-9016 • Fax: +49-9194-8125 • Mail: emc.cert@emcc.de • Web: www.emcc.de

Read each certification carefully before answering and signing this application			
WILLFUL FALSE STATEMENTS MADE ON THIS FORM ARE PUNISHABLE BY FINE AND/OR IMPRISONMENT (U.S. CODE, TITLE 18, SECTION 1001), AND/OR REVOCATION OF ANY STATION LICENSE OR CONSTRUCTION PERMIT (U.S. CODE, TITLE 47, SECTION 312 (a) (1)), AND/OR FORFEITURE (U.S. TITLE 47, SECTION 503).			
Item 14. *SECTION 5301 (ANTI-DRUG ABUSE) CERTIFICATION:			
The applicant must certify that neither the applicant nor any party to the application is subject to a denial of Federal benefits, that include FCC benefits, pursuant to Section 5301 of the Anti-Drug Abuse Act of 1988, 21 U.S.C. §862 because of a conviction for possession or distribution of a controlled substance. See 47 CFR §1.2002(b) for the definition of a "party" for these purposes.			
*Does this applicant or authorized agent so certify?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tem 15. APPLICANT/AGENT CERTIFICATION AND AGREEMENT:			
I certify that I am authorized to sign this application. All of the statements herein and the exhibits attached hereto, are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In accepting a Grant of Equipment Authorization issued by the TCB, under the authority of the FCC, as a result of the representations made in this application, the applicant is responsible for (1) labeling the equipment with the exact FCC ID specified in this application, (2) compliance statement labeling pursuant to the applicable rules, and (3) compliance of the equipment with the applicable technical rules. If the applicant is not the actual manufacturer of the equipment, appropriate arrangements have been made with the manufacturer to ensure that production units of this equipment will continue to comply with the FCC's technical requirements.			
Authorizing an agent to sign this application, is done solely at the applicant's discretion; however, the applicant remains responsible for all statements in this application.			
If an agent has signed this application on behalf of the applicant, a written letter of authorization which includes information to enable the agent to respond to the above Section 5301 (Anti-Drug Abuse) Certification statement has been provided by the applicant. It is understood that the letter of authorization must be submitted to the FCC upon request, and that the FCC reserves the right to contact the applicant directly at any time.			
The Applicant agrees to accept the EMCcert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and accepts responsibility for all EMCcert charges arising from this application.			
The Applicant acknowledges that any exhibit submitted in conjunction with this application and not listed in the confidentiality request letter as per Item 7 is publicly available on the FCC Web Site immediately after the application has been completed. It is understood that a separate cover letter exhibit must be submitted with the application requesting and justifying such confidentiality in conjunction with the Form 731.			
*Signature of Authorized Applicant:		Date:	
Title of Authorized Signature:			
Complete items below if an agent signs the application			
Firm Name:	Telephone:	Ext.:	Fax No.:
First Name:	Middle Initial:	Last Name:	
Address Line 1:		P.O. Box:	
Address Line 2:			
City:	State:	Country (if outside USA):	Zip/Postal Code:
NOTE: An asterisk '*' preceding a field indicates it must be completed.			

< FRN Registration Form >

FRN Registration

[Return to FCC Registration Home](#)

Register a Foreign Business			
Business Type:	<input type="text" value="Federal Agency"/>	Subtype:	<input type="text" value="Administration"/>
Business Name:*	<input type="text"/>		
If your business has a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or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 enter it here:			
<input type="text"/>			
If your business does not have a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 select a reason:			
<input type="text"/> <input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5px;" type="button" value="?"/>			
Contact Information			
Organization:	<input type="text"/>	Position:*	<input type="text"/>
Salutation:	<input type="text"/>	First Name:	<input type="text"/>
Middle Initial:	<input type="text"/>	Last Name:	<input type="text"/>
Suffix:	<input type="text"/>		
Address:*	<input type="text"/>	City:*	<input type="text"/>
State/Province:	<input type="text"/>	Postal Code:	<input type="text"/>
Country:*	<input type="text"/>	Email:	<input type="text"/>
Phone:*	<input type="text"/>	Fax:	<input type="text"/>
FRN Password			
Enter a 6- to 15-digit case-sensitive password of your choice, or leave both password fields blank if you would like the system to generate a password for you. For advice on how to choose a secure password, click here.			
Password:	<input type="text"/>	Re-enter Password:	<input type="text"/>
Personal Security Question			
Please select a Personal Security Question type and provide its corresponding answer. If you wish to provide your own question, please select Custom Question Type... from the dropdown and enter your custom question in the space provided.			
Personal Security Question:*	<input type="text"/>	PSQ Answer:*	<input type="text"/>
Custom Personal Security Question: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SUBMIT"/>			
Asterisks (*) indicate required fields.			

< ACTA Application Form >



Administrative Council for Terminal Attachments

c/o ATIS
1200 G Street, NW Suite 500
Washington, D.C. 20005

**TELEPHONE TERMINAL EQUIPMENT (TTE) SUBMISSION
FORM Ver. 1.07**

*Please refer to the *Guidelines & Procedures for submittal of information to ACTA for inclusion in the database of approved Telephone Terminal Equipment ("TTE")* for a detailed item description of each field.

NOTE: For SDoC filings only.
**Information of external company filing for
Responsible Party, if applicable.**

1a. Name of Organization Granting Approval

Company Name:				Company Name:			
Address:				Address:			
City:	State:	Zip:	Country:	City:	State:	Zip:	Country:
Submitter's Name:				Submitter's Name:			
Phone Number:				Phone Number:			
Email Address:				Email Address:			
1b. TCB Identification Number (if applicable)				1c. Declaration of Conformity Included? (yes/no)			

2. Terminal Approval Date

3. Product Identifier

--	--

4. Responsible Party

5. U.S. Agent for Service

Company Name:				Company Name:			
Address:				Individual or Department			
City:	State:	Zip:	Country:	Address:			
Responsible Party Point of Contact:				City:	State:	Zip:	
Phone Number:				Phone:			
Email Address:				URL:			

6. Equipment Description	6a. Country Of Origin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7. Responsible Party Code (RPC)	8. Manufacturer's Code (if available)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9. Current Authorization Number (only if Modification, Notice, Re-certification, and/or Re-declaration filing)	10. Equipment Code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11a. List of Brand or Trade Name(s) Including New and Existing Names
<input type="text"/>
11b. List of New and Existing Model Number(s) for Each Brand or Trade Name
<input type="text"/>

12. Network address signaling code
<input type="text"/>

13a. AC Ringer Equivalence Number (REN)	13b. Hearing Aid Compatibility (YES/NO/NA)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13c. USOC Jack(s)	13d. Repetitive Dialing to a Single Number (YES/NO)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14. Filing Status
<input type="text"/>

15. Facility Interface Code(s)	16. Manufacturer Port ID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17. Service Order Code(s) (SOC)	18. Answer Supervision Code(s)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19. Ancillary Equipment					
	Certification Status	Trade Name	Model Number	List of Ancillary Equipment by Type	Manufacturer's Identifier
1.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3.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4.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f you are submitting an original filing or re-certification please fill out the following information. This will give you your ACTA Product-Labeling Number.

ACTA PRODUCT LABEL				
US:				

#7 #10 #13a (leave out the decimal point) #3

- #7. Responsible Party Code (RPC)
- #10. Equipment Code
- #13a. AC Ringer Equivalence Number (REN)
- #3. Product Identifier

< 공급자 적합선언서 양식 >



Administrative Council for Terminal Attachments
 c/o ATIS
 1200 G Street, NW
 Suite 500
 Washington, D.C. 20005
TELEPHONE TERMINAL EQUIPMENT (TTE)
SUBMISSION FORM Ver. 1.06

*Please refer to the Guidelines & Procedures for submittal of information to ACTA for inclusion in the database of approved Telephone Terminal Equipment ("TTE") for a detailed item description of each field.

1a. Name of Organization Granting Approval NOTE: For SDoC filings only. Information of external company filing for Responsible Party, if applicable

Company Name: Telephone Technology Solutions				Company Name:			
Address: 123 North Jameson Street				Address:			
City: Manassas	State: VA	Zip: 20110	Country: United States	City:	State:	Zip:	Country:
Submitter's Name: John Doe				Responsible Party Point of Contact:			
Phone Number: 703-999-9999				Phone Number:			
Email Address: jdoe@telephoneTS.com				Email Address:			
1b. TCB Identification Number (if applicable)				1c. Declaration of Conformity Included? (yes/no) YES			

2. Terminal Approval Date

9/23/2001

3. Product Identifier

TTS001

4. Responsible Party

Company Name: Telephone Technology Solutions				Company Name: Telephone Technology Solutions			
Address: 123 North Jameson Street				Individual or Department Certification Department			
City: Manassas	State: VA	Zip: 20110	Address: 123 North Jameson Street				
Responsible Party Point of Contact: John Doe				City: Manassas	State: VA	Zip: 20110	Phone: 703-777-7777
Phone Number: 703-999-9999				URL: www.telephonetechsolutions.com			
Email Address: jdoe@telephoneTS.com							

5. U.S. Agent for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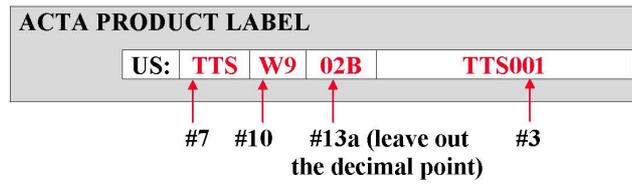
6. Equipment Description		6a. Country Of Origin	
2.4 GHz two line cordless phone with voice recognition			
7. Responsible Party Code (RPC)		8. Manufacturer's Code (if available)	
TTS			
9. Current Authorization Number (only if Modification, Notice, Re-certification, and/or re-declaration filing)		10. Equipment Code	
		W9	
11a. List of Brand or Trade Name(s) Including New and Existing Names			
TelTech			
11b. List of New and Existing Model Number(s) for Each Brand or Trade Name			
TelTech 2001X			
12. Network address signaling code			
E			
13a. AC Ringer Equivalence Number (REN)	13b. Hearing Aid Compatibility (YES/NO/NA)		
0.2B	YES		
13c. USOC Jack(s)	13d. Repetitive Dialing to a Single Number (YES/NO)		
RJ11C	NO		
14. Filing Status			
ORIGINAL			
15. Facility Interface Code(s)		16. Manufacturer Port ID	
Metallic		2001X	
17. Service Order Code(s) (SOC)		18. Answer Supervision Code(s)	
N/A		N/A	

SAMPLE
SDOC -
SUBMISSION

19. Ancillary Equipment

	Certification Status	Trade Name	Model Number	List of Ancillary Equipment by Type	Manufacturer's Identifier
1.	N/A				
2.					
3.					
4.					

If you are submitting an original filing or re-certification please fill out the following information. This will give you your ACTA Product-Labeling Number.



- #7. Responsible Party Code (RPC)
- #10. Equipment Code
- #13a. AC Ringer Equivalence Number (REN)
- #3. Product Identifier

SAMPLE
 - SDoC -
 SUBMISSION

Telephone Terminal Equipment Submission Form Description of Items

Item 1a: Name of Organization Granting Approval or Submitting Request for RPC

List the complete Company Name, Address, City, State and Zip Code or the organization (attesting to the terminal equipment's conformity to Part 68 rules and ACTA-adopted technical criteria). Then list the Submitter's Name (this should be an employee of the same company), Submitter's phone number and Submitter's e-mail address. If the submission is from an SDoC, the information should be similar to Item 4.

1a. Name of Organization Granting Approval or Submitting Request for RPC

Company Name: Telephone Technology Solutions		
Address: 123 North Jameson Street		
City: Manassas	State: VA	Zip: 20110
Submitter's Name: John Doe		
Phone Number: 703-999-9999		
Email Address: jdoe@telephoneTS.com		

Item 1b: Telecommunications Certification Body ("TCB") Identification Number

List the TCB identifier for terminal equipment information submitted by a registered TCB. Not Applicable for SDoC Filings.

Item 1c: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SDoC")

Provide a copy of the SDoC for terminal equipment submitted under a SDoC. Select yes if you have included the Declaration of Conformity. For an SDoC, this is required for processing. Ex. **YES**. SDoC reference number may be included.

Item 2: Terminal Equipment Approval Date

Provide the date the terminal equipment was approved (date of TCB Certificate or SDoC Statement), in MM/DD/YYYY format. Ex. **9/23/2001**

Item 3: Product Identifier

Provide the Responsible Party's unique terminal identifier. Refer to *TIA Standard – TIA- 168-B, Telecommunications – Telephone Terminal Equipment – Labeling Requirements*. Example: US: AA~~A~~EQ##TXXX, where XXX is the product identifier. The Responsible Party shall define this identifier.
Ex. **TTS001**

Note: the FCC historically assigned a 5-digit product identifier number. Example: AA~~BBB~~-NNNNN-XX-Y, where NNNNN is the assigned number. Parties submitting data for products that will retain an existing FCC Registration number (Modification, or Notice of Change) should enter the FCC assigned 5 digit number. Do not enter in the entire label, just the product identifier.

Item 4: Responsible Party

List the complete name and address of the responsible party; including the contact information of the submitter; *i.e.*, email and phone number. The Responsible Party is the individual or company that accepts responsibility for the product and its compliance to Part 68 rules and ACTA-adopted technical criteria. Pursuant to the “Order on Reconsideration in CC Docket No. 99-216 and Order Terminating Proceeding in CC Docket No. 98-163”, FCC 02-103, Released April 10, 2002, the Responsible Party for a SDoC is not required to be located in the United States but, must designate an agent for service of process that is physically located in the US. See Item #5. For parties utilizing the SDoC method, this may be the same information contained in Item 1a.

4. Responsible Party

Company Name: Telephone Technology Solutions		
Address: 123 North Jameson Street		
City: Manassas	State: VA	Zip: 20110
Responsible Party Point of Contact: John Doe		
Phone Number: 703-999-9999		
Email Address: jdoe@telephoneTS.com		

Item 5: US Agent for Service

Original filings will not be processed without an Agent for Service Pursuant to §68.321 in the Order on Reconsideration in CC Docket 99-216 (FCC 02-103), the Responsible Party for a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must designate an agent for service of process that is physically located with-in the United States. A Responsible Party filing utilizing the TCB process must designate an Agent for Service. The Agent for Service is an entity upon which service may be made of all inquiries, orders, decisions, and other pronouncements of the FCC in any matter before the FCC. Responsible Parties must identify an agent (or department designation), business address, phone number, and if available TTY (teletypewriter) number, facsimile number, and Internet E-mail address.

5. U.S. Service Center

Name: Telephone Technology Solutions		
Address: 123 North Jameson Street		
City: Manassas	State: VA	Zip: 20110
Phone: 703-777-7777		
URL: www.telephonetechsolutions.com		

Item 6: Equipment Description

For new filings (*i.e.*, “original” filings) provide a brief description (in 10 words or less) of the terminal equipment. Example: “Two-line telephone with built-in answering machine.” For modification filings, provide a brief description of the technical change. EX. **2.4 GHz two line cordless phone with voice recognition**

Item 6a: Country of Origin

This is only required for modifications and notices of change. The country of origin can be found in the FCC labeling format. It is the second set of three letters. Examples are USA for the United States, CAN for Canada, HKG for Hong Kong, TAI for Taiwan, CHN for China, etc.

Item 7: Responsible Party Code (“RPC”)

List applicant’s assigned ACTA RPC or FCC Grantee Code. If you do not have one you will need to submit a Request for an RPC. EX. **TTS**

Item 8: Manufacturer Code

List manufacturer’s previously assigned FCC ID code(s), if any; otherwise leave blank.

Item 9: Current Authorization Number

Provide current FCC certification, registration or declaration number(s), if applicable. This is required for modification, notice of change and re-certification applications where a filing resulted in a grant of registration or certification. If the submission is an “Original Filing” or “Notice of Change” leave blank.

Item 10: Equipment Code

Refer to *TLA/EIA TSB-168-B, Telecommunications –Telephone Terminal Equipment –Labeling Requirements* for a complete list of codes. Only one code may be specified. Select the code that most accurately describes your product. If your equipment is currently approved, include the equipment code already assigned to your equipment. EX. **W9**

Item 11a: List of Brand or Trade Name(s) Including New and Existing Names

List of Trade or Brand Names, including new and existing Trade Names, under which this product will be marketed and sold. Note: The type of application being made impacts what information is to be included in this field. See also Item 14. EX. **TelTech**

Item 11b: List of New and Existing Model Number(s) for Each Brand or Trade Name

List of model numbers for each Trade or Brand Name under which this product will be marketed and sold. Note: The type of application being made impacts what information is to be included in this field. See also Item 14. EX. **TelTech 2001X**

Item 12: Network Address Signaling Code

Show the network address signaling code. This is required for all applications. Indicate the type of network address signaling by one of the following code letters:

- **T** If the device performs dual-tone multi-frequency (“DTMF”) signaling;
- **R** If the device performs rotary (pulse) signaling;
- **E** If the device performs either DTMF or pulse signaling (user-selectable);
- **N** If the device does no address signaling.

Item 13a: AC Ringer Equivalence Number (“REN”)

The format to be used for the AC REN is REN (ac): n.nx, example: 1.0B, where n.n is the REN expressed in units and tenths and x is the appropriate ringer type. Only two ringer types are used: A for 20 and 30 Hz; and B for ringers that work over the range of 15.3 to 68 Hz. If the ringer equivalence number calculates to a value of less than 0.05, use 0.0. Report either A or B type REN, or it is permissible to report A and B. If Type A is to be used, calculate its value at 20 and 30 Hz and use the larger value. If the B type is to be used calculate its value over the range of 15.3 to 68 Hz and use the largest value. Also refer to *TLA Standard - TLA-168-B, Telecommunications –Telephone Terminal Equipment –Labeling Requirements*. EX. **0.2B**

Item 13b: Hearing Aid Compatible (“HAC”)

Telephones (corded and cordless) imported into (or manufactured in) the U.S., unless otherwise exempt, must be HAC (magnetic flux strength, §68.316). Marking of devices with the letters HAC prominently displayed is required for all HAC telephones manufactured or imported after April 1997. Enter Yes, No, or Not Applicable (N/A). EX. **YES**

Item 13c: Universal Service Order Codes (“USOC”) Jack(s)

List codes describing type(s) of jack(s) required at the network interface. Use N/A for adjuncts that do not make direct connection to the network. Use "hardwired" for meter readers and alarm dialers, if applicable (some alarm dialers preferentially use the type RJ31X jack because of its call preemption feature.) Refer to *ATIS Technical Report No. 5*. EX. **RJ11C**

Item 13d: Repetitive Dialing to a Single Number

Many telephones, dialers, and alarm systems have the capability of repeat dialing to a single number. Indicate if the device or system has this feature. In CC Docket No. 81-216, Fourth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FCC 86-352, the Commission permitted unlimited computer-controlled automatic redialing but reserved the right to revisit this decision to ensure network protection, if necessary. Enter Yes or No. EX. **NO**

Item 14: Filing Status

Describe the primary reason for the filing. Each filing must demonstrate that the covered equipment will not harm the network.

Original Filing

Original filings are required for covered equipment to be sold that previously has not been approved. Each filing must be complete and without reference to a previously submitted application.

Modification Filing

Modification filings are required to report changes to approved equipment when these changes affect compliance characteristics of that equipment, for example:

- (a) Schematic diagram, component values, functions, or test data;
- (b) Product classification code change (*e.g.*, a TE telephone to which is added speakerphone functionality would become an MT device);
- (c) Change in REN;
- (d) Change in a Part 68-controlled power level;
- (e) Mechanical layou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rinted circuits;
- (f) Software;
- (g) Changes to a switching power supply.

A modification filing will be processed only when an original filing for the terminal equipment has previously been processed.

Notice of Change (“Notice”) Filing

Notice filings are required to maintain database accuracy when no electrical change has been made to the equipment. A notice filing is required, for example, when a trade name or model number is added to a previously approved device or system. Typically, such additions describe cosmetic variations, or are for marketing the product under a different trade name or model number.

A notice filing will be processed only when an original filing for the terminal equipment has previously been processed.

Re-certification/Re-approval

Re-certification/re-approval applications are required for limited cases requiring the processing of a new filing. They can include:

- (a) Changes in the network address signaling code (*e.g.*, changing from a T to an E).
- (b) **Establishing a new classification for equipment (*e.g.*, a change to a MF classification based on a previously approved KF system).**
- (c) Adding a new manufacturer; when manufacturing/distribution rights are transferred to another party.
- (d) When a vendor wants its own approval for marketing reasons (with permission of the original responsible party).

This type of filing will be processed only when an original filing for the terminal equipment has previously been processed by ACTA, a TCB, or the FCC.

EX: ORIGINAL

Item 15: Facility Interface Codes (“FIC”)

Provided is a partial list of common FIC codes. For a more complete list refer to *ATIS Technical Report No. 5*.

Analog Services	
FIC	Description
OL13A.	2-wire, Class A, Private Branch Exchange (“PBX”) off-premises station port
OL13B	2-wire, Class B, PBX off-premises station port.
OL13C	2-wire, Class C, PBX off-premises station port.
LADC	Local area data channels *
METALLIC	2- or 4-wire metallic private line. *
TL11E	E&M Tie Trunk, Lossless, 2W, Type I, originates with ground on E
TL11M	E&M Tie Trunk, Lossless, 2W, Type I, originates with battery on M
TL12E	E&M Tie Trunk, Lossless, 2W, Type II, originates with ground on E
TL12M	E&M Tie Trunk, Lossless, 2W, Type II, originates with battery on M
TL31E	E&M Tie Trunk, Lossless, 4W, Type I, originates with ground on E
TL31M	E&M Tie Trunk, Lossless, 4W, Type I, originates with battery on M
TL32E	E&M Tie Trunk, Lossless, 4W, Type II, originates with ground on E
TL32M	E&M Tie Trunk, Lossless, 4W, Type II, originates with battery on M
02AC2	2-wire voice transmission with customer-provided ringing 600 ohms*
02GS2	2-wire ground-start signaling closed end provided by end user 600 ohms
02LA2	2-wire, certified, Class A, PBX off-premises station port 600 ohms
02LB2	2-wire, certified, Class B, PBX off-premises station port 600 ohms
02LC2	2-wire, certified, Class C, PBX off-premises station port 600 ohms
02LR2	2-wire Private Line Automatic Ringdown, ringing from Local Exchange Carrier (“LEC”), 600 ohms*
02LS2	2-wire loop-start signaling closed end provided by end user 600 ohms
02NO2	4-wire voice transmission with no LEC-provided signaling 600 ohms*
02RV2.0	2-wire loop reverse battery signaling, loop closure from customer, reverse battery from LEC, 600 ohms. Used for PBX-E911 trunks. *
02RV2.T	2-wire loop reverse battery signaling, loop closure from customer, reverse battery from LEC, 600 ohms. Used for Direct Inward Dialing (“DID”) ports.
04AC2	4-wire voice transmission with customer-provided ringing 600 ohms*
04GS2	4-wire ground-start signaling closed end provided by end user 600 ohms*
04LR2	4-wire Private Line Automatic Ringdown, ringing from LEC, 600 ohms*
04LS2	4-wire loop-start signaling closed end provided by end user 600 ohms*
04NO2	4-wire voice transmission with no LEC-provided signaling 600 ohms. (Applicable to “hoot ‘n holler” circuits.) *
04RV2.T	2-wire loop reverse battery signaling, loop closure from customer, reverse battery from LEC, 600 ohms. Used for DID ports. *
06EA2.M	6-wire Type I E&M signaling – Battery on M lead to originate, 600 ohms. Same as TL31M except with transmit TLP values of -2 to +3 dBm.
08EB2.M	8-wire Type II E&M signaling – Battery on M lead to originate, 600 ohms. Same as TL31M except has expanded receive TLP values of 0 to -8 dBm.
Digital Services	
FIC	Description
02DU5.56B	2-wire Switched 56 kbps Type III Public Switched Data Service (“PSDS”), 135 ohms.
02DU7.56B	2-wire Switched 56 kbps Type II PSDS, 124 ohms.
02IS5	2-wire Basic Rate 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 (“ISDN”), 135 ohms.
04DU5.19	4-wire 19.2 kbps digital interface, 135 ohms.
04DU5.19S	4-wire 19.2 kbps digital interface with secondary channel, 135 ohms.
04DU5.24	4-wire 2.4 kbps digital interface, 135 ohms.
04DU5.24S	4-wire 2.4 kbps digital interface with secondary channel, 135 ohms.
04DU5.38	4-wire 38.4 kbps digital interface, 135 ohms.
04DU5.38S	4-wire 38.4 kbps digital interface with secondary channel, 135 ohms.

04DU5.48	4-wire 4.8 kbps digital interface, 135 ohms.
04DU5.48S	4-wire 4.8 kbps digital interface with secondary channel, 135 ohms.
04DU5.56	4-wire 56 kbps digital interface, 135 ohms.
04DU5.56B	4-wire Switched 56 kbps Type I PSDS, 135 ohms.
04DU5.56S	4-wire 56 kbps digital interface with secondary channel, 135 ohms.
04DU5.64	4-wire 64 kbps digital interface, 135 ohms.
04DU5.96	4-wire 9.6 kbps digital interface, 135 ohms.
04DU5.96S	4-wire 9.6 kbps digital interface with secondary channel, 135 ohms.
04DU9.BN	4-wire 1.544 Mbps (DS1) with Super Frame ("SF"), Alternate Mark Inversion ("AMI"), no line power, 100 ohms.
04DU9.DN	4-wire 1.544 Mbps (DS1) with SF, Bipolar with eight-zero substitution ("B8ZS"), no line power, 100 ohms.
04DU9.1KN	4-wire 1.544 Mbps (DS1) with Extended Super Frame ("ESF"), AMI, no line power, 100 ohms.
04DU9.1SN	4-wire 1.544 Mbps (DS1) with ESF, Bipolar with Eight-Zero Substitution ("B8ZS"), no line power, 100 ohms. *

Analog Services: * These services are subject to local availability

Digital Services: * May be used for Primary Rate ISDN.

Use the code most accurately describing the equipment

EX. METALLIC

Item 16: Manufacturer Port ID

Manufacturer's part number or model number for circuit pack or card for that specific network port.

EX. 2001X

Item 17 & 18: Service Order Codes ("SOC") and Answer Supervision Codes

A partial list of the most commonly used codes is provided below.

Service Order Codes	
Analog Services	
SOC	Description
9.0F	Full protection to the network from systems using live voice. Only approved terminal equipment can be connected to station ports.
9.0N	Unprotected systems. Requires use of certified protective couplers or filing of affidavits with the telco. See §68.215(d) and (e)
9.0Y	Provides full Part 68 protection. Provides signal limiting for ALL signal sources (not just from Music On Hold ("MOH").
7.0Y	Provides total protection to the network for connection of private communication systems.
7.0Z	Host system port provides partial protection to the network for connection of private communication systems. Requires filing of signal power affidavit with telco.
Digital Services	
SOC	Description
6.0Y	Provides total protection, including billing protection and encoded analog content.
6.0F	Combinations of equipment provide full protection to digital service. Billing protection and encoded analog protection are provided either by including auxiliary equipment within the certification envelope or by use of a separately certified device.
6.0N	Does not provide billing and encoded analog protection. Uses either an integrated or external Channel Service Unit ("CSU"). Affidavit to telco is required.
6.0P	Provides billing and encoded analog protection (similar to 6.0F) but requires separate CSU.
Answer Supervision Codes for Systems and Terminal Equipment	
Code	Description
AS.2	System ports that provide answer supervision (for system types such as CD, KF, MF, PF, VM, etc.)
AS.3	Terminal equipment or combinations of terminal equipment that provides answered supervision.

Note: Include as a Service Order Code

EX:

Item 17: N/A

Item 18: N/A

Item 19: Ancillary Equipment

Enter each model and list subsystem elements by name and manufacturer's part number that fall within the product's registration/certification "envelope". If telephones and consoles are HAC, indicate by using HAC. Note; information is not required for single and two line devices. For cordless phones used as stations, indicate the frequency band used and that digital security coding is employed.

	Certification Status*	Trade Name	Model Number	List of Ancillary Equipment by Type**	Manufacturer's Identifier
1					
2					
3					

*The certification status column indicates the type of filing for all entries using these codes:

Status Code Definition of Code

NEW -- New with this submission

MOD -- Modified from previous submissions

PREV -- Previously certified, no 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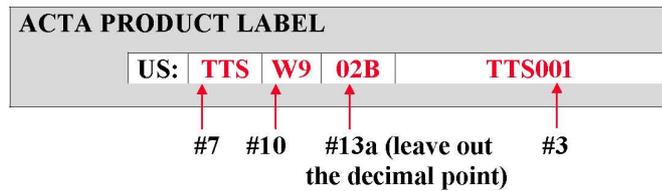
MD -- Manufacturing Discontinued, may exist in product in the field

RECERT -- Re-Certification

**This includes items such as, but not limited to, consoles, telephones, external power supplies, and modems.

ACTA PRODUCT LABELING NUMBER*

For original and re-certification filings, by filling out the following information you will generate your ACTA Product-Labeling Number. Reminder, this is the ACTA label, which is a change from the FCC label. Fill in the boxes with the associated line item. An example is listed below:



ACTA Product Label US:TTSW902BTTS001

*This label is not intended for use with modification, and notice of change submissions.

일본

< 변경신고서 양식 >

[신고양식]

제출날 평성 년 월
 짜 : 일

재단법인 전기통신단말기기심사협회 귀하

인증취급업자명 :
신고자소속명 :
신고자 이름 : 도장 또는 싸인
반송처 주소 :
전화번호 :

기술기준적합인정 단말기기에 관한 신고

하기의 기인증기기에 대해 하기와 같이 변경하였기 때문에 신고합니다.

기

1. 변경내용 및 변경이유

2. 기인증기기
 기인증기기명 :
 기인증번호 :
 기인증날짜 :

3. 변경날짜
 평성 년 월 일

4. 기타

수리인

시험의뢰서

접수번호 -				
평성 년 월 일				
(재) 전기통신단말기기심사협회 이사장 귀하				
우편 번호 : _____				
신청자 주소 : _____				
신청자 명칭 : _____ 인				
전화 번호 : _____				
기술기준				
하기의 단말기기에 대해 기술적 조건 에 관한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오니, 단말기기 및 별지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합니다.				
기기 명칭				
통신하는 네트워크				
단말기기의 종류				
시험을 의뢰 항목				
비 고				
<p>주 1 이름을 자필로 기입한 경우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p> <p>2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직책명 및 이름을 기재하여, 대표자의 도장첨부. 단, 대표자가 이름을 자필로 기재한 경우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p> <p>3 비고란에는 본 의뢰를 바탕으로 시험결과보고서에 대해 기술기준적 합인정 신청서의 첨부 또는 기술기준적합자기확인에 관한 시험의 위탁 등, 해당 시험결과보고서의 사용목적에 대해 기재</p>				
청구의뢰번호 -	의뢰일 평성 년 월 일	청 구 액	엔	수납일자
회계사무책임자 귀하 시험인 印 상기 신청자의 우기금액을 청구합니다.		내역	수수료 엔	
		청구번호 -	청구일자 평성 년 월 일	

러시아

< GOST-R 인증 신청서 >

APPLICATION / ЗАЯВКА
for product certification under GOST-R Certification System /
на проведение сертификации продукции в системе сертификации ГОСТ Р

name of manufacturer, sell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applicant") / наименование организации-изготовителя, продавца (далее – заявитель)

Legal address, telephone & fax numbers, E-MAIL / юридический адрес, телефон, факс, E-MAIL

Tel/Тел: _____ Факс/Факс: _____ E-MAIL: _____

In the person of / в лице: _____ hereby applies for / просит провести

certification of the products /
сертификацию продукции _____
name of executive, authorised credit manager, CEO of company / фамилия, имя, отчество руководителя
product name, type, model, code, serial production batch / наименование продукции, серийный вым. или партия

manufactured by/
выпускаемой * _____

in accordance with/ по _____
manufacturer's standards, specifications / документация изготовителя

to comply with requirements of /
на соответствие требованиям _____
Russian National standards and other documents / наименование и обозначение норм
документов

in accordance with certification scheme / по
схеме _____
certification scheme number / номер схемы сертификации

The applicant agrees to fulfil all necessary procedures and regulations of certification /
Заявитель обязуется выполнять все правила и процедуры сертификации

Additional information /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сведения: _____

Life cycle / срок службы _____ years / months (лет/месяцев)

Location of Mark of Conformity / Место нанесения знака соответствия:**
On product / на продукции On packing / на упаковке

Signature of executive, authorised credit manager or CEO of company / подпись
руководителя организации _____

Stamp / М.П.: _____ Date/ число: _____

- (*) - If the applicant is a seller, name & address of the manufacturer should be given in this position /
указывается наименование изготовителя и его адрес, если заявителем является продавец.
(**) - Mark ✓ where appropriate / отметьте, где необходимо

브라질

< 인증 신청서 >

	OCIPEM Organismo Certificador de Produtos do Instituto de Pesos e Medidas do Estado de São Paulo
---	---

SOLICITAÇÃO DE CERTIFICADO DE CONFORMIDADE

EMPRESA

RAZÃO SOCIAL

CNPJ	INSCRIÇÃO ESTADUAL		
ENDEREÇO (LOGRADOURO,Nº,COMPLEMENTO)			
BAIRRO	MUNICÍPIO	CEP	UF
TELEFONE	FAX	E-MAIL	

MODALIDADE DA CERTIFICAÇÃO

CONCESSÃO
 EXTENSÃO
 MUDANÇA
 REDUÇÃO
 SUSPENSÃO
 CANCELAMENTO

FORNECEDORES DE CANA-DE-AÇÚCAR E DE CACHAÇA (se for o caso)

--

LOCALIZAÇÃO DA PROPRIEDADE DA PRODUÇÃO (se diferente da empresa)

RAZÃO SOCIAL

ENDEREÇO (LOGRADOURO,Nº,COMPLEMENTO)			
BAIRRO	MUNICÍPIO	CEP	UF
TELEFONE	FAX	E-MAIL	

PRODUTO A SER CERTIFICADO

NOME REGISTRADO E DESCRIÇÃO (DADOS TÉCNICOS QUE DEVERÃO CONSTAR NO CERTIFICADO)

CAPACIDADE NOMINAL (L/mês)	CAPACIDADE MÁXIMA (L/mês)
----------------------------	---------------------------

OBSERVAÇÕES: QUANDO APLICÁVEL, ESPECIFICAR E ANEXAR CERTIFICADOS JÁ EXISTENTES DO PRODUTO NO BRASIL E/OU EXTERIOR

--

RESPONSÁVEL

"Concordo em cumprir os requisitos para a Certificação, descritos no Procedimento específico do Produto, e em fornecer qualquer informação necessária dos produtos a serem certificados"

NOME	CARGO
ASSINATURA	DATA
RESPONSÁVEL TÉCNICO	N.º REGISTRO PROFISSIONAL
	ASSINATURA

Documento	Elaborado por	Revisão n.º	Data de Edição/ Revisão	Folha	Aprovado:
FORM-012	OCIPEM	05	01/11/2007	1/2	

	OCIPEM Organismo Certificador de Produtos do Instituto de Pesos e Medidas do Estado de São Paulo
--	---

ANEXO

DOCUMENTOS A SEREM ENVIADOS AO OCIPEM

- a) Cópia do Contrato Social
- b) Cópia do CNPJ
- c) Cópia do registro profissional do técnico responsável atualizado
- d) Localização da propriedade (no caso da pessoa jurídica ser apenas envasador de cachaça, este deverá atender apenas aos requisitos referentes a esta etapa) e a localização da cachaça, plantio da cana-de-açúcar (se houver), ambas representadas em croqui definindo áreas de moagem, fermentação, destilação, envelhecimento (se houver), estocagem e engarrafamento. A etapa de engarrafamento deve contemplar: tanques de recebimento e estocagem, equipamentos de embalagem, linhas de transferência, estocagem do produto acabado, todas definidas em croqui específico, contendo também a localização dos componentes da infra-estrutura de apoio (estocagem das embalagens, expedição, escritórios, lavatórios etc.)
- e) Marcas e Tipos de Cachaça a serem certificadas
- f) Responsável pela empresa
- g) Localização da produção (mapa)
- h) Cópia do Registro no Ministério da Agricultura, Pecuária e Abastecimento – **MAPA**
- i) Capacidade nominal de processamento para produção e para engarrafamento de cachaça (L/mês)
- j) Capacidade MÁXIMA de processamento para produção e para engarrafamento de cachaça (L/mês).
- k) No caso de cooperativas ou associações estas deverão ter as localizações das propriedades de seus afiliados.

OBS.: Manter documentos de análises de produtos; água utilizada; registros de funcionários; registros de produtos utilizados na lavoura, no local de produção, para apresentação à equipe auditora.

Documento	Elaborado por	Revisão nº	Data de Edição/ Revisão	Folha	Aprovado:
FORM-012	OCIPEM	05	01/11/2007	2/2	

[부록 3]

FTA/MRA 대응전담반 현황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해당분야 경력, 전공분야 등)
총괄책임자	RAPA	부장	곽기훈	-
방통위 담당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관	임재덕	방송통신기자재 MRA 추진 주무부처
방통위 담당관	방송통신위원회	주무관	김동현	방송통신기자재 MRA 추진 주무부처
관련전문가	국립전파연구원	주무관	신금철	방송통신기자재 인증기관
관련전문가	국립전파연구원	주무관	박정민	방송통신기자재 인증기관
관련전문가	TTA	과장	백종현	다년 FTA/MRA 과제 수행
관련전문가	TTA	박사	강부미	법학 박사
합 계	7명			

방송통신정책연구 11-진흥-나-10

**G20국가와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제도
상호인정협정 전략연구**

(A Study on Strategy for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with G20 countries for Conformity assessment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2011년 12월 31일 인쇄

2011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발행처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TEL: 02-750-1114

E-mail: webmaster@kcc.go.kr

Homepage: www.kcc.go.kr

인쇄 경성문화사 02)786-2999
